

2014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4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I.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 | |
|-----|--|
| 7 |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권미경 |
| 29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공통 평가 방안 · 최은영 |
| 55 |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및 정책 시사점 · 이정림 |
| 75 | 3,4세 누리과정 유아평가 및 제언 · 이미화/정주영 |
| 95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 누리과정 운영 협력을 중심으로 · 권미경 |
| 119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 김은설 |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 |
|-----|---|
| 145 | 영아보육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 이미화/민정원 |
| 169 |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은영 |
| 195 | 영유아 종일제 보육비용 산정 · 서문희/양미선 |
| 223 | 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김은설 |
| 247 |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 이정원 |
| 269 |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양미선/서문희 |
| 291 |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운영·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유해미 |
| 313 |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현황과 과제 · 서문희/이혜민 |

III. 육아지원 다각화

| | |
|-----|--|
| 335 |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실태와 지원 강화 방안 · 이정원 |
| 357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강화 방안 · 유해미 |
| 379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 장혜진 |
| 397 | 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 이윤진 |
| 421 |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 이정림 |
| 443 | 아동패널 0~4세 영유아 성장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도남희 |
| 465 | 가구소득 격차에 따른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 이윤진 |
| 489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 방안 · 양미선 |

I.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권미경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공통 평가 방안 | 최은영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및 정책 시사점 | 이정림

3,4세 누리과정 유아평가 및 제언 | 이미화·정주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 누리과정 운영 협력을 중심으로 | 권미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 김은설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권미경

요약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85~87%가 단일연령반으로 운영되며, 유치원교사 2급과 1급, 보육교사 1급 위주이며, 평균 운영시간은 유치원 4.8시간, 어린이집 4.2시간임.
- 교사연수, 장학 등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교재교구의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교사는 스스로 누리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응답이 높음.
- 누리과정을 위해 지원된 운영비는 교재교구의 구입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현장에서는 재정지원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기관을 통한 홍보와 부모교육, 운영 우수사례의 공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중심 상호협력을 제언하였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장학과 교사교육 기회 확대가 요구됨.
- 교사의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보조교사의 지원 보장, 국가 수준의 자료지원 확대, 지원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부모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부모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평가 체제의 구축을 제언함.

1. 연구 배경

- 정부는 2013년 3월 누리과정의 대상연령을 3, 4세까지 확대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칭되나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의미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으로의 교육·보육과정 자체를 포괄함.

* 본 원고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이 집필한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된 교육·보육과정과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누리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 뿐 아니라, 정부, 학계, 부모 등 전 사회적인 관심이 높음. 이와 더불어 지원되는 비용지원이 사교육 시장의 확대, 불필요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높음.
- 누리과정은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정책이며, 또한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로 새로운 정책의 실행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이 높음을 고려할 때 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 정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첫 시행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정책 수혜자로서 부모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함.
- 운영 현황 조사는 전국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다단계층화 후 기관수별 제곱근 비례 배분 무선 표집하여 전국 유치원 중 509개 기관에서 원장 509명과 만 3~5세 담당교사 1,209명이 참여하였고, 어린이집 514개 시설에서 원장 514명과 만 3~5세 담당교사 1,384명이 응답함.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3 운영 실태

- 누리과정 운영 현황은 전체 기관 수준에서 실시 현황, 교실 안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보육활동으로 전개하는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 운영에 대한 평가, 누리과정 재정지원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고찰함.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운영 실태

1) 학급(반) 편성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일연령반 구성 비율은 85~87% 수준임.

- 유치원의 학급편성 현황은 전체 1,992개의 학급 중 단일연령 학급이 85.1%이며, 혼합연령 학급이 14.9%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반 편성 현황은 전체 1,940개의 반 중 만 3세, 만 4세 또는 만 5세 단일연령반의 비율이 87.7%에 달하고 어린 연령에서 단일연령반 구성 비율이 높음.

2) 교사 자격 및 담당 교사

- 유치원교사 2급과 1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주류를 이룸.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49.5%)와 1급 정교사(48.7%)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공립유치원에서와 만 5세반, 혼합연령 학급에서 1급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이 높고, 교사 중 보육교사 자격까지 소지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룸.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소지자(61.7%)가 주류를 이루고, 3급 보육교사의 비율(0.1%)은 미미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유치원 2급 정교사의 비율(43.8%)도 높음.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소지자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치원 정교사 1급 | 보육 교사 2급 | 보육 교사 1급 | 어린이집 원장 | 유치원 원감 | 보육 교사 3급 | 유치원 원장 | 사례수 |
|---------|------------|------------|----------|----------|---------|------------|------------|--------|--------|
| 전체 | 49.5 | 48.7 | 21.3 | 19.1 | 10.0 | 1.8 | 0.4 | 0.2 | (1209) |
| 유치원 | | | | | | | | | |
| 3세 학급 | 60.4 | 37.8 | 29.2 | 19.4 | 10.4 | 2.4 | 0.3 | 0.0 | (288) |
| 4세 학급 | 57.5 | 40.4 | 24.7 | 17.8 | 10.2 | 2.1 | 0.9 | 0.0 | (332) |
| 5세 학급 | 44.8 | 52.5 | 18.3 | 20.3 | 11.3 | 2.0 | 0.3 | 0.8 | (400) |
| 혼합연령 학급 | 28.6 | 72.0 | 9.5 | 18.5 | 6.3 | 0.0 | 0.0 | 0.0 | (189) |
| 구분 | 어린이집 원장 | 보육 교사 1급 | 보육 교사 2급 | 보육 교사 3급 | 유치원 원감 | 유치원 정교사 1급 | 유치원 정교사 2급 | 사례수 | |
| 전체 | 15.9 | 61.7 | 26.1 | 0.1 | 0.2 | 5.7 | 32.0 | (1384) | |
| 어린이집 | | | | | | | | | |
| 3세반 | 12.7 | 55.3 | 34.7 | 0.0 | 0.0 | 4.3 | 30.0 | (490) | |
| 4세반 | 14.6 | 61.2 | 27.3 | 0.3 | 0.0 | 6.9 | 32.8 | (363) | |
| 5세반 | 21.1 | 71.5 | 13.2 | 0.0 | 0.0 | 7.3 | 32.1 | (355) | |
| 혼합연령반 | 17.2 | 60.3 | 25.9 | 0.0 | 1.7 | 4.0 | 36.2 | (174) | |

주: 조사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임.

- 누리과정 담당 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은 만 3세, 4세, 5세 모두에서 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경향을 보임.
 - 어린이집은 5세반과 혼합연령반의 경우와 누리장애반의 경우는 '능력 있는 교사'를 우선 고려함.

3) 교사 연수 및 장학(학습공동체활동)

-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교원연수 제공 등 지원체계의 기여가 많았음.
 - 유치원 교사 중 78.9%와 어린이집 교사 중 81.2%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모두 이수하였고, 그 이외에 추가 연수기회에 참여한 경우도 많음.
 - 어떤 연수도 참여하지 않은 교사는 1.4%, 0.4%로 나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새 교육·보육과정 체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교원의 누리과정 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교육·보육과정 운용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노력의 일환으로 장학과 학습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짐(<표 3> 참고).
 - 유치원교사 원내 자율장학(51.7%)과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워크숍(29.4%), 지역 유치원 간 공동 수업 참관(19.9%)의 순으로 나타나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어느 장학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음.
 - 어린이집 원장의 94.4%는 학습공동체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 중 이런 활동에의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0%를 넘음.

〈표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이수 현황

| 구분 | 단위: %(명) | |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모두 이수 | 78.9 | 81.2 |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및 추가연수 참여 | 11.3 | 14.6 |
| 누리과정 집합 연수만 이수 | 6.0 | 3.3 |
| 원격 연수만 이수 | 2.3 | 0.5 |
| 어떤 연수도 이수 안함 | 1.4 | 0.4 |
| 전체 | 100.0(1,209) | 100.0(1,384)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표 3〉 지역 내 자체 자율장학, 협력 모임, 워크숍 등 참여 여부(복수응답)

| 구분 | 단위: % | |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원내 자율장학/원내 학습공동체활동 | 51.7 | 37.5 |
|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워크숍 | 29.4 | 5.9 |
|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간 공동 수업 참관 | 19.9 | 4.5 |
| 지역 교사 모임 통한 공동연구 | 8.8 | 5.6 |
| 지역 보육 정보센터 관련 워크숍 | 2.7 | 21.0 |
| 참여한 적 없음 | 21.5 | 40.3 |
| 모름/무응답 | 0.2 | 0.3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4)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정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교재교구 구비가 강화됨.

- 2013년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기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교재교구, 도서 등 누리과정 지도를 위한 관련 자료 구비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발간자료 이외의 누리관련 개발 자료 구입이 증가한 경향도 보여, 전체 조사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70%이상에서 구입한 경험이 있음.
- 구입한 자료의 형태에는 92.3%, 95%가 교재교구 자료이며, 이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한 운영지원금과 새로운 교육·보육과정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현장 교원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아 생겨난 결과로 이해됨.

5) 누리과정 홍보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모 대상 누리과정 홍보를 실시함.

- 유치원(94.3%)과 어린이집(98.1%)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원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홍보를 하였고, 그 방법으로는 여전히 누리과정 부모설명회나 취원 시 오리엔테이션 같은 부모와 직접 만나 면대면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함.

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이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보육활동으로 전개되는지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로서 교사의 인식을 살펴봄.

1) 운영시간

- 하루 평균 누리과정 운영 시간은 유치원 4.8시간, 어린이집 4.2시간임.
 - 누리과정은 유아의 연령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3~5시간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제시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하루 평균 4.8시간, 만 3세, 4세, 5세 모든 연령에서 5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어린이집은 단일 3세반은 평균 4시간, 단일 만 4세반 평균 4.3시간, 단일 5세반 4.5시간으로 연령에 따라 소폭 증가하며, 어린이집의 경우에 3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은 만 3세의 비율이 높고, 전체 12시간의 정규보육시간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표 4〉 하루 평균 누리과정 운영 시간

| 구분 | 3시간 이하 | 4시간 | 5시간 | 5시간 초과 | 계 | 단위: %(명), 시간 |
|---------|--------|------|------|--------|--------------|--------------|
| | | | | | | 평균 (표준편차) |
| 유치원 전체 | 11.2 | 21.5 | 54.6 | 12.7 | 100.0(1,209) | 4.8(0.64) |
| 만 3세 | 11.5 | 25.3 | 50.3 | 12.8 | 100.0(288) | 4.8(0.66) |
| 만 4세 | 12.7 | 19.6 | 53.3 | 14.5 | 100.0(332) | 4.9(0.66) |
| 만 5세 | 9.5 | 19.8 | 59.2 | 11.5 | 100.0(400) | 4.9(0.61) |
| 혼합연령 | 11.6 | 22.8 | 53.4 | 12.2 | 100.0(189) | 4.9(0.65) |
| 어린이집 전체 | 40.6 | 18.2 | 21 | 20.2 | 100.0(1384) | 4.2(1.97) |
| 만 3세 | 45.1 | 19.2 | 17.6 | 18.2 | 100.0(490) | 4.0(1.98) |
| 만 4세 | 38.3 | 16 | 24.2 | 21.5 | 100.0(363) | 4.3(1.95) |
| 만 5세 | 33.2 | 18.6 | 23.1 | 25.1 | 100.0(355) | 4.5(1.99) |
| 혼합연령 | 47.7 | 19.3 | 19.3 | 13.6 | 100.0(174) | 3.9(1.81)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2) 영역별, 활동형태별 운영 실태

- 누리과정 영역별 및 활동형태별 고른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음.
 - 누리과정 5개 영역별 실시 비중은 20%를 기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비교적 특정 영역에 치우침이 없이 교육·보육활동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자연탐구영역의 실시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임.

- 누리과정이 실시 이후 교실의 활동형태별 일과 구성의 특징은 바깥활동과 소집단활동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 가장 어려운 영역은 자연탐구영역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을 교육·보육활동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운 영역으로 교사들은 ‘자연 탐구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누리과정과 함께 제공된 활동자료의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적절한 교재/교구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함.

3)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 교육·보육계획을 작성함에는 주간교육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비율(유치원 97.8%, 어린이집 88.4%)이 가장 높았고, 연간교육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 월간교육계획안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통신문을 비롯한 기관의 계획이 주간을 단위로 구성됨과 관련되어 보임.

□ 교사의 주 참고자료는 인터넷 자료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유치원(53.8%)과 어린이집(47%) 교사 모두에서 교육·보육계획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자료는 단연 인터넷 자료로 나타남.
- 인터넷자료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리성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보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도 간과하기 어려우나, 그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가 어려움이 문제로 남음.

〈표 5〉 계획안 작성 시, 주 참고 자료(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또는 프로그램 외)

| 구분 | 단위: %(명) | |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인터넷 자료(검색 및 교사 커뮤니티 포함) | 53.8 | 47.0 |
|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 교육부,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개발자료 | 27.5 | 18.3 |
| 각종 유아 교육 관련 잡지 | 6.0 | 16.3 |
| 민간 업체 발간 자료집 | 5.5 | 12.9 |
| 전년도 수업계획안 | 4.4 | 2.7 |
| 전공서적 | 2.3 | 1.2 |
| 기타 | 0.2 | 1.2 |
| 참고하는 자료 없음 | 0.1 | 0.4 |
| 모름/무응답 | 0.1 | 0 |
| 전체 | 100.0(1,209) | 100.0(1,384) |

4)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

- 새로운 교육·보육과정 적용에 따라 교사의 준비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유치원교사(31.8%)와 어린이집교사(50.1%)들은 누리과정의 준비와 계획을 위해 이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치원교사의 46.6%는 이전과 유사하게 시간이 소요되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함.
 - 수업의 준비는 교육활동을 마치고 퇴근 이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수업 준비를 위한 소요하는 시간은 유치원 교사는 평균 1~2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30분~1시간이라는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임.

〈표 6〉 누리과정 실시 이후 운영 준비 소요 시간 차이

| 구분 | 단위: %(명) | | | | 계 |
|------|--------------|-------------|--------------|-------------|--------------|
| | 이전보다 더 길게 소요 | 이전과 비슷하게 소요 | 이전보다 더 짧게 소요 | 응답 불가 / 무응답 | |
| 유치원 | 31.8 | 46.6 | 17.3 | 4.3 | 100.0(1,209) |
| 어린이집 | 50.1 | 33.6 | 10.8 | 5.6 | 100.0(1,384)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5) 교사 운영 시 어려움

- 교사는 첫 해 시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김.
 - 2013년 누리과정을 유치원에서 적용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현재 누리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응답이 가장 많음.

〈표 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

| 구분 | 단위: %(명) | |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누리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 32.4 | 34.6 |
| 평가에 대한 부담 | 27.6 | 30.7 |
| 수업 준비 부담 | 16.8 | 11.1 |
| 유아 개별성 고려 제한적 | 12.9 | 9.8 |
| 교육 계획안 수립 시 교사 융통성 발휘 기회 결여 | 7.3 | 3.0 |
| 기타 | 3.0 | 2.2 |
| 전체 | 100.0(1,209) | 100.0(1,384)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 이는 교사교육과 장학, 학습공동체활동 등 교사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확대함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6) 누리과정 운영 시 강조점

- 기본생활습관, 인성, 바깥놀이를 강조한 누리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중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장 확실하게 인지함.
 - 조사 대상의 네 명 중 세 명은 누리과정이 기존의 과정들과 차이를 가진다고 인식하였고, 인성에 대한 강조점을 둔 점이 기존의 교육·보육과정들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7) 누리과정 운영 평가 실태

- 교수학습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잘하는 편'임.
 - 교사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교수학습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는 '잘하는 편'으로 나타남. 특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와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 집단 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면을 교사 스스로는 다른 부분에 비해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 누리과정 재정 지원 사용 실태 및 요구

- 2013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관련 비용은 <표 8>과 같음.

<표 8> 누리과정 관련 비용 지원(2013년)

| 유치원 | | 어린이집 | |
|----------|---|------|---|
| |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22만원(국·공립 월 6만원) | |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22만원 |
| 유아 학비 |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아이즐거움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기관으로 지급됨 - 추가 수업료 발생 시 부모 부담 | 보육비 |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아이사랑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시설로 지급됨 - 추가 보육료 발생 시 부모 부담 |

(표 8 계속)

| 유치원 | | 어린이집 | | |
|-----------------|--|----------------------|---|--|
| 교사 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51만원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국·공립 교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므로 별도 인건비 지원이 없음) | 누리 과정 교사 수당 | ② 담임 교사당 30만원 | ①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7만원 |
| | - 누리과정 시행 이전부터 지원해왔음 (해마다 액수의 차이 있음) -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지원 | | -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시·군·구청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왔음 -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지원 | |
| 방과후 과정비 | 방과후 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7만원(국·공립 월 5만원) | 누리과정 운영비 | ①의 시도별 총액에서 ②의 시도별 총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시도별 누리과정 유아수로 나누어 산출 | * 어린이집은 모든 유아를 오후시간까지 보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누리과정 유아 수만큼 지원 |
| | - 방과후 과정 학급 유아에게만 지원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정부에서 기관으로 지급됨 - 추가 수업료 발생 시 부모 부담 | | - 정부에서 시설로 지급됨 - 유아 1인당 평균 4~5만원 가량(장애유아는 일반 유아의 2배)이나 시도별 월별 차이 있음 | |

1) 운영비 사용처

지원된 운영비 사용 1순위는 교재교구의 구입임.

-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은 사실 상 거의 없으나,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유아 당 4~5 만원 정도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으로 지원됨.

<표 9> 정부기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사용 항목

단위: %(명)

| 구분 | 교재교구 구입비 | 교사 인건비 | 급식/간식 수준개선비 | 시설·설비 개선비 | 교사 외 인력 인건비 | 기타① | 계 |
|------|-------------|-----------|----------------|--------------|----------------|-----|------------|
| 유치원 | 42.0 | 22.3 | 18.0 | 10.6 | 5.3 | 1.8 | 100.0(283) |
| 어린이집 | 57.5 | 29.3 | 8.0 | 3.0 | 0.9 | 1.3 | 100.0(464) |

주: 1) 조사대상은 원장임.

2) ① 필요물품 구입, 냉·난방비 등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지원된 운영비는 교구교재를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보조교사 고용과 급식 또는 간식 수 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답함.

- 교육·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재교구 구입이 문제시 될 것이 없으나, 교재교구 사업체로 비용의 쓸림은 숙고가 필요한 부분임.

2) 재정지원 만족도

- 재정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 원장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는 누리과정 관련 지원비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문항에서 '적당한 편이다(3점)'에 못 미치는 '약간 부족한 편(2점)'에 가까운 경향임. 유아학비(보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유치원 재원 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 4분 척도 평균 2.4점,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점의 만족도를 보임.
 -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에 대한 지원 평균 2.5점, 담임교사 인건비지원에 대해 평균 2.2점으로 교사인건비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표 10〉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평가

| | | 단위: 점(점) | |
|--|--------------|---|--------------|
| 구분 | 평균 (표준편차) | 구분 | 평균 (표준편차) |
| 유아 학비 지원 (사립 월 22만원, 국·공립 월 6만원) | 2.4(0.9) | 아동별 보육비 지원 (월 22만원) | 2.0(0.8) |
| 방과후과정 지원 (사립 월 7만원, 국·공립 월 5만원) | 2.5(0.9) |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월 7만원,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포함) | 2.3(0.8) |
| 담임교사 인건비지원 | 2.2(0.9) | 기타 | 1.3(0.7) |

주: 조사대상은 원장임.

3) 재정지원 관련 요구

- 비용지원 관련 개선요구는 행정업무 간소화가 가장 높음.
 - 비용지원 개선점에 대해 원장들은 절차의 문제인 행정업무를 더 간소화되고 행정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가장 원하여, 지원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로 행정이 증가하였다는 교사들의 불만과 연결되는 부분임.
 -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지원에 대한 회계 투명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나 간소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

〈표 11〉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단위: %(명)

| 구분 | 유치원 | 어린이집 |
|-----------------|------------|------------|
| 행정업무 간소화 인력지원 | 51.6 | 28.2 |
| 운영비 지원 수준 상향 조정 | 17.7 | 26.1 |
| 보조교사 인건비 별도 지원 | 14.8 | 22.8 |
| 학부모 직접 지원 | 9.5 | 1.3 |
| 지원금 지원 일정 준수 | 2.8 | 4.5 |
| 개선되기 바라는 점 없음 | 2.5 | 2.2 |
| 기타 | 1.1 | 6.3 |
| 담임처우 개선비 별도 지원 | 0 | 8.6 |
| 전체 | 100.0(509) | 100.0(514) |

주: 조사대상은 원장임.

라.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인식 및 개선 요구

1) 체감되는 개선 부분

누리과정으로 지원이 일원화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향상됨.

〈표 12〉 누리과정 도입 후 개선 체감 정도

단위: 점(점)

| 구분 | 유치원 | | 어린이집 | |
|----------------|--------------|--------------|--------------|--------------|
| | 원장 평균(편차) | 교사 평균(편차) | 원장 평균(편차) | 교사 평균(편차) |
| 교육비·보육료 지원 일원화 | 3.1(0.7) | 3.0(0.7) | 2.9(0.7) | 3.1(0.6) |
| 재정운영 안정화 | 2.7(0.8) | 2.3(0.8) | 2.7(0.7) | 2.7(0.8) |
|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3.0(0.6) | 2.9(0.6) | 3.2(0.5) | 3.0(0.5) |
| 교사의 전문성 수준 향상 | 2.9(0.7) | 2.8(0.6) | 3.0(0.6) | 2.9(0.5) |
| 원아 모집 용이 | 2.4(0.8) | 2.4(0.7) | 2.3(0.8) | 2.6(0.7) |
| 기관 이미지 제고 | 2.6(0.8) | 2.6(0.7) | 2.5(0.7) | 2.7(0.7) |
| 학부모의 기관 신뢰도 강화 | 2.7(0.8) | 2.7(0.7) | 2.6(0.8) | 2.7(0.7) |
|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경감 | 1.8(0.8) | 1.9(0.8) | 2.0(0.8) | 2.2(0.8) |

주: 조사대상은 원장 및 교사임.

- 누리과정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일원화된 점을,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점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개선된 체감 정도가 가장 낮음.

2) 개선요구

- 원장은 행정업무 간소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희망함.
 - 유치원의 경우 행정관리 간소화를 가장 많이 지적(34.8%)하였고 그 다음은 재정지원 강화(24.4%)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경우는 재정지원 강화(38.3%)를 가장 희망하였고, 그 다음은 교사교육 강화(17.5%)를 들었음.
- 교사는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원함.
 - 교사의 학급 내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줄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음.

〈표 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 요구

| 구분 | 단위: %(명) | |
|-------------------------|--------------|--------------|
| | 유치원 | 어린이집 |
|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 | 52.2 | 34.5 |
| 보조인력 지원 강화 | 20.4 | 16.3 |
| 담당 교사 급여 수준 향상 | 13.5 | 18.5 |
| 교사용 지도서/연령별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 | 9.3 | 4.8 |
| 누리과정 연수(교사 재교육) 내실화 | 3.2 | 3.9 |
| 누리과정 장학 실시 확대 | 0.3 | 1.4 |
| 기타 | 1.1 | 1.1 |
| 방과후반 별도편성 | - | 17.8 |
| 영아반교사와의 수당격차해소 | - | 2.0 |
| 전체 | 100.0(1,209) | 100.0(1,384) |

주: 조사대상은 교사임.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 방안

- 시행 첫 해의 결과를 토대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기관의 측면에서, 교사와 교사를 위한 지원의 측면, 부모지원, 모니터링과 평가로 구분·제시함.

가. 기관 중심 방안

1) 영유아와 부모대상 정책의 전달통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90%에 가까운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게 되었고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모와 접촉점으로 그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더욱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할 것 같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도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부모설명회 같은 면대면 방법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누리과정의 홍보 뿐 아니라 향후 유아와 부모대상 정책 및 지원의 통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언함.
- 같은 맥락에서 가정과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2) 지원체계를 통한 누리과정 운영 우수사례 공유

-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가 가능하게 됨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체계인 교육청과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공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획일화된 교육·보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누리과정을 토대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적 맥락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보육 특색을 살린 운영을 통해 그러한 우려는 해소 가능하다고 사료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교사 연수 및 워크숍, 책자 제작 등을 통해 누리과정 중심의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중심 상호 협력관계 형성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전국의 3~5세 유아들은 같은 교육·보

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김을 의미함.

- 같은 지역에서 또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경쟁이 아닌 협력 가능한 대상이며, 협력을 통해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인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교사교육, 공동 행사 운영 등 가능한 협력을 시도 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시·도청 보육담당자,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적 지원을 모색 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음.

나.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

1) 어린이집 컨설팅 장학의 기회 확대

- 유아교육에 비해 보육분야의 컨설팅, 장학, 공동체 학습 등의 기회가 부족함. 현장 장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비교하여 현재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 방식에서의 장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컨설팅은 출발 단계임.
- 본 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중 누리과정 관련 컨설팅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0%를 넘었고, 교사들은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게 나타나,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교사 교육이나 컨설팅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 현장에서는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다름을 반영하여 자문을 원하는 부분을 신청하고 자문진이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장학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어린이집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그 소요비용은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을 이용하여 참여 어린이집에서 일정 부분 자비 부담 형태도 마련 가능할 것임.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길고 교사의 근무시간도 유치원에 비해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교사 교육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대체교사 지원 등 교사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교육 기능 강화

- 누리과정 시행 첫째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교사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 교사에게 누리과정에 적합한 교육·보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자율장학, 학습공동체활동 등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거나 협의할 수 있는 기회, 교사 재교육 기회 확대 등이 효과적으로 고려됨.
- 전국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교육 확대 및 역할 강화가 그 방안일 수 있음.

3) 교사 자격 요건의 상향 조정

-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요건은 누리과정 시행 전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누리과정 시행 이후,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보육교사 1, 2급의 자격을 가진 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3급 교사도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초·중·고와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교과서 없이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의 특성이나 수준에 맞게 누리과정을 토대로 보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교사의 자질이나 전문성 등이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OECD 교육 선진국의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단순보호(care)가 아닌 교수(teaching)를 할 경우 일정 자격조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교사 수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최소 보육교사 1급 이상의 교사만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상위자격 취득 기회 부여, 대체 교사 지원을 통한 교사 연수 시간 마련, 정부, 기관과 교사가 함께 부담하는 적정 교육부담 비용 수립,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의 학력 고양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임.

다. 교사 지원 방안

1) 교사의 행정 업무 간소화

-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의 운영으로 인한 실제적인 지원금 증가에 대한 체감은 거의 없으나 그에 따른 행정업무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이 행정업무의 부담이라는 결과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교사들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세부 비용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부담스러워함.
- 이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라는 변화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이 그 체감 정도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되나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국가 정책 시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증빙서류의 구비는 꼭 필요한 부분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배려가 요구됨.
- 현장에서는 행정 전담인력의 지원을 원함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임.

2) 보조교사 지원 보장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 중 일부를 보조교사의 채용에 쓸 수 있는 범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원 아동수가 기준이 되어 운영비가 산정되고 지원됨으로 상대적으로 아동수가 적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의 채용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3) 국가 수준의 자료개발 및 보급 확대

- 누리과정의 적용을 위한 국가개발자료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3~4세로 누리

과정이 확대되면서 개발된 교사용 지도서, 프로그램 등의 자료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없이 공통으로 개발 보급됨은 고무적이며, 또한 교사가 활용하기 좋도록 지도서와 프로그램에 맞는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교사가 활용하기 편리함.

- 그러나 교사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교재교구 및 활동자료의 미비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전체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제공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수준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의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국가개발자료 이외의 사기업체 자료 구입을 의미하며 이는 자칫 국가의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에 대해 제고를 요하는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이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지원 자료의 사기업체 의존성을 줄여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개발자료 지원 확대가 필요함.

4) 누리과정 지원 매체의 다양화

-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인터넷 자료로 그 접근 편리성이나 내용의 방대함을 참작할 때 교사의 교육·보육활동을 지원함은 분명하나, 그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임.
- 교실에서 교사는 인쇄 매체뿐 아니라 동영상 자료,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자료 등 쉽게 사용 가능한 자료의 지원도 필요로 하므로, KBS나 EBS 등 비영리 주체가 개발한 유아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등으로 지원 자료 매체 다양화를 고려할 만함.

라. 부모 지원 방안

1) 교육·보육과정 측면을 강화한 지속적인 누리과정 홍보

- 부모에게 누리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시 교육적 측면에서 누리과정에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목적 및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생활습관 및 바른 인성, 자율성과 창의성 등의 내용이 유치원과 연계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누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안내문, 부모교육,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기관을 통한 전달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므로 기관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교육·보육과정 측면을 강조하여 지속해서 누리과정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누리과정에 기초한 부모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부모교육이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우회적인 방안일 수 있음.
- 사교육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보육에 대한 내용을 접하는 기회 부족으로 현재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과 염려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부모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보육과정으로 유아의 균형적 발달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누리과정에 기초한 부모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과 평가

1)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누리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 장학이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 공통과정 공통 평가체제 구축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이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누리과정의 평가는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두 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동일한 평가 지표 및 평가자, 주관 기관 등의 합일이 필요할 것임.

3) 관련 용어의 정리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지만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음을 연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기관/시설, 학급/반, 유아학비(교육비)/보육료, 장학/학습공동체활동, 방과후과정/특별활동, 특수학급/누리장애아반, 학부모/부모 등과 같이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
- 오랫동안 사용해 온 용어의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한 용어의 정리나 통일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공통 평가 방안

최은영

요약

- 정부는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하여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취학 전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 과정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질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공통과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OECD에 속한 회원국들은 질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장·단기적 효과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임.
-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공통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와 공통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공통 평가지표(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음.

1. 논의의 배경

-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하여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고 있음.

* 본 고는 2013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최은영, 최윤경, 이경진, 신은경)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은 취학 전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 과정으로 구성됨.
-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한발 나아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질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OECD, 2006) 추세임.
 - 특히, OECD에 속한 회원국들은 질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장·단기적 효과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임.
-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영의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보공시제 등의 기제들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책무성과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질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통과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공통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안착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1차 의견조사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과 공통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1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통지표 개발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 평가지표(안)을 마련함.

2.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협력 가능한 기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의 부처 간 협력과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의 지자체 협력, 기관 단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협력 가능한 업무

- 공통의 정책방향 제시, 제도 개선이 가능하며,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교육, 평가,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사 자격증 관련 업무,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원 연수, 장학과 컨설팅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표 1〉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 가능한 기관과 업무

| 항목 | 내용 |
|-----------|--|
| 협력 가능한 기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 지역 교육지원청과 보육정보센터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
| 협력 가능한 업무 | 정책방향 제시 및 제도 개선 누리과정 운영(교사교육, 평가)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 자격증 관련 업무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원연수, 장학, 컨설팅 보수교육위탁, 취약보육지원, 학부모 지원 정책, 사업, 평가에 대한 심의 |

새롭게 필요한 조직과 기능

- 기존 조직이 충분하므로 조직 간 협업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가 전담을 위한 단일기관, 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 교사의 자격관리, 교원연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표 2〉 누리과정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기능

| 조직 | 기능 |
|--------------------|--|
| 기존 조직 통합 운영 | 기존 조직이 충분하므로 기존 조직들의 협업을 통한 행정적 지원 |
| 평가전담 단일기관 | 평가전담 기구의 단일화를 통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능 |
| 교육과정 전담 컨설팅을 위한 조직 | 기존의 유치원 평가의 컨설팅 개념 및 장학과 보육정보센터 컨설팅의 일부 개념을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전담으로 컨설팅 하는 기능 |
| 영유아 교육과정 지원 조직 | 유아교육기관 질 관리 및 장학 기능 |
|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 교사의 자격관리, 교원연수, 컨설팅 장학,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기능 |

나.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협력 가능한 기관에 대한 필요도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평균 3.53점, 지역 교육지원청과 보육정보센터는 평균 3.43점,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은 평균 3.42점,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는 평균 3.50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균 3.48점으로 나타남.

〈표 3〉 협력 가능한 기관-필요도

단위: %, 점

| 구분 | 필요도 | | | | 종합 | | 4점 평균(SD) | 계(명) |
|----------------------------|-----|------|------|------|------|------|--------------|------------|
| | 1 | 2 | 3 | 4 | 불필요 | 필요 | | |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 0.5 | 3.5 | 23.5 | 72.5 | 4.0 | 96.0 | 3.68(.50) | 100.0(200) |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 | 1.5 | 3.0 | 36.5 | 59.0 | 4.5 | 95.5 | 3.53(.63) | 100.0(200) |
| 지역 교육지원청과 보육정보센터 | 2.0 | 5.5 | 40.0 | 52.5 | 7.5 | 92.5 | 3.43(.69) | 100.0(200) |
|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 1.0 | 7.0 | 41.0 | 51.0 | 8.0 | 92.0 | 3.42(.66) | 100.0(200) |
|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 | 0.5 | 2.5 | 33.5 | 63.5 | 3.0 | 97.0 | 3.60(.56) | 100.0(200) |
| 유치원과 어린이집 | 1.5 | 10.5 | 27.0 | 61.0 | 12.0 | 88.0 | 3.48(.74) | 100.0(200) |

주: 회색 칸은 필요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임.

□ 협력 가능한 기관의 실현가능성

-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은 평균 3.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평균 2.50점,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평균 2.64점, 지역 교육지원청과 보육정보센터는 평균 2.57점,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는 평균 2.59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균 2.46점으로 나타남.

〈표 4〉 협력 가능한 기관-실현가능성

단위: %, 점

| 구분 | 실현가능성 | | | | 종합 | | 4점 평균(SD) | 계(명) |
|----------------------------|-------|------|------|------|------|------|--------------|------------|
| | 1 | 2 | 3 | 4 | 낮음 | 높음 | | |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 10.0 | 42.0 | 36.0 | 12.0 | 52.0 | 48.0 | 2.50(.83) | 100.0(200) |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 | 6.5 | 38.5 | 40.0 | 15.0 | 45.0 | 55.0 | 2.64(.81) | 100.0(200) |
| 지역 교육지원청과 보육정보센터 | 7.5 | 44.5 | 32.0 | 16.0 | 52.0 | 48.0 | 2.57(.84) | 100.0(200) |
|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 3.5 | 46.5 | 37.5 | 12.5 | 50.0 | 50.0 | 2.59(.75) | 100.0(200) |
| 유아교육정책과와 보육정책과 | 7.5 | 43.5 | 35.5 | 13.5 | 51.0 | 49.0 | 2.55(.81) | 100.0(200) |
| 유치원과 어린이집 | 14.5 | 41.0 | 28.5 | 16.0 | 55.5 | 44.5 | 2.46(.92) | 100.0(200) |

주: 회색 칸은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임.

□ 협력 가능한 기관의 필요도와 실현가능성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협력 가능한 기관으로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가장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제기된 대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안 역시 현실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협력 가능한 업무에 대한 필요도

- 누리과정 운영이 평균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정책 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은 평균 3.63점,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자격증 관련 업무는 평균 3.66점, 연구와 정보제공·프로그램 및 교재개발·교원연구·장학·컨설팅은 평균 3.62점, 보수교육 위탁·취약보육지원·학부모 지원은 평균 3.35점, 정책·사업·평가에 대한 심의에 대한 필요도는 평균 3.44점으로 나타남.

〈표 5〉 협력 가능한 업무-필요도

단위: %, 점

| 구분 | 필요도 | | | | 종합 | | 4점 평균(SD) | 계(명) |
|--|-----|-----|------|------|-----|------|--------------|------------|
| | 1 | 2 | 3 | 4 | 불필요 | 필요 | | |
| 정책 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 | 0.5 | 1.5 | 32.5 | 65.5 | 2.0 | 98.0 | 3.63(.54) | 100.0(200) |
| 누리과정 운영 | 1.0 | 2.0 | 24.5 | 72.5 | 3.0 | 97.0 | 3.69(.56) | 100.0(200) |
|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자격증 관련 업무 | 1.5 | 2.5 | 24.5 | 71.5 | 4.0 | 96.0 | 3.66(.60) | 100.0(200) |
|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원연수, 장학, 컨설팅 | 1.5 | 2.0 | 30.0 | 66.5 | 3.5 | 96.5 | 3.62(.60) | 100.0(200) |
| 보수교육위탁, 취약보육지원, 학부모 지원 | 1.0 | 5.0 | 52.0 | 42.0 | 6.0 | 94.0 | 3.35(.62) | 100.0(200) |
| 정책, 사업, 평가에 대한 심의 | 1.5 | 4.0 | 43.5 | 51.0 | 5.5 | 94.5 | 3.44(.64) | 100.0(200) |

주: 회색 칸은 필요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임.

□ 협력 가능한 업무의 실현 가능성

- 누리과정 운영이 평균 3.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 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은 평균 2.79점,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자격증 관련 업무는 평균 2.65점, 연구와 정보제공·프로그램 및 교재개발·교원연구·장학·컨설팅은 평균 2.95점, 보수교육 위탁·취약보육지원·학부모 지원은 평균 2.75점, 정책·사업·평가에 대한 심의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평균 2.61점으로 나타남.

〈표 6〉 협력 가능한 업무-실현가능성

단위: %, 점

| 구분 | 실현가능성 | | | | 종합 | | 4점 평균(SD) | 계(명) |
|--------------------------------------|-------|------|------|------|------|------|--------------|------------|
| | 1 | 2 | 3 | 4 | 낮음 | 높음 | | |
| 정책 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 | 3.0 | 35.0 | 42.0 | 20.0 | 38.0 | 62.0 | 2.79(.79) | 100.0(200) |
| 누리과정 운영 | 2.0 | 16.5 | 58.0 | 23.5 | 18.5 | 81.5 | 3.03(.69) | 100.0(200) |
|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자격증 관련 업무 | 9.0 | 38.0 | 32.5 | 20.5 | 47.0 | 53.0 | 2.65(.90) | 100.0(200) |
|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원연수, 장학, 컨설팅 | 3.5 | 20.0 | 55.0 | 21.5 | 23.5 | 76.5 | 2.95(.74) | 100.0(200) |
| 보수교육위탁, 취약보육지원 학부모 지원 | 2.0 | 36.0 | 47.0 | 15.0 | 38.0 | 62.0 | 2.75(.72) | 100.0(200) |
| 정책, 사업, 평가에 대한 심의 | 7.0 | 39.5 | 39.0 | 14.5 | 46.5 | 53.5 | 2.61(.81) | 100.0(200) |

주: 회색 칸은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임.

□ 협력 가능한 업무의 필요도와 실현 가능성

○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 업무로 누리과정 운영이 가장 높았음.

–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와 정보제공·프로그램 및 교재개발·교원연수·장학·컨설팅 등의 업무가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함.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에 대한 의견

〈표 7〉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필요 조직

단위: %

| 구분 | 기존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 | 평가전담 기구의 단일 기관화 | 질 관리 및 장학을 위한 조직 | 전담 컨설팅을 위한 조직 | 기타 | 계(명) |
|--------------|-----------------|-----------------|------------------|---------------|-----|------------|
| 전체 | 39.5 | 21.0 | 22.5 | 15.0 | 2.0 | 100.0(200) |
| 유아교육 | 52.0 | 20.0 | 20.0 | 6.0 | 2.0 | 100.0(50) |
| 보육 | 36.0 | 24.0 | 16.0 | 20.0 | 4.0 | 100.0(50) |
| 교육부 | 42.0 | 20.0 | 22.0 | 16.0 | 0.0 | 100.0(50) |
| 복지부 | 28.0 | 20.0 | 32.0 | 18.0 | 2.0 | 100.0(50) |
| $\chi^2(df)$ | 13.12(1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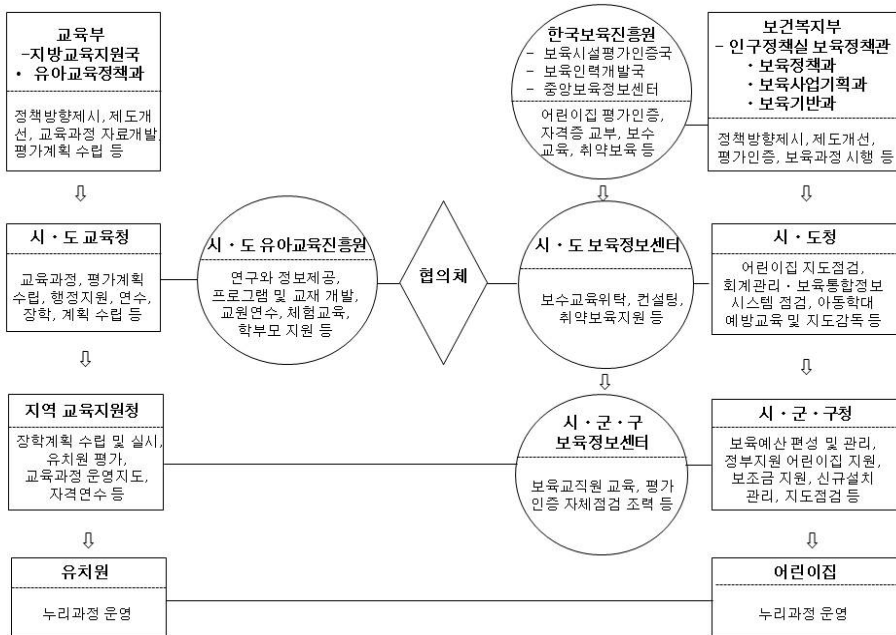
- 기존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질 관리 및 장학을 위한 조직 22.5%, 평가전담기구의 단일기관화 21.0%, 누리과정 전담 컨설팅을 위한 조직 15.0% 순으로 나타남.

3.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안)

-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안)을 질 관리 체계 협력(안)과 질 관리 통합 체계(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가. 질 관리 체계 협력(안)

- 기존의 행정·관리 체계의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누리과정 운영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 부처의 공동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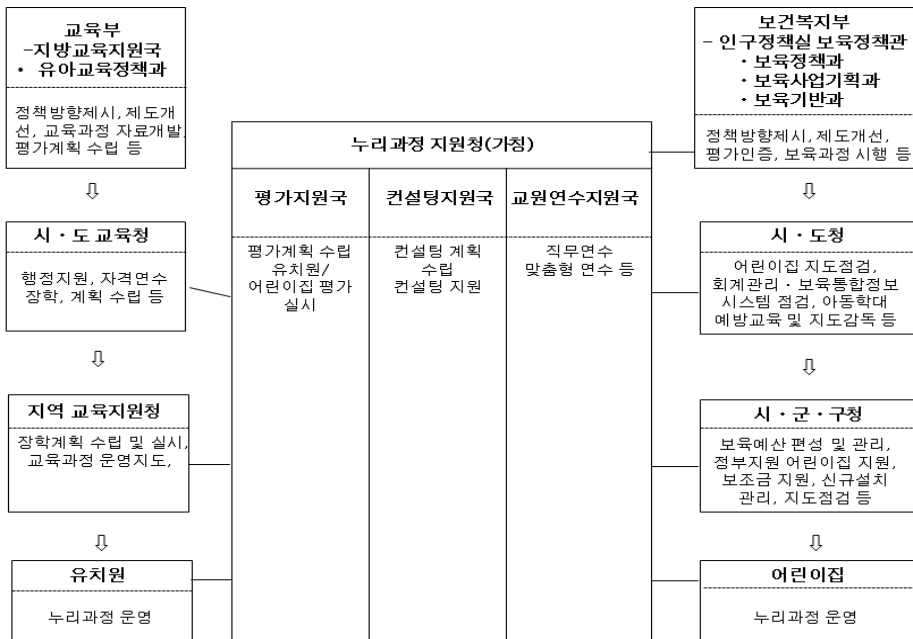


[그림 1]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 관리 체계 협력(안)

- 질 관리 체계 협력(안)은 기존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통 업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 협의체의 조율을 통해 양 부처의 공동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와 컨설팅, 연수 등의 공동 진행을 위한 공동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원함.
 - 기존 부처를 그대로 두고 양쪽 부처의 협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바로 실행 가능하나 협의체가 기존 부서들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또한 협의체의 결정 사항을 기존 부서가 전달받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나. 질 관리 통합 체계(안)

- 누리과정지원청(가칭)을 설치하여 평가, 컨설팅, 연수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하는 방안임.



[그림 2]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 관리 통합 체계(안)

- 질 관리 체계 협력(안)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 기구인 누리과정지원청(가칭)을 설치하여 평가, 컨설팅, 연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질 관리 통합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서식부터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기까지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단기적인 대안으로 질 관리 체계 협력(안)을 통해 기반을 다진 후 질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공통 평가지표(안)

가. 공통 평가지표 요소 추출

1) 교육/보육과정

-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에서 교육과정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 영역의 교육활동 및 평가의 실시·활용의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응답한 비율이 93.8%로 가장 높았음.

〈표 8〉 교육/보육과정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

| | | | 단위: % |
|------------|---------------------|--|----------|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명) |
| 교육과정 영역 |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 | < I-가-1 > 교육 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 87.5(14) |
| | | < I-가-2 >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 87.5(14) |
| |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사활용 | < I-가-3 >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93.8(15) |
| | | < I-가-4 >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하며,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 87.5(14) |
| | | < I-가-5 >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 87.5(14) |
| 보육과정 영역 |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 < II-가-1 > 보육계획안의 수립 | 62.5(10) |
| | | < II-가-2 >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 62.5(10) |
| | | < II-가-3 >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 50.0(8) |
| | | < II-가-4 >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 50.0(8) |
| | | < II-가-5 > 일과의 통합적 운영 | 75.0(12) |
| | | < II-가-6 > 일상생활 관련 활동 | 18.8(3) |

(표 8 계속)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명) |
|------------------|-------------|-----------------------------------|----------|
| 보육과정 영역 | 보육활동 | < II-가-7 > 보육과정 평가 및 영아 활동 관찰 | 62.5(10) |
| | | < II-가-8 > 신체활동 | 18.8(3) |
| | | < II-가-9 > 언어활동 | 12.5(2) |
| | | < II-가-10 > 기본생활 관련 활동 | 18.8(3) |
| | | < II-가-11 > 사회관계 증진활동 | 12.5(2) |
| | | < II-가-12 > 자연탐구활동 | 12.5(2) |
| | | < II-가-13 > 예술활동 | 12.5(2) |
| | | < II-가-14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 12.5(2) |
| 상호작용 과 교수법 | 일상적 양육 | < II-나-1 > 즐거운 식사와 간식 | 37.5(6) |
| | | < II-나-2 >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 25.0(4) |
| | 교사의 상호작용 | < II-나-3 >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 37.5(6) |
| | | < II-나-4 >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 43.8(7) |
| | | < II-나-5 >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 37.5(6) |
| | | < II-나-6 >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37.5(6) |
| | | < II-나-7 >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 37.5(6) |
| | | < II-나-8 >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 25.0(4) |
| | 교수법 | < II-나-9 >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 56.3(9) |
| | | < II-나-10 > 동기유발과 호기심의 장려 | 37.5(6) |

주: 회색 칸은 비율 50% 미만 항목임.

2) 운영관리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에서 운영관리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9> 운영관리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명) |
|---------------|------------------------------|---|----------|
| 운영관리 (유치원) | 교직원의 인사복지 및 전문성 | < I-다-1 > 교직원 인사·보수·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 75.0(12) |
| | | < I-다-2 >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 56.3(9) |
| |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 I-다-3 >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 75.0(12) |
| | 가정 지역사회 연계 및 중요한 운영 | < I-다-4 > 다양한 부모교육·참여활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 75.0(12) |
| | | < I-다-5 > 중일반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이 적절한가? | 37.5(6) |

(표 9 계속)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명) |
|----------------|------------|------------------------------------|----------|
| 운영관리 (어린이집) | 보육 인력 | < II-다-1 > 보육 교직원의 근로계약 | 50.0(8) |
| | | < II-다-2 > 보육교직원의 교육 | 50.0(8) |
| |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 < II-다-3 >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 37.5(6) |
| | | < II-다-4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안내 | 43.8(7) |
| | | < II-다-5 > 원아에 대한 관리 | 37.5(6) |
| | | < II-다-6 >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37.5(6) |
| | 가족과의 협력 | < II-다-7 > 신입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 18.8(3) |
| | | < II-다-8 > 어린이집과 가정간의 의사소통 | 50.0(8) |
| | | < II-다-9 >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 50.0(8) |
| | | < II-다-10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50.0(8) |
| | 지역사회의 협조 | < II-다-11 > 지역사회와의 협력 | 37.5(6) |
| | | < II-다-12 >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 31.3(5) |

주: 회색 칸은 비율 50% 미만 항목임.

- 운영관리(유치원) 영역의 교직원의 인사복지 및 전문성 항목에서 교직원 인사·보수·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항목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가정·지역사회 연계 및 중일반 운영 항목의 다양한 부모 교육·참여활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응답한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음.

□ 이상의 의견을 토대로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공통지표(안)을 마련함.

<표 10> 누리과정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안)

| 지표 | 평가항목 |
|---------------|-----------------------------|
| 1. 목표 설정 | 1) 발달의 적합성 |
| | 2)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 반영 |
| 2. 계획 수립 | 1)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 연계 |
| | 2)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 |
| 3. 활동 구성 | 1) 자유선택활동 시간 |
| | 2) 실외활동 시간 |
| 4. 일과의 통합적 운영 | 1) 생활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 |
| | 2) 활동 간의 균형 |
| 5. 교사의 상호작용 | * 상호작용-자체평가 자료 또는 관찰 자료로 대체 |
| 6. 교수법 | 1) 활동에 적합한 방법과 매체 사용 |
| | 2) 동기유발과 호기심 유도 |

- 공통 평가지표는 누리과정 영역과 운영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지표 수의 축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지표를 축소·단순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교사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또는 관찰 방법을 제안함.
- 누리과정 영역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활동 구성, 일과의 통합적 운영,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의 6개 지표로 구성함.

〈표 11〉 운영관리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안)

| 지표 | 평가항목 |
|----------------|--|
| 1. 교직원의 인사·복지 | 1) 인사(근로계약서) 규정 준수 2) 보수·복지(복무) 규정 준수 |
| 2. 교직원의 교육 | 1) 연수 기회 제공 2) 연수비용 및 시간 지원 |
| 3. 원장의 리더십 | 1)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 2) 자체 평가 내실화 3) 운영 개선 노력 |
| 4. 교사대 유아 비율 | 1) 법적 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 |
|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1)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2) 예산 편성 및 지출 타당성 3) 기타 경비 관련 규정 준수 |
| 6. 가정 연계 | 1) 가정과의 의사소통 2)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기회 3)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 7. 지역사회 연계 | 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활동 홍보 2)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

- 운영관리 영역은 교직원의 인사·복지, 교직원 교육, 원장의 리더십, 교사대 유아 비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가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의 7개 지표로 구성함.

나.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누리과정 영역 평가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 모든 항목이 대체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 설정의 발달의 적합성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일 지표의 유아, 부모, 지역사회 요구 반영이 4.10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12〉 누리과정 영역

단위: %

| 평가 항목 | 동의 정도 | | | | | 종합 | | | 5점 평균(SD) | 계(명) | |
|-----------------|----------------------------|-----|-----|------|------|----------|-----|---------|--------------|-----------|------------|
| | 1 | 2 | 3 | 4 | 5 | 동의 안함 | 보통 | 동의 함 | | | |
| 목표 설정 | 발달의 적합성 | 0.5 | 1.5 | 3.5 | 28.5 | 66.0 | 2.0 | 3.5 | 94.5 | 4.58(.68) | 100.0(200) |
| | 유아, 부모, 지역사회 요구 반영 | 1.0 | 2.5 | 14.0 | 50.5 | 32.0 | 3.5 | 14.0 | 82.5 | 4.10(.80) | 100.0(200) |
| 계획 수립 | 연간, 월간 계획안 연계 | 1.0 | 1.0 | 8.5 | 39.0 | 50.5 | 2.0 | 8.5 | 89.5 | 4.37(.76) | 100.0(200) |
| |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 | 1.0 | 0.5 | 5.5 | 32.0 | 61.0 | 1.5 | 5.5 | 93.0 | 4.52(.71) | 100.0(200) |
| 활동 구성 | 자유 선택 활동 시간 | 0.5 | 2.5 | 7.0 | 29.5 | 60.5 | 3.0 | 7.0 | 90.0 | 4.47(.77) | 100.0(200) |
| | 실외활동 | 1.0 | 3.0 | 8.5 | 28.5 | 59.0 | 4.0 | 8.5 | 87.5 | 4.22(.84) | 100.0(200) |
| 통합적 운영 | 생활 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 | - | 2.5 | 6.0 | 36.0 | 55.5 | 2.5 | 6.0 | 91.5 | 4.45(.72) | 100.0(200) |
| | 활동 간의 균형 | - | 2.5 | 5.0 | 37.0 | 55.5 | 2.5 | 5.0 | 92.5 | 4.46(.70) | 100.0(200) |
| 교사의 상호 작용 | 자체평가 자료 또는 관찰 자료 평가 | 1.0 | 2.0 | 12.5 | 41.5 | 43.0 | 3.0 | 12.5 | 84.5 | 4.24(.82) | 100.0(200) |
| 교수법 | 활동에 적합한 방법과 매체 사용 | 0.5 | 1.5 | 8.5 | 41.5 | 48.0 | 2.0 | 8.5 | 89.5 | 4.35(.74) | 100.0(200) |
| | 동기 유발과 호기심 유도 | 0.5 | 1.0 | 9.0 | 34.0 | 55.5 | 1.5 | 9.0 | 89.5 | 4.43(.74) | 100.0(200) |

2) 운영관리 영역 평가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 모든 항목이 대체로 3.5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원의 교육 중 연수기회 제공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연계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홍보가 3.78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13〉 운영관리 영역

단위: %

| 평가 항목 | 동의 정도 | | | | | 종합 | | | 5점 평균(SD) | 계(명) | |
|-------------------|-----------------------------|-----|-----|------|------|----------|-----|---------|--------------|-----------|------------|
| | 1 | 2 | 3 | 4 | 5 | 동의 안함 | 보통 | 동의 함 | | | |
| 교직원의 인사/복지 | 인사 규정 준수 | - | 2.0 | 5.0 | 31.5 | 61.5 | 2.0 | 5.0 | 93.0 | 4.53(.68) | 100.0(200) |
| | 보수/ 복지 규정 준수 | - | 2.0 | 6.0 | 27.5 | 64.5 | 2.0 | 6.0 | 92.0 | 4.55(.70) | 100.0(200) |
| 교직원의 교육 | 연수 기회 제공 | 0.5 | 2.0 | 1.5 | 31.0 | 65.0 | 2.5 | 1.5 | 96.0 | 4.58(.67) | 100.0(200) |
| | 연수 비용 및 시간 지원 | 0.5 | 2.0 | 5.5 | 33.5 | 58.5 | 2.5 | 5.5 | 92.0 | 4.48(.73) | 100.0(200) |
| 원장의 리더십 |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 | - | 1.0 | 6.5 | 34.5 | 58.0 | 1.0 | 6.5 | 92.5 | 4.49(.70) | 100.0(200) |
| | 자체 평가 내실화 | - | 1.0 | 6.5 | 37.0 | 55.5 | 1.0 | 6.5 | 92.5 | 4.46(.70) | 100.0(200) |
| | 운영 개선 노력 | 1.0 | 0.5 | 4.0 | 37.0 | 57.5 | 1.5 | 4.0 | 94.5 | 4.50(.69) | 100.0(200) |
| 교사 대 유아 비율 | 법정기준 또는 사·도별 허용 비율 준수 | - | 2.5 | 5.5 | 25.0 | 67.0 | 2.5 | 5.5 | 92.0 | 4.57(.71) | 100.0(200) |
|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 - | 1.0 | 9.0 | 30.5 | 59.5 | 1.0 | 9.0 | 90.0 | 4.49(.70) | 100.0(200) |
| | 예산 편성 및 지출 타당성 | - | 1.0 | 5.5 | 35.0 | 58.5 | 1.0 | 5.5 | 93.5 | 4.51(.64) | 100.0(200) |
| | 기타 경비 관련 규정 준수 | - | 0.5 | 8.0 | 36.0 | 55.5 | 0.5 | 8.0 | 91.5 | 4.47(.66) | 100.0(200) |
| 가정연계 | 가정과의 의사소통 | - | - | 5.0 | 36.5 | 58.5 | - | 5.0 | 95.0 | 4.54(.59) | 100.0(200) |
| |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기회 | - | - | 7.5 | 41.0 | 51.5 | - | 7.5 | 92.5 | 4.44(.63) | 100.0(200) |
| | 운영 위원회 구성과 활동 | - | 1.5 | 13.5 | 49.5 | 35.5 | 1.5 | 13.5 | 85.0 | 4.19(.71) | 100.0(200) |
| |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 1.5 | 4.0 | 16.5 | 44.5 | 33.5 | 5.5 | 16.5 | 78.0 | 4.05(.89) | 100.0(200) |
| 지역사회 연계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활동 홍보 | 1.5 | 5.0 | 31.0 | 39.5 | 23.0 | 6.5 | 31.0 | 62.5 | 3.78(.91) | 100.0(200) |
| | 지역 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 0.5 | 1.0 | 12.0 | 47.5 | 39.0 | 1.5 | 12.0 | 86.5 | 4.24(.73) | 100.0(200) |

다.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안) 확정

-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 평가지표(안)을 확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누리과정 영역의 평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4.1점(5점 척도)에서 4.58점으로 동의 정도가 대체로 높아 지표에 따른 평가 항목을 모두 수용하였고, 교사의 상호작용은 자체평가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직접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대체함.

〈표 14〉 누리과정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안)

| 지표 | 평가 항목 |
|---------------|--|
| 1. 목표 설정 | 1) 발달의 적합성 2)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 반영 |
| 2. 계획 수립 | 1)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 연계 2)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 |
| 3. 활동 구성 | 1) 자유선택활동 시간 2) 실외활동 시간 |
| 4. 일과의 통합적 운영 | 1) 생활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 2) 활동 간의 균형 |
| 5. 교사의 상호작용 | * 상호작용-관찰 자료 |
| 6. 교수법 | 1) 활동에 적합한 방법과 매체 사용 2) 동기유발과 호기심 유도 |

- 운영관리 영역의 평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78점(5점 척도)에서 4.58점으로 동의 정도가 대체로 높아 지표에 따른 평가 항목을 수용하였고, 교사의 상호작용은 자체평가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직접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대체하고,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홍보 항목을 삭제함.
- 가정 연계 지표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은 조사 방법과 문항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평가 항목에는 포함하되 만족도 조사 문항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15〉 운영관리 영역의 공통 평가지표(안)

| 지표 | 평가항목 |
|----------------|---|
| 1. 교직원의 인사·복지 | 1) 인사(근로계약서) 규정 준수 2) 보수·복지(복무) 규정 준수 |
| 2. 교직원의 교육 | 1) 연수 기회 제공 2) 연수비용 및 시간 지원 |
| 3. 원장의 리더십 | 1)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 2) 자체 평가 내실화 3) 운영 개선 노력 |
| 4. 교사대 유아 비율 | 1) 법정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 |
|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1)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2) 예산 편성 및 지출 타당성 3) 기타 경비 관련 규정 준수 |
| 6. 가정 연계 | 1) 가정과의 의사소통 2)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기회 3)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 7. 지역사회 연계 | 1)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라. 누리과정 공통 평가지표의 활용

□ 누리과정 영역에서 가중치 부여가 필요한 항목에 1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발달의 적합성은 68.0%, 연간·월간(또는 주간, 일일)계획안 연계는 7.5%, 생활 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은 6.0% 순으로 나타남.

〈표 16〉 누리과정 영역-가중치 부여 항목

단위: %

| 구분 | 발달의 적합성 |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 반영 | 연간, 월간 계획안 연계 |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 | 자유 선택 활동 시간 | 실외 활동 시간 | 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적 운영 | 교육 활동 간의 균형 | 활동에 적합한 방법과 매체 사용 | 동기 유발과 호기심 유도 | 계(명) |
|----------|---------|---------------------|---------------|------------------|-------------|----------|-------------------|-------------|-------------------|---------------|------------|
| 1순위 | 68.0 | 2.5 | 7.5 | 5.0 | 5.5 | 1.0 | 6.0 | 0.5 | 1.5 | 2.5 | 100.0(200) |
| 2순위 | 7.0 | 4.5 | 16.0 | 21.5 | 9.0 | 5.0 | 20.5 | 7.5 | 5.0 | 4.0 | 100.0(200) |
| 3순위 | 5.5 | 1.0 | 5.5 | 11.5 | 11.0 | 3.5 | 21.5 | 9.0 | 16.5 | 15.0 | 100.0(200) |
| 1+2+3 순위 | 80.5 | 8.0 | 29.0 | 38.0 | 25.5 | 9.5 | 48.0 | 17.0 | 23.0 | 21.5 | 200 |

- 1, 2, 3순위를 합산한 결과로 발달의 적합성은 80.5%, 생활 주제에 따른 활동의 통합성 운영은 48.0%, 다양한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은 38.0%로 나타남.
- 운영관리 영역의 가중치 부여 항목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보수·복지 규정 준수는 29.5%, 법정 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는 13.0%,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는 11.5%로 나타남.
- 1, 2, 3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보수·복지규정 준수는 55.0%, 연수기회 제공은 34.0%, 법정 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는 28.0%로 나타남.

〈표 17〉 운영관리 영역-가중치 부여 항목

단위: %

| 구분 | 인사 규정 준수 | 보수 복지 규정 준수 | 연수 기회 제공 | 연수 비용 및 시간 지원 | 교직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및 공유 | 자체 평가 내실화 | 운영 개선 노력 | 법정 기준 또는 시·도별 허용 비율 준수 | 계(명) |
|---------|----------|-------------|----------|---------------|---------------------|-----------|----------|------------------------|------------|
| 1순위 | 10.5 | 29.5 | 10.5 | 2.0 | 11.5 | 4.0 | 3.0 | 13.0 | 100.0(200) |
| 2순위 | 9.5 | 16.5 | 11.5 | 10.5 | 7.0 | 6.5 | 3.0 | 8.0 | 100.0(200) |
| 3순위 | 4.5 | 9.0 | 12.0 | 6.0 | 8.5 | 8.0 | 6.0 | 7.0 | 100.0(200) |
| 1+2+3순위 | 24.5 | 55.0 | 34.0 | 18.5 | 27.0 | 18.5 | 12.0 | 28.0 | 200 |

| 구분 |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 예산 편성 및 지출 타당성 | 기타 경비 관련 규정 준수 | 가정과의 의사소통 |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기회 |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 계(명) |
|---------|--------------|----------------|----------------|-----------|-----------------|--------------|------------------|------------|
| 1순위 | 6.5 | 6.5 | - | 1.5 | 1.5 | - | - | 100.0(200) |
| 2순위 | 10.5 | 7.5 | 1.0 | 6.5 | 1.5 | 0.5 | - | 100.0(200) |
| 3순위 | 6.0 | 11.0 | 1.5 | 9.0 | 8.0 | 1.0 | 2.5 | 100.0(200) |
| 1+2+3순위 | 23.0 | 25.0 | 2.5 | 17.0 | 11.0 | 1.5 | 2.5 | 200 |

- 공통지표(안)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존 평가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 50.5%, 교사 또는 기관이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표 43.0%, 기타 6.5% 순으로 나타남.
- 공통 평가지표(안)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교사 또는 기관이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전문가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기존 평가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18〉 공통지표(안)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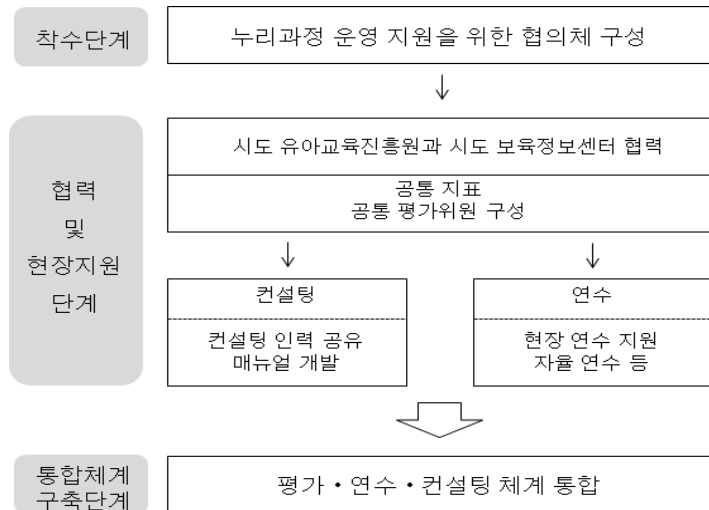
| 구분 | 교사 또는 기관이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기존 평가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 | 기타 | 계(명) |
|--------------|--------------------------|----------------------|------|------------|
| 전체 | 43.0 | 50.5 | 6.5 | 100.0(200) |
| 유아교육 | 38.0 | 58.0 | 4.0 | 100.0(50) |
| 보육 | 38.0 | 58.0 | 4.0 | 100.0(50) |
| 교육부 | 48.0 | 46.0 | 6.0 | 100.0(50) |
| 복지부 | 48.0 | 40.0 | 12.0 | 100.0(50) |
| $\chi^2(df)$ | | 6.87(6) | | |

5. 누리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방안

- 본 고에서는 2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구축(안)을 제시하고, 공통 평가지표(안)을 개발함.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조직을 통합 운영하거나 평가를 전담하는 단일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 실현 가능한 협력 업무로는 누리과정 운영,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원 연수, 장학, 컨설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협력 가능한 기관으로는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협력(안)과 통합(안)을 제안함.
- 현행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서 공통의 요소를 추출하고, 국외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 평가지표(안)을 개발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통 평가지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와 평정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현행 평가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통 평가지표는 현장에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 그러나 누리과정이 3, 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일부 분 공통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기됨.

가. 단계별 추진 방안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협의체 구성
 -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
 - 질 관리에 대한 방향을 합의하고,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2단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 협력
 -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위한 공통 지표 개발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공동 추진(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교수 협력)
 -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과 연수 지원
 - 3단계: 협력의 성과 분석
 - 협력의 성과 분석, 현장 적합성 검토
 - 4단계: 평가, 컨설팅, 연수 체계 통합
 - 평가를 통해 컨설팅 지원과 연수 지원 병행



[그림 3]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나. 세부 추진 전략

1) 평가 전담 독립 기구 구축

-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평가기구는 특정 부처의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호주에서는 1993년 이후 평가인증 제도를 책임지는 최초의 상임행정기관으로 국가보육인증위원회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유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국가 질 관리 위원회(ACECQA)가 운영되고 있음.
 - 영국도 지방정부와 교육표준청(Ofsted)이 함께 시행하던 것을 2013년부터 교육표준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평가기관의 단일화를 통해 중복과 혼선을 해소함.
 - 뉴질랜드의 교육평가청(ERO)은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 입각한 평가를 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서비스부에 속해 있음.

2) 평가 전문인력의 공동 양성

-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재교육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유아교육·보육 전문가풀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공동의 인력풀을 구축한 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과정에서 양쪽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연계

-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 인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방 및 주정부에서 NAEYC 평가인증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QRIS는 승인된 등급에 따라 성과수당, 보너스,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비재정적 지원으로 멘토링과 코칭 등을 제공함.

- 홍콩의 경우도 평가에 통과한 기관에 바우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에 실패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담을 지속하여 지원하고 있음.

4) 평가 주기의 차등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평가 주기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평가 주기 연장보다는 기관의 질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주기로의 조정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 주기가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평가 결과가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해에 다시 받아야 하지만 자체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 4년 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됨.

5) 부모, 유아의 평가과정 참여

- 평가 지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표에서 벗어나 기관의 질적 운영을 위한 영유아의 복지와 성과가 증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녕을 위해서 기관의 질적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여 평가 지표와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평가 과정에서 아동, 부모의 면담 과정을 포함(황옥경, 2013에서 재인용)함.
- 뉴질랜드의 평가 지표 또한 기관의 서비스가 유아의 학습, 발달, 웰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성취와 이를 위한 환경, 성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됨.
- 본 고에서는 기존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기반으로 공통지표(안)을 제시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의 개발에는 보다 영유아 중심의 프로파일에 중점을 둔 지표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황옥경(2013). 영국 보육정책의 변화와 혁신, 그 의미탐색. 2013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OECD(200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참고 사이트>

뉴질랜드 교육평가청 <http://www.ero.govt.nz> (2013년 10월 16일 인출)

미국 유아교육협회 <http://www.naeyc.org/academy/interested/fourstepoverview>
(2013년 6월 3일 인출)

영국 교육표준청 <http://www.ofsted.gov.uk> (2013년 6월 15일 인출)

호주 질관리위원회 <http://www.acecqa.gov.au> (2013년 6월 3일 인출)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및 정책 시사점

이정림

요약

- 취약계층 가정(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친인척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5세 유아들이 5세 누리과정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5세 누리과정 경험 이후에 유아의 성취 및 발달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 이는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5세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인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득, 저소득 가정 해당자 여부,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년제 대졸 이상 교사 집단이 고졸 이하 교사 집단에 비해 시간이 흐를 수록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더 발전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사들의 교수효능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아가 누리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한 4월과 6개월 이후인 10월 조사 모두에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취학 직전의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함.
- 5세 누리과정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기반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연구보고서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를 토대로 구성됨.

- 누리과정 본래의 취지인 ‘모든 유아가 동일한 과정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경험하여, 최소한의 동일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한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5세 누리과정 적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을 경험하는 유아들의 발달 및 행동 결과를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유아가 속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기관유형, 교사변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 전국적으로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하여 2013년 4월(사전조사)과 10월(사후조사) 2차례에 걸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세 유아 934명,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709명의 유아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음.

2. 유아변인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결과

가. 누리과정 평균 점수 결과 분석

- 유아 관련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 및 영역별 점수를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하였음.
-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측정시기와 유아 관련변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변인은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평균 점수에서 가족 유형,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였음.
 - 가족 유형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한부모 혹은 기타 가족 유형이 양부모가 존재하는 가족 유형과의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차이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점수 차이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 유형(한부모 혹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의 유아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부모가 존재하는 가족의 유아의 성취 수준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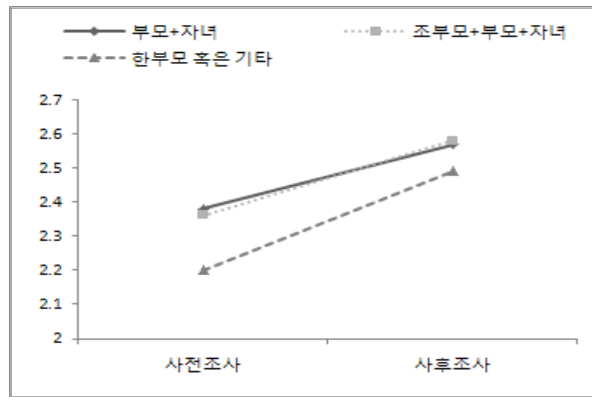
〈표 1〉 가족 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 가족 유형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2.36 |
| 부모+자녀 | 2.38 | 0.37 | 2.57 | 0.34 |
| 조부모+부모+자녀 | 2.36 | 0.40 | 2.58 | 0.36 |
| 한부모 혹은 기타 | 2.20 | 0.41 | 2.49 | 0.37 |

단위: 점

F 측정시기 222.52*** 가족 유형 9.63***
측정시기 × 가족 유형 4.12*

* $p < .05$, *** $p < .001$



[그림 1] 가족 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누리과정이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 유형의 유아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사전조사에서는 저소득 가정이 아닌 유아의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저소득 가정의 유아 점수보다 높았고 사후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저소득 가정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소득 가정이 아닌 유아의 성취 수준을 많이 따라잡고 있었음.
- 누리과정이 저소득 가정의 유아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2〉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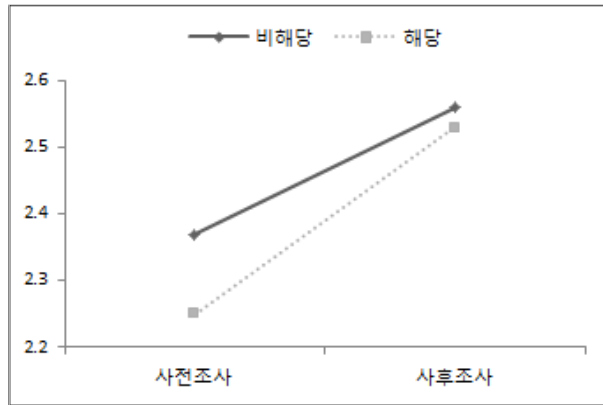
단위: 점

| 저소득 가정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비해당 | 2.37 | 0.37 | 2.56 | 0.34 |
| 해당 | 2.25 | 0.45 | 2.53 | 0.39 |

F 측정시기 169.04***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 8.19***
 측정시기 × 저소득 가정 6.06*

주: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함.

* $p < .05$, *** $p < .001$



[그림 2]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다문화 가정 유아와 비해당 가정 유아의 경우에서도 저소득 가정과 아닌 가정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음.
- 사전조사에서 두 집단의 차이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 차이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누리과정이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다문화 가족 유아와 비해당 가족 유아의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표 3>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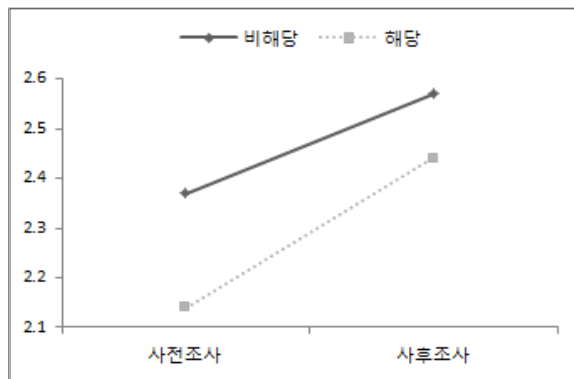
| 다문화 가정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비해당 | 2.37 | 0.37 | 2.57 | 0.34 |
| 해당 | 2.14 | 0.45 | 2.44 | 0.40 |

F

측정시기 77.45***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 19.35***

측정시기 ×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 3.48⁺

+ $p < .10$, *** $p < .001$



[그림 3]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나. 누리과정 영역별 결과 분석

1) 누리과정 영역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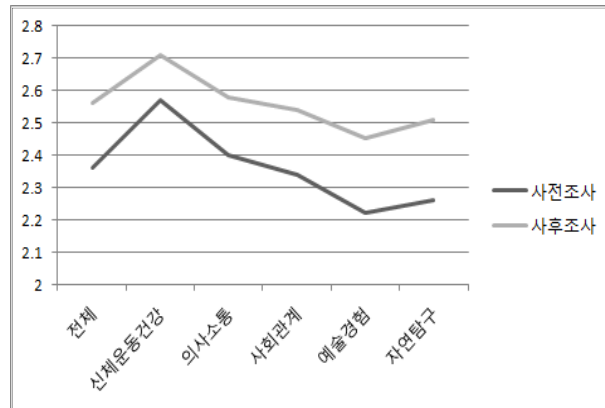
□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5개 영역별 사전-사후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사전조사에서 누리과정 전체평균 2.36점, 사후조사에서 2.56점이었고,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사전 2.57점, 사후 2.71점, 의사소통 영역은 사전 2.40점, 사후 2.58점이었음. 사회관계 영역은 사전 2.34점, 사후 2.54점, 예술경험 영역은 사전 2.22점, 사후 2.45점, 자연탐구 영역은 사전 2.26점, 사후 2.51점으로 나타났음.
- 영역별 점수 차이를 비교해보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순서로 나타났고 사후조사에서도 영역별 점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표 4〉 누리과정 영역별 평균점수

단위: 점

| | 사전조사 | | 사후조사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신체운동·건강 | 2.57 | 0.34 | 2.71 | 0.30 |
| 의사소통 | 2.40 | 0.45 | 2.58 | 0.41 |
| 사회관계 | 2.34 | 0.43 | 2.54 | 0.40 |
| 예술경험 | 2.22 | 0.46 | 2.45 | 0.44 |
| 자연탐구 | 2.26 | 0.45 | 2.51 | 0.41 |



[그림 4] 누리과정 영역별 평균 점수 비교

2) 누리과정 영역별 분석 결과

-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의 5개 영역 모두에서 사전, 사후검사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전, 사후의 유아관찰척도 예술경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

〈표 5〉 가구소득과 측정시기에 따른 예술경험 점수

단위: 점

| 가구소득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23 | 0.46 | 2.46 | 0.44 |
| 250만원 미만 | 2.16 | 0.46 | 2.38 | 0.45 |
| 250-499만원 | 2.25 | 0.45 | 2.49 | 0.43 |
| 500만원 이상 | 2.26 | 0.45 | 2.47 | 0.41 |
| <i>F</i> | 측정시기 295.58*** | | 가구소득 14.86*** | |
| | 측정시기 × 가구소득 0.36 | | | |
| 사후비교 | 하<중=상 | | | |

*** $p < .001$

-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다문화 가정이 아닌 경우 사전, 사후의 유아관찰척도 예술경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

〈표 6〉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예술경험 점수

단위: 점

| 저소득 가정 | 사전 | | 사후 | | 다문화 가정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23 | 0.46 | 2.46 | 0.44 | 전체 | 2.23 | 0.46 | 2.46 | 0.44 |
| 비해당 | 2.23 | 0.45 | 2.46 | 0.43 | 비해당 | 2.23 | 0.46 | 2.46 | 0.43 |
| 해당 | 2.14 | 0.51 | 2.41 | 0.49 | 해당 | 2.08 | 0.48 | 2.35 | 0.49 |
| <i>F</i> | 측정시기 110.10*** | | | | <i>F</i> | 측정시기 44.31*** | | | |
| | 저소득 가정 해당 여부 4.98*** | | | | |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 7.24*** | | | |
| | 측정시기 × 저소득 가정 1.22 | | | | | 측정시기 × 다문화 가정 0.26 | | | |

주: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함.
*** $p < .001$

3. 기관변인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결과

가. 누리과정 평균 점수 결과 분석

- 기관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 및 영역별 점수를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함.
- 측정시기와 기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변인은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평균 점수에서 전체 기관 설립유형과 유치원 설립유형이었음.

- 전체 설립유형에서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5세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사후조사에서는 다른 설립유형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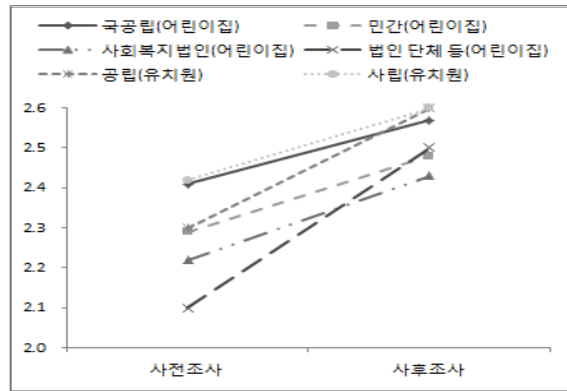
〈표 7〉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단위: 점

| 설립유형 | 사전 | | 사후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 어린이집 | 국공립 | 2.41 | 0.42 | 2.57 | 0.38 |
| | 민간 | 2.29 | 0.39 | 2.48 | 0.38 |
| | 사회복지법인 | 2.22 | 0.43 | 2.43 | 0.42 |
| | 법인·단체 등 | 2.10 | 0.26 | 2.50 | 0.39 |
| 유치원 | 공립 | 2.30 | 0.38 | 2.60 | 0.32 |
| | 사립 | 2.42 | 0.35 | 2.60 | 0.32 |

F 측정시기 22.83*** 설립유형 15.22***
측정시기 × 설립유형 3.76**

** $p < .01$, *** $p < .001$



[그림 5]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사전조사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관찰척도 점수 차이의 폭이 크게 나타났던 반면에, 사후조사에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점수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평준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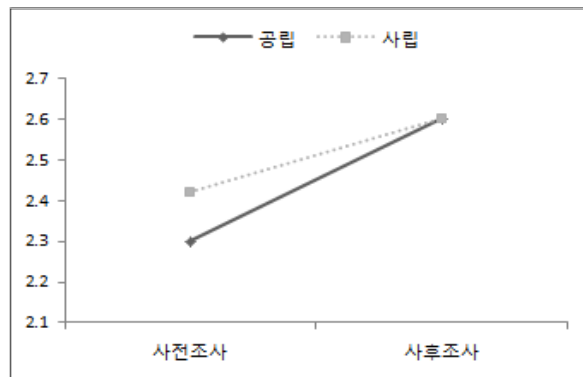
〈표 8〉 유치원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단위: 점

| 유치원 설립유형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9 | 0.36 | 2.60 | 0.32 |
| 공립 | 2.30 | 0.38 | 2.60 | 0.32 |
| 사립 | 2.42 | 0.35 | 2.60 | 0.32 |

F 측정시기 280.84*** 유치원 설립유형 10.82**
측정시기 × 유치원 설립유형 16.27***

** $p < .01$, *** $p < .001$



〔그림 6〕 유치원 설립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기관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난 변인은 유아관찰척도 전체 평균 점수에서 기관유형, 어린이집 설립유형, 학급유형으로 나타났음.
 -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유아관찰척도의 점수가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높았으며,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사전, 사후조사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 누리과정 5개 영역 모두에서 5세 단일반 유형이 혼합반보다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나. 누리과정 영역별 결과 분석

-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유치원 설립유형과 전체 설립유형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으며 의사소통 영역은 유치원 설립유형에 대해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음.

-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 사전조사에서의 사립 유치원과의 점수 차이가 사후조사에서는 좁혀졌음.
- 영역별로 보면 하위 5개 영역 모두 기관유형과 학급유형에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주효과가, 의사소통 영역에서 전체설립유형에 주효과가 나타났음.
 -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에서 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등의 어린이집보다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세 가지 유형(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보다 사전 및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4. 교사변인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결과

가. 누리과정 평균 점수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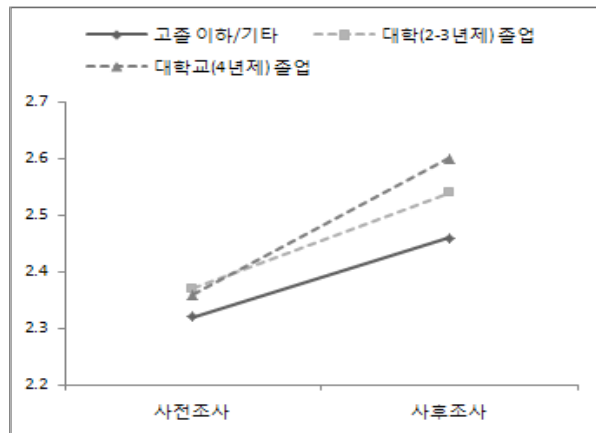
- 교사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 및 영역별 점수를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함.
- 측정시기와 교사 변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변인은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 평균 점수에서 교사학력, 누리과정 경험 여부, 교사-아동 상호작용 여부였음.
 - 교사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의 교사집단은 사전-사후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전조사에서 4년제 대졸 이상 교사집단은 2-3년제 대졸 집단보다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낮았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였음.
 - 사전조사에서는 고졸이하의 교사집단과 4년제 대졸 이상 교사집단의 유아관찰척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사후에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교사 학력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단위: 점

| 교사 학력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고졸 이하/기타 | 2.32 | 0.37 | 2.46 | 0.37 |
| 대학(2-3년제) 졸업 | 2.37 | 0.39 | 2.54 | 0.36 |
| 대학교(4년제) 졸업 | 2.36 | 0.37 | 2.60 | 0.32 |
| F | 측정시기 130.63*** | | 교사 학력 5.16** | |
| | 측정시기 × 교사 학력 6.95** | | | |

** $p < .01$, *** $p < .001$



[그림 7] 교사 학력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누리과정 경험여부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점수 차이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수업할 경우 누리과정 수업 경험이 없는 교사도 누리과정 경험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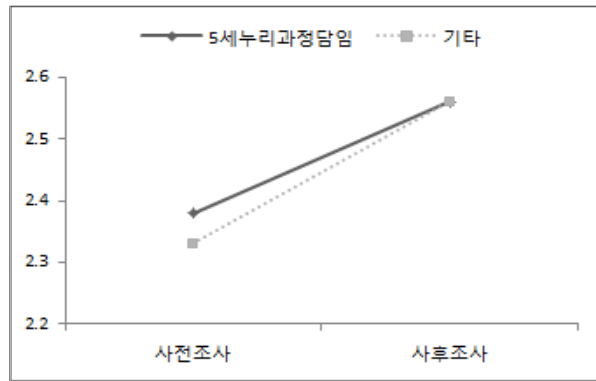
〈표 10〉 교사 누리과정 경험여부와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 교사 누리과정 경험여부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5세 누리과정 담임 | 2.38 | 0.39 | 2.56 | 0.35 |
| 기타 | 2.33 | 0.36 | 2.56 | 0.33 |

단위: 점

F 측정시기 408.19*** 교사 누리과정 경험여부 2.77
 측정시기 × 교사 누리과정 경험여부 6.15*

* $p < .05$, *** $p < .001$



[그림 8] 교사 누리과정 경험여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 사전조사에서는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 점수 집단의 차이에 따라 집단별 차이의 폭이 넓었으나 사후조사에서 집단별 점수의 폭이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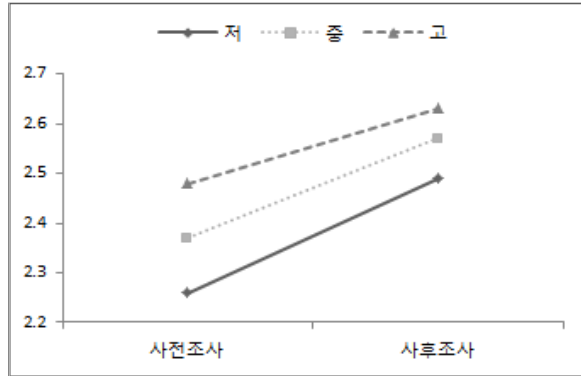
〈표 11〉 교사의 상호작용과 측정시기에 따른 누리과정 전체 점수

| 교사의 상호작용 | 사전 | | 사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2.36 | 0.38 | 2.56 | 0.35 |
| 저 | 2.26 | 0.37 | 2.49 | 0.36 |
| 중 | 2.37 | 0.37 | 2.57 | 0.33 |
| 고 | 2.48 | 0.38 | 2.63 | 0.33 |

단위: 점

F 측정시기 382.98*** 교사의 상호작용 44.62***
 측정시기 × 교사의 상호작용 4.82**

** $p < .01$, *** $p < .001$



[그림 9] 교사의 상호작용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나. 누리과정 영역별 결과 분석

- 누리과정 5개 영역 모두에서 교사학력과 측정시기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 4년제 대졸 이상 교사집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아들의 발달적 성취를 고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졸이하 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적 성취를 증가하는 정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학력에 따른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 상승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 한편,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교사-아동 상호작용 능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사전, 사후 조사의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점수 차의 폭이 다소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아동 상호작용 능력은 교수 효능감에 비해 누리과정 경험에 의해 다소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교사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던 변인은 유아관찰척도 전체 평균 점수에서 교수효능감 이었으며, 영역별로 보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교사학력, 교사경력, 교수효능감이 주효과로 나타났다.
 - 유아관찰척도 전체 평균 점수에서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교수효능감만 주효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교사-아동 상호작용이 주효과로 나타났다.

-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교사-아동 상호작용이,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교사-아동 상호작용이 주효과로 나타났음.

5.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및 정책 시사점

가.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및 시사점

- 취약계층 가정 5세 유아들이 5세 누리과정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5세 누리과정 경험 이후에 유아의 성취 및 발달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 본 연구 결과는 어린시기의 영유아들에 대한 국가의 조기투자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추후 영유아 시기의 조기 투자에 관한 중장기 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연구의 토대를 형성함.
- 유아가 속한 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점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예술경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5세 누리과정 전체 점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
 -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친인척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유아인 경우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자연탐구 영역과 같은 4개 영역의 사전조사 점수에서 사후조사 점수로의 상승폭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의 유아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통해 취약계층 유아들이 누리과정의 보육 및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득, 저소득 가정 해당자 여부, 다문화 가정 해당 여부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음.
 - 예술경험에 따른 조기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유아 대상의 문화적 경험 및 체험학습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함.
- 교사 특성 변인과 측정시기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사 학력, 누리과정 경험 여부, 교사-아동상호작용은 사전-사후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 효과적인 누리과정 학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교사 학력은 4년제 이상일수록 누리과정 교육에 고무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시간이 경과될수록 교수 능력이 더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립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효과라고 여겨지는 유아성취에서의 격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감됨을 알 수 있음.
 - 공립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연 2회 정도의 원내 장학 및 한 학기 4번 정도의 교사 연수 등으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위한 원내외적인 지원이 사후조사에서 큰 폭의 점수 증가를 유도하였다고 사료됨.
- 누리과정 5개 영역 모두에서 5세 단일반 유형이 혼합반보다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았음.

나. 5세 누리과정 적용 효과 연구를 통한 정책 시사점

- 취약계층 유아 대상 누리과정 교육 효과 홍보 및 확산
 -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유아 대상의 누리과정 교육 효과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및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가정이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여 조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취약 계층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누리과정의 효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지원기관에 해당 유아가 재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 누리과정의 중장기 효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 실시
 - 누리과정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 인생 초기 영유아시기에 투자되었던 국가적 비용이 아동, 청소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

- 이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설계와 연구시기를 다양하게 하는 등 유연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년 이상의 교사 양성교육 기간 확보
 - 교사의 4년제 이상 학력은 누리과정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음.
 -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인 교사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입소 시 발달적으로 다소 쳐져있는 유아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교수방법 학습과 같은 주요한 자질들을 교사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5세 단일반 위주 운영 및 5세 혼합반을 위한 지침 제공
 - 누리과정 학습 효과는 5세 단일반으로 구성되었을 때, 혼합반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는 혼합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 및 정보 부족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음.
 - 읍면지역의 경우는 혼합반 운영이 불가피하고, 누리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 보다 구체적으로 혼합반의 연령 구성(3-5세 혼합연령반, 4-5세 혼합연령반)을 고려한 누리과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누리과정 연수 및 장학 기회 확산
 - 공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과 관련한 연수 및 장학 기회가 많음으로 인하여 누리과정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심화하여 수업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누리과정 연수 및 장학의 기회는 누리과정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짐.

참고문헌

이미화·이정림·여종일·김경미·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2).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 연구-평가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3,4세 누리과정 유아평가 및 제언

이미화·정주영

요약

-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3~4세에게도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3-4세 누리과정'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아평가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3세 누리과정」과 「4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성취 평가를 위한 3세와 4세용 유아관찰척도와 이를 토대로 현장 및 관찰 사례를 담은 교사용 유아관찰척도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3, 4세 담당교사 1,016명(3, 4세 유아 2,03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3세 .869~.916, 4세 .886~.917로 높게 나타났고, 타당도 지수(상관관계 계수)는 3세 .525~.774, 4세 .458~.755로 유의도 .01수준에서 유의함.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방안으로 3, 4세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 및 발달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3, 4세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교수실제에 활용, 교사·전문가·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로 활용 등을 제시함.
- 누리과정 3-5세 유아관찰척도 보급 및 확산방안으로 간략형 누리과정 3-5세 유아관찰척도의 개발, 웹 구축을 통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의 배포 등을 제안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3년에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3-4세 누리과정 제정 및 5세 개정안을 고시함.

* 본 원고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정주영·엄지원·김희정 등이 집필한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3·4세 유아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 이루어지던 지원이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 정부는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서 3·4세 보육·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함.
-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3·4세에게도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3·4세 누리과정’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아평가가 요구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유아평가와 관련하여 ‘편성과 운영’의 세부내용에서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평가’ 2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평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세부 내용: 평가 부분

| 누리과정 운영 평가 | 유아평가 |
|--|---|
| ·운영 내용이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었는지 평가한다. |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
|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
| ·운영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운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이후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활용한다.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발췌·수정

- 3, 4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3세는 20개 내용범주, 56개 내용, 103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세는 20개 내용범주, 59개 내용, 129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에 따른 목표와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에 따른 목표와 내용 수

| 영역 | 목표 | 내용범주 | | | 내용 | | | 세부내용 | | |
|---------|---|------|----|----|----|----|----|------|-----|-----|
| | | 3세 | 4세 | 5세 | 3세 | 4세 | 5세 | 3세 | 4세 | 5세 |
| 신체운동·건강 |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5 | 5 | 5 | 14 | 14 | 14 | 31 | 32 | 33 |
|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4 | 4 | 4 | 10 | 11 | 11 | 17 | 25 | 25 |
|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5 | 5 | 5 | 11 | 12 | 12 | 20 | 28 | 29 |
| 예술경험 | 아름다움과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 3 | 3 | 10 | 10 | 10 | 17 | 20 | 20 |
| 자연탐구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3 | 3 | 3 | 11 | 12 | 12 | 18 | 24 | 30 |
| 전체 | | 20 | 20 | 20 | 56 | 59 | 59 | 103 | 129 | 137 |

자료: 장명립 외(2012). 3, 4세 누리과정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발췌·수정

- 3, 4세 유아관찰척도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령별 내용범주와 내용 수를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

나. 문제점 및 연구목적

- 유아평가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연령별로 개발된 평가도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은혜와 이기숙(1996)의 연구는 모두 3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되었음.
 - 이미화 외(2012)의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 연구는 5세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에 따른 유아의 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하였음.

- 누리과정 평가와 영유아평가도구에 관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3세와 4세 누리과정의 5개 영역 하에 속한 세부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3세와 4세 누리과정 평가도구가 각각 분리될 필요성이 도출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3세와 4세용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3, 4세 유아의 다양한 발달 수준과 누리과정 목표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3·4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및 누리과정 평가 연구, 그리고 영유아평가 도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
 - 「3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 및 하위내용 적절성을 검토한 후 「3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유아평가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함.
 - 「5세 누리과정」 평가도구를 고찰하여 「3세 누리과정」과 「4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성취 평가를 위한 3세와 4세용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함.
 - 개발된 3세와 4세용 유아관찰척도를 토대로 현장 및 관찰 사례를 담은 교사용 유아관찰척도 지침서를 개발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안)의 개발 및 구성

1) 관찰척도 개발절차 및 개발기준

-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총 6차례의 척도 개발 공동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음.
 - 1, 2차 공동연구진 회의에서는 우선 유아관찰척도에 관한 목적과 목표에 관한 규정과 공유, 작년에 개발된 누리과정 5세 유아관찰척도의 개정 필요성, 타 연구기관의 유아평가도구와의 차별성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음.
 - 3차 공동연구진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5개 영역의 3, 4세 유아관찰척도 예시문항을 검토하고, 영역별 연령 차이와 문항에 관한 기준 및 현장 관찰사례 집필에 앞서 유의사항과 기준에 관해 논의하였음.

- 4차 공동연구진 회의에서는 5개 영역별로 개발된 3, 4세 유아관찰척도의 문항 초고를 검토하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 관찰문항, 관찰요소, 관찰준거 간 관계에 관한 기준을 조율하였음.
- 5, 6차 공동연구진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진의 개발안과 외부전문가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재 작성된 5개 영역별 3세용, 4세용 유아관찰척도와 현장 관찰사례의 시안을 검토하였음.
- 개발된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 시안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도구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음.
- 누리과정 3-4세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진은 각 영역별 특성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세부내용이 같아도 연령별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찰요소, 관찰문항, 관찰준거가 다를 수 있음.
 - 세부내용이 똑같거나 거의 유사하여 관찰요소, 관찰문항, 관찰준거가 동일하게 개발된 경우에는 현장 관찰사례를 연령별로 차별화하여 구성함.
 - 서술방식과 용어의 통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음.
 - 보육과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모두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도록 조정하였음.

2) 3, 4세 유아관찰척도(안)의 구성

- 이상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 구성된 3세와 4세의 유아관찰척도(안)는 다음과 같음.
 - 3세 유아관찰척도(안)는 신체운동·건강 15문항, 사회관계 12문항, 의사소통 10문항, 자연탐구 13문항, 예술경험 12문항으로 총 63문항임.
 - 4세 유아관찰척도(안)는 신체운동·건강 15문항, 사회관계 14문항, 의사소통 12문항, 자연탐구 14문항, 예술경험 12문항으로 총 67문항임.
 - 3, 4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3, 4세용 유아관찰척도(안)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누리과정과 유아관찰척도 비교

| 영역 | 3세 | | | 4세 | | |
|---------|------|------|--------|------|------|--------|
| | 누리과정 | | 유아관찰척도 | 누리과정 | | 유아관찰척도 |
| | 내용 | 세부내용 | 문항 | 내용 | 세부내용 | 문항 |
| 신체운동·건강 | 14 | 31 | 15 | 14 | 32 | 15 |
| 의사소통 | 10 | 17 | 10 | 11 | 25 | 12 |
| 사회관계 | 11 | 20 | 12 | 12 | 28 | 14 |
| 예술경험 | 10 | 17 | 12 | 10 | 20 | 12 |
| 자연탐구 | 11 | 18 | 13 | 12 | 24 | 14 |
| 총계 | 56 | 103 | 63 | 59 | 129 | 67 |

자료: 이미화 외(2013).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p. 34. 발췌·수정

나.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도구 타당화

1) 예비조사 결과분석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안)는 서울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세와 4세를 담당하는 교사 총 94명(3세 담당 교사 48명, 4세 담당 교사 4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우선 각계각층의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서의 여러 차례의 척도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음.
 - 각 구인들에 의하여 얻어진 점수와 심리특성을 측정하는 총점과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음.
 - 3세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Pearson 계수값은 .46~.67, 의사소통 영역은 .62~.78, 사회관계 영역은 .35~.67, 예술경험 영역은 .49~.74, 자연탐구 영역은 .48~.78로 모두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
 - 4세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Pearson 계수값은 .27~.67, 의사소통 영역은 .57~.80, 사회관계 영역은 .49~.72, 예술경험 영역은 .62~.83, 자연탐구 영역은 .51~.73으로 모두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
 - 유아관찰척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Cronbach's α 계수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세 유아관찰척도의 신체운동·건강영역은 .868, 의사소통 영역은 .885, 사회관계 영역은 .832, 예술경험 영역은 .857, 자연탐구 영역은 .894로 나타났음.

- 4세 유아관찰척도의 Cronbach's α 계수값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운동·건강영역은 .831, 의사소통 영역은 .907, 사회관계 영역은 .868, 예술경험 영역은 .926, 자연탐구 영역은 .900으로 나타났음.
- 평가도구 개발 전문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현장 교사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서면자문으로 문항과 관찰사례에 관한 검토를 받은 후 조정하여 본 조사용 관찰척도를 확정하였음.

2) 본 조사 결과분석

-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친 최종 확정된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 개발을 위한 본 조사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세와 4세 담당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본 조사의 표집은 17개 시·도별로 각 시·도 내 기관의 총 유아 수에 대해 계급근 비례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17개 시·도 내에서 유형별(유치원: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표본배분은 유형별 총 유아 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였음.
 - 위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3세 교사 총 510명(어린이집 교사 250명, 유치원 교사 260명), 4세 교사 총 506명(어린이집 교사 252명, 유치원 254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음.
 - 3세 유아 총 1,020명(남아 509명, 여아 511명), 4세 유아 총 1,012명(남아 500명, 여아 512명)을 대상으로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측정하였음.
-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상관계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평가문항과의 상관계수값을 보면, 3세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의 상관관계 계수값(.917)이 가장 높았고, 신체운동·건강 영역(.861)이 가장 낮았음.
 - 4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영역(.908)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상관관계 계수값을 보인 영역 역시 신체운동·건강(.859)이었음.
 - 3세와 4세의 전체 평가문항과의 상관계수값이 .859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계수값을 보였음.

〈표 4〉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준거문항 및 관찰문항과의 상관관계

| 누리과정 5개 영역 | 해당 준거 문항과의 상관 계수 | | 전체 평가 문항과의 상관 계수 | |
|------------|------------------|--------|------------------|--------|
| | 3세 | 4세 | 3세 | 4세 |
| 신체운동·건강 영역 | .548** | .504** | .861** | .859** |
| 의사소통 영역 | .688** | .647** | .917** | .908** |
| 사회관계 영역 | .591** | .593** | .895** | .889** |
| 예술경험 영역 | .669** | .625** | .877** | .874** |
| 자연탐구 영역 | .634** | .655** | .907** | .888** |

자료: 이미화 외(2013).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p. 14

** $p < .01$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5개 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세의 경우를 보면, 예술경험 영역의 Cronbach's α 값이 .916으로 가장 높고, 사회관계 영역이 .869로 가장 낮았음.
- 4세의 경우에는 자연탐구 영역의 Cronbach's α 값이 .917로 가장 높았고,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886로 가장 낮았음.
- 3세 유아관찰척도의 영역별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예술경험 영역의 Cronbach's α 값(.919)이 가장 높았고, 사회관계 영역(.878)이 가장 낮았음. 유치원의 경우에도 역시 예술경험 영역(.912)이 가장 높았고, 사회관계 영역(.860)이 가장 낮았음.
- 3세와 4세의 모든 영역이 .869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지수를 보였음.

〈표 5〉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신뢰도 계수

| 영역 | Cronbach's α | | | | | |
|------------|---------------------|-------|-------|-------|-------|-------|
| | 전체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 | 3세 | 4세 | 3세 | 4세 | 3세 | 4세 |
| 신체운동·건강 영역 | 0.880 | 0.886 | 0.886 | 0.879 | 0.874 | 0.851 |
| 의사소통 영역 | 0.884 | 0.907 | 0.892 | 0.921 | 0.876 | 0.884 |
| 사회관계 영역 | 0.869 | 0.889 | 0.878 | 0.905 | 0.860 | 0.870 |
| 예술경험 영역 | 0.916 | 0.916 | 0.919 | 0.925 | 0.912 | 0.904 |
| 자연탐구 영역 | 0.909 | 0.917 | 0.913 | 0.929 | 0.904 | 0.901 |

자료: 이미화 외(2013).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p. 81

다.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문항 제시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등 5개 영역별로 개발된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3세용 관찰척도와 4세용 관찰척도

〈표 6〉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신체운동·건강 영역

| 문항 |
|---|
| 3세 신체운동·건강 영역 |
| 1-1. 감각적 차이에 관심을 보인다. |
| 1-2. 신체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
| 1-3.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 1-4.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 |
| 1-5.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
| 1-6. 기본운동 동작을 한다. |
| 1-7. 신체활동이나 바깥놀이에 참여한다. |
| 1-8. 운동기구나 시설을 스스로 이용한다. |
| 1-9.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
| 1-10.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
| 1-11.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
| 1-12. 건강한 생활을 한다. |
| 1-13. 놀이기구, 놀잇감, 놀이장소,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
| 1-14. 기본교통수칙과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을 알고, 경험한다. |
| 1-15.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
| 4세 신체운동·건강 영역 |
| 1-1.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
| 1-2. 신체의 명칭과 기능을 알고 움직인다. |
| 1-3.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
| 1-4. 균형감과 조절능력을 보이며 대근육을 조절한다. |
| 1-5.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
| 1-6. 이동운동과 제자리운동을 한다. |
| 1-7.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이나 바깥놀이에 참여한다. |
| 1-8. 운동기구나 시설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한다. |
| 1-9.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
| 1-10.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고 골고루 먹는다. |
| 1-11. 식사예절을 알고 바른 자세로 식사한다. |
| 1-12. 건강하고 청결한 일상생활을 한다. |
| 1-13. 놀이기구, 놀잇감, 놀이장소,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
| 1-14. 기본교통수칙과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을 알고 지킨다. |
| 1-15.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의사소통 영역의 3세용 관찰척도와 4세용 관찰척도

〈표 7〉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의사소통 영역

| 문항 | |
|------------|---|
| 3세 의사소통 영역 | |
| 2-1. |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
| 2-2.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
| 2-3. |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
| 2-4.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
| 2-5. |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지며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
| 2-6.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
| 2-7. |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 2-8. | 글자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 2-9. | 책에 흥미를 보이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한다. |
| 2-10. | 글자쓰기에 관심을 보인다. |
| 4세 의사소통 영역 | |
| 2-1. | 일상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
| 2-2. |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
| 2-3. | 동요, 동시, 동화 듣기를 즐기며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
| 2-4.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
| 2-5. |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말한다. |
| 2-6.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한다. |
| 2-7. |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
| 2-8. |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차례를 지켜 말한다. |
| 2-9. |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고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
| 2-10. | 책에 흥미를 보이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
| 2-11. | 글자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
| 2-12. |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

□ 사회관계 영역의 3세용 관찰척도와 4세용 관찰척도

〈표 8〉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사회관계 영역

| 문항 | |
|------------|----------------------------|
| 3세 사회관계 영역 | |
| 3-1. | 자신의 특성이나 서로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
| 3-2. | 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다. |
| 3-3. | 자기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나타낸다. |
| 3-4. | 자기감정을 조절한다. |
| 3-5. | 가족의 화목한 일상을 나타낸다. |
| 3-6. | 가족 구성원을 알고 나의 일을 안다. |
| 3-7. | 친구와 함께 놀고 의견의 차이를 수용한다. |

(표 8 계속)

| 문항 | |
|-------------------|---|
| 3세 사회관계 영역 | |
| 3-8. | 주변 사람에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
| 3-9.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
| 3-10. |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안다. |
| 3-11. |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알고 동네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
| 3-12. | 우리나라의 상징, 전통놀이나 풍습에 관심을 나타낸다. |
| 4세 사회관계 영역 | |
| 3-1. | 자신의 특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한다. |
| 3-2. | 나의 일을 시도해볼 수 있다. |
| 3-3. |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안다. |
| 3-4. |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 |
| 3-5. | 가족의 화목한 일상과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나타낸다. |
| 3-6. |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알고, 나의 일을 실천한다. |
| 3-7. | 친구와 협동하며 놀고,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 3-8. | 주변 사람과 서로 도우며 친밀감을 나타낸다. |
| 3-9. | 정직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안다. |
| 3-10. |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과 공공규칙을 지킨다. |
| 3-11. | 자연보호와 자원절약을 실천한다. |
| 3-12. | 우리 동네의 특징과 동네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알고, 돈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 |
| 3-13. | 우리나라의 상징과 전통놀이나 풍습에 관심과 자부심을 보인다. |
| 3-14. | 세계 여러 나라,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

□ 예술경험 영역의 3세용 관찰척도와 4세용 관찰척도

〈표 9〉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예술경험 영역

| 문항 | |
|-------------------|----------------------------|
| 3세 예술경험 영역 | |
| 4-1. | 음악적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
| 4-2. | 움직임과 춤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
| 4-3. | 미술적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
| 4-4. |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
| 4-5. |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를 리듬악기로 표현한다. |
| 4-6. |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이나 춤을 표현한다. |
| 4-7. | 미술활동에 참여하며 미술재료와 도구를 사용한다. |
| 4-8. | 일상생활 경험 관련 극놀이 표현을 즐긴다. |
| 4-9. |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즐긴다. |
| 4-10. | 다양한 예술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
| 4-11. | 자신의 예술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
| 4-12. |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

(표 9 계속)

| 문항 | |
|------------|--|
| 4세 예술경험 영역 | |
| 4-1. | 음악적 요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
| 4-2. | 움직임과 춤 요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
| 4-3. | 미술적 요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
| 4-4. | 생각이나 느낌을 노래로 표현하며 부른다. |
| 4-5. | 리듬악기로 연주하고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든다. |
| 4-6. | 도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움직임이나 춤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 4-7. |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미술활동에 참여한다. |
| 4-8. | 소품을 활용하여 역할과 상황을 극놀이 표현으로 즐긴다. |

자연탐구 영역의 3세용 관찰척도와 4세용 관찰척도

<표 10> 3, 4세 누리과정 관찰척도-자연탐구 영역

| 문항 | |
|------------|---|
| 3세 자연탐구 영역 | |
| 5-1. |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 5-2. |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가진다. |
| 5-3. | 물체를 세어서 5까지의 수량을 안다. |
| 5-4. |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안다. |
| 5-5. |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
| 5-6. | 두 물체의 길이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
| 5-7. |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 5-8. | 같은 것끼리 짝짓기를 한다. |
| 5-9. |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
| 5-10. | 자신의 출생과 성장이나 주변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 5-11. | 생명체를 소중히 여긴다. |
| 5-12. |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진다. |
| 5-13. | 간단한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가진다. |
| 4세 자연탐구 영역 | |
| 5-1. | 주변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 |
| 5-2. |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
| 5-3. |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탐색, 관찰의 방법을 활용한다. |
| 5-4. | 물체를 세어서 10까지의 수량을 안다. |
| 5-5. |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5-6. | 기본도형의 특성을 알고, 도형을 합하거나 나눌 수 있다. |
| 5-7. | 두 물체의 길이, 크기,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
| 5-8. |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한다. |
| 5-9. | 간단하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
| 5-10. |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기본적 특성을 알고,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표 10 계속)

| 문항 | |
|------------|--|
| 4세 자연탐구 영역 | |
| 5-11. | 자신의 출생과 성장이나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
| 5-12. |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 5-13. |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보고 자연현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
| 5-14. | 간단한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갖고 활용한다. |

3. 정책제언

가. 누리과정 유아평가 질적 수준 강화방안

- 지속적인 누리과정 평가 연구 및 개발
 - 누리과정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유아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관찰 척도의 지속적인 질적 수준 강화가 필요하고, 질적으로 개선된 평가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함.
 - 5개 영역에 따른 난이도 조정, 유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 및 정책효과 검증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 통합반에 대한 별도의 평가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의 반영
 - 유아교사의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교육과정에 교육평가 및 유아행동관찰 과목을 배정하고, 유아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해석에 대한 세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유아관찰방법을 체득하는 것과 보육·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목적에 맞게 관찰기술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야 함.
 - 현장 실습을 통해 관찰기술을 적용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양성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보수교육과정 및 교원 연수에 필수과목으로 반영
 - 현직 교사의 보수교육에 유아평가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배정하여 현장에서의 정확한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유아관찰방법, 유아관찰방법의 활용 및 적용을 우선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유아관찰척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보육·교육활동에서 유아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누리과정 평가를 위한 장학 및 컨설팅 실시
 -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을 통한 누리과정 운영평가 및 유아평가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유아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함.

나.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방안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3, 4세 누리과정 영역별, 문항별 정보제공의 효과 및 누리과정 운영의 방향성 제시를 기대할 수 있음.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므로,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유아의 발달정도와 특성을 관찰할 수 있음.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모든 문항에는 1(미흡), 2(보통), 3(우수)의 각 수준마다 약 3~4개의 관찰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평가의 내용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음.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각 영역에 대한 유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유아교사의 자체점검 효과를 가지고 있음.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사용가능한 유아관찰척도임.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아동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되었음.

-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유아)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유아관찰척도이므로 공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사용가능한 유아관찰척도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누구든지 본 연구에서 개발된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자가 평가와 유아 각 개인의 누리과정 적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3, 4세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 및 발달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개별 유아의 발달수준 점검이나 유아간의 상대적 비교가 목적이 아님.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 걸친 개별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교사들이 유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개발되었음.
 - 특정 영역에서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 스스로 누리과정의 각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유아교사가 3, 4, 5세의 연령에 맞는 교수 단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교사, 전문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유아교사는 개별 유아의 영역별 발달의 특성에 대해 학부모와의 면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유아에게 각 영역별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유아교사는 평가결과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과 교수의 실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부터 효과적인 지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보급 및 확산방안

□ 간략형 누리과정 3-5세 유아관찰척도의 개발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가 연중 상시로 학급의 유아들에게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3-5세 유아관찰척도의 간략형 버전의 개발이 향후 우선적인 연구 과제임.
- 특히 3세용 유아관찰척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의 세부내용과 3세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항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웹 구축을 통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의 배포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구조화된 유아평가척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 교사의 접근성과 보급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웹 구축을 통한 척도 보급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자가 평가와 더불어 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할 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아평가도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나귀옥·김경희(2012).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유아평가의 방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2(4), 465-492.
- 박찬옥·김지영·이종향(2011). 유아의 공정성 측정도구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5(4), 5-22.
- 이기숙 외(2012). 유치원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평가도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 이미화·이정림·여종일·김경미·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2).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 연구: 평가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정주영·엄지원·김희정·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2).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이은혜·이기숙(1996). 유아교육프로그램평가척도. 서울: 창지사.
- 장명림·이미화·송신영(2012). 3, 4세 누리과정 개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 누리과정 운영 협력을 중심으로

권미경

요약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중심 협력은 교사협력과 ‘지역사회센터활용’, ‘현장학습공동계획 및 실행 연계’, ‘농어촌교류 생태프로그램’, ‘환경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등 기타협력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짐.
- 연속 참여기관과 신규기관의 협력 평가결과는 기존기관이 기관운영, 시설 환경, 교사 협력, 부모 협력, 기타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협력이 유지될수록 협력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누리과정의 12개 생활주제 중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교통기관’ 등이 협력에 용이한 주제로 고려되었으며, 누리과정 중심 협력을 통해 원장과 교사는 ‘타 기관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된 효과를 높게 인지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시범연구를 통해 협력의 증진을 위한 성공요인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 권역별 협력 활성화, 우수한 시범 참여기관, 영차 홈페이지를 통한 협력 내용 공유, 지원체계의 적극적인 협력 지원, 지속적인 협력 동기 부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력 성과에 대한 성취감 등을 도출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저해요인은 교사 간 협력 시간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지원 격차, 늦은 시범기관 선정 시기 등이 고려되며 이를 개선함을 통해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범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함이 지적됨.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필요성 및 연구배경

가. 협력 필요성

- 정부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으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총괄, 조정기구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함(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2월 3일).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적 유사성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의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의 문체,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선택 다양성 보장에 대한 요구, 재정 확보, 영아(만 0~2세), 교사 자격 등을 감안할 때 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정부가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을, 2013년에는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만 3~5세를 아우르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시행함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
-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구분을 넘어, 재원 기관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영유아가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제시한 것이며, 실질적 의미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의미함.
-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교육·보육비용 지원에 힘입어 만 3~5세 취원 유아수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을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됨.
- 이에 따라 공통분모인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통합 모형 구축에 현장을 토대로 한 실질적 선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원고는 다음의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보완한 것임. 권미경·이윤진·조아라(2013).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적용과정 시범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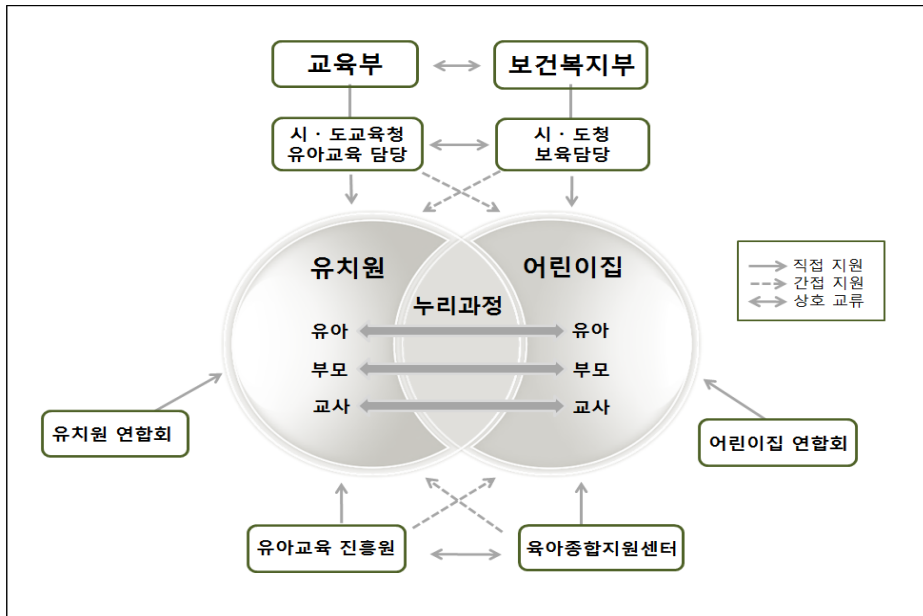
나. 연구배경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수행함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관련 연구를 추진해 옴.
- 2009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과 통합 모델 시범적용연구’를 시점으로 현장 중심 연구가 진행되어옴.
 - 1차년도에는 시범적용체제 개발 및 현장 적용 착수하여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홍천군 등 3개 지역에서 총 14개 시범기관(7쌍)을 선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을 추진함.
 - 2차년도(2010)에는 3개 시범지역에서 시범기관을 총 22개로 확대하여 협력 매뉴얼 개발, 소집단 협력형 착수 및 시범적용 1단계 평가를 시행함.
 - 3차년도(2011)에는 3개 시범지역 22개 시범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 2단계 평가, 시범지역 확대 및 전국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4차년도(2012)에는 시범사업 8개 지역, 4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성과를 도출함.
-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유아교육과 보육환경은 본 협력 시범연구에 공동 교육·보육과정이라는 구심점을 제공하고 상호협력의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계기가 됨.
- 이는 동시에 서로 다른 배경과 운영 특성을 지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으로의 누리과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본 5차년도 연구는 그동안 4차년도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현장모델 적용 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하나, 변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을 고려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체계의 협력모형을 제시하고 협력추진을 통해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모형 및 추진과정

가. 협력모형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과정인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그 운영을 교집합으로 고려한 5차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함.



[그림 1] 협력 시범연구 5차년도 협력모형

- 두 협력 시범기관은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교사, 유아, 부모 간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 자원, 지원을 공유하는 협력을 진행함.
- 지원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지원함.
 - 실선표시 부분인 보건복지부-시·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또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아교육진흥원-유치원으로 이어지는 직접 담당 지원체계 뿐 아니라 점선표시 부분으로 표현된 협력 상대 기관까지 가능한 지원 범위 확대를 지향함.

나.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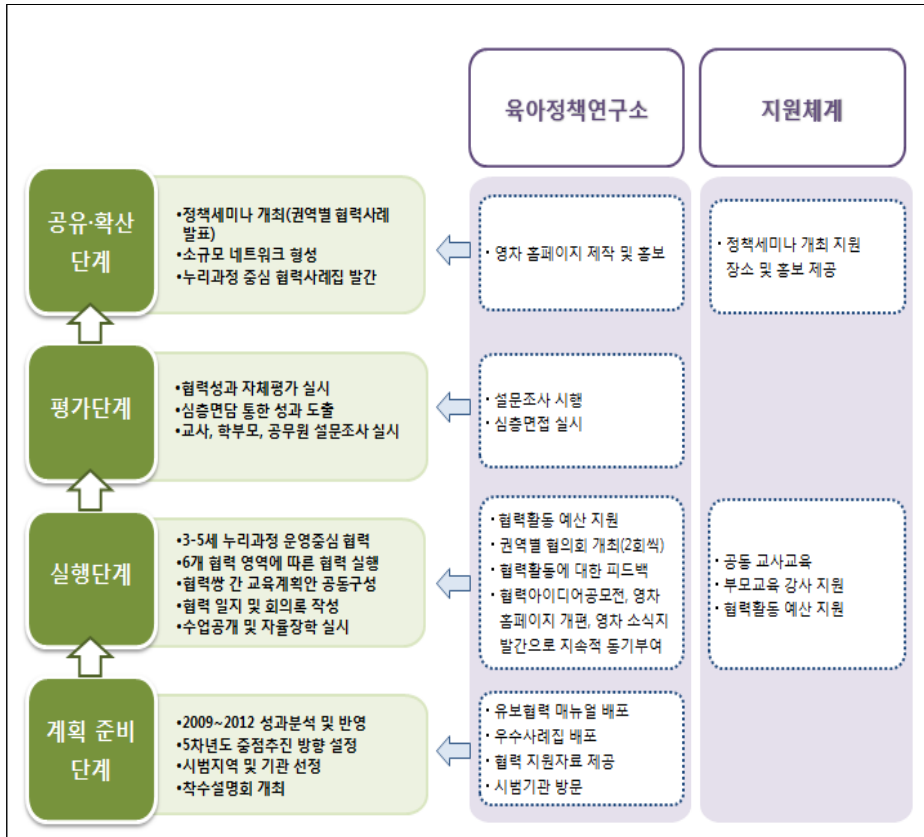
- 2013년은 시범지역을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하고 누리과정 운영 중심의 협력 전략과 특성을 구체화하고자 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으로 시행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중심의 협력에 중점을 둬.¹⁾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의 추진과정은 서로 다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됨. 협력 시범 연구의 추진과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음.

1) 1단계: 계획·준비단계

가) 시범기관 선정 및 권역 구성

- 전국 16개 시·도로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전국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근접성, 시설유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율, 교사와 원아 수 등을 고려하여 협력 쌍을 구성함.
 -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2012년 시범기관 중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2013년 신규지역에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추가 모집하여 전국에서 57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함.
 - 유치는 공립이 11개, 사립이 17개로 총 28개원이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12개, 법인 1개, 법인 외 4개, 민간 9개, 직장 3개로 총 29개원임.
- 전국 규모로 확대된 시범연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함.
 - 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총 15개 기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총 18개 기관),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총 12개 기관), 광주·전북·전남 지역(총 12개 기관)으로 구분함.
 - 2013년 연구는 시범기관 개별 쌍보다는 권역이 기초 단위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여 2012년도 시범협력에 참여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점 협력 쌍으로 하여 2013년 신규 참여 기관의 협력을 독려하도록 지원함.

1) 2013년도 시범연구를 월별로 추진해 온 경과는 <부록 1>로 첨부함.



자료: 문무경 외(2012),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분석 연구(IV), p. 31. 그림 III-2-1을 토대로 5차년도 연구 내용에 맞게 재구성함.

[그림 2] 5차년도 협력 시범연구 추진과정

- 전문성을 갖춘 자문진을 두어 협력을 돕고 권역 중심으로 협력을 위한 협의회와 공동 교사교육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세미나를 진행함.

나) 자문회의 개최

- 5차년도 착수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에 중점을 둔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4차년도 영차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서울 및 대전지역의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 8인과 자문위원 1인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함.

다) 누리과정 중심의 협력 양식 구성

- 협력하는 양 기관이 자체적으로 공통의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누리과정 중심의 실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범기관 원장 5인과 자문위원 1인의 서면검토를 거쳐 '누리과정 중심 협력 양식'을 구성함.
 - 협력 양식은 누리과정을 위한 연령별 연간 협력 내용, 생활주제별 교육계획안, 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안, 단위활동 협력일지, 단위활동 협력 일정표로 구성됨.
 - 누리과정을 위한 연령별 연간 협력 내용에는 협력하기 원하는 연령 및 생활주제에 따라 기관운영의 협력, 교사 협력, 부모 협력, 시설환경 및 교재 교구의 협력, 수업활동의 협력, 예산 협력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라) 협력 전 조사 실시

- 5차년도 전체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 지원체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차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협력 전 조사를 실시함.
 - 전체 기관의 원장 및 교사(342명), 시범기관을 지원하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 공무원(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차프로젝트의 참여 경험과 만족도, 협력 필요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강점, 협력을 위한 지원과 향후 추진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함.

마) 착수설명회 개최

- 2013년도 연구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권역별 연간 협력 계획 및 쌍별 협력 계획 수립을 위해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함.
 - 선정된 57개 전체 시범기관의 원장과 주 담당교사,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참여 지역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함.

바) 권역별 연간 협력계획 수립

- 착수설명회에서 권역별 논의를 통해 수립한 협력 시범기관 간, 지원체계 간 협력안을 토대로 권역별 연간 협력계획안을 구성함.

2) 2단계: 실행단계

- 원활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받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한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부모, 교재교구, 예산, 프로그램의 협력을 모색함. 진행한 협력 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함.

가) 시범사업 홍보물 지원(학부모 안내용 리플릿)

- 2013년 영차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16개 시·도의 시범기관 총 57개원에 재원 원아 수만큼 배부함. 총 8,000부를 제작하여 시범기관 학부모 7,000여명에게 발송하여 자녀의 재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는 영차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나) 영차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협력에 중점을 둔 5차년도 영차프로젝트 내용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개편함.
- 홈페이지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영차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링크하도록 독려하고, 교육·보육계획안 뿐만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질 때마다 구체적인 단위활동 협력일지를 시범기관이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권역별 시범기관 협의회 개최

- 실제 협력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시범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권역별 시범기관 협의회를 개최함.
- 권역별 협의회는 협력기관과 지원체계가 한 자리에 모여 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라) 영차소식지 발간 및 배포

- 권역별 협력 진행과정과 협력 시범연구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 영차소식지로 발간, 배포함.

<표 1> 2013 권역별 협의회

| 구분 | 1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2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3권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4권역 (광주, 전북, 전남) |
|-------------|----------------------------|--------------------------------|----------------------------|------------------------|
| 협력 시범기관 수 | 15개 | 18개 | 12개 | 12개 |
| 제1차 권역별 협의회 | 춘천시 한림성심대학교 부속한림유치원 |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광주광역시 예향유치원 |
| 시범기관 참석 | 79명 | 33명 | 22명 | 29명 |
| 지원체계 참석 | 2명 | 8명 | 3명 | 8명 |
| 제2차 권역별 협의회 |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 오송시 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 | 전남과학대학교 부설어린이집 |
| 시범기관 참석 | 30명 | 20명 | 20명 | 21명 |
| 지원체계 참석 | 7명 | 6명 | 8명 | 2명 |

마)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범기관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영차프로젝트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함.
 -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 협력실태와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협력 전략, 향후 기대 효과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3개의 협력 아이디어가 제출되어 평가 후 시상함.
 - 평가는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위한 적합성, 2)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3) 상세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영차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질 높은 누리과정 중심의 운영방안을 모색함.²⁾

3) 3단계: 평가단계

- 협력 후 성과에 대해 분석 평가하기 위해 참여기관장의 협력 내용 자체평가, 홈페이지 협력 내용 분석, 참여주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2) 협력 아이디어의 공모 내용은 <부록 2>로 제시함.

가) 심층면담을 통한 성과 도출

- 협력 쌍이 선정한 누리과정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협력진행 현황, 협력성과 및 만족도, 협력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한 의견을 도출함.

나) 원장 및 교사, 학부모,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 9월 중에는 협력 내용과 성과에 대해 협력 시범기관의 원장 및 교사, 학부모와 지원체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영차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협력성과 및 추진정도, 협력의 필요성, 협력의 어려움, 협력을 위한 지원과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함(원장/교사 503명, 학부모 1,006명, 지원체계 담당자 20명).

다) 협력성과 자체평가 실시

- 9월~10월에 걸쳐 협력 시범기관의 원장 57명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행정) 협력, 시설환경 및 교재교구 협력, 교사 협력, 부모 협력, 예산 협력, 기타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협력 수준을 알아봄으로 5차년도의 영차 협력 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을 통해 기관의 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부분 및 협력에 있어서의 기관의 특징, 장·단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4) 4단계: 공유·확산단계

가) 누리과정 중심 협력사례집 발간

- 착수보고회에서 공동 수업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본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범 기관 공통으로 가능하면 양식을 통일하여 협력 결과를 담은 사례집 구성 자료를 수합함.
- 협력사례집은 누리과정 12개 생활주제 중 선정한 협력주제에 따른 교육·보육 계획안 및 단위활동 협력일지를 8~10월에 걸쳐 수집하고, 10월에 5차년도 영차프로젝트 협력사례집을 발간함.

나) 결과보고 정책세미나 개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협력성고를 시범·비시범기관에게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체 시범기관 및 지원체계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결과보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연구진과 시범기관 원장 및 담당교사, 16개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및 보육정보센터장 등 120여명이 참석함.
 - 협력에 대한 사상과 각 권역별 시범기관 및 지원체계의 우수 협력사례를 공유함. 또한, 5차년도 추진과정과 협력 후 설문결과를 보고함.

3.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 성과 분석

가. 협력영역별 성과 분석

- 협력영역별 성과 비교: 기타 협력³⁾(70.60점)과 교사 협력(70.56점)이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기관운영 협력은 64.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신·구 시범기관별 평가 비교: 기존기관(13개) 93.7점, 신규기관(43개) 77.6점으로 기존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보임.

나. 누리과정 중심 협력 성과 분석

- 누리과정 전개에 따른 협력성과
 - 교육·보육계획 수립: 공동 주제 선정, 계획안 구성, 교재교구 준비, 현장학습 및 확장활동 계획을 공동으로 하면서 교사의 업무 분담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창출함.
 - 실행: 누리과정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교육·보육내용이 다양화 또는 심화되었으며, 양 기관이 공동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유아들의 사회성 향상에도 기여함.
 - 평가: 자체평가 및 공동 교사회의를 통한 반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권역별 협의회 또는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지원체계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기도 함.

3) '지역사회센터활용', '현장학습공동계획 및 실행 연계', '농어촌교류 생태프로그램', '환경보존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등의 '지역적 또는 단위기관의 특색활동 계획 및 실행'

- 공유·확산: 영차 홈페이지 활성화, 협력사례집 발간, 권역별 협의회와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유·확산된 협력 결과는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음.
- 누리과정 생활주제별 협력 특징
 - 가장 활발한 생활주제는 '우리동네(79개 활동)'였으며, '동식물과 자연(73개)', '교통기관(52개)' 등임. '형님이 되어요'는 협력활동이 진행되지 않음.
 - 협력을 선호하는 주제 및 기피하는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리적 위치 등의 기관 특성, 교사들이 선호하는 주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기별로 선택하는 보편적인 주제와 관련 있음.

다. 협력주제 중심 만족도 및 요구 분석

- 원장 및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
 -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들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협력과 교사 협력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인식함.
 - 영차프로젝트로 '타 기관에 대한 이해 확대'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음.
 - 전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사 협의를 위한 시간 확보(34.7%)'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 스마트폰 어플 등이 이용됨.
 - 전개한 협력 생활 주제 및 적절한 협력 주제는 '우리 동네'로 나타남.
 - 육아정책연구소의 지원 중 '영차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가 협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체계의 도움 중에서는 '개발자료 제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향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예산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
-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의견이 60.6%, 매우 크다는 의견이 25.3%였고, 그 중 '프로그램의 차이(50.9%)'가 가장 크다고 인식함.
 - 영차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해 88.5%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협력활동 중 '누리과정을 함께 실시한다'는 것을 안다(52.4%)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함이 31.6%, 조금 필요함이 43.2%로 학부모들은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학부모의 64.7%가 협력활동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아이들의 친구관계가 넓어지기 때문(35.3%)'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협력 후 이전에 비해 향상된 부분으로는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582명)'을 가장 높게 인식함.
- 지원체계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
 - 협력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활동은 '관할 시범기관의 협력활동 독려(75.0%)'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지원 활동은 '공동 교사교육, 연구수업, 참여기회, 누리과정 장학, 컨설팅 제공(35.0%)'이었음. 반면, '지원 예산 확보(35.0%)'를 가장 어려운 지원 업무로 인지함.
 - 지원체계는 협력 시범운영의 협력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향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독려와 관심, 협력 예산의 지원에 대한 필요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

- 본 연구는 동일 연령의 유아를 교육 또는 보육하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경쟁적 관계이기보다는 서로가 지닌 강점을 중심으로 상생적인 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그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가는 시범연구임.
- 5차년도 시범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활성화요인으로 확인함을 통해 성공요인을 강화하고 저해요인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협력 성공요인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

-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전격시행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도모하는 영차프로젝트 5차년도 시범연구의 성공적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첫째, 동일 연령의 유아에게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보육내용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는 설문조사 결과 뿐 아니라, 3월의 시범기관 신청 과정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관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함을 통해 알 수 있었음.
- 둘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중심점이 되었음.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보육과정 중심 협력이 가능하였음.
- 셋째, 누리과정은 교사의 협력 참여에 동기를 부여함. 새로운 교육·보육과정의 시행 첫 해인 만큼 현장 교사에게도 교실에서의 적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영차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기관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 교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하였음.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개발 자료나 교육의 기회를 시범참여 어린이집까지 공유하거나, 보육정보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참여 유치원까지 공유할 수 있었음.

2) 권역별 협의회 활성화

- 5차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특징적 변화 중 하나는 2013년 시범기관이 전국 16개 시·도의 57개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단위로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4개의 권역을 구성하였다는 것임. 권역별 시범기관, 전문가, 지원체계 담당자가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회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5차년도의 성공요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첫째, 권역별 협의회는 협력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서로에게 긍정적 측면에서 경쟁적 협력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됨.
 - 둘째, 시범기관과 지원체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場)으로 기능함.
 - 셋째, 연속 시범기관의 경험, 시·도교육청과 보육정보센터 컨설팅 제공을 통해 시범협력 뿐 아니라 누리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됨.

- 넷째, 권역별 협의록을 영차소식지로 발전시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메일로 발송하여, 각 권역의 협력내용을 전체 시범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협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함.

3) 우수 기관의 시범참여

- 시범참여 기관의 선정 시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았고, 자발적 참여 동기가 강한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우수하고 열정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발할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첫 시행되는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1개 생활주제 중심 협력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시범협력과정에 우수기관의 참여가 향후 현장 확산 적용 시 일반화를 위한 수준을 제고할 때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도 있으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범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관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됨.

4) 영차 홈페이지를 통한 협력 내용 공유

- 연구의 확산을 위해 5차년도 연구는 지역과 시범기관의 수를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기관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기는 쉽지 않았음.
- 5월에 확장·개편 된 영차 홈페이지는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성공요인으로 가늠할 수 있음. 물론 4차년도까지도 홈페이지가 운영되었으나 5차년도에 홈페이지를 확장 개편하고 올리는 내용을 홈페이지 배경화면에 실시간 나타나도록 구성함으로써 쌍방향적 활성화를 이룸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하였다고 평가됨.
 - 첫째,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기관 및 지원체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로의 협력을 지원함.
 - 둘째, 탑재된 기관의 협력내용은 협력에 경쟁적 동기를 부여함.
 - 셋째, 누리과정 생활주제별로 검색 가능한 협력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에서 누리과정 운용을 지원하는 유용한 자료가 됨.
 - 넷째, 쓰기 권한은 시범기관, 지원체계 등 연구 참여자로만 한정하였으나, 검색은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 공유 범위를 확대함.

5) 지원체계의 적극적 지원

- 지원체계의 협력 지원의지가 협력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함.
- 5차년도에 시범지역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체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지원을 논의함.
- 특히 2012년 4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원체계 담당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에 대한 이해가 확대됨으로써,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나타남.
 - 첫째, 협력 과정에 이루어진 지원체계의 지원은 직접적 지원의 효과를 통해 누리과정 협력을 활성화함.
 - 둘째, 지원체계의 지원은 시범기관 원장과 교사에게 협력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6) 지속적인 협력동기 부여

- 누구든지 실행해보아서 좋으면 더 하게되므로 협력성과에 대해 시범 참여 기관 스스로의 확신이 서기까지는 협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계속되어야 함.
- 협력 시범기관의 성과에 대한 체득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진행을 위한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음.
 - 시범기관 방문, 영차소식지 배포,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협력사례 발굴 포상, 권역별 협의회 개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정보센터 견학 기획 마련 등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획·진행되었고 현장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능을 발휘함.

7) 최종 성과 공유를 통한 성취감

- 협력성과 공유는 참여자에게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음.
- 10월 초 2013년 5차년도 시범참여자(시범기관, 지원체계, 연구진) 전체가 최종 '결과보고 정책세미나'로 모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권역별 협력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협력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함.
 - 이는 5차년도 연구에서 새로이 시도한 부분으로 2012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범에 참여하였던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이 '협력을 마치고 마무리가 없는 듯하다'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임.

- 이와 같이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1~4차년도 연구와 차별화된 성공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결과보고 정책세미나’는 참여자들에게 협력성과에 대한 성공경험으로 작용하여 향후 협력 참여에 새로운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57개 전체 시범기관의 누리과정 중심 협력사례를 담은 ‘2013 영차프로젝트 협력사례집’을 발간하여 시범연구 참여한 모두에게 배포함.
- 이는 시범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가능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함.

나. 협력 저해요인

1) 늦은 시범기관 선정 시기

-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3월에 시범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4월에 착수설명회를 개최하는 연구 진행 시기가 현장의 어려움을 증폭시킴.
- 이로 인해 교사들에게는 협력 쌍이 선택한 협력 주제에 맞추어 연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부가적 업무로 인식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쉽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 협력 자체가 부가적 업무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

2) 교사 간 협력 시간 확보의 어려움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차이⁴⁾로 인해 양 기관 교사들의 협력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움.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방법이 보완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력의 장애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성공적 협력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임.

4)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오후 7시 30분까지 정규보육이 진행되어 유치원보다 긴 시간을 운영함.

3) 지원체계의 지원 격차

- 5차년도 시범연구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권역별, 지역별 지원체계의 참여 정도에는 격차가 있음.
 - 영차프로젝트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체계의 지원을 관할 기관 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까지 확장하여 협력을 독려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어떤 지역은 지원체계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 협력 전 설문 결과에서 시범기관의 협력성과에 대한 기대 중 '지원체계의 관계 향상'이라는 응답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지원체계의 파급력은 간과할 수 없음.
 - 시범연구의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연구 종료 후의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다. 협력 활성화 요인

1) 시범참여에 대한 보상

- 시범참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시범연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요구가 많음.
- 협력의 성과가 체득되기 전까지 협력 과정은 시범기관의 원장이나 교사에게 부가적 업무로 여겨짐.
- 참여하는 교사나 기관에 연구 가산점 등 소정의 공로 인정에 대한 보상이 마련된다면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예산 지원

- 2013년도 연구비 범위 안에서 지원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였다는 의견과 그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은 협력 활성화를 돕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3. 12. 3.).

문무경·권미경·오유정·황지영(2012).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IV)- 시범지역 확산에 따른 영차프로젝트 활성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부록 1. 5차년도 협력 시범연구 월별 추진내용

〈부록 표 1〉 5차년도 협력 시범연구 월별 추진내용

| 월별 | 추진내용 |
|-----|--|
| 2월 |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현장 운영 협력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2. 28, 육아정책연구소) |
| 3월 | - 시범지역 및 기관 선정 (16개 지역, 전국 57개 기관) - 누리과정 중심 협력 양식 구성 - 협력 전 조사 실시 (시범기관 원장과 교사 및 지원체계 담당 공무원) |
| 4월 | - 착수설명회 개최 (4. 5, 대한상공회의소) - 권역별 연간 협력계획 수립 - 3권역 제1차 시범기관 협의회 개최 (4. 22, 대전유아교육진흥원) - 3권역 영차소식지 1호 발간 (4. 25) - 시범기관 전체 학부모대상 영차 리플릿 배포 (학부모용 안내 책자) - 1권역 제1차 권역별협의회 개최 (4. 27, 한림성심대학교부속 한림유치원) - 1권역 영차소식지 1호 발간 (4. 29) |
| 5월 | - 시범기관 협력예산 지원 - 2권역 제1차 시범기관 협의회 개최 (5. 11, 대구유아교육진흥원) - 2권역 영차소식지 1호 발간 (5. 13) - 영차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4권역 제1차 시범기관 협의회 개최 (5. 22, 광주예향유치원) - 4권역 영차소식지 1호 발간 (5. 24) |
| 6월 | - 지원체계의 지원현황 조사 - 3권역 제2차 권역별협의회 개최 (6. 1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 - 3권역 영차소식지 2호 발간 (6. 17) - 협력 전략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6. 17~30) |
| 7월 | - 4권역 제2차 권역별협의회 개최 (7. 5, 전남과학대학교부설어린이집) - 1권역 제2차 권역별협의회 개최 (7. 19, 서울시보육정보센터·시청어린이집) - 2권역 제2차 권역별협의회 개최 (7. 20, 부산시보육정보센터) - 1권역, 2권역, 4권역 영차소식지 각 2호 발간 -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총 6개 기관 선정) |
| 8월 | - 영차사례집 발간을 위한 협력 일지 작성 요청 |
| 9월 | - 영차프로젝트 착수 후 설문조사 실시 (9. 4~16) - 대전광역시 영차프로젝트 선도유치원 연구수업 (9. 24~25) |
| 10월 | - 정책세미나 (10. 1, 대한상공회의소) - 2013 누리과정 중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사례집 발간 |
| 11월 | - 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V) 최종보고 (11. 7) - 2013년 연구결과와 2014년 연구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부록 2. 협력 아이디어 공모 내용

〈부록 표 2〉 협력 아이디어 공모 내용

| 기관명 | 내용 |
|--------------------|---|
| 오송유치원 |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교사들 간의 협력방안으로 유아교육의 갈길 방안 모색 - 지원청의 지원을 통한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연수 방안 제시 |
| 의령유치원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협력의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영차프로젝트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과 공개수업 활성화 방안 제시 |
| 한송이어린이집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SNS형식의)을 이용한 협력 -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협력 방안 제시 |
|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청사 어린이집 | ‘영차와 친해지기’과정을 통한 유아의 참여도 증진 사례 - ‘영차’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자료 및 방법을 통한 접근 방안 제시(영차이야기, 영차노래, 영차장식물 만들기) |
| 금일어린이집 | 자원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의 생활화 - 시범기관 간 합동 아나바다 실천을 통한 협력 방안 제시 |
| 선창유치원 |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영차프로젝트 활동 방안 -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누리교육과정 영역별 협력내용과 방법 |
| 대전 갈마유치원 | 가정과 연계한 자연체험 주말 가족프로그램 공동 운영 -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후 자연체험 주말 가족프로그램의 협력 운영 방안 제시 |
| 동호어린이집 | 영차프로젝트 협력기관 자체 교사교육 - 영차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교사교육 방법과 절차 제시 |
| 중앙유치원 | 더 높게, 더 깊게, 더 멀리 향하는 영차프로젝트 - 지원체계의 지원, 시범기관 원장 공동연수, 교사 간 의견 교환 방법 등의 협력방안 제시 |
| 회기동어린이집 | 부모 협력(부모 양육정보 공유와 교육) -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동부모교육 방안 제시 |
| 강원대어린이집 | 영양사 공동 채용 및 운영 - 영양사 공동 채용과 협력 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제시 |
| 새뜸어린이집 | 소중한 우리 문화재 지키기 - 교육과정의 원활한 교류방법과 지역 특색 프로그램 활용 방안 |
| 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등지장학활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등지장학활동에 시범기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제시 |

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김은설

요약

- 유아기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맥락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정부는 최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인성교육 우수기관의 선정, 교육청별 유아 인성교육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해외 국가는 프로그램화된 다양한 인성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학급에서 학교 폭력의 대표 유형인 따돌림과 신체폭력, 언어폭력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반수 정도가 담당 학급에서 또래 간 따돌림이나 배척 행동, 공격성,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을 보고함.
- 교사 및 부모 대상 인성교육 기회 확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등의 측면에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1. 문제제기

-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초·중·고를 주 대상으로 하고 유아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는 보편적으로 유아기의 문제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사후 처방이 아니라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기 아동이 속한 기관을 학교폭력 예방의 범위에 포함하여 교육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함.
- 정부는 2012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으며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피해를 감소라는 효과를 얻었음. 그러나 현장의 낮은 자율성과 예방교육의 부족을 인식하고 2013년 7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재수립하여 추진 중임. 이는 보다 예방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학교폭력을 인성교육을 통한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정책 대상에 취약한 유아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만 4~5세 이상 유아기 아동을 이미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인간 발달에 있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기는 유아기임.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은 이 시기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정신분석자 프로이드는 죄책감과 양심의 발달시기를 4세로 잡았고 인지발달론자 피아제는 규칙, 질서, 사회정의에 대해 인식기를 5세를 꼽은 바 있음. 미국의 학자 카모스와 윌리(Karr-Morse & Wiley, 1997) 또한 공격성과 타인 괴롭힘(bullying)은 4세경 발견되므로 이 시기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함.
 - 김영옥 등(2007)은 유아기가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해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함. 또한 가소성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습관 형성을 하는 데 가장 용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도 하므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적기임을 주장함(김영옥·송혜린·이현미, 2007). 다시 말해 유아기에 잘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서 학교 폭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 인성 지도가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학급에서 학교 폭력의 대표 유형인 따돌림과 신체 폭력, 언어폭력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반수 정도가 담당 학급에서 또래 간 따돌림이나 배척 행동, 공격성,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을 보고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보육과정 외에 인성교육에 대해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해 보임. 교사들 중 유아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은 57.2%에 불과함(김은설 외, 2013).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맥락에서 탐색해 보고자 함.

2. 국내외 유아기 인성교육 정책 현황

가. 국내 유아 인성교육 정책

-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보육 통합 ‘누리과정’의 도입
 - 2012년 제정된 만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면, 정부가 기본 구성 방향 중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만 5세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임.
 - 유아기부터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협력 등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각 영역의 내용뿐 아니라 성격 및 목표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목표가 실천 내용으로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개 영역 모두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음.
- 정부의 인성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 교육부는 2011년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2012년에는 이어서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일선 유치원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보다 실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운영’ 사업을 추진함.

- 이 사업은 누리과정 속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하여 재정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유치원 140개, 어린이집 140개 등 총 280개 기관이 선정됨.
- 시·도 교육청별 인성교육 정책 사업 추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강원·광주·충청남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2013년 주요시책 및 세부시책 중 하나로 ‘인성교육’(또는 ‘창의·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광주·충청남도는 ‘품성교육’, 또는 ‘인간교육’이라는 시책 하에 인성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전국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인성교육 관련 사업 추진
 - 전국적으로 보육정보센터 2013년 현재 총 68개 중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25개 센터이며 12개 시·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즉 전체 중 37%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이와 관련한 사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나. 국외 유아 인성교육 정책

- 미국은 1994년 이후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성교육의 특징이며 학교 외 사설기관들의 연계와 협력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CASEL, Second Step, Get Real About Violence 등이 있음.
- 일본은 유토리 교육을 인성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학업부진 결과에 대한 촉구로 후퇴한 정책이 되었음. 인성 중심 유아놀이 교육이 있음.
- 핀란드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KiVa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왕따 예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핀란드 전 학교의 90%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30%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함.

3. 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와 요구¹⁾

가. 조사의 개요

- 연구방법으로서, 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000개원을 표집하여 각 기관의 원장 또는 교사 1명과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교사의 경우 가능한 한 연령이 높은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원장과 교사, 부모가 각각 1,004명으로 총 2,008명이 설문에 응답함.

〈표 1〉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교사 | | | 부모 | | |
|-------|--------|--------------|----|-------------|--------------|
| | 구분 | 비율(빈도) | | 구분 | 비율(빈도) |
| | 전체 | 100.0(1,004) | | 전체 | 100.0(1,004) |
| 성별 | 남 | 0.9(9) | 성별 | 남 | 2.8(28) |
| | 여 | 99.1(995) | | 여 | 97.2(976) |
| 연령 | 20대 | 29.4(295) | 연령 | 20대 | 2.5(25) |
| | 30대 | 37.5(377) | | 30대 | 69.1(694) |
| | 40대 | 25.7(258) | | 40대 | 26.6(267) |
| | 50대 이상 | 7.4(74) | | 50대 이상 | 1.8(18) |
| 근무 기관 | 유치원 | 50.2(504) | 학력 | 중졸 이하 | 0.5(5) |
| | 어린이집 | 49.8(500) | | 고졸 | 24.3(244) |
| | | | | 2~3년제 대학 졸업 | 30.7(308) |

나. 실태 조사 결과

1) 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전체의 48.8%가 인성교육의 의미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배려·양보하는 행동 지도’임.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도 마찬가지로의 비율을 보임.

1) 본 페이퍼는 김은설·최은영·조아라(2013)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보고서’와 2014년 3월 부산대학교의 누리과정 발전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은설(2014)의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작된 것임.

〈표 2〉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의미

단위: %(명)

|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 배려· 양보 행동 지도 | 이해· 공감 력 양성 | 윤리· 도덕적 덕목 교육 | 자기 존중 태도 배양 | 규칙· 질서 준수 | 부모· 교사에 순종 | 전통적 덕목 교육 | 계 |
|----|----------------------|-----------------------|----------------------|------------------------|----------------------|-----------------|------------------|-----------------|--------------|
| 교사 | 48.8 | 23.2 | 13.0 | 7.7 | 5.1 | 0.8 | 0.7 | 0.6 | 100.0(1,004) |
| 부모 | 47.5 | 19.4 | 11.9 | 8.5 | 5.0 | 4.2 | 2.5 | 1.1 | 100.0(1,004)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99.2%의 교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도덕적 인품 함양'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성 향상'이 26.9%, '올바른 자기 이해'가 16.0%였음.
- 유아기의 인성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주체가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의 93.4%가 가정이라고 응답하였고,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5.6%, 사회 및 국가라는 응답이 0.6%, 학교(초·중등)라는 응답이 0.4%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치원 교사(95.2%)가 어린이집 교사(91.6%)에 비해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음.
 -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교사 응답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낮은 편이었음.

〈표 3〉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주체

단위: %(명)

| | 가정 |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 사회, 국가 | 학교 (초중등) | 계 | $\chi^2(df)$ |
|---------|------|------------------|--------|-------------|--------------|--------------|
| 교사 | 93.4 | 5.6 | 0.6 | 0.4 | 100.0(1,004) | |
| 부모 | 85.6 | 12.7 | 1.1 | 0.6 | 100.0(1,004) | |
| 교사 유형 | | | | | | |
| 유치원 교사 | 95.2 | 4.6 | 0.2 | 0.0 | 100.0(504) | 9.0(3)* |
| 어린이집 교사 | 91.6 | 6.6 | 1.0 | 0.8 | 100.0(500) | |

* $p < .05$

-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하는 역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높은 점수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이 가장 높은 점수(5점 척도 4.78)를 나타냄.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각각 4.7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표 4〉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

| 항목 | 단위: %(명), (점) | | | | 평균 (5점 척도) |
|--------------------|---------------|-----|----------|----------|-------------------|
|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조금 중요 | 매우 중요 | |
|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식 | 0.1 | 2.1 | 20.4 | 77.5 | 100.0(1,004) 4.75 |
| 유아에 대한 열의 | 0.1 | 4.3 | 24.9 | 70.8 | 100.0(1,004) 4.67 |
| 유아 개인차를 이해하는 능력 | 0.1 | 2.8 | 21.1 | 76.1 | 100.0(1,004) 4.73 |
| 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지식 | 0.1 | 2.3 | 25.1 | 72.5 | 100.0(1,004) 4.70 |
| 유아 감정 공감 및 이해하는 능력 | 0.1 | 3.3 | 18.6 | 78.1 | 100.0(1,004) 4.75 |
|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 | 0.1 | 2.5 | 16.6 | 80.9 | 100.0(1,004) 4.78 |

- 유아기 인성교육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지도를 하도록 지원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기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련 있다’는 의견이 99.2%였음.

2) 기관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 기관 내에서 유아들 간 따돌림 또는 배척 현상을 목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볼 수 있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유아들 중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공격성향 아동이 있다고 보고한 교사가 49.7%로 상당히 높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45.4%가 동의함.
- 유아들 간 욕이나 비속어 등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남.

- 발달이 느리거나 허약하여 또래로부터 쉽게 괴롭힘을 당하는 취약 대상이 있다고 보는 교사도 53.3%로 과반이 넘었음. 비율로 보면 이들이 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짐작됨.

〈표 5〉 유아반 내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 | | | 단위: %(명) |
|--------------|------|------|--------------|
| | 없음 | 있음 | 계 |
| 따돌림 | 48.0 | 52.0 | 100.0(1,004) |
| 공격성향 아동 | 50.3 | 49.7 | 100.0(1,004) |
| 욕설/비속어 사용 | 63.3 | 36.7 | 100.0(1,004) |
| 괴롭힘 표적 가능 아동 | 46.7 | 53.3 | 100.0(1,004) |

-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행동지도가 필요한 아이의 경우 지역 연계를 통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26.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음.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전문기관 도움을 경험한 비율이 7% 가량 높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를 보임.

〈표 6〉 문제아동 행동 지도 시 전문기관 도움 경험

| | | | | 단위: %(명) |
|------|------|------|--------------|--------------|
| | 있음 | 없음 | 계 | $\chi^2(df)$ |
| 전체 | 26.7 | 73.3 | 100.0(1,004) | |
| 기관유형 | | | | |
| 유치원 | 23.0 | 77.0 | 100.0(504) | 7.0(1)** |
| 어린이집 | 30.4 | 69.6 | 100.0(500) | |
| 지역유형 | | | | |
| 대도시 | 34.1 | 65.9 | 100.0(422) | |
| 중소도시 | 20.8 | 79.2 | 100.0(504) | 21.0(2)*** |
| 농어촌 | 24.4 | 75.6 | 100.0(78) | |

** $p < .01$, *** $p < .001$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61.7%로 가장 높았고, 인사하기 등 예절교육, 가정연계활동 등이 20.0%를 넘는 비율을 보였음. 다음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현장학습 등 체험활동의 순서였으나 부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동·식물 기르기 등의 응답은 적었음.

〈표 7〉 인성교육의 내용(복수 응답)

단위: %, 명

| | 생활 습관 지도 | 예절 교육 | 가정 연계 활동 | 그림책 활용 | 대화 | 체험 활동 | 교사 술선 수법 | 프로 그램 활용 | 부모 교육 | 동식물 기르기 | 기타 | 사례 수 |
|----------|----------------|----------|----------------|-----------|------|----------|----------------|----------------|----------|------------|-----|---------|
| 전체 | 61.7 | 29.6 | 24.3 | 14.5 | 13.6 | 13.0 | 11.9 | 8.1 | 6.5 | 2.7 | 2.7 | 1,004 |
| 교사경력 | | | | | | | | | | | | |
| 5년미만 | 58.3 | 33.9 | 24.0 | 12.8 | 14.5 | 12.0 | 14.5 | 7.9 | 7.4 | 2.1 | 1.2 | 242 |
| 5~10년미만 | 63.9 | 25.2 | 21.8 | 14.3 | 14.6 | 14.8 | 11.5 | 8.7 | 6.7 | 2.5 | 2.5 | 357 |
| 10~15년미만 | 57.4 | 34.7 | 21.3 | 19.8 | 11.4 | 13.9 | 12.4 | 5.4 | 5.4 | 3.0 | 2.0 | 202 |
| 15년이상 | 66.0 | 27.1 | 32.0 | 11.8 | 13.3 | 10.3 | 8.9 | 9.9 | 5.9 | 3.4 | 1.5 | 203 |

- 누리과정에 의해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다고 보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배려’ 덕목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95점을 보여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80.4%가 배려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존중’에 대해서는 배려 덕목보다 조금 낮은 3.91점이 평균 활용 점수로 나왔고 전체의 73.3%가 존중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나눔’에 대한 교육의 실천 정도에 대해 교사들은 평균 4.02점을 부여함으로써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임. 또한 ‘질서’는 5점 척도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다른 덕목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85.2%의 교사가 질서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함.
 -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덕목 중 하나인 ‘효’에 대한 교육의 실천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보면, 다른 다섯 개의 덕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교사는 전체의 63.8%에 불과하여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덕목으로 제시된 앞서의 ‘질서’에 비해 21.4% 차이가 남. 즉, 교사들은 ‘효’ 덕목에 대한 교육 실천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임.

〈표 8〉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별 교육 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 덕목 |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 보통임 | 대체로 잘 이루어짐 | 매우 잘 이루어짐 | 계 | 평균 |
|----|-------------|--------------|------|------------|-----------|--------------|------|
| 배려 | 0.1 | 0.8 | 18.6 | 65.3 | 15.1 | 100.0(1,004) | 3.95 |
| 존중 | 0.0 | 1.2 | 25.5 | 54.9 | 18.4 | 100.0(1,004) | 3.91 |
| 협력 | 0.0 | 0.3 | 15.2 | 59.6 | 24.9 | 100.0(1,004) | 4.09 |
| 나눔 | 0.1 | 1.0 | 17.8 | 58.7 | 22.4 | 100.0(1,004) | 4.02 |
| 질서 | 0.0 | 0.5 | 14.3 | 56.7 | 28.5 | 100.0(1,004) | 4.13 |
| 효 | 0.4 | 3.6 | 32.2 | 51.0 | 12.8 | 100.0(1,004) | 3.72 |

-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3.2%), 다음으로는 전공서적이거나 기관자체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는 주로 참고하는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유치원 교사는 38.9%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서적을 선택한 비율이 유치원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음.
 - 유치원 교사는 기관 내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21.2%가 선택하였으나 어린이집은 이 항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밖의 미디어매체 활동이나 인터넷카페, 사설기관 발간 자료집 등을 참고한다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인성교육을 위한 참고자료

단위: %(명)

| | 교육부, 교육청 발간 자료 | 전공 서적 | 기관 자체 프로그램 | 미디어 매체 활용 | 인터넷 카페 | 사설 기관 발간 자료집 | 기타 | 계 | $\chi^2(df)$ |
|------|----------------|-------|------------|-----------|--------|--------------|-----|--------------|--------------|
| 전체 | 23.2 | 19.8 | 19.6 | 14.6 | 12.7 | 9.1 | 0.9 | 100.0(1,004) | |
| 기관유형 | | | | | | | | | |
| 유치원 | 38.9 | 14.3 | 21.2 | 11.5 | 8.3 | 5.4 | 0.4 | 100.0(504) | 17.1(6)*** |
| 어린이집 | 7.4 | 25.4 | 18.0 | 17.8 | 17.2 | 12.8 | 1.4 | 100.0(500) | |

*** $p < .001$

- 교사들에게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7.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2.8%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교사가 인성교육 관련 교사교육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10> 인성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경험 유무

| | | | | 단위: %(명) |
|------|------|------|--------------|--------------|
| | 있다 | 없다 | 계 | $\chi^2(df)$ |
| 전체 | 57.2 | 42.8 | 100.0(1,004) | |
| 기관유형 | | | | |
| 유치원 | 59.3 | 40.7 | 100.0(504) | 1.9(1) |
| 어린이집 | 55.0 | 45.0 | 100.0(500) | |
| 지역유형 | | | | |
| 대도시 | 60.2 | 39.8 | 100.0(422) | |
| 중소도시 | 56.5 | 43.5 | 100.0(504) | 6.5(2)* |
| 농어촌 | 44.9 | 55.1 | 100.0(78) | |

* $p < .05$

-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덕목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유아의 경우 배려(12.4%), 타인 존중(11.9%), 자기 존중(11.1%), 질서(9.0%)의 순이었고, 영아는 식습관(22.8%), 인사 잘함(15.2%), 정리 정돈(10.0%), 질서(9.4%)의 순이었음.

3)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 자녀양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성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운동 20.4%, 사회성, 대인관계 12.6%, 창의성 3.9%, 지적성취 2.4% 순이었음.

<표 11> 자녀양육에서 가치를 두는 요소

| | | | | | | | | | 단위: %(명) |
|-------------|--------|--------|-----------|-----|-------|-------|--------|--------------|--------------|
| | 인성, 성격 | 건강, 운동 | 사회성, 대인관계 | 창의성 | 지적 성취 | 경제 의식 | 예술적 자질 | 계 | $\chi^2(df)$ |
| 전체 | 59.5 | 20.4 | 12.6 | 3.9 | 2.4 | 0.9 | 0.3 | 100.0(1,004) | |
| 성별 | | | | | | | | | |
| 모 | 59.5 | 20.2 | 12.8 | 4.0 | 2.3 | 0.9 | 0.3 | 100.0(976) | 5.8(6) |
| 부 | 57.1 | 28.6 | 7.1 | 0.0 | 7.1 | 0.0 | 0.0 | 100.0(28) | |
| 학력 | | | | | | | | | |
| 고졸이하 | 56.6 | 24.5 | 8.8 | 4.8 | 3.2 | 2.0 | 0.0 | 100.0(249) | 14.2(6)* |
| 대졸이상 | 60.4 | 19.1 | 13.9 | 3.6 | 2.1 | 0.5 | 0.4 | 100.0(755) | |
| 가구소득(단위:만원) | | | | | | | | | |
| 250미만 | 64.1 | 7.7 | 25.6 | 0.0 | 0.0 | 0.0 | 2.6 | 100.0(39) | |
| 250-350미만 | 53.0 | 25.2 | 12.0 | 4.5 | 3.4 | 1.5 | 0.4 | 100.0(266) | |
| 350-450미만 | 58.1 | 21.7 | 11.7 | 4.2 | 3.1 | 1.4 | 0.0 | 100.0(360) | 43.1(24)** |
| 450-550미만 | 61.8 | 18.6 | 13.2 | 4.5 | 1.4 | 0.0 | 0.5 | 100.0(220) | |
| 550이상 | 72.3 | 13.4 | 11.8 | 1.7 | 0.8 | 0.0 | 0.0 | 100.0(119) | |

* $p < .05$, ** $p < .01$

- 인성교육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고학력,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와 식사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일주일에 모든 식구가 식사하는 빈도는 평일 51%(총 15회 중 평균 7.68회), 휴일 76%(총 6회 중 4.56회)였고, 유아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평일 기준 어머니 2시간 34분(2.57시간), 아버지 1시간 11분(1.19시간)으로 나타남.

〈표 12〉 가족 식사 빈도 및 부·모-자녀 놀이 시간

단위: 회, 시간

| | 식구 전체 식사 빈도 | | 자녀와의 놀이 시간 | | | |
|-------------|---------------------|--------------------|------------|------|------|------|
| | 평일 (총 15회 기준) | 휴일 (총 6회 기준) | 어머니 | | 아버지 | |
| | | | 평일 | 휴일 | 평일 | 휴일 |
| 전체 | 7.68 | 4.56 | 2.57 | 4.36 | 1.19 | 3.18 |
| 가구소득(단위:만원) | | | | | | |
| 250미만 | 7.36 | 4.36 | 2.60 | 4.34 | 1.20 | 2.51 |
| 250-350미만 | 7.88 | 4.58 | 2.76 | 4.28 | 1.14 | 3.10 |
| 350-450미만 | 8.43 | 4.58 | 2.70 | 4.30 | 1.29 | 3.07 |
| 450-550미만 | 7.24 | 4.60 | 2.38 | 4.59 | 1.17 | 3.47 |
| 550이상 | 5.87 | 4.45 | 2.10 | 4.34 | 1.03 | 3.36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 7.28 | 4.48 | 2.21 | 4.29 | 1.19 | 3.19 |
| 비맞벌이 | 8.15 | 4.65 | 3.00 | 4.45 | 1.19 | 3.17 |

-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짐 55.5%, 보통 38.5%, 매우 잘 이루어짐 4.9%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짐에 57.1%,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음.
 - 학력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 이 보통 51.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3〉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명), (점)

| |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 보통 | 잘 이루어짐 | 매우 잘 이루어짐 | 계 | $\chi^2(df)$ | 평균 |
|-------------|-------------|------|--------|-----------|--------------|--------------|------|
| 전체 | 1.1 | 38.5 | 55.5 | 4.9 | 100.0(1,004) | | 3.64 |
| 성별 | | | | | | | |
| 모 | 0.9 | 38.6 | 55.4 | 5.0 | 100.0(976) | 11.1(3)* | 3.65 |
| 부 | 7.1 | 35.7 | 57.1 | 0.0 | 100.0(28) | | 3.50 |
| 학력 | | | | | | | |
| 고졸이하 | 0.8 | 36.9 | 52.2 | 10.0 | 100.0(249) | 19.2(3)*** | 3.71 |
| 대졸이상 | 1.2 | 39.1 | 56.6 | 3.2 | 100.0(755) | | 3.62 |
| 가구소득(단위:만원) | | | | | | | |
| 250미만 | 2.6 | 51.3 | 46.2 | 0.0 | 100.0(39) | 31.5(12)** | 3.44 |
| 250-350미만 | 1.1 | 34.6 | 60.9 | 3.4 | 100.0(266) | | 3.67 |
| 350-450미만 | 0.8 | 34.4 | 56.9 | 7.8 | 100.0(360) | | 3.72 |
| 450-550미만 | 1.8 | 39.5 | 54.1 | 4.5 | 100.0(220) | | 3.61 |
| 550이상 | 0.0 | 53.8 | 44.5 | 1.7 | 100.0(119) | | 3.48 |

* $p < .05$, ** $p < .01$, *** $p < .001$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내용 중 가장 만족하는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41.5%, 누리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35.2%으로 조사됨.

〈표 14〉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 |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 | 계 | $\chi^2(df)$ |
|-------|----------------|----------------|-------------|-------------|--------------|--------------|
| 전체 | 0.1 | 2.4 | 47.7 | 49.8 | 100.0(1,004) | |
| 성별 | | | | | | |
| 모 | 0.1 | 2.5 | 47.8 | 49.6 | 100.0(976) | 1.2(3) |
| 부 | 0.0 | 0.0 | 42.9 | 57.1 | 100.0(28) | |
| 연령 | | | | | | |
| 30대이하 | 0.1 | 2.2 | 48.4 | 49.2 | 100.0(719) | 1.1(3) |
| 40대이상 | 0.0 | 2.8 | 46.0 | 51.2 | 100.0(285) | |
| 학력 | | | | | | |
| 고졸이하 | 0.0 | 2.8 | 47.0 | 50.2 | 100.0(249) | 0.6(3) |
| 대졸이상 | 0.1 | 2.3 | 47.9 | 49.7 | 100.0(755) | |
| 지역유형 | | | | | | |
| 대도시 | 0.0 | 2.4 | 42.2 | 55.5 | 100.0(422) | 13.1(6)* |
| 중소도시 | 0.2 | 2.0 | 51.3 | 46.5 | 100.0(497) | |
| 농어촌 | 0.0 | 4.7 | 54.1 | 41.2 | 100.0(85) | |

* $p < .05$, *** $p < .001$

-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수행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 49.8%,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 47.7%,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4%,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 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 인성교육의 어려움 및 요구 분석

- 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장애물을 조사한 결과, ‘가정교육의 약화’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47.7%), ‘부모 무관심(42.2%)’,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23.1%)’에 인성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전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됨.

〈표 15〉 인성교육 실천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교사의 응답

단위: %(명)

| | 없음 | 가정 교육 약화 | 부모 무관심 | 문제 행동 아동 | 전문 프로그램 부족 | 전문 기관 연계 부족 | 연령 혼합반 운영 | 원장, 교사 교육목표 불일치 | 기타 | 사례수 |
|------|------|----------|--------|----------|------------|-------------|-----------|-----------------|-----|-------|
| 전체 | 9.8 | 47.7 | 42.2 | 23.1 | 14.9 | 10.9 | 6.7 | 0.9 | 1.3 | 1,004 |
| 기관유형 | | | | | | | | | | |
| 유치원 | 10.7 | 49.0 | 39.5 | 23.6 | 15.3 | 11.9 | 5.2 | 1.0 | 1.2 | 504 |
| 어린이집 | 8.8 | 46.4 | 45.0 | 22.6 | 14.6 | 9.8 | 8.2 | 0.8 | 1.4 | 500 |
| 지역유형 | | | | | | | | | | |
| 대도시 | 8.3 | 47.4 | 49.8 | 25.8 | 12.3 | 12.8 | 5.5 | 0.5 | 1.7 | 422 |
| 중소도시 | 11.3 | 47.4 | 36.9 | 22.4 | 16.7 | 8.5 | 7.9 | 1.4 | 0.8 | 504 |
| 농어촌 | 7.7 | 51.3 | 35.9 | 12.8 | 17.9 | 15.4 | 5.1 | 0.0 | 2.6 | 78 |

-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지 질문한 데 대해 ‘부모와의 연계 및 도움’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다음은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 31.7%로 꼽힘.
- 유아기 인성교육을 장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계로 보는 관점에서, 이 시기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사들의 53.2%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기’를 선택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에 대해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가정교육강화(39.0%), 인성교육 방법에 관한 자료

제공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17.2%),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11.4%)이 높았음.

〈표 16〉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

단위: %(명)

| | 부모 연계 및 도움 | 교사 전문적 자질향상 | 교육· 보육과정 활용·인성 교육강화 | 기관자체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교육청 자료개발 및 배포 |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체계 도움 | 계 | $\chi^2(df)$ |
|------|------------------|-------------------|------------------------------|--------------------|-----------------------------|----------------------------|--------------|--------------|
| 전체 | 34.4 | 31.7 | 20.8 | 5.9 | 3.8 | 3.4 | 100.0(1,004) | |
| 기관유형 | | | | | | | | |
| 유치원 | 33.7 | 28.8 | 21.4 | 6.3 | 5.6 | 4.0 | 100.0(504) | 13.8(5)* |
| 어린이집 | 35.0 | 34.6 | 20.2 | 5.4 | 2.0 | 2.8 | 100.0(500) | |
| 지역유형 | | | | | | | | |
| 대도시 | 32.2 | 32.7 | 22.3 | 7.1 | 4.0 | 1.4 | 100.0(422) | |
| 중소도시 | 37.5 | 30.8 | 18.5 | 5.0 | 3.4 | 5.0 | 100.0(504) | 20.3(10) |
| 농어촌 | 25.6 | 32.1 | 28.2 | 5.1 | 5.1 | 3.8 | 100.0(78) | |

□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능력 위주의 사회풍토 31.0%, 시간 부족 18.5%, 비협조적 배우자 8.0%, 기타 1.0% 순이었음.

〈표 17〉 가정에서 인성교육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 어려움 없음 | 능력 위주 사회 풍토 | 시간 부족 | 교육 방법을 모름 | 비협조적 배우자 | 기타 | 계 | $\chi^2(df)$ |
|------|-----------|----------------|----------|-----------------|-------------|------|-------------|--------------|
| 전체 | 26.7 | 31.0 | 18.5 | 14.8 | 8.0 | 1.00 | 100.0(1004) | |
| 학력 | | | | | | | | |
| 고졸이하 | 35.7 | 22.5 | 17.3 | 16.9 | 7.2 | 0.40 | 100.0(249) | 25.3(5)** |
| 대졸이상 | 23.7 | 33.8 | 18.9 | 14.2 | 8.2 | 1.19 | 100.0(755) | |
| 지역유형 | | | | | | | | |
| 대도시 | 27.7 | 31.3 | 19.0 | 15.2 | 6.2 | 0.71 | 100.0(422) | |
| 중소도시 | 25.8 | 32.2 | 18.5 | 13.7 | 8.7 | 1.21 | 100.0(497) | 17.9(10) |
| 농어촌 | 27.1 | 22.4 | 16.5 | 20.0 | 12.9 | 1.18 | 100.0(85) | |

** $p < .01$

-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45.7%, 조금 필요하다 4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6% 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표 18〉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조금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계 | $\chi^2(df)$ |
|-------|------------------|------------------|------------|------------|--------------|--------------|
| 전체 | 0.9 | 11.6 | 41.8 | 45.7 | 100.0(1,004) | |
| 성별 | | | | | | |
| 모 | 0.9 | 11.8 | 41.5 | 45.8 | 100.0(976) | 2.8(3) |
| 부 | 0.0 | 3.6 | 53.6 | 42.9 | 100.0(28) | |
| 연령 | | | | | | |
| 30대이하 | 0.4 | 10.0 | 41.9 | 47.7 | 100.0(719) | 13.9(3)** |
| 40대이상 | 2.1 | 15.4 | 41.8 | 40.7 | 100.0(285) | |
| 학력 | | | | | | |
| 고졸이하 | 2.4 | 22.9 | 40.2 | 34.5 | 100.0(249) | 54.6(3)*** |
| 대졸이상 | 0.4 | 7.8 | 42.4 | 49.4 | 100.0(755) | |
| 지역유형 | | | | | | |
| 대도시 | 0.2 | 10.7 | 40.3 | 48.8 | 100.0(422) | 28.9(6)*** |
| 중소도시 | 0.6 | 12.5 | 43.3 | 43.7 | 100.0(497) | |
| 농어촌 | 5.9 | 10.6 | 41.2 | 42.4 | 100.0(85) | |

** $p < .01$, *** $p < .001$

-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화법 25.0%, 생활습관 지도 18.3%, 문제행동 지도 15.1%, 유아교육·양육방법 10.4%, 놀이방법 7.3%, 예절교육 7.1% 순으로 나타남.
- 부모가 생각하기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강조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체험교육 17.5%, 예절교육 15.6%, 기본생활습관 지도 15.3% 등이었음.
-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TV 방송, 가정통신문, 부모 대상 강연회, 인터넷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25.8%, 인성교육자료

확보 24.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22.3%, 부모교육 기회 확대 13.7%,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국가지원확대 12.5%, 노인인력 활용 1.0% 순으로 나타남.

〈표 19〉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 | | | | | | | | | | | | 단위: %(명)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계 | $\chi^2(df)$ |
| 전체 | 25.0 | 18.3 | 15.1 | 10.4 | 7.3 | 7.1 | 4.9 | 4.2 | 4.1 | 3.3 | 0.2 | 100.0(879) | |
| 성별 | | | | | | | | | | | | | |
| 모 | 24.5 | 18.7 | 15.1 | 10.2 | 7.3 | 7.0 | 4.9 | 4.3 | 4.2 | 3.3 | 0.2 | 100.0(852) | 7.6(10) |
| 부 | 40.7 | 7.4 | 14.8 | 14.8 | 7.4 | 7.4 | 3.7 | 0.0 | 0.0 | 3.7 | 0.0 | 100.0(27) | |
| 가구소득(단위:만원) | | | | | | | | | | | | | |
| 250미만 | 52.6 | 10.5 | 13.2 | 5.3 | 7.9 | 0.0 | 0.0 | 0.0 | 5.3 | 5.3 | 0.0 | 100.0(38) | |
| 250-350미만 | 19.2 | 17.1 | 12.1 | 13.8 | 9.6 | 8.3 | 5.0 | 8.3 | 2.5 | 3.8 | 0.0 | 100.0(240) | |
| 350-450미만 | 24.0 | 21.6 | 12.7 | 9.9 | 6.2 | 9.6 | 5.1 | 4.1 | 3.1 | 3.1 | 0.7 | 100.0(292) | 78.9(40)*** |
| 450-550미만 | 28.5 | 17.6 | 20.2 | 8.3 | 5.2 | 5.2 | 4.1 | 2.1 | 5.2 | 3.6 | 0.0 | 100.0(193) | |
| 550이상 | 25.0 | 16.4 | 19.8 | 9.5 | 8.6 | 3.4 | 6.9 | 0.9 | 7.8 | 1.7 | 0.0 | 100.0(116) | |

주: 1) 대화법, 2) 생활습관 지도, 3) 문제행동 지도, 4) 유아교육·양육방법, 5) 놀이방법, 6) 예절교육, 7) 시간활용 방법, 8) 지식교육 지도 방법(독서, 영어 등), 9) 부부의 정신건강, 10) 체험활동 정보, 11) 요리

*** $p < .001$

4.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가. 교사 및 부모 대상 인성교육 기회 확대

원장을 위한 인성교육 연수 기회 확충 필요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원장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교육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며 특히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장의 철학과 기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함. 또 원장으로 하여금 교사를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자문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인성 교육의 재교육 기회를 넓혀 가는 것이 요구됨.

농어촌 지역 교사에 대한 재교육 기회 확충 필요

-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법과 효과,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민감성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식 등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법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특히 조사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 교사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인성교육 관련 세미나 등 참여 비율이 낮으므로 이러한 지역 교사를 위한 기회를 특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관과 가정 연계를 위한 부모교육 기회 강화 필요
 - 인성교육은 기관과 가정의 공동 노력 없이는 아동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기관에서도 부모의 참여, 가정의 연계를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참여를 유도해야 함. 부모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서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안함. 즉, 인성교육의 의의,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의 요구를 수용하고 유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긍정적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부모교육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 교육 참여에 대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부모교육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 인센티브의 예로는, 부모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 우선권 부여, 유아 물품 구매 할인권 제공, 유아 대상 건강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나. 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

1) 아동 수 대비 실내 면적 기준 개선 및 바깥놀이 시간 확대

- 아동 수 대비 실내 면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유아기에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인성교육의 강화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간 기준과 수용 아동 수에 대한 재고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관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공간 면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오래 전 설립되어 과거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시설 공간 및 수용 아동 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바깥놀이 기준 시간 엄수 및 확대

- 누리과정에 정해진 바깥놀이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바깥놀이, 야외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아 인성교육 성공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2)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주변의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교류, 연계활동을 강화함.

-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인근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자원을 이용하여 인적 교류와 문화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노인정 방문을 통해 웃어른과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하면서 형제관계를 익히기도 함. 또 지역 내 문화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체험을 하는 곳도 있음.
- 유아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관계를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은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므로 지역사회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공동 활동 방법 등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3) 문제행동 지도 전문기관 접근성 확대

아동 문제행동 전문기관 주기적 개입의 사회 시스템화 필요

- 극심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는 아동은 원인과 처방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지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전문기관을 찾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 이에, 전문기관 개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바, 개인을 '문제아'로 분류하고 중재하기보다 기관(시설) 전체에 대한 자문의 입장에서 전체 아동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자연스런 과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시스템화된 유아 정신 및 언어생활 건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 전문가 활용 비용 등의 부분에서 정부의 일정 지원이 요구됨.
- 특히 농어촌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을 위한 전문기관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10% 포인트 낮은 전문기관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음. 먼저 농어촌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역할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4) 교육자료의 개발과 유·보간 공유 및 확산

- 교육청 인성교육 사업에 유아 포함 확대
 - 시·도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사업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대상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관할 부처, 유아교육·보육 기관, 지역과 무관하게 개발된 자료의 보편적 보급이 필요하고 활용성을 높여야 함.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집 등을 활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현 시점에서 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유형의 기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함.
 - 보육정보센터 또한 교육자료에 대한 자체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의 연계 속에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확산에 대한 유·보간 연계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교사 근무 환경의 개선

-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근무환경 제공 필요

- 교사가 심리적·시간적 여유가 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때 유아들과 상호작용이 좋아지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도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한 점에서 교사의 휴식시간, 휴식공간, 교대근무, 임금 적정 수준 보장, 복지 등 근무 환경 개선이 유아의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다. 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1) 인성교육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사업'의 지속
 - 선정된 기관에 연간 일정 예산 지원을 하고 우수한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들을 우수 인성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유아 부모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음.
 - 한편 이 정부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함. 특히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 효과성을 밝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2) 부모 역할 시간 확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와 놀이 시간 확대 필요
 -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식사하거나 자녀와 놀이하며 보내는 기회와 시간이 적음. 또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놀이시간도 휴일 기준 1.18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정시 퇴근을 지원하는 '가정의 날' 등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보장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김영옥·송혜린·이현미(2007). (21C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음세대.
- 김은설·최은영·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2014).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실화 방안.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경상지역 토론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 Karr-Morse, R. & Wiley M. S. (1997). Tracing the Roots of Violence. New York, NY: Atlantic Monthly Press.

Ⅱ.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영아보육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 이미화·민정원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은영

영유아 종일제 보육비용 산정 | 서문희·양미선

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김은설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 이정원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양미선·서문희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운영·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유해미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현황과 과제 | 서문희·이혜민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영아보육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이미화·민정원

요약

- 무상보육정책 실시로 영아 대상 보육서비스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무분별한 영아보육 이용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소모, 영아 최우선 원칙 간과 등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야기되었음.
- 영아보육 공급의 85% 이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어 영아 보육 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영아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변인으로 교사의 민감성,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교사 교육, 가정과의 연계 등의 과정적 변인과 물리적 변인인 보육실 크기, 교사 대 아동 비율, 초과보육 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영아보육 운영현황과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음.
-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0세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보육실 면적 확대와 초과보육 폐지가 있었으며, 교사의 영아반 회피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정부지원금 조정과 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실습위주의 영아 전문 보수 교육이 요구됨. 어린이집과 가정 간 연계를 위해서는 영아 부모를 위한 이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의무교육제도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1. 연구 배경

□ 영아보육에 대한 정책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출산 및 육아기의 여성 경력단절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보육정책을 추진 중임.
- 2012년 보건복지부 0-2세 무상보육정책 도입, 2013년 3월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정책이 도입됨.

* 본 원고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이 집필한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2012년 2월 이후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0-2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입소우선순위를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였고 어린이집 정원 및 교사 확충방안을 마련 중임. 비상시적 필요를 위해서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공급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보장,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조기 설치 등을 통해 시설수급을 조절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 기준화하고 시간 연장 보육 및 보육료 지원(월 60시간)에 대한 사전 이용 신청제를 도입하였으며, 토요일 보육에 대한 자율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임.

2. 문제 제기

□ 영아기 전면 보육 무상화로 인한 영아 보육율 상승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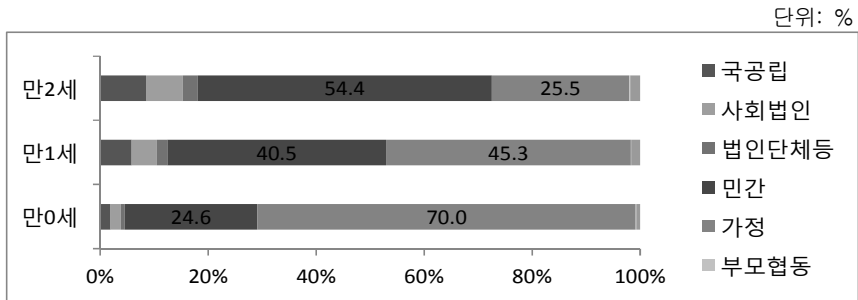
- 무분별한 이용 문제에 대한 우려
 - 영아기에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학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으나 2012년부터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구여건과 관계없이 영아 부모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경향이 나타남.

〈표 1〉 최근 10년 간 영아 보육율

| 구분 | 보육 영아 수 | 단위 명, % |
|------|---------|---------|
| | | 영아 보육율 |
| 2012 | 872,284 | 63.0 |
| 2011 | 739,332 | 53.5 |
| 2010 | 686,256 | 49.4 |
| 2009 | 574,394 | 41.0 |
| 2008 | 501,889 | 36.2 |
| 2007 | 413,829 | 30.7 |
| 2006 | 349,935 | 25.6 |
| 2005 | 302,351 | 21.2 |
| 2004 | 262,916 | 17.5 |
| 2003 | 241,559 | 14.9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 보육통계(2012년 12월 말 기준), 통계청(2013).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 2002~2012. 최윤경 외 2013 에서 재인용.

- 맞벌이 부모의 0-2세 보육서비스 지원의 취지에 비해 어린이집 재원 영아의 취업모 자녀비율은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2009년 44.8%에서 2012년 49.5%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과반수에 못 미치는 실정임(이미화 외, 2012).
- 2013년 양육수당 지급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시보육을 활성화하여 전업주부, 프리랜서 근무자의 비상시적 보육수요를 감당하고 가정 내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2011년 대비 2012년의 영아 보육률 증가 현상이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영아 보육률 85%를 차지하는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이 영아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전체 87만명의 보육 영아 중 민간어린이집에서 약 37만명, 가정어린이집에서 36만명을 감당하고 있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2012년도 12월 말 기준)를 영아 중심으로 재정리함.
 2)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에서 2011년 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 추계 자료: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2013. 10. 14 추출)

[그림 1] 2012년 연령별 설립유형별 보육 분담율

□ 어린이집 12시간 기본 운영으로 인한 교사 복지 문제

- 07:30~19:30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보육 교사의 법정근로기준시간(8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 보조 인력 제공,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 보완의 노력이 있으나 보육 품질제고와 더불어 부모의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보육시간 적정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영아보육에 대한 교사 만족도, 형평성에 대한 우려

- 유아반에 비해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의 특성과 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이, 사회적 인식에 의한 교사 만족도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질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영아반 배치를 회피할 수 있음.
- 3-5세 담당교사는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정책에 의해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나 0-2세 담당교사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월 12만원이 지급되어 있어 18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그 결과 교사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기보다 고학력 또는 경력 교사가 영아반 보다는 유아반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아반보다 영아반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어린이집 내 영아사고 보도에 대한 부모들의 의구심 증폭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관련 영아 돌연사의 위험이 보도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2013. 11. 26.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였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1. 26.). 그러나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근거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구조적 과정적 변인들을 선별하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271명, 교사 422명 및 영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영아보육 운영과 이용 실태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또한 영아반 보육의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 187명, 영아 374명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수행¹⁾ 하였음. 본 고에서는 연구결과 중 보육환경구성, 영아반 보육교사, 프로그램 활용, 어린이집과 가정 연계 영역을 중심으로 다뤘음²⁾.

1) 관찰조사의 특성 상 어린이집 개방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은 92.3%, 평가인증점수 총점 평균 94.6점으로 우수한 어린이집 위주로 표집 되었을 수 있음.
2) 본 원고는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층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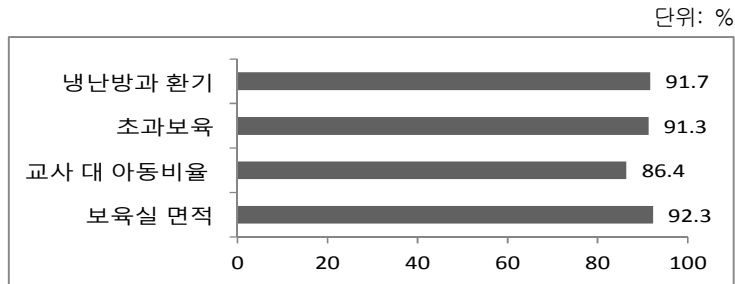
3. 주요 연구결과³⁾

가. 보육환경의 구성

1) 현황

□ 규정 준수여부

- 영아반 보육환경과 관련된 보육실 면적과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냉난방과 환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86.4%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보육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원장·교사)

2) 개선 요구

□ 교사 대 영아 비율

- 교직원의 인식은 0세 1명 감소, 1세 1명 감소 또는 현재 유지, 2세 현재 유지 요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감소 조정 요구 수준이 모든 연령반에서 공통적으로 원장보다는 교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단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교사 대 영아비율 1명 증가 요구도 연령별로 다소 상이하나 6~28%로 나타났다.
 - 영아 부모는 교사 인력 대비 영아 수로 0세반 2.2명, 1세반 3.5명, 2세반 5명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대 영아 비율 감축을 위해 영아 부모의 66.4%가 추가 발생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3) 어린이집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자가 응답결과를 활용하였음.

〈표 2〉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 요구(원장·교사)

| | 단위: % | | |
|-------|-------|------|------|
| | 0세반 | 1세반 | 2세반 |
| 2명 감소 | - | 24.8 | 32.0 |
| 1명 감소 | 61.1 | 34.0 | 23.8 |
| 현재 유지 | 34.9 | 34.3 | 34.7 |
| 1명 증가 | 4.0 | 6.8 | 9.5 |

주: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0세 1:3, 1세 1:5, 2세 1:7

□ 초과보육

- 초과보육에 대해 원장은 현재 유지, 교사는 초과보육 금지를 요구함.
 - 원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초과보육 2명 허용 방안을 과반수 선호하였으며 특히 가정(1세반: 62.2, 2세반: 71.0%)과 민간(1세반: 82.9, 2세반: 83.3%) 어린이집에서의 현재 유지 요구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교사의 경우 초과보육 금지 요구가 절대적이었으며 현재와 같은 2명 허용안에 대해서는 10% 미만이 동의하였음.

〈표 3〉 영아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

| | 단위: % | | |
|-----------|------------|------------|------------|
| | 초과보육 금지 | 1명 허용 | 2명 허용 |
| 원장(1/2세반) | 24.2/ 20.4 | 18.5/ 15.4 | 57.4/ 64.5 |
| 교사(1/2세반) | 81.3/ 77.4 | 10.9/ 15.0 | 7.8/ 7.6 |

주: 현행 초과보육 규정: 만 1,2세반에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규정 외 2명 추가 가능

□ 보육실 면적

-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실 면적의 증가가 필요함.
 - 우리나라 보육실 면적 규정은 영유아 1인 기준 2.64평방미터로 OECD 국가의 보육시설에 대한 평균 실내 공간 규정인 3.6평방미터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임(OECD, 2012).
- 원장보다는 교사의 보육실 면적 증가 요구가 많음.
 - 교직원의 인식은 보육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재 유지가 47.5~54.1%로 가장 높았고 증가, 감소 순으로 나타났음.

- 특징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에서 현재 유지 요구가 과반수였으며 면적 감소요구도 일부 나타남.
- 또한 원장보다는 교사가 보육실 면적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 영아 부모의 경우 영아 수 대비 보육실 면적 적합도에 대해 약간 작다 56.1%, 적합하다 32.8%로 응답하여, 교직원에 비해 더 많이 면적 확대를 희망하였음.

〈표 4〉 영아반 보육실 면적 조정 방향

| | 감소 | 현재유지 | 증가 |
|--------|-----|------|------|
| 원장 | 9.8 | 65.4 | 24.8 |
| 영아반 교사 | 4.7 | 39.4 | 55.9 |
| 영아 부모 | 1.8 | 32.8 | 6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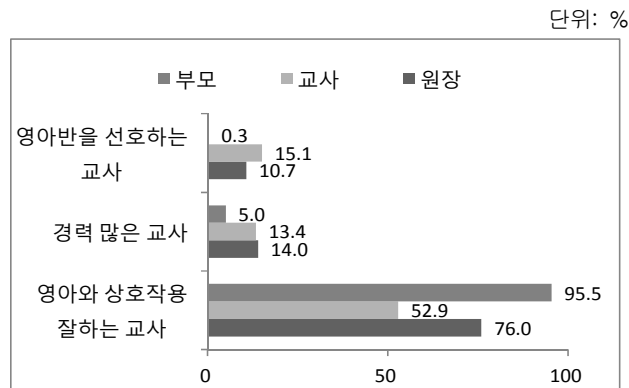
단위: %

나. 영아반의 보육교사 활용

1) 현황

□ 영아반 담임교사로서의 선호 자질: ‘영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 영아반 교사로서 선호하는 교사의 특성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뿐 아니라 영아 부모 모두 ‘영아와 상호작용 잘하는 교사’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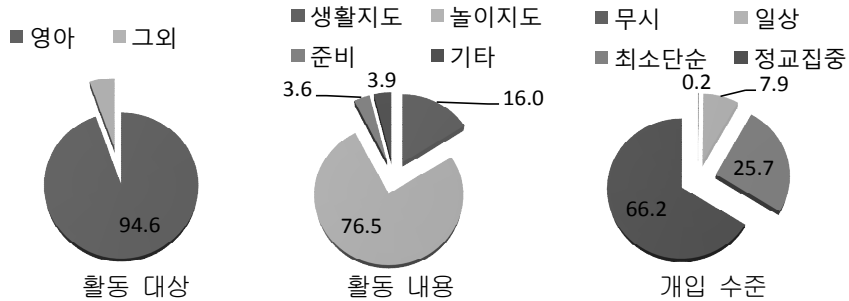
[그림 3] 영아반 교사의 선호자질⁴⁾

4) 중복 응답 문항임.

□ 교사의 보육활동의 특징

- 영아반 내 오전 자유놀이시간 중 교사의 보육활동을 관찰 분석한 결과, 활동 대상은 대부분 영아였으며 활동 내용으로 놀이지도, 생활지도, 준비 및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교사의 영아 자유 놀이시간에 대한 개입 수준으로 정교·집중 비율이 66.2%로 최소·단순 25.7% 또는 일상 7.9% 수준의 개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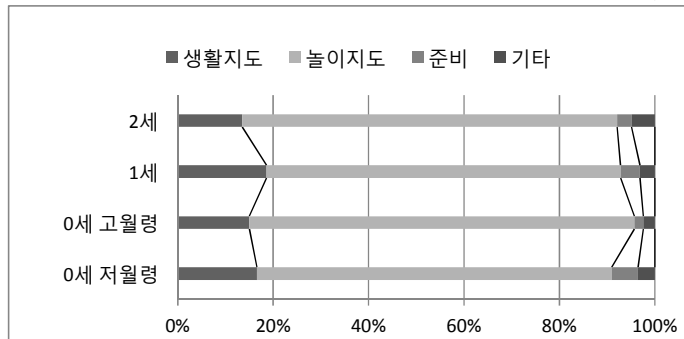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 영아반 교사의 보육활동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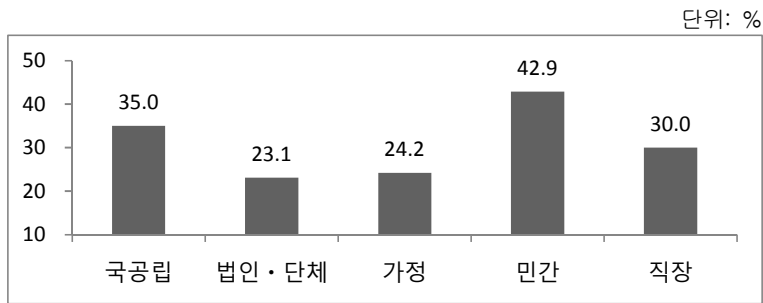
- 연령별 특징으로 1세반은 생활지도가, 2세반은 놀이지도가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게 관찰되었음. 0세반의 경우 월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고월령보다 저월령의 준비 시간의 비중이 더 높고 고월령에서는 놀이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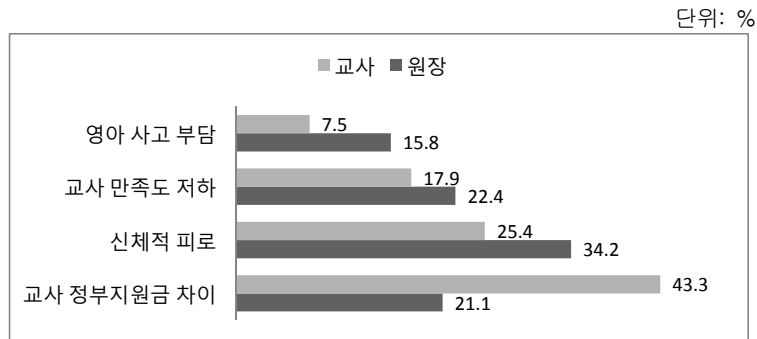
[그림 5] 영아반 교사의 활동 내용-연령별 비교

- 영아반 배치 회피 현상 29.9%: ‘영·유아반 교사의 정부지원 수당 차이’가 주 원인으로 지목됨.
 -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아반 배치를 회피하거나 재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9%였음(원장 기준).
 - 설립유형별로는 민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에서 30% 이상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단체, 가정에서도 20% 이상으로 나타났음.



[그림 6] 교사의 영아반 배치 회피 또는 재배치 요청 여부(원장)

- 영아반 배치 회피 현상의 주 이유로 원장은 교사의 육체적 피로(34.2%)때문으로 보았지만, 교사는 영·유아반 교사의 정부지원 수당 차이(31.5%)를 더 큰 이유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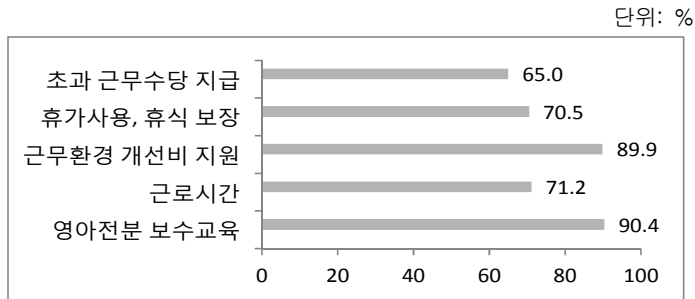


[그림 7] 영아반 배치 회피 이유

- 교사는 영아반을 담당함으로써 인한 금전적 손해와 차등적 임금으로 인한 영아 교사 역할의 저평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사에 대한 정부지원금 차이로 응답한 경우가 영아의 건강, 질병, 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7.5%)보다 약 5.7배 높은 수준임.

□ 교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영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선택 이수와 정부의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1인 12만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약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근로시간 보장, 교사의 휴가 사용 및 휴식 보장과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0~71.2%로 다소 낮았음.



[그림 8] 영아반 보육교사 관련 규정 준수 여부(원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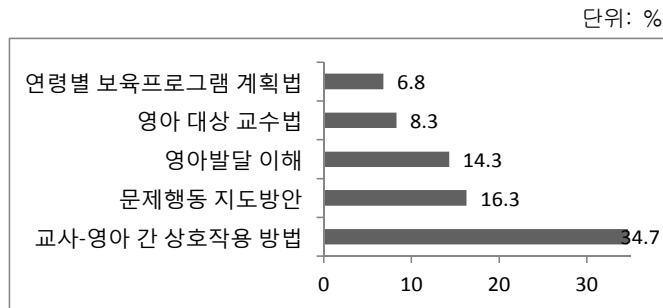
2) 개선 요구

□ 영아 교사 대상 보수교육 개선의 중요성

- 원장, 교사, 영아 부모 모두 영아반 담당 교사의 자질로서 '영아와 상호작용 잘하는 교사'를 가장 우선 시 하였음.
- 그러나 교사들은 영아의 특성과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하기를 어려워함.
 - 상호작용 시 교사의 어려움으로 부정적 행동에 대응하기(58.8%), 가정과 어린이집 간 생활지도 차이 대처하기(21.7%), 반응 없는 영아들에게 대응하기(14.0%)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현 영아보육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모범사례 참관 기회부여,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교육화, 선택교육 의무화, 실습위주의 강의방식 변경 등이 제안되었음.
- 효과적인 보수교육의 형태로 영아 교사들은 대규모 집단(34.0%)보다는 중규모 집단의 형태(48.2%)와 온라인 교육(26.6%)보다는 집합교육(72.1%) 방식을 더 선호했음.
-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으며,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즉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화된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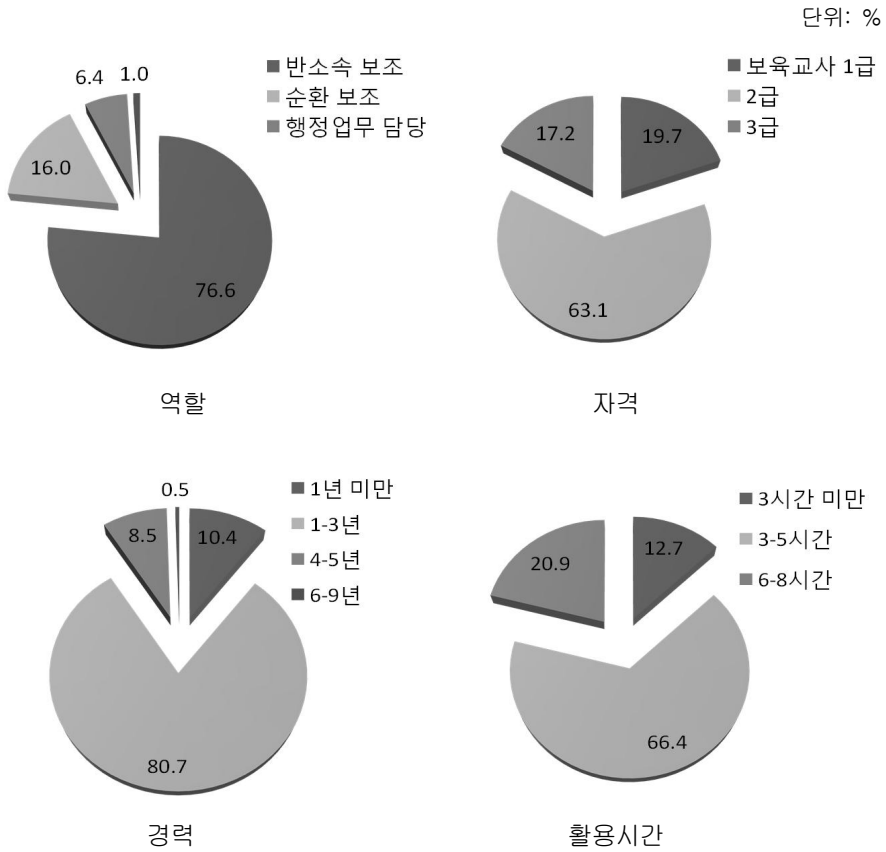
[그림 9] 보수교육으로 필요한 내용(1순위)

□ 보육교사 추가배치 요구

- 영아반에 비담임 보육교사의 추가배치 시 선호하는 형태에 대한 의견은 원장과 교사의 의견이 유사하였는데 반소속 보조로서의 역할과 보육교사 2급 자격, 1-3년의 경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그림 10 참고).

□ 영아반 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

- 영아반 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보육교사 급여 인상(5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 8시간 근무 보장(17.5%), 보조인력 투입(14.0%)순으로 나타났음.
- 설립 유형별 원장의 요구나 교사의 담당반 연령, 소지 자격별, 학력별 요구 비교에서도 지원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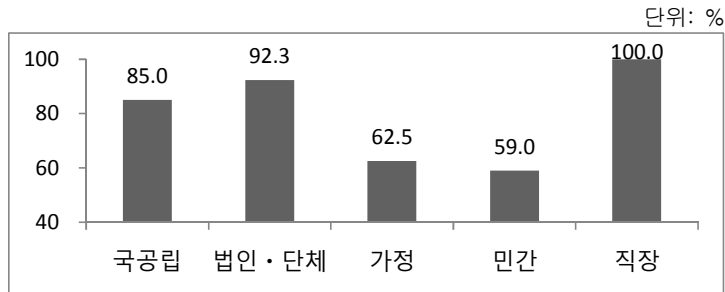


[그림 10] 비담임 보육교사 추가배치 시 선호 방식(교사)

다. 표준보육과정과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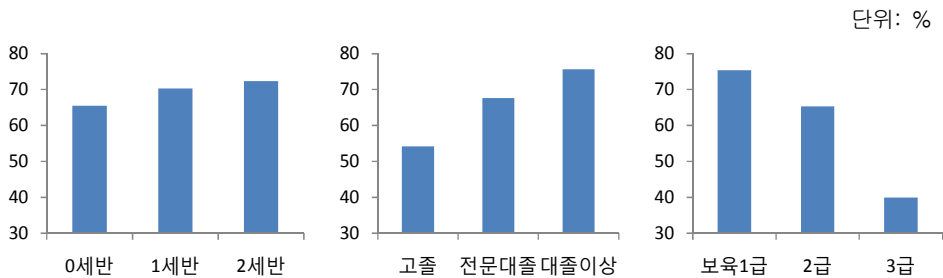
1) 현황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인식과 반영정도
 - 잘 알고 있음 67%, 들어본 적 있음 25~26%, 잘모름 6~7%로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났음.
 - 특징적으로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에 비해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력이 낮을수록, 담당 연령급수가 낮을수록 인식수준이 낮았음.



[그림 1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인지도(원장)

- 교사의 학력, 자격급수, 담당연령에 따라 영아반 보육활동에 대한 반영정도도 유의하게 차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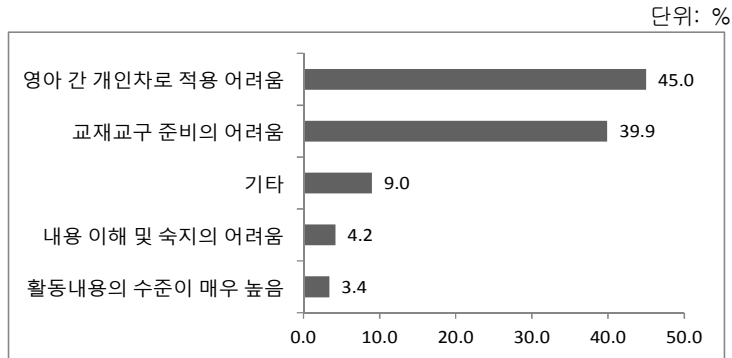
[그림 1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보육활동 반영 정도(교사)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활용 및 만족도
 - 78.2%의 어린이집에서 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3.2%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책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는 만족 84.9%, 불만족 7.6% 순으로 나타났음.
- 중점 보육 내용
 -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한 생활습관이 1순위로 나타났고 0세반은 청결과 위생, 1세반은 놀이중심의 활동 구성, 2세반은 놀이중심의 활동 구성과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 경험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났음.

2) 개선 요구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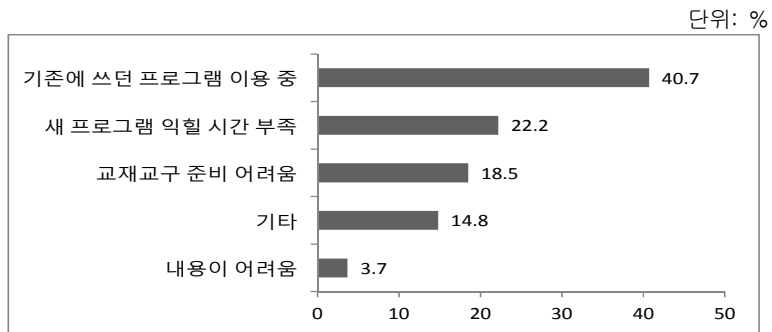
- 활용 시 어려움으로 영아 간 개인차로 인한 적용 어려움(45.0%), 교재교구 준비의 어려움(39.9%)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이유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해당 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새 프로그램을 익힐 시간이 부족해서(62.9%),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18.5%)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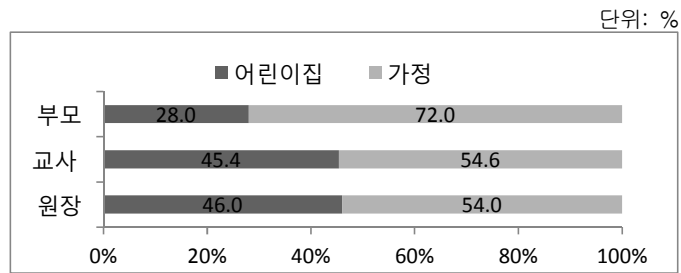
[그림 14]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라. 어린이집과 부모 간 연계

1) 현황

□ 부모와 어린이집의 양육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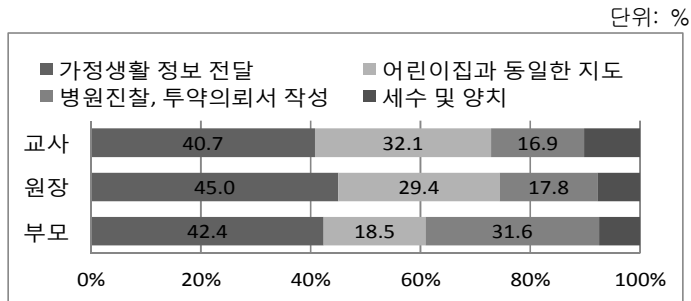
- 영아 양육 책임이 총 100%일 때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의 분담정도에 대해 원장과 교사는 평균 45~46%, 영유아 부모는 28%로 응답하여 어린이집 교직원이 부모보다 더 어린이집의 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영아 양육 책임 중 어린이집의 분담정도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부모가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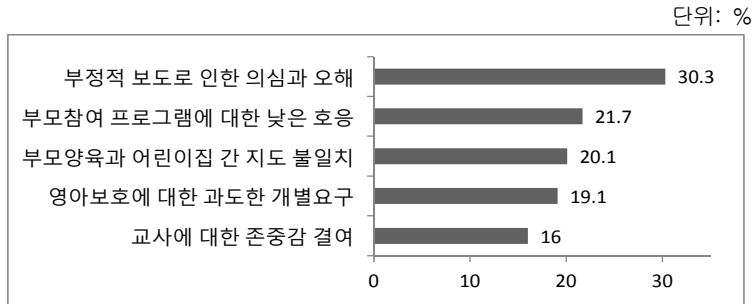
- 1순위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모두 가정생활 정보 전달을 선택했으며 어린이집과 가정의 동일한 지도에 대해서는 가정보다 어린이집에서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부모가 해야 할 일(1순위)

□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 간 연계의 가장 어려운 점

-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방송 보도로 인한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가장 어렵게 지각하고 있었음.
 -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호응도가 낮아 부모와의 공식적인 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음.
 - 부모양육과 어린이집 간 지도 불일치로 인해 영아보육의 어려움이 있으며 영아보호 관련한 부모의 과도한 개별 요구와 교사에 대한 존중감 결여로 인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 저하도 가정과 어린이집 간 연계에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음.



[그림 17]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 간 연계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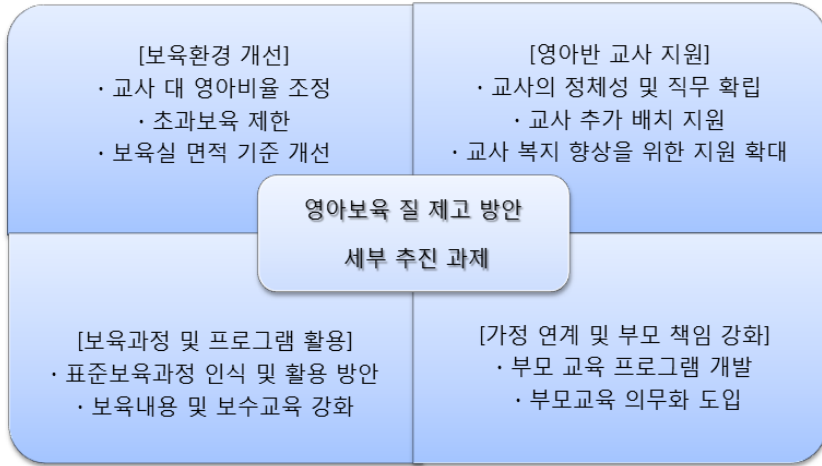
2) 개선 요구

□ 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분담 홍보 교육 (39.5%), 어린이집 이용 전 부모교육 의무화(35.6%),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미담사례 보도(20.9%) 또는 어린이집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12.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부모가 원하는 교육내용 이외에도 신입 영아 적응 시 부모가 숙지할 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정책제언

-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과 활동, 따뜻하고 민감한 교사의 보육, 보육교사의 직무구성과 재교육 이수, 영아 부모와의 긴밀한 연계가 영아보육 질 제고에 필수적으로 보여짐.



[그림 18] 영아보육의 질 제고 방안과 세부추진과제

가. 물리적 환경

- 0세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이 필요함.
 - 0세는 우유타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기를 위한 준비사항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교사 1인이 0세 영아 3명을 돌보는 데는 무리가 있음.
 - 0세반에서 교사 대 영아 비율 감소 요구가 가장 컸으며 영아에 대한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이 필수적임.
 - 특히 월령차가 크므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는 6개월 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비율 조정 방안으로 영아 수 감축이 아닌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보육을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보육실 면적 확대와 초과보육 폐지가 필요함.

- 보육실 면적에 대해 원장은 현재 유지 요구가 사회복지법인,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부 면적 감소 요구도 있었음.
 - 실외놀이터가 없거나 실외 공간에 대한 기회가 제한적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에서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아의 놀이와 행동에 대한 공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육실 및 보육실 외 실내 공간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면적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영아 교사의 이동 공간 및 여유 공간을 고려한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행 보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된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영아의 하루 일과를 고려하여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나. 영아 교사

□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13년부터 시행된 3-5세 누리과정에서 교사자격을 보육교사 1급과 2급으로 명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교사가 영아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정부지원금이 유아반과 영아반 교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질 높은 교사가 영아반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영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아 중심의 교과목 추가 개설이 필요하며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습의 기회도 있어야 할 것임.
 - 영아반 담당으로 인한 교사 만족도 저하가 교사의 영아반 회피 이유로 나타나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절실함.
 - 어린이집 유아교사의 약 3배인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기관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수요자 맞춤형 영아 전문 보수교육 마련이 필요함.

-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영아 전문 보수교육이 필요함.

- '영아의 부정적 행동에 대응하기' 등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영아 교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보수교육 개발이 요구됨.
- 우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적극적 놀이참여와 상황별 대처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사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임.
- 영아 교사의 보육과정 인지도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교직원 67%가 잘 알고 있고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도 78%의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개선 요구가 있으므로 영아 교사의 보수교육 시 영아 개인차를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 교육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 무상 보급과 영아반 교사교육이 필수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영아 부모

- 어린이집 이용 전 영아 부모의 사전 교육이 필요함.
 - 본 연구 결과 영아 양육(100%로 가정)에 대해 영아 부모는 가정의 책임을 72%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들이 영아 양육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영아 부모가 해야 할 일로 영아의 정보를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므로 영아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영아 부모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무화를 건의함.
 -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침서를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공통의 안내와 교육을 중심으로 기획, 배포하여 현장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함.
 - 영아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와 영아 양육에 대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획·배포중인 서울아이 함께 잘 키우기 프로젝트: 학부모 편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과 같은 책자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 활용,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 연계 노력 중 부모교육의 실행도가 가장 낮고 개선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부모의 찬성이 70%가 넘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자로서 사전 부모교육의 제도화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면대면 부모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의 무리한 개별 요구나 오해나 교직원에 대한 의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집과 가정 간 영아에 대한 지도 일치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1. 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2003~2012).
- 서울특별시·서울여성가족재단(2013). 서울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 학부모편-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
-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2013). 미래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2010.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김은영

요약

-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으로 과중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4.6%에 이릅니다.
- 어린이집 교사가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연가 일수는 8.1일로, 희망하는 일수 16.2일의 절반 수준임.
- 어린이집에 교사용 공간이 있는 경우는 35.6%에 불과하였으며, 개인용 PC가 있는 경우도 24.9%에 불과함.
- 어린이집 교사의 64.2%가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직을 원하는 경우도 48.9%로 반수에 이릅니다.
- 어린이집 교사의 52.7%가 급여수준 상향 조정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근무시간 축소 11.9%, 교사대 영유아 비율 축소 10.6%, 잡무 경감 9.0%, 필요시 휴가 보장 7.2% 순임.
-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량 경감, 휴가 및 휴직 보장,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지원 등이 요구됨.

1. 문제 제기

- 영유아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수준은 가장 낮음.
 -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보다 성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영유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과 정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김은영·박은혜, 2006).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인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김은영·장혜진·조혜주, 2013)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임.

-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정도와 반비례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실태는 가장 낮은 수준임(황옥경, 2012).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근무시간은 길며 정서노동의 강도에 비해 치우는 낮아 단기간에 소진되고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권성민, 2011, 박은주·문태형, 2011, 이승은·서현, 2012).
- 영유아교사의 근무여건은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침.
 - 근무환경,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월평균 보수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보육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박은미, 2011).
 - 과중된 근무시간은 보육교사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주어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보육활동에 지장을 줌(문동규·김영희·최은경, 2012).
 - 교사가 직무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환경에 따라 조직 애착도가 달라지며, 직무수행도가 낮아짐(박은주·문태형, 2011).
- 영유아 교사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 현황과는 괴리가 있음.
 - 어린이집에서 초과근무가 있는 비율은 전체 56.7%로 절반이 넘었으며, 특히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초과근무를 하는 비율이 80% 이상임(보건복지부, 2012).
 -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10시간 이상임. 월간 주말근무 횟수는 평균 0.53회임(보건복지부, 2012).
 -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40.6%이었으며,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모두 50%이상이 휴식시간이 없다고 응답함(보건복지부, 2012).
 - 연월차 휴가 사용 가능 비율은 93.4%, 평균 사용일은 9.18일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9.41일, 8.26일인 반면, 나머지 유형에서는 10일 이상임(보건복지부, 2012).

- 생리휴가 등 기타 휴가 사용 가능 비율은 9.7%, 실제 사용일수는 7.86일임 (보건복지부, 2012).
- 산전후 휴가 이용 가능한 경우가 64.6%, 육아휴직은 이용 가능한 경우가 58.4%임(보건복지부, 2012).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원고는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어린이집 교사 772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와 요구를 근무시간 및 업무량에 대한 사항,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사항,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 이직에 대한 사항, 복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함.

2.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와 인식

가. 근무시간 및 업무량

-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보육시간+보육준비시간+기타업무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¹⁾
 - 주당 보육시간은 43.5시간이며, 주당 보육준비 시간은 6.2시간, 기타업무시간은 전체 5.4시간으로 나타남.
 - 주당 재택근무시간은 2.4시간임.
 -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어린이집 근무시간 및 재택근무시간

| 구분 | 단위: 시간 | | | | |
|--------|------------|------------|------------|-------------|------------|
| | 보육시간 | 보육준비 시간 | 기타업무 시간 | 근무시간 | 재택근무 시간 |
| | M(SD) | M(SD) | M(SD) | M(SD) | M(SD) |
| 전체 | 43.5(7.39) | 6.2(4.49) | 5.4(5.23) | 55.1(11.34) | 2.4(3.39) |
| 설립유형 | | | | | |
| 국공립 | 43.7(7.39) | 6.0(4.71) | 6.1(7.72) | 55.8(14.93) | 2.8(4.42) |
| 사회복지법인 | 43.1(7.50) | 8.6(7.21) | 7.2(6.90) | 58.9(14.21) | 3.1(3.47) |
| 법인단체 등 | 46.7(9.00) | 6.6(4.27) | 5.5(4.12) | 58.8(12.07) | 3.4(4.78) |

1)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간에 보육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시간이 과대 추정된 것일 수 있음.

(표 1 계속)

| 구분 | 보육시간 | 보육준비 시간 | 기타업무 시간 | 근무시간 | 재택근무 시간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 민간 | 43.8(8.03) | 6.5(4.70) | 5.8(4.61) | 56.0(11.53) | 2.5(3.49) |
| 직장 | 44.9(6.90) | 6.8(4.31) | 6.1(6.43) | 57.8(11.44) | 3.4(5.91) |
| 가정 | 42.8(6.24) | 5.3(3.16) | 4.5(4.73) | 52.6(8.67) | 1.7(2.31) |
| 부모협동 | 42.7(10.93) | 3.7(6.62) | 4.8(7.41) | 51.2(14.41) | 3.3(6.04) |
| <i>F</i> | 1.314 | 4.502*** | 2.833* | 4.125*** | 3.014** |
| 기관규모 | | | | | |
| 20인 미만 | 43.4(6.84) | 5.6(3.56) ^a | 5.1(4.60) ^a | 54.1(9.60) ^a | 2.0(2.76) ^a |
| 20~50인 미만 | 43.9(8.64) | 7.4(6.00) ^b | 6.1(6.56) | 57.3(14.7) ^b | 3.1(4.34) ^b |
| 50인 이상 | 43.1(7.40) | 7.2(4.78) ^b | 6.6(4.85) ^b | 56.9(10.64) ^b | 3.3(4.03) ^b |
| <i>F</i> | 0.449 | 12.790*** | 4.365* | 6.977*** | 10.078*** |

주: 집단분포특성상 설립유형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에서 하루 중 취하는 휴식시간은 전체 17.0분이며, 주말 출근 일수는 월평균 1.1일임.

<표 2> 하루일과 중 휴식시간 및 월 평균 주말출근 일수

단위: 분, 일

| 구분 | 휴식시간(분) | 주말 출근(일) |
|-----------|--------------------------|------------------------|
| | M(SD) | M(SD) |
| 전체 | 17.0(22.08) | 1.1(0.86) |
| 설립유형 | | |
| 국공립 | 13.7(19.63) | 0.9(0.54) |
| 사회복지법인 | 18.6(21.77) | 1.0(0.68) |
| 법인단체 등 | 10.5(18.72) | 1.4(1.10) |
| 민간 | 16.5(22.31) | 1.1(0.86) |
| 직장 | 18.7(24.00) | 1.4(1.29) |
| 가정 | 18.8(22.49) | 1.1(0.92) |
| 부모협동 | 18.1(45.33) | 0.7(0.00) |
| <i>F</i> | 0.956 | 1.279 |
| 기관규모 | | |
| 20인 미만 | 18.9(22.79) ^a | 1.2(0.96) ^a |
| 20~50인 미만 | 13.7(19.66) | 0.9(0.68) ^b |
| 50인 이상 | 13.1(22.25) ^b | 1.0(0.70) |
| <i>F</i> | 5.049** | 4.757** |

주: 집단분포특성상 설립유형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1$

-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이 휴식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고, 주말 출근 일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의 52.3%는 주말에 출근하고, 50.2%가 토요일에 출근함.
 -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모협동, 민간, 직장 순이었으며,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이 가장 높고,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 주말 출근 비율

단위: %, n=772

| 구분 | 토요일 | 일요일 | 토요일+일요일 | 출근하지 않음 | 계 | $\chi^2 (df)$ |
|-----------|------|-----|---------|---------|-------|---------------|
| 전체 | 50.2 | 0.8 | 1.4 | 47.7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국공립 | 77.4 | 1.2 | 1.5 | 19.9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72.4 | 0.0 | 1.7 | 25.9 | 100.0 | |
| 법인단체 등 | 70.4 | 5.1 | 2.9 | 21.6 | 100.0 | |
| 민간 | 55.1 | 0.6 | 1.6 | 42.8 | 100.0 | 91.9(18)*** |
| 직장 | 53.9 | 0.0 | 4.2 | 41.9 | 100.0 | |
| 가정 | 30.6 | 0.7 | 0.7 | 68.0 | 100.0 | |
| 부모협동 | 43.8 | 0.0 | 0.0 | 56.2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20인 미만 | 40.8 | 1.0 | 1.1 | 57.1 | 100.0 | |
| 20~50인 미만 | 67.6 | 0.5 | 2.1 | 29.8 | 100.0 | 55.4(6)*** |
| 50인 이상 | 69.5 | 0.0 | 1.3 | 29.2 | 100.0 | |
| 지역규모 | | | | | | |
| 대도시 | 48.9 | 0.4 | 1.7 | 49.0 | 100.0 | |
| 중소도시 | 47.7 | 1.1 | 1.3 | 49.9 | 100.0 | 17.3(6)** |
| 읍면지역 | 74.5 | 0.0 | 0.8 | 24.7 | 100.0 | |

** $p < .01$, *** $p < .001$

- 어린이집 교사의 44.6%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며, 27.9%는 일정 금액을 받고 있고 8.9%만이 모두 받고 있음.
 -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직장, 국공립 순이었으며,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50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 초과근무 수당 여부

단위: %, n=772

| 구분 | 모두 받음 | 일정 금액 받음 | 근무시간 비례 (상한액) | 받지 않음 | 초과 근무 안함 | 계 | χ^2 (df) |
|-----------|----------|----------------|---------------------|----------|----------------|-------|---------------|
| 전체 | 8.9 | 27.9 | 5.4 | 44.6 | 13.1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 국공립 | 17.5 | 39.4 | 13.8 | 25.7 | 3.6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5.5 | 31.7 | 1.2 | 51.5 | 10.1 | 100.0 | |
| 법인단체 등 | 7.9 | 25.2 | 1.9 | 63.1 | 2.0 | 100.0 | |
| 민간 | 8.1 | 25.9 | 2.7 | 53.0 | 10.3 | 100.0 | 110.0(24)*** |
| 직장 | 24.2 | 39.9 | 24.5 | 11.4 | 0.0 | 100.0 | |
| 가정 | 7.1 | 26.3 | 6.4 | 38.2 | 22.0 | 100.0 | |
| 부모협동 | 44.7 | 13.2 | 26.5 | 15.5 | 0.0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 20인 미만 | 8.7 | 26.8 | 4.9 | 43.1 | 16.5 | 100.0 | |
| 20~50인 미만 | 9.3 | 27.9 | 6.1 | 48.9 | 7.8 | 100.0 | 17.6(8)* |
| 50인 이상 | 9.7 | 36.4 | 7.6 | 43.0 | 3.4 | 100.0 | |

* $p < .05$, *** $p < .001$

□ 어린이집 근무시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5〉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그런 편임 | 매우 그런 편임 | M(SD) (전체=3.7점) |
|--------------------------------------|-----------------|-----------------|------|----------|----------------|--------------------|
| 근무시간 적당함 | 22.0 | 28.4 | 35.0 | 12.6 | 2.0 | 2.4(1.03) |
| 장시간 근무로 개인 생활 제한 받음 | 4.1 | 16.1 | 24.3 | 36.0 | 19.5 | 3.5(1.10) |
| 휴식 및 건강관리 할 시간 부족함 | 1.5 | 8.6 | 13.6 | 39.5 | 36.7 | 4.0(0.99) |
| 업무량 많아 피로 종종 느낌 | 0.8 | 5.1 | 20.5 | 36.9 | 36.8 | 4.0(0.99) |
| 업무량 많아 일찍 출근 혹은 늦게 퇴근 하는 날 많음. | 6.4 | 24.6 | 25.2 | 25.3 | 18.6 | 3.3(1.20) |

주: '근무시간 적당함' 문항은 전체평균 산출시 역코딩하였음.

- ‘휴식 및 건강관리 할 시간 부족하다’와 ‘업무량 많아 피로 종종 느낀다’는 각각 평균 4.0점,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76.2%, 73.7%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장시간 근무로 개인생활 제한 받는다’는 평균 3.5점(그렇다+매우 그렇다, 55.5%), ‘업무량 많아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 혹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다’는 평균 3.3점(그렇다+매우 그렇다, 43.9%) 순으로 나타남.

나. 휴가 및 휴직

- 2012년 한 해 동안 사용한 휴가 종류로는 59.7%가 연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타 6.7%, 경조사휴가 6.1%, 병가 4.7% 순임. 한 해 동안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법인단체, 가정 순이었으며,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 2012년 실제 사용 휴가 종류(복수응답)

| 구분 | 연가 | 경조사 휴가 | 생리 휴가 | 출산 휴가 | 병가 | 기타 | 단위: %, n=772 | |
|-----------|------|-----------|----------|----------|-----|------|----------------|----------------|
| | | | | | | | 휴가 사용 안함 | 해당 사항 없음 |
| 전체 | 59.7 | 6.1 | 0.5 | 1.6 | 4.7 | 6.7 | 12.1 | 19.3 |
| 설립유형 | | | | | | | | |
| 국공립 | 81.1 | 7.3 | 1.4 | 1.7 | 3.2 | 3.1 | 3.3 | 14.0 |
| 사회복지법인 | 77.3 | 11.1 | 1.5 | 7.3 | 3.6 | 2.9 | 9.1 | 10.5 |
| 법인단체 등 | 69.9 | 11.0 | 0.0 | 0.0 | 6.5 | 4.7 | 10.6 | 10.0 |
| 민간 | 55.7 | 5.2 | 0.5 | 1.4 | 6.4 | 9.3 | 16.7 | 15.9 |
| 직장 | 81.9 | 9.3 | 1.7 | 3.5 | 9.3 | 2.0 | 2.3 | 13.9 |
| 가정 | 53.8 | 5.4 | 0.0 | 0.8 | 2.5 | 5.3 | 9.8 | 27.9 |
| 부모협동 | 63.3 | 0.0 | 27.6 | 0.0 | 0.0 | 10.9 | 0.0 | 36.7 |
| 기관규모 | | | | | | | | |
| 20인 미만 | 53.6 | 5.1 | 0.5 | 0.9 | 5.0 | 8.1 | 13.5 | 22.9 |
| 20~50인 미만 | 70.1 | 8.6 | 0.3 | 2.2 | 4.9 | 3.9 | 9.7 | 13.5 |
| 50인 이상 | 75.5 | 6.0 | 1.4 | 5.4 | 1.7 | 5.1 | 9.3 | 11.1 |
| 지역규모 | | | | | | | | |
| 대도시 | 62.1 | 3.9 | 0.6 | 1.7 | 4.2 | 4.8 | 10.9 | 20.5 |
| 중소도시 | 57.5 | 7.8 | 0.5 | 1.4 | 4.7 | 8.8 | 12.1 | 18.9 |
| 읍면지역 | 61.7 | 6.1 | 0.0 | 2.7 | 7.2 | 2.8 | 19.0 | 15.2 |

- 2012년 한 해 동안 실제 사용 휴가 일수는 출산휴가 84.9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연가가 8.1일, 병가는 4.0일, 경조사가 3.0일, 생리휴가 2.7일로 나타남.
- 연가일수는 기관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표 7〉 2012년 실제 사용 휴가 일수

단위: 일

| 구분 | 연가 | 경조사 휴가 | 생리 휴가 | 출산 휴가 | 병가 | 기타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전체 | 8.1(4.18) | 3.0(1.57) | 2.7(3.94) | 84.9(33.22) | 4.0(4.22) | 3.9(3.76) |
| 설립유형 | | | | | | |
| 국공립 | 10.5(3.67) | 3.5(1.78) | - | 90.0(0.00) | 3.3(2.74) | 6.3(5.25) |
| 사회복지법인 | 8.8(4.31) | 2.8(1.49) | - | 52.5(40.58) | 2.7(3.18) | 2.7(3.91) |
| 법인단체 등 | 9.2(4.58) | 2.8(2.60) | - | 0.0(0.00) | 3.2(2.41) | 5.2(4.16) |
| 민간 | 8.1(4.43) | 2.9(1.50) | - | 103.5(28.01) | 2.7(1.95) | 4.1(4.04) |
| 직장 | 11.6(5.06) | 3.7(3.68) | - | 90.00(0.00) | 9.1(15.54) | 3.8(0.00) |
| 가정 | 6.4(2.81) | 3.1(1.43) | - | 90.00(0.00) | 7.9(4.92) | 2.9(1.34) |
| 부모협동 | 12.5(0.00) | 0.0(0.00) | - | 0.0(0.00) | 0.0(0.00) | 30.0(0.00) |
| <i>F</i> | 10.383*** | 0.208 | | 1.328 | 2.547* | 1.701 |
| 기관규모 | | | | | | |
| 20인 미만 | 7.4(3.59) ^a | 2.9(1.52) | 3.2(4.54) | 90.0(0.00) | 4.4(3.69) | 3.2(2.63) ^a |
| 20~50인 미만 | 9.0(4.86) ^b | 3.2(1.64) | 1.2(0.00) | 90.6(45.12) | 2.5(3.54) | 5.1(2.69) ^a |
| 50인 이상 | 9.4(4.31) ^b | 2.9(1.88) | 2.8(0.00) | 70.1(43.68) | 8.9(45.70) | 11.0(9.68) ^b |
| <i>F</i> | 10.493*** | 0.247 | 0.022 | 0.385 | 1.463 | 8.821** |

주: 집단분포특성상 설립유형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 휴가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42.7%는 사용하였고 57.3%는 사용하지 못함.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음.

〈표 8〉 어린이집 휴가 시 대체 인력 사용 여부

단위: %, n=529

| 구분 | 예 | 아니오 | 계 | χ^2 (df) |
|--------|-------|------|-------|---------------|
| 전체 | 42.7 | 57.3 | 100.0 | |
| 설립유형 | | | | |
| 국공립 | 36.4 | 63.6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41.0 | 59.0 | 100.0 | |
| 법인단체 등 | 47.4 | 52.6 | 100.0 | |
| 민간 | 41.1 | 58.9 | 100.0 | 6.2(6) |
| 직장 | 64.7 | 35.3 | 100.0 | |
| 가정 | 43.9 | 56.1 | 100.0 | |
| 부모협동 | 100.0 | 0.0 | 100.0 | |
| 지역규모 | | | | |
| 대도시 | 49.5 | 50.5 | 100.0 | |
| 중소도시 | 37.9 | 62.1 | 100.0 | 6.8(2)* |
| 읍면지역 | 39.5 | 60.5 | 100.0 | |

* $p < .05$

□ 2012년 한 해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었던 어린이집의 출산휴가는 1.2건, 육아휴직은 1.0건으로 나타남.

○ 출산휴가를 하는 비율은 지역규모에 따라서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남.

〈표 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제 사용 건수

단위: 건

| 구분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 | M(SD) | M(SD) |
| 전체 | 1.2(0.81) | 1.0(0.61) |
| 설립유형 | | |
| 국공립 | 1.3(0.78) | 1.1(1.00) |
| 사회복지법인 | 1.3(0.45) | 1.0(0.34) |
| 법인단체 등 | 1.0(0.00) | 1.0(0.00) |
| 민간 | 1.2(1.13) | 1.0(0.67) |
| 직장 | 1.4(0.80) | 1.2(0.75) |
| 가정 | 1.0(0.00) | 1.0(0.00) |
| 부모협동 | 1.0(0.00) | 1.0(0.00) |
| <i>F</i> | 0.296 | 0.198 |
| 지역규모 | | |
| 대도시 | 1.1(0.50) ^a | 1.0(0.65) |
| 중소도시 | 1.1(0.59) ^a | 1.0(0.62) |
| 읍면지역 | 1.8(2.01) ^b | 1.0(0.00) |
| <i>F</i> | 4.121* | 0.012 |

주: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휴가에 대한 어린이집교사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2.6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우리 원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다’는 평균 2.9점(그렇다+매우 그렇다, 41.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우리 원 규정 내에서 휴가, 병가, 조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가 평균 2.8점(그렇다+매우 그렇다, 34.1%)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에 ‘나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충분하다’는 평균 2.0점(그렇다+매우 그렇다, 7.9%)에 불과함.

〈표 10〉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그런 편임 | 매우 그런 편임 | M(SD) (전체=26집) |
|---------------------------------|-----------|-----------|------|-------|----------|-------------------|
| 나에게 주어지는 휴가 충분함 | 35.4 | 34.2 | 22.6 | 7.1 | 0.8 | 2.0(0.97) |
| 원 규정 내에서 휴가, 병가, 조퇴 등 사용가능 분위기임 | 17.4 | 28.4 | 20.1 | 27.0 | 7.1 | 2.8(1.22) |
| 우리 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 분위기임 | 20.6 | 19.1 | 19.1 | 28.2 | 13.1 | 2.9(1.35) |
| 우리 원 육아휴직 사용가능 분위기임 | 27.9 | 25.4 | 18.8 | 19.7 | 8.1 | 2.5(1.30) |

다.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 어린이집에 교사용 공간이 있는 경우는 35.6%이고 공간이 따로 없는 경우는 64.4%로 나타남. 식사공간이 없는 경우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는 41.8%, 독립된 식당이 있는 경우는 7.2%에 불과함.
 - 교사용 공간이 없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남.
 - 식사공간이 없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가 높게 나타남.

〈표 11〉 교사용 공간 및 식사공간 여부

단위: %, n=772

| 구분 | 교사용 공간 여부 | | | 식사공간여부 | | | | | |
|-----------|-----------|------|-------|---------------|-----------------|------------------|------|-------|---------------|
| | 있음 | 없음 | 계 | χ^2 (df) | 독립된 식당 있음 | 다른 공간 함께 씀 | 없음 | 계 | χ^2 (df) |
| 전체 | 35.6 | 64.4 | 100.0 | | 7.2 | 41.8 | 51.0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 |
| 국공립 | 54.5 | 45.5 | 100.0 | | 4.9 | 46.7 | 48.4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51.8 | 48.2 | 100.0 | | 18.7 | 37.9 | 43.4 | 100.0 | |
| 법인단체 등 | 46.4 | 53.6 | 100.0 | | 14.0 | 44.4 | 41.6 | 100.0 | |
| 민간 | 41.7 | 58.3 | 100.0 | 75.1(6)** | 8.1 | 34.9 | 56.9 | 100.0 | 30.3(12)** |
| 직장 | 65.3 | 34.7 | 100.0 | | 10.8 | 46.9 | 42.3 | 100.0 | |
| 가정 | 16.3 | 83.7 | 100.0 | | 3.5 | 49.8 | 46.7 | 100.0 | |
| 부모협동 | 65.1 | 34.9 | 100.0 | | 8.4 | 50.2 | 41.4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 |
| 20인 미만 | 24.8 | 75.2 | 100.0 | | 6.0 | 40.3 | 53.7 | 100.0 | |
| 20~50인 미만 | 55.4 | 44.6 | 100.0 | 75.9(2)** | 9.3 | 42.1 | 48.7 | 100.0 | 9.2(4) |
| 50인 이상 | 59.2 | 40.8 | 100.0 | | 10.6 | 53.0 | 36.4 | 100.0 | |
| 지역규모 | | | | | | | | | |
| 대도시 | 39.8 | 60.2 | 100.0 | | 6.3 | 41.1 | 52.6 | 100.0 | |
| 중소도시 | 30.8 | 69.2 | 100.0 | 9.3(2)** | 6.3 | 43.4 | 50.3 | 100.0 | 10.6(4)* |
| 읍면지역 | 46.0 | 54.0 | 100.0 | | 17.8 | 34.8 | 47.3 | 100.0 | |

* $p < .05$, ** $p < .01$, *** $p < .001$

□ 독립된 교사실이 없는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공간을 함께 쓰고 있는 경우는 41.9%,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함. 어린이집 내에 교사의 독립된 자리가 없는 경우는 66.5%로 있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교사실이 없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남.
- 독립된 자리가 없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부모협동을 제외하고 가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남.

〈표 12〉 교사실 및 독립된 자리 여부

단위: %

| 구분 | 교사실 여부 | | | | 독립된 자리 여부 | | | | |
|-----------|------------|------------|------|-----------|---------------|------|-------|-----------|---------------|
| | 독립된 교사실 있음 | 다른 공간 함께 씀 | 없음 | 계 (n=772) | $\chi^2 (df)$ | 있음 | 없음 | 계 (n=428) | $\chi^2 (df)$ |
| 전체 | 13.5 | 41.9 | 44.5 | 100.0 | | 33.5 | 66.5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 |
| 국공립 | 23.9 | 53.7 | 22.4 | 100.0 | | 26.9 | 73.1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35.4 | 45.8 | 18.8 | 100.0 | | 41.0 | 59.0 | 100.0 | |
| 법인단체 등 | 21.7 | 43.5 | 34.8 | 100.0 | | 46.7 | 53.3 | 100.0 | |
| 민간 | 12.0 | 44.6 | 43.4 | 100.0 | 101.7(12)** | 39.6 | 60.4 | 100.0 | 20.0(6)** |
| 직장 | 50.0 | 35.0 | 15.0 | 100.0 | | 47.1 | 52.9 | 100.0 | |
| 가정 | 4.6 | 35.5 | 59.9 | 100.0 | | 17. | 82.1 | 100.0 | |
| 부모협동 | 50.0 | 50.0 | 0.0 | 100.0 | | 0.0 | 100.0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 |
| 20인 미만 | 6.9 | 39.3 | 53.8 | 100.0 | | 26.5 | 73.5 | 100.0 | |
| 20~50인 미만 | 24.1 | 47.8 | 28.1 | 100.0 | 81.2(4)*** | 38.4 | 61.6 | 100.0 | 14.2(2)** |
| 50인 이상 | 32.3 | 45.2 | 22.6 | 100.0 | | 52.1 | 47.9 | 100.0 | |
| 지역규모 | | | | | | | | | |
| 대도시 | 13.5 | 44.6 | 42.0 | 100.0 | | 35.9 | 64.1 | 100.0 | |
| 중소도시 | 10.7 | 39.8 | 49.5 | 100.0 | 27.4(4)*** | 32.5 | 67.5 | 100.0 | 1.3(2) |
| 읍면지역 | 32.8 | 43.1 | 24.1 | 100.0 | | 27.3 | 72.7 | 100.0 | |

** $p < .01$, *** $p < .001$

□ 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공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35.9%, 독립 휴게실이 있는 경우는 3.2%에 불과함.

○ 교사 휴식 공간이 없는 경우는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남.

〈표 13〉 교사 휴식 공간 여부

단위: %, n=772

| 구분 | 독립 휴게실 있음 | 다른 공간 함께 씀 | 없음 | 계 | $\chi^2 (df)$ |
|--------|-----------|------------|------|-------|---------------|
| 전체 | 3.2 | 35.9 | 60.9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국공립 | 7.5 | 42.3 | 50.2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8.8 | 49.0 | 42.2 | 100.0 | |
| 법인단체 등 | 2.6 | 38.6 | 58.8 | 100.0 | 19.0(12) |
| 민간 | 2.3 | 34.5 | 63.1 | 100.0 | |

(표 13 계속)

| 구분 | 독립 휴게실 있음 | 다른 공간 함께 씀 | 없음 | 계 | $\chi^2 (df)$ |
|-----------|--------------|---------------|------|-------|---------------|
| 직장 | 3.8 | 41.1 | 55.1 | 100.0 | 19.0(12) |
| 가정 | 2.2 | 33.0 | 64.8 | 100.0 | |
| 부모협동 | 0.0 | 54.3 | 45.7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20인 미만 | 2.0 | 33.0 | 65.0 | 100.0 | 16.2(4)** |
| 20~50인 미만 | 5.0 | 39.7 | 55.3 | 100.0 | |
| 50인 이상 | 6.4 | 47.7 | 45.9 | 100.0 | |
| 지역규모 | | | | | |
| 대도시 | 3.2 | 37.1 | 59.7 | 100.0 | 25.3(4)*** |
| 중소도시 | 2.5 | 31.8 | 65.7 | 100.0 | |
| 읍면지역 | 8.0 | 58.3 | 33.7 | 100.0 | |

** $p < .01$, *** $p < .001$

- 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응답은 54.7%로 없다는 45.3%보다 높았음. 교사를 위한 다른 공간은 97.4%가 없다고 응답함.
 - 교사용 화장실이 없다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기관규모에 따라 20인 미만,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가 높게 나타남.
 - 교사를 위한 기타 공간이 없다는 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교사용 화장실 및 교사를 위한 기타 공간 여부

단위: %, n=772

| 구분 | 교사용 화장실 여부 | | | $\chi^2 (df)$ | 교사 위한 기타 공간 | | | $\chi^2 (df)$ |
|-----------|------------|------|-------|---------------|-------------|------|-------|---------------|
| | 있음 | 없음 | 계 | | 있음 | 없음 | 계 | |
| 전체 | 54.7 | 45.3 | 100.0 | | 2.6 | 97.4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
| 국공립 | 89.0 | 11.0 | 100.0 | 173.8(6)*** | 4.0 | 96.0 | 100.0 | 7.1(6) |
| 사회복지법인 | 82.9 | 17.1 | 100.0 | | 1.2 | 98.8 | 100.0 | |
| 법인단체 등 | 85.4 | 14.6 | 100.0 | | 7.1 | 92.9 | 100.0 | |
| 민간 | 63.2 | 36.8 | 100.0 | | 3.4 | 96.6 | 100.0 | |
| 직장 | 84.8 | 15.2 | 100.0 | | 3.2 | 96.8 | 100.0 | |
| 가정 | 24.3 | 75.7 | 100.0 | | 1.0 | 99.0 | 100.0 | |
| 부모협동 | 37.5 | 62.5 | 100.0 | | 19.2 | 80.8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
| 20인 미만 | 40.9 | 59.1 | 100.0 | 113.1(2)*** | 2.1 | 97.9 | 100.0 | 4.8(2) |
| 20~50인 미만 | 80.2 | 19.8 | 100.0 | | 4.6 | 95.4 | 100.0 | |
| 50인 이상 | 83.8 | 16.2 | 100.0 | | 0.6 | 99.4 | 100.0 | |

(표 14 계속)

| 구분 | 교사용 화장실 여부 | | | | 교사 위한 기타 공간 | | | |
|------|------------|------|-------|---------------|-------------|------|-------|---------------|
| | 있음 | 없음 | 계 | $\chi^2 (df)$ | 있음 | 없음 | 계 | $\chi^2 (df)$ |
| 지역규모 | | | | | | | | |
| 대도시 | 53.7 | 46.3 | 100.0 | 6.6(2)* | 2.8 | 97.2 | 100.0 | 9.1(2)* |
| 중소도시 | 53.0 | 47.0 | 100.0 | | 1.7 | 98.3 | 100.0 | |
| 읍면지역 | 71.0 | 29.0 | 100.0 | | 8.5 | 91.5 | 100.0 | |

* $p < .05$, *** $p < .001$

- 어린이집 교사의 24.9%가 개인용 PC가 있고, 80.0%는 공용 PC를 가지고 있음.
- 개인용 PC가 있는 비율은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기관규모별로는 20~50인 미만,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PC가 전혀 없는 비율은 설립유형별로는 부모협동어린이집, 기관규모별로는 20인 미만,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 어린이집 내 개인용 PC 및 공용 PC 여부(중복응답)

단위: %, n=772

| 구분 | 유치원 내 PC 여부 | | |
|-----------|-------------|----------|-------|
| | 개인용 PC 있음 | 공용 PC 있음 | PC 없음 |
| 전체 | 24.9 | 80.0 | 2.6 |
| 설립유형 | | | |
| 국공립 | 48.2 | 62.5 | 0.0 |
| 사회복지법인 | 31.4 | 78.9 | 0.7 |
| 법인단체 등 | 50.0 | 60.0 | 1.8 |
| 민간 | 32.6 | 74.9 | 2.9 |
| 직장 | 53.7 | 65.8 | 0.0 |
| 가정 | 3.1 | 94.3 | 3.5 |
| 부모협동 | 24.1 | 84.3 | 4.8 |
| 기관규모 | | | |
| 20인 미만 | 14.6 | 86.8 | 3.7 |
| 20~50인 미만 | 46.4 | 66.1 | 0.7 |
| 50인 이상 | 39.1 | 70.1 | 0.0 |
| 지역규모 | | | |
| 대도시 | 23.0 | 83.8 | 1.1 |
| 중소도시 | 26.4 | 76.8 | 4.1 |
| 읍면지역 | 24.6 | 81.7 | 0.0 |

주: 집단분포특성상 설립유형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a, b, c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 어린이집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3.3점으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 ‘4대 보험 제도가 규정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4.4점(그렇다+매우 그렇다, 8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3.8점(그렇다+매우 그렇다, 68.4%), ‘원장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와 ‘보육실 크기가 현재 영유아를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가 3.3점 순임. ‘교사를 위한 교사실, 휴게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가 2.0점(그렇다+매우 그렇다, 7.3%)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표 16〉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만족도

| 구분 | 단위: %, 점 | | | | | M(SD) (전체=3.3점) |
|-----------------------------|-----------|-----------|------|-------|----------|--------------------|
|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그런 편임 | 매우 그런 편임 | |
| 교사와 영유아 비율 적절함 | 13.3 | 21.6 | 26.5 | 25.4 | 13.3 | 3.0(1.24) |
| 보육실 크기 현재 영유아 수용하기에 적정함 | 5.7 | 16.8 | 28.8 | 34.7 | 14.0 | 3.3(1.09) |
| 모든 시설 나의 보육활동 편리하도록 운영됨 | 6.8 | 19.0 | 38.5 | 28.8 | 6.8 | 3.1(1.01) |
| 내가 일 잘할 수 있는 설비와 자료 갖추어져 있음 | 6.1 | 20.1 | 36.8 | 30.4 | 6.6 | 3.1(1.00) |
| 교사 위한 교사실, 휴게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 | 41.5 | 30.8 | 20.4 | 5.4 | 1.9 | 2.0(1.00) |
| 원장과 의사소통 잘됨 | 7.4 | 14.0 | 27.9 | 38.0 | 12.8 | 3.3(1.10) |
| 동료 교사 의사소통 잘됨 | 0.9 | 3.6 | 27.1 | 49.3 | 19.1 | 3.8(0.81) |
| 부모와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할 분위기임 | 6.5 | 17.1 | 29.4 | 38.7 | 8.2 | 3.2(1.04) |
| 4대 보험제도 규정대로 잘 시행됨 | 0.5 | 1.3 | 10.2 | 33.0 | 55.1 | 4.4(0.76) |

라. 이직

-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2%이며, 이들의 이직횟수는 평균 2.5번임. 현재 이직을 원하는 경우는 48.9%로 반수에 가까움.
 - 이직경험이 있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20인 미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이직 경험 및 이직 희망 여부

단위: %, n=772, 번

| 구분 | 이직 경험 | | | | 현재 이직 원함 | | | | 이직횟수 | |
|-----------|-------|------|-------|---------------|----------|------|-------|---------------|-----------|-------|
| | 예 | 아니오 | 계 | $\chi^2 (df)$ | 예 | 아니오 | 계 | $\chi^2 (df)$ | M(SD) | F |
| 전체 | 64.2 | 35.8 | 100.0 | | 48.9 | 51.1 | 100.0 | | 2.5(1.48) | |
| 설립유형 | | | | | | | | | | |
| 국공립 | 67.2 | 32.8 | 100.0 | | 49.3 | 50.7 | 100.0 | | 2.2(1.32) | |
| 사회복지법인 | 45.8 | 54.2 | 100.0 | | 56.3 | 43.8 | 100.0 | | 2.6(1.49) | |
| 법인단체 등 | 50.0 | 50.0 | 100.0 | | 47.8 | 52.2 | 100.0 | | 2.5(1.22) | |
| 민간 | 61.4 | 38.6 | 100.0 | 17.3(6)** | 46.9 | 53.1 | 100.0 | 1.8(6) | 2.4(1.37) | 1.744 |
| 직장 | 70.0 | 60.0 | 100.0 | | 50.0 | 50.0 | 100.0 | | 2.0(1.37) | |
| 가정 | 71.4 | 28.6 | 100.0 | | 50.0 | 50.0 | 100.0 | | 2.8(1.65) | |
| 부모협동 | 100.0 | 0.0 | 100.0 | | 50.0 | 50.0 | 100.0 | | 2.4(0.00) | |
| 기관규모 | | | | | | | | | | |
| 20인 미만 | 67.9 | 32.1 | 100.0 | | 48.9 | 51.1 | 100.0 | | 2.6(1.56) | |
| 20-50인 미만 | 57.6 | 42.4 | 100.0 | 9.2(2)* | 48.0 | 52.0 | 100.0 | 0.2(2) | 2.4(1.25) | 0.939 |
| 50인 이상 | 54.8 | 45.2 | 100.0 | | 51.6 | 48.4 | 100.0 | | 2.6(1.42) | |
| 지역규모 | | | | | | | | | | |
| 대도시 | 66.7 | 33.3 | 100.0 | | 40.6 | 59.4 | 100.0 | | 2.4(1.43) | |
| 중소도시 | 63.7 | 36.3 | 100.0 | 2.9(2) | 55.0 | 45.0 | 100.0 | 14.9(2)** | 2.6(1.54) | 1.924 |
| 읍면지역 | 55.2 | 44.8 | 100.0 | | 52.6 | 47.4 | 100.0 | | 2.2(1.23) | |

* $p < .05$, ** $p < .01$

-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 인식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2점으로 이직에 대해서는 보통보다는 조금 더 이직에 대한 생각이 있는 편임.
- ‘보육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평균 3.3점(그렇다+매우 그렇다, 50.8%)로 가장 많았고,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평균 3.2점(그렇다+매우 그렇다, 17.4%), ‘출근시에 종종 결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평균 3.1점(그렇다+매우 그렇다, 39.7%) 순임. ‘나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이 나타나도 이직할 생각이 없다’는 평균 2.3점(그렇다+매우 그렇다, 1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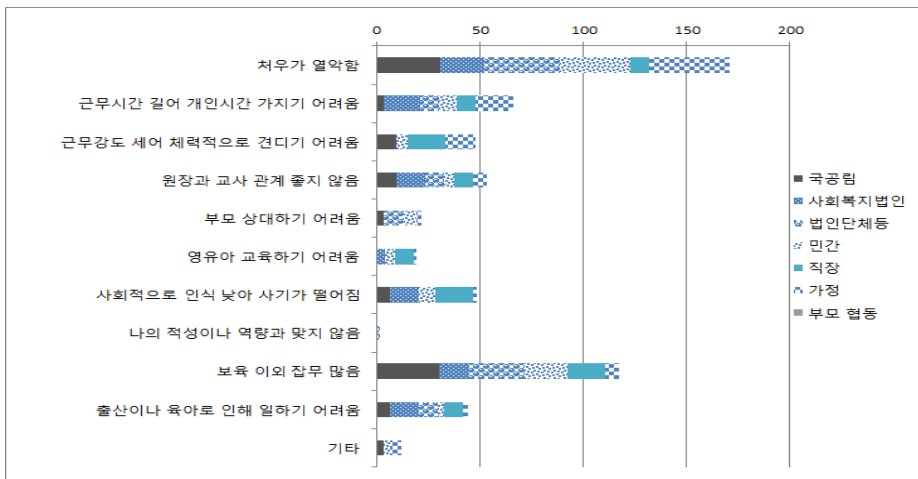
〈표 18〉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그런 편임 | 매우 그런 편임 | M(SD) (전체=3.2점) |
|--|-----------|-----------|------|-------|----------|--------------------|
| 출근시에 종종 결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6.7 | 27.1 | 26.6 | 26.6 | 13.1 | 3.1(1.15) |
|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 | 8.3 | 22.5 | 21.7 | 1.1 | 16.3 | 3.2(1.21) |
|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 14.8 | 33.7 | 24.9 | 18.2 | 8.4 | 2.7(1.17) |
| 현재 수준의 수입이 보장된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 | 16.0 | 26.0 | 23.3 | 24.9 | 9.7 | 2.9(1.23) |
| 보육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 | 9.7 | 20.7 | 18.7 | 27.8 | 23.0 | 3.3(1.30) |
|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이 나타나도 이직할 생각이 없다. | 30.3 | 29.6 | 24.2 | 10.3 | 5.7 | 2.3(1.17) |

주: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할 생각 없음' 문항은 전체평균 산출시 역코딩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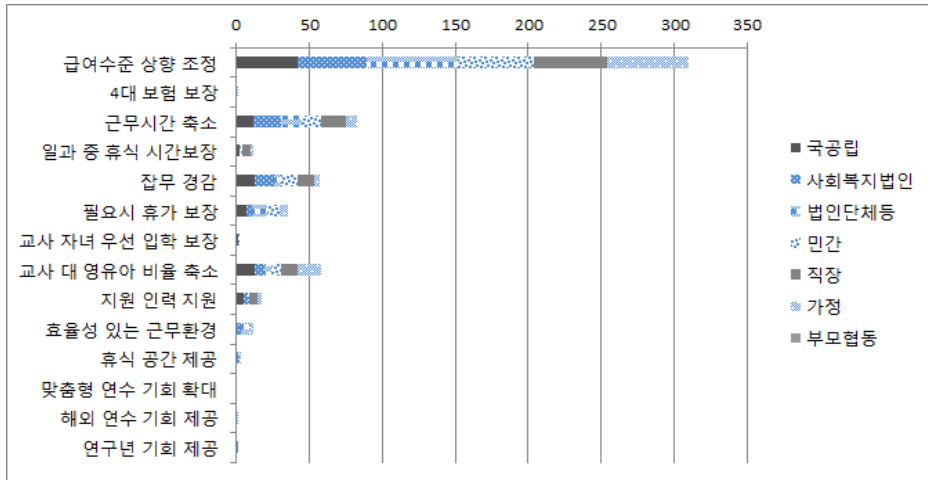
□ 사직 및 이직의도가 있는 경우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처우가 열악해서가 34.1%, 보육 이외 잡무가 많음이 16.4%, 근무시간 길어 개인시간 가지기 어려움이 12.2%순임.



[그림 1] 어린이집 교사 이직 사유(1순위)

마. 복지에 대한 요구

□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급여수준 상향 조정 52.7%, 근무시간 축소 11.9%,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10.6%, 잡무 경감 9.0%, 필요시 휴가 보장 7.2% 순으로 응답함.



[그림 2]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에 대한 요구(1순위)

- 어린이집 교사가 희망하는 휴게시간대는 낮잠시간이 52.8%, 점심시간이 39.7%, 오후 시간대는 7.5%순이며, 일과 중 희망하는 휴게시간은 평균 51.9분임. 원하는 휴가 일수는 평균 16.2일로 실제 연가 8.1일의 2배 정도임.
- 설립유형 중 사단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낮잠 시간에 휴게시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
- 연중 원하는 휴가일수는 설립유형에 따라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공립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순임.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기관 규모가 클수록 원하는 휴가일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

〈표 19〉 어린이집 교사가 원하는 업무 중 휴게시간 및 휴가일수

단위: %, n=772, 분, 일

| 구분 | 원하는 휴게시간대(%) | | | | χ^2 (df) | 일과 중 원하는 휴게시간 (분) | | 연중 원하는 휴가일수 (일) | |
|-----------|--------------|-------|------|-------|---------------|-------------------|-------|-------------------------|---------|
| | 점심 시간 | 낮잠 시간 | 오후 | 계 | | M(SD) | F | M(SD) | F |
| 전체 | 39.7 | 52.8 | 7.5 | 100.0 | | 51.9(19.10) | | 16.2(7.56) | |
| 설립유형 | | | | | | | | | |
| 국공립 | 41.8 | 46.3 | 11.9 | 100.0 | | 54.9(19.21) | | 18.7(6.99) | |
| 사회복지법인 | 52.1 | 37.5 | 10.4 | 100.0 | | 55.3(19.55) | | 17.7(6.95) | |
| 법인단체 등 | 47.8 | 34.8 | 17.4 | 100.0 | | 53.9(17.03) | | 18.7(12.50) | |
| 민간 | 43.1 | 46.3 | 10.6 | 100.0 | 52.7(12)*** | 50.8(19.26) | 0.877 | 16.1(8.23) | 3.404** |
| 직장 | 50.0 | 45.0 | 5.0 | 100.0 | | 54.9(17.35) | | 18.0(4.35) | |
| 가정 | 30.5 | 68.3 | 1.1 | 100.0 | | 51.5(19.06) | | 15.0(6.15) | |
| 부모협동 | 50.0 | 50.0 | 0.0 | 100.0 | | 57.2(39.00) | | 21.4(14.55) | |
| 기관규모 | | | | | | | | | |
| 20인 미만 | 35.3 | 61.1 | 3.6 | 100.0 | | 52.1(8.29) | | 15.6(6.79) ^a | |
| 20~50인 미만 | 48.8 | 38.9 | 12.3 | 100.0 | 66.8(4)*** | 51.2(21.19) | 0.196 | 17.2(8.95) ^b | 4.523* |
| 50인 이상 | 45.2 | 30.6 | 24.2 | 100.0 | | 52.2(18.67) | | 17.8(8.17) ^b | |

*** $p < .001$

-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자신의 몸이 아플 때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집안일이 있을 때 21.5%, 아이가 아플 때 17.8%, 육아 때문일 때가 3.5%순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경향은 비슷하나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사회복지어린이집 교사는 육아,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아플 때와 집안 일 있을 때 휴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관규모별로는 기관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몸이 아플 때, 기관규모가 작을수록 아이 몸이 아플 때 휴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표 20〉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 필요 사유

단위: %, n=772

| | 자신 몸 아플 때 | 육아 때문 | 아이 아플 때 | 집안 일 있을 때 | 기타 | 계 | χ^2 (df) |
|--------|-----------|-------|---------|-----------|-----|-------|---------------|
| 전체 | 54.7 | 3.5 | 17.8 | 21.5 | 2.5 | 100.0 | |
| 설립유형 | | | | | | | |
| 국공립 | 58.6 | 4.8 | 11.0 | 22.7 | 2.9 | 100.0 | |
| 사회복지법인 | 58.3 | 10.4 | 10.1 | 18.8 | 2.5 | 100.0 | |

(표 20 계속)

| | 자신 몸 아플 때 | 육아 때문 | 아이 아플 때 | 집안 일 있을 때 | 기타 | 계 | $\chi^2 (df)$ |
|-----------|--------------|----------|------------|--------------|-----|-------|---------------|
| 법인단체 등 | 66.7 | 0.8 | 13.9 | 12.3 | 6.2 | 100.0 | |
| 민간 | 60.4 | 2.1 | 14.1 | 21.3 | 2.1 | 100.0 | |
| 직장 | 69.8 | 1.5 | 2.9 | 19.3 | 6.4 | 100.0 | 47.1(24)** |
| 가정 | 43.2 | 4.2 | 27.3 | 22.8 | 2.4 | 100.0 | |
| 부모협동 | 61.8 | 0.0 | 21.4 | 10.9 | 6.0 | 100.0 | |
| 기관규모 | | | | | | | |
| 20인 미만 | 51.9 | 2.8 | 20.7 | 22.7 | 2.0 | 100.0 | |
| 20~50인 미만 | 59.4 | 5.3 | 14.2 | 16.8 | 4.3 | 100.0 | 22.0(8)** |
| 50인 이상 | 62.8 | 4.1 | 5.3 | 26.8 | 1.0 | 100.0 | |

** $p < .01$

3. 정책제언

가. 근무시간 및 업무량 경감

1)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오후 교사 배치

-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하루 종일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 2011).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55.1시간으로 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3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은 주당 6.2시간으로 하루에 평균 1시간 14분 정도이며, 근무시간 중의 비중으로 환산하면 10%가 조금 넘음.
- 교육과 보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교사가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시간 외에 교육을 위한 준비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함.
 - 오전 담당 교사는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 퇴근하고, 오후 담당 교사는 12시경 출근하여 오후 8시경에 퇴근하는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시간과 전체 업무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김은영 외, 2011).
 -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후전담교사가 6시간 시간제로 일할 수 있음.

2)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배치를 통한 업무 경감

- 어린이집 교사들은 많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원인력 배치를 통한 잡무 경감이 필요함.
 - 교사들이 기타 업무를 줄이고 교육과 보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보조교사, 행정원(사무원), 취사부(취사원), 청소원(위생원)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함.
 - 재정상의 이유로 지원 인력을 동시에 배치하기가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두어 행정원(사무원), 보조교사, 취사부(취사원), 청소원(위생원) 순으로 진행할 수 있음.

3)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보장이나 점심시간 근로시간 인정

- 어린이집 교사는 거의 휴식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교사의 실제 휴식시간은 17분이나 52분 정도의 휴식을 원하고 있음.
-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주어야 함.
 -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은 없으나 다른 직장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임. 반면 어린이집은 점심시간에도 보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나. 휴가 및 휴직 보장

1) 대체교사 규모 확대 및 관리 체계 내실화

- 현 대체교사 규모를 확대하여 교사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는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대체교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미리 계획된 일에는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는 등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지원받기가 어려움.

- 시도별로 대체교사 인력 풀을 확보하고 대체교사를 전임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며 현 교사수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체교사로 확보해야 함.
 - 어린이집 교사의 10%인 284,237명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되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교사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함.

2) 장기 휴가 제도화

- 교사들의 실제 휴가 일수와 희망하는 휴가 일수는 2배 차이가 남.
 - 어린이집 교사의 실제 휴가일수는 8일, 희망하는 휴가일수는 16일임.
- 업무 과중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휴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최소 여름과 겨울 각 2주 정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는 휴가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장기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의 확보와 체계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

다.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1)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 및 지원

- 어린이집의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는 매우 열악함.
 - 어린이집에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가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예 없는 경우가 45%에 달함.
 - 교사를 위한 독립된 휴식 공간이 있는 경우가 3%에 불과했으며, 교사용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45%에 달했고, 개인 컴퓨터가 없는 경우도 75%나 됨.
- 교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간은 부족한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조차 차례를 기다리며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업무과중과 강도를 더 심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화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하향화 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교사들이 개별 영유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됨.
 - 중장기적으로 어린이집 0세는 2명, 만 3세는 14명, 만 4세는 18명 정도로 하향화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5세 20명은 현재대로 유지해도 괜찮음.

라.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지원

1) 공공성을 확보한 교사 임용 체계 마련

-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정도의 엄격한 임용 체계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사 임용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공공성을 확보한 교사 임용 체계는 더 질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교사가 고용 안정성을 포함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용을 한다거나 교사 임용 시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임용 결정을 하는 등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2) 교사 권리 보호 제도 마련

- 교사도 전문가로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제도에 맞는 근무시간과 휴가,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사의 권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나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권성민(2011).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지지가 업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16), 313-333.
- 김선미(2008). 공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교육실행연구, 11, 125-150.
-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박은혜(2006). 유치원 교사의 직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392), 303-323.
- 김은영·장혜진·조혜주(2013).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문동규·김영희·최은경(201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관련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1), 213-234.
- 박은미(2011).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보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4), 263-290.
- 박은주·문태형(2011).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2), 75-99.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 이승은·서현(2012). 유아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주관적 이해 분석. 유아교육연구, 32(6), 441-466.
- 황옥경(2012). 보육교사의 처우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49-272.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영유아 종일제 보육비용 산정

서문희·양미선

요약

-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각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 1인당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둠.
- 보육비용 산정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5개 항목별 비용 산정 후 연령 및 규모별로 산출함.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안은 77인 기준으로 0세 879,650원, 1세 614,576원, 2세 488,365원, 3세 371,094원, 4,5세 331,888원임. 2안은 77인 기준 0세는 98만원 수준이고, 1세는 70만원 선이며, 2세는 56만원, 3세 43만원, 4,5세 39만원 정도임.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 소득계층에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 재정 지원은 보육의 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요청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보육료와 교육비 산정이 필요함을 의미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각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 1인당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을 둠.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¹⁾

1)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 기존 연구의 보육비용 산출을 검토함.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구조를 어린이집 유형, 규모별로 분석하였음.
 -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로 시설규모 및 아동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보육비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으로 문헌 자료 수집, 기존 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였음.
-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 어린이집통합시스템에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2013년 4월 전국 전체 어린이집의 항목별 수입,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재교구 목록을 선정하고 주요 3개 교재교구 업체의 교재교구 가격을 조사하였음.
 - 규범적 접근법과 현상적 접근법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음.
 - 외부 전문가를 공동연구진 또는 연구 협력진으로 활용하였음.

2. 보육비용 산출 선행연구

가. 정부 표준보육단가

- 정부가 보육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한 것은 1991~1999년 기간 동안이고, 1992년 이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일반아동 보육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이는 1999년까지 제시되었으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정부 지원단가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로 사용하였음. 국공립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는 정부 지원단가로 일원화 되었음.
- 1998년 보육단가 산정에 포함된 항목은 <표 1>과 같이 종사자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로 구성함.
- 종사자인건비에 기본급·상여금, 퇴직적립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보육수당, 시간외 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영아담당수당이 포함됨.
 - 시설관리운영비에는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가 포함됨.

〈표 1〉 정부지원단가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항목 | 연령 구분 및 유형 |
|------|---|---|
| 1998 | - 종사자인건비: 기본급·상여금, 퇴직적립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보육수당, 시간외 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영아담당수당 - 보육아동급식비 - 교재교구비 - 시설관리운영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 차량운영비 | - 2세미만, 2세, 3세 이상 - 정부지원, 민간 가정 3개 유형별 일반아동 표준보육단가 제시 |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나. 표준보육비용 산출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과 정부지원단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모의 부담이나 아동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따라서 표준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일부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개념 정의, 포함 범주 및 기준, 산출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표 2 참조).
 - 2004년에는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조세연구원(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손영민, 2005)에서 표준보육비용을 공식적인 어린이집을 통해 만 0~5세의 영유아 1인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비용 산출에 포함된 범주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보통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임.
 -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으로 추진된 연구는(김현숙·서병선, 2008) 2005년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료 구성 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을 재산정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의 '표준'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가리키는 말, 보육법령 및 시행령 등 법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사회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세 가지로 정의하여 활용하였음.

〈표 2〉 영유아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산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박기백·김현숙 외 (2005) | 김현숙·서병선 (2008) | 김혜금 외 (2010) | 이미화 외 (2012) |
|------|--|--|---|---|
| 방식 | - 규범적 접근 | - 규범적 접근에 현상 반영 | - 현상적 접근에 규범 반영 | - 현상적 접근에 규범 반영 |
| 범주 | - 종사자 인건비 - 아동급간식비 - 교재교구비(보통 교실설비비, 교육 재료비 및 소모품) -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수용경비) - 시설설치비 | - 좌동 | -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 시설비 | -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 재산조성비(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 규모유형 | - 7개 집단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연령유형 | - 교사대 아동 비율 차이 반영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기타 | - 유치원과 통합 모형 적용 - 2개 대안 제시 | - 교사경력, 표준 보육과정 반영 - 지방정부보조금 삭감 - 2개 대안 제시 | - 수준과 운전기사 인건비 반영하여 4개안 제시 | - 단일안 제시 |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혜금, 2010)는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정의하고 수준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간호사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취사부 수는 배치기준을 초과함. 운전기사 인건비 포함 여부 및 수준 반영으로 4종의 안을 제시하였음.
- 2012년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이미화 외(2012)도 김혜금과 유사한 기준과 방식으로 어린이집 수입-지출 자료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출하였음.

<표 3> 영유아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산출 결과(97인 기준)

단위: 원/월

| | 박기백·김현숙 외 (2005) | 김현숙·서병선 (2008) | 김혜금 (2010) | 이미화 외 (2012) | 보육지원단가 (2013) |
|------|---------------------|-------------------|---------------|-----------------|------------------|
| 만 0세 | 788,973 | 711,300 | 1,012,325 | 877,828 | 755,000 |
| 만 1세 | 524,038 | 512,800 | 695,214 | 589,224 | 521,000 |
| 만 2세 | 403,333 | 409,200 | 550,886 | 474,603 | 401,000 |
| 만 3세 | 267,143 | 296,400 | 385,646 | 324,245 | 220,000 |
| 만 4세 | 247,529 | 283,400 | 344,285 | 292,542 | 220,000 |
| 만 5세 | 249,503 | 284,200 | 344,285 | | 220,000 |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이미화·서문희·임양미·엄지원(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들 산출 결과는 97인 어린이집 0세아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는 재무회계 세출자료에 의거한 자료로 2010년에 100만원 정도까지로 산출하였음.

3. 어린이집 운영 비용 세출

가. 세출 항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관·항·목은 아래 <표 4>와 같음.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목으로 구성됨.
- 관리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다양한 이유로 지출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됨.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는 실제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조리와 난방에 모두 사용하므로 그 구분이 불가능함.
 - 차량비는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아동에 한정되는 선별적 수혜인데, 이 경우에도 통학비만 산정하고 있음.
 -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타운영비를 관리운영비로 분류하고 있음.

〈표 4〉 어린이집 세출 관항목

| 관 | 항 | 목 |
|----------|--------------------------|--------------------|
| 어린이집 운영비 | 인건비 | - 기본급 - 일용잡급 |
| | | - 제수당 - 퇴직금·퇴직적립금 |
| | - 사회보험 부담비용 - 기타 후생경비 | |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급 - 회의비 | |
| | - 여비 -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 |
| 관리운영비 | - 차량비 - 연료비 - 기타운영비 | |
| | - 급간식비 - 교재교구비 - 행사비 | |
| 사업운영비 | - 기타 필요경비 지출 - 특별활동비 지출 | |
| |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 |
| 재산조성비 | 재산조성비 | - 법인회계전출금 - 차입금 상환 |
| 전출금 | 전출금 | - 보조금반환 - 보호자반환금 |
| | | - 과년도 지출 |
| 과년도 지출 | 과년도 지출 | - 과년도 지출 |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 예비비 | 예비비 | - 예비비 |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가 포함됨. 급간식비는 식재료비이고, 교재교구비는 5만원 미만의 내구 연한 3년 미만으로 한정하지만 보육활동에는 비품성 교구도 필수불가결함.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이고, 기타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는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임.
- 재산조성비 중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개·보수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와,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임.

나. 세출 구조

1) 시설유형별

- 기타 필요경비 지출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총 세출의 64.0%를 차지하고 관리운영비가 17.0% 정도, 사업비가 12.8%임. 이외는 전출금이 2.6%이고 업무추진비와 재산조성비가 각각 1.6%, 2.0%임. 기타 필요경비 지출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59.2%, 사업비 19.3%이고, 관리운영비가 15.6% 정도임.
- 시설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이지만 절대 비율은 높지 않음(표 5, 표 6 참조).

〈표 5〉 시설유형별 전체 어린이집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위: %(개소)

| 구분 | 인건비 | 업무 추진비 | 관리 운영비 | 사업비 | 재산 조성비 | 전출금 | 기타 | (수) |
|----------|--------------------|------------------|---------------------|---------------------|-------------------|-----|-----|----------|
| 전체 | 64.0 | 1.6 | 16.9 | 12.8 | 2.0 | 2.6 | 0.2 | (42,467) |
| 국공립 | 63.1 | 1.6 | 17.9 | 12.8 | 2.0 | 2.4 | 0.2 | (2,231) |
| 법인 | 63.4 | 1.4 | 15.9 | 13.9 | 2.7 | 2.4 | 0.2 | (1,432) |
| 법인단체외 | 63.5 | 1.6 | 16.3 | 13.4 | 2.2 | 2.8 | 0.2 | (860) |
| 민간 | 63.9 | 1.6 | 16.9 | 12.8 | 2.0 | 2.6 | 0.2 | (14,393) |
| 가정 | 64.2 | 1.6 | 16.8 | 12.7 | 2.0 | 2.6 | 0.2 | (508) |
| 직장 | 62.0 | 1.7 | 18.6 | 13.0 | 1.9 | 2.7 | 0.1 | (22,926) |
| 부모협동 | 64.9 | 2.1 | 17.2 | 11.7 | 2.2 | 1.9 | 0.1 | (117) |
| <i>F</i> | 6.9 ^{***} | 2.5 [*] | 14.4 ^{***} | 11.4 ^{***} | 3.5 ^{**} | 0.6 | 1.3 |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시설유형별 전체 어린이집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 구분 | 인건비 | 업무 추진비 | 관리 운영비 | 사업비 | 재산 조성비 | 전출금 | 기타 | (수) |
|----------|--------------------|--------------------|---------------------|---------------------|-------------------|-----|-----|----------|
| 전체 | 59.2 | 1.5 | 15.6 | 19.3 | 1.8 | 2.4 | 0.2 | (42,467) |
| 국공립 | 58.9 | 1.5 | 16.7 | 18.5 | 1.8 | 2.3 | 0.2 | (2,231) |
| 법인 | 57.4 | 1.3 | 14.3 | 22.1 | 2.5 | 2.2 | 0.2 | (1,432) |
| 법인단체외 | 58.2 | 1.4 | 15.0 | 20.6 | 2.0 | 2.6 | 0.2 | (860) |
| 민간 | 59.1 | 1.5 | 15.6 | 19.3 | 1.8 | 2.4 | 0.2 | (14,393) |
| 직장 | 58.0 | 1.6 | 17.4 | 18.5 | 1.8 | 2.6 | 0.1 | (508) |
| 가정 | 59.4 | 1.5 | 15.5 | 19.2 | 1.8 | 2.4 | 0.2 | (22,926) |
| 부모협동 | 60.7 | 2.0 | 16.0 | 17.5 | 2.0 | 1.8 | 0.0 | (117) |
| <i>F</i> | 8.8 ^{***} | 3.0 ^{***} | 21.0 ^{***} | 27.7 ^{***} | 3.1 ^{**} | 0.6 | 1.2 |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 $p < .01$, *** $p < .001$

□ 어린이집 규모별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비율이 어린이집 규모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반대로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가 주 지출원인 사업비는 비중이 증가함(표 7, 표 8 참조).

－ 빈도가 높은 규모의 어린이집과 정원 대비 현원률 80% 이상을 제한, 선별하여 인건비 지원여부별로 지출 항목별 비중을 분석함.

〈표 7〉 규모별 어린이집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위: %(개소)

| 구분 | 인건비 | 관리 운영비 | 업무 추진비 | 사업비 | 재산 조성비 | 전출금 | 기타 | (수) |
|----------|---------------------|---------------------|---------------------|----------------------|---------------------|----------------------|------------------|----------|
| 인건비 지원 | | | | | | | | |
| 전체 | 63.2 | 14.6 | 1.3 | 15.0 | 3.2 | 2.4 | 0.2 | (1,421) |
| 16~20인 | 64.6 | 17.7 | 1.6 | 12.3 | 1.7 | 1.9 | 0.1 | (78) |
| 36~40인 | 65.9 | 15.3 | 1.4 | 12.4 | 2.3 | 2.7 | 0.1 | (195) |
| 46~50인 | 64.6 | 14.5 | 1.4 | 13.8 | 2.4 | 3.1 | 0.2 | (323) |
| 76~80인 | 63.2 | 14.4 | 1.3 | 16.4 | 2.8 | 1.8 | 0.1 | (326) |
| 96~100인 | 63.2 | 14.8 | 1.1 | 16.2 | 3.2 | 1.5 | 0.1 | (267) |
| 121~125인 | 59.4 | 16.3 | 0.8 | 16.5 | 5.7 | 1.2 | 0.0 | (39) |
| 151인 이상 | 58.4 | 12.8 | 1.1 | 16.7 | 6.5 | 3.8 | 0.7 | (193) |
| <i>F</i> | 10.1 ^{***} | 5.5 ^{***} | 1.8 [#] | 16.7 ^{***} | 10.1 ^{***} | 3.8 ^{**} | 2.2 [*] | |
| 인건비 미지원 | | | | | | | | |
| 전체 | 64.3 | 17.1 | 1.6 | 12.2 | 1.7 | 2.7 | 0.2 | (12,926) |
| 16~20인 | 64.8 | 17.9 | 1.8 | 11.5 | 1.2 | 2.6 | 0.2 | (9,635) |
| 36~40인 | 63.9 | 15.7 | 1.3 | 12.6 | 2.4 | 3.7 | 0.3 | (1,161) |
| 46~50인 | 63.5 | 15.2 | 1.4 | 14.1 | 2.9 | 2.7 | 0.3 | (965) |
| 76~80인 | 63.0 | 14.2 | 1.2 | 15.3 | 4.5 | 1.3 | 0.4 | (300) |
| 96~100인 | 63.1 | 14.2 | 1.2 | 16.3 | 3.5 | 1.6 | 0.2 | (386) |
| 121~125인 | 61.5 | 13.9 | 1.1 | 15.9 | 5.3 | 1.9 | 0.4 | (73) |
| 151인 이상 | 59.3 | 12.9 | 1.2 | 17.2 | 5.2 | 4.1 | 0.1 | (406) |
| <i>F</i> | 22.5 ^{***} | 80.9 ^{***} | 22.8 ^{***} | 210.8 ^{***} | 80.5 ^{***} | 11.39 ^{***} | 0.8 |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규모별 어린이집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 %(개소)

| 구분 | 인건비 | 관리 운영비 | 업무 추진비 | 사업비 | 재산 조성비 | 전출금 | 기타 | (수) |
|----------|---------------------|---------------------|------------------|---------------------|--------------------|-------------------|------------------|----------|
| 인건비 지원 | | | | | | | | |
| 전체 | 55.9 | 12.8 | 1.1 | 24.8 | 2.9 | 2.2 | 0.2 | (1,421) |
| 16~20인 | 61.3 | 16.7 | 1.5 | 17.0 | 1.7 | 1.8 | - | (78) |
| 36~40인 | 59.8 | 13.8 | 1.2 | 20.4 | 2.2 | 2.4 | 0.1 | (195) |
| 46~50인 | 57.8 | 12.9 | 1.2 | 22.8 | 2.2 | 2.9 | 0.2 | (323) |
| 76~80인 | 55.8 | 12.6 | 1.1 | 26.2 | 2.5 | 1.7 | 0.1 | (326) |
| 96~100인 | 54.5 | 12.5 | 1.0 | 27.8 | 2.8 | 1.2 | 0.1 | (267) |
| 121~125인 | 49.5 | 13.3 | 0.7 | 30.4 | 5.0 | 1.0 | - | (39) |
| 151인 이상 | 50.2 | 10.8 | 1.0 | 28.2 | 5.7 | 3.5 | 0.6 | (193) |
| <i>F</i> | 18.6 ^{***} | 10.4 ^{***} | 2.2 [*] | 28.5 ^{***} | 8.6 ^{***} | 3.8 ^{**} | 2.2 [*] | |

(표 8 계속)

| 구분 | 인건비 | 관리 운영비 | 업무 추진비 | 사업비 | 재산 조성비 | 전출금 | 기타 | (수) |
|----------|----------|-----------|-----------|----------|-----------|---------|-----|----------|
| 인건비 미지원 | | | | | | | | |
| 전체 | 60.0 | 15.9 | 1.5 | 18.2 | 1.6 | 2.5 | 0.2 | (12,926) |
| 16~20인 | 61.3 | 16.8 | 1.7 | 16.3 | 1.2 | 2.5 | 0.2 | (9,635) |
| 36~40인 | 58.0 | 14.2 | 1.2 | 20.6 | 2.2 | 3.4 | 0.3 | (1,161) |
| 46~50인 | 56.3 | 13.4 | 1.2 | 23.8 | 2.6 | 2.4 | 0.2 | (965) |
| 76~80인 | 55.7 | 12.2 | 1.0 | 25.3 | 4.2 | 1.1 | 0.4 | (300) |
| 96~100인 | 54.5 | 12.0 | 1.0 | 27.9 | 3.1 | 1.3 | 0.2 | (386) |
| 121~125인 | 53.1 | 11.9 | 1.0 | 27.4 | 4.7 | 1.6 | 0.4 | (73) |
| 151인 이상 | 50.8 | 10.6 | 1.1 | 29.1 | 4.5 | 3.8 | 0.1 | (406) |
| <i>F</i> | 124.0*** | 153.2*** | 28.4*** | 502.1*** | 66.3*** | 11.5*** | 0.9 |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3년 4월말 기준).

* $p < .05$, ** $p < .01$, *** $p < .001$

4. 보육비용 산정

가. 산정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관·항·목 기준을 활용하여 틀을 제시하였음(표 9 참조).

〈표 9〉 표준보육비 구성과 어린이집 세출 내역

| 구분 | 세출 내역 |
|--------------|--|
| 인건비 | - 기본급 - 공동적용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 퇴직금·퇴직적립금 - 사회보험 부담비용 |
| 업무추진 및 관리운영비 | - 업무추진비 - 여비 -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 급간식 재료비 | - 급간식비 |
| 교재교구비 | -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비품, 교재비, 소모품) |
| 시설비 | - 설비비(감가상각비) - 시설유지비 |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는 기본급, 공동 적용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을 적용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였음.

- 급간식재료비와 교재교구비는 기존의 기준을 따랐으며, 시설비는 건물 설치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였음.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는 규범적 접근을 우선하고 현상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 및 관리운영비는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주로 사용함.
- 보육비용 산정은 아동 연령별 교사 1인당 아동 수 차이를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규모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으로 구성하였음.

〈표 10〉 어린이집 규모 모형

| 구분 | 단위: 반, 명 | | | | | | |
|---------|----------|-----|-----|-----|------|------|------|
| | 20인 미만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
| 0세아반 | 1 | 1 | 1 | 1 | 1 | 2 | 2 |
| 1세아반 | 2 | 1 | 1 | 2 | 2 | 2 | 2 |
| 2세아반 | 1 | 1 | 2 | 2 | 3 | 3 | 4 |
| 3세아반 | - | 1 | 1 | 2 | 2 | 3 | 3 |
| 4세아 이상반 | - | 1 | 2 | 2 | 3 | 3 | 4 |
| 총 반수 | 4 | 5 | 7 | 9 | 11 | 13 | 15 |
| 정원 | 20 | 50 | 77 | 97 | 124 | 142 | 169 |

나. 항목별 비용 산정

1) 인건비

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기준

1안

- 원장은 2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배치하고, 교사는 반당 담임교사 1인과 누리과정반 보조교사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반일제로 배치함(표 11 참조).
- 기준 호봉은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평균 호봉인 교사 5호봉, 원장은 12호봉을 적용함.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함. 어린이집 교직원에는 월급여에 4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출함(표 13 참조).
- 누리반교사 월 30만원, 영아반 교사 월 12만원, 원장 겸직 교사에게는 월 75,000원을 지급함.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취사부는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반일제 취사부를 두었고, 40~79인 이하 어린이집은 1인을 두며, 영유아가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함.
- 아동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는 5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둠.
- 간호사 배치는 제외함.

〈표 11〉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1안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20인 미만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
| 원장 | - | 1 | 1 | 1 | 1 | 1 | 1 |
| 담임교사 | | | | | | | |
| 0세아반 | 1 | 1 | 1 | 1 | 1 | 2 | 2 |
| 1세아반 | 1 | 1 | 1 | 2 | 2 | 2 | 2 |
| 2세아반 | 2 | 1 | 2 | 2 | 3 | 3 | 4 |
| 3세아반 | - | 1 | 1 | 2 | 2 | 3 | 3 |
| 4세아 이상반 | - | 1 | 2 | 2 | 3 | 3 | 4 |
| 소계 | 4 | 5 | 7 | 9 | 11 | 13 | 15 |
| 취사원 | 1/2 | 1 | 1 | 2 | 2 | 2 | 3 |
| 영양사 | - | - | - | - | 1/5 | 1/5 | 1/5 |
| 누리보조교사 | - | - | 1/2 | 1/2 | 1 | 1 | 1 |
| 계 | 4.5 | 7 | 10 | 13 | 15.25 | 19.25 | 21.25 |

□ 2안: 1안에 비하여 인력 배치 등을 상향 조정함.

- 비담임교사는 누리과정 교사 배치를 반영하여 누리반 3반당 1인을 종일제 기준으로 배치하고, 1, 2반에는 단시간 교사를 배치함(표 12 참조).
- 보조인력으로 50인 이하는 단시간 근로자, 그 이상은 종일제 근로자 1인 둠. 보조인력은 호봉 적용 없이 월 100만원을 적용함.
- 기준 호봉은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장 평균 호봉인 교사 6호봉, 원장 15호봉을 적용함. 1안과 같이 어린이집 교직원에는 월급여에 4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출함(표 13 참조).
- 보육교사 수당 월 20만원을 추가하였음.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 51만원임을 고려하였고, 또한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였음.

〈표 1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2인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20인 미만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
| 원장 | - | 1 | 1 | 1 | 1 | 1 | 1 |
| 담임교사 | | | | | | | |
| 0세아반 | 1 | 1 | 1 | 1 | 1 | 2 | 2 |
| 1세아반 | 1 | 1 | 1 | 2 | 2 | 2 | 2 |
| 2세아반 | 2 | 1 | 2 | 2 | 3 | 3 | 4 |
| 3세아반 | - | 1 | 1 | 2 | 2 | 3 | 3 |
| 4세아 이상반 | - | 1 | 2 | 2 | 3 | 3 | 4 |
| 소계 | 4 | 5 | 7 | 9 | 11 | 13 | 15 |
| 취사원 | 1/2 | 1 | 1 | 2 | 2 | 2 | 3 |
| 영양사 | - | - | - | - | 1/5 | 1/5 | 1/5 |
| 간호사 | - | - | - | - | 1 | 1 | 1 |
| 비담임교사 | - | 1/2 | 1 | 1 | 2 | 2 | 2 |
| 보조인력 | 1/2 | 1/2 | 1 | 1 | 1 | 1 | 1 |
| 계 | 5 | 8 | 11 | 14.5 | 19.2 | 20.75 | 23.25 |

〈표 13〉 어린이집 교직원 급여 기준: 1안과 2안¹⁾

| 구분 | 단위: 천원 | | | | | | |
|-----------------------|------------------|------------|-------|-------|-------|-------|-------|
| | 원장 | 담임교사 | 영양사 | 간호사 | 취사부 | 비담임교사 | 보조인력 |
| 1안 기준 호봉 | 12호봉 | 5호봉 | 3호봉 | - | 1호봉 | 1호봉 | - |
| 호봉 | 2,316 | 1,568 | 1,521 | - | 1,178 | 1,434 | - |
| 2안 기준 호봉 | 15호봉 | 6호봉 | 3호봉 | 3호봉 | 3호봉 | 1호봉 | - |
| 월급여 | 2,633 | 1,728 | 1,521 | 1,521 | 1,262 | 1,434 | 1,000 |
| 수당 신규 | | 200 | | | | | |
| 공통 수당(누리수당; 처우개선비) | 75 ²⁾ | 300 120 | | | | | |

주: 1) 기본 호봉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설정함.

2) 원장 겸직 교사 수당임.

나) 아동 1인당 표준 인건비

- 산출 결과 1안 0세아 인건비를 보면 50인 어린이집이 75만 8천원으로 가장 많고 20인 어린이집이 70만 4천원으로 가장 낮음(표 14 참조).
- 2안은 연령별 인건비를 보면 0세아는 50인 어린이집이 83만 6천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20인 어린이집이 78만원으로 가장 낮음. 0세아의 경우 2안은 1안보다 약 8만원이 더 많음.

〈표 14〉 어린이집 표준 인건비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
|-----------|---------|---------|---------|---------|---------|---------|---------|
| 1안 | | | | | | | |
| 0 | 704,068 | 758,802 | 739,723 | 740,267 | 735,338 | 725,709 | 726,973 |
| 1 | 436,298 | 489,531 | 470,453 | 470,997 | 466,067 | 456,439 | 457,703 |
| 2 | 321,453 | 374,087 | 355,009 | 355,552 | 350,623 | 340,994 | 342,258 |
| 3 | - | 232,261 | 213,183 | 213,726 | 208,797 | 199,168 | 200,433 |
| 4+ | - | 195,602 | 176,524 | 177,068 | 172,138 | 162,510 | 163,774 |
| 2안 | | | | | | | |
| 0 | 779,418 | 836,802 | 813,258 | 808,631 | 819,497 | 804,502 | 800,894 |
| 1 | 494,244 | 550,128 | 526,583 | 521,956 | 532,822 | 517,828 | 514,219 |
| 2 | 371,940 | 427,225 | 403,680 | 399,053 | 409,919 | 394,924 | 391,316 |
| 3 | - | 275,454 | 251,909 | 247,282 | 258,148 | 243,153 | 239,545 |
| 4+ | - | 236,619 | 213,075 | 208,447 | 219,313 | 204,319 | 200,711 |

주: 기본 호봉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설정함.

1안은 원장 12호봉, 교사 5호봉, 취사부 1호봉, 2안은 원장 15호봉, 교사 6호봉, 취사부 3호봉

2) 식단가

□ 급식단가 산출 과정은 표준조리표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단가 산출, 1일 식단가 산출, 월 식단가 산출, 표준식단가 산출, 표준 급식비 산출로 구성됨.

- 메뉴의 표준 재료 분량이 반영된 조리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식재료의 시장단가 조사 및 각 식재료의 단위가격 산출하고, 각 식재료의 조리시 폐기율이 고려된 출고계수를 반영하여 구매 시 조정중량을 산출하고, 단위가격과 조정중량을 활용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메뉴별 표준분량단가를 산출하였음.
- 1일 식단을 구성하는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의 각 메뉴 표준분량 단가를 합하여 1일 식단가를 산출하였음(표 15 참조).
- 이를 기초로 계절별 월 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월 표준급식비를 산출하였음.
- 식단은 플러스 식단을 추가하고 단가는 소매가와 도매가를 제시하였음.

〈표 15〉 만 0세 이유식 1인당 급간식비

단위: 원

| 구분 | | 소매단가 | | 도매단가 | |
|-----------|----|------|-------|------|-------|
| | | 1일 | 월 | 1일 | 월 |
| 초기 이유식 | 봄 | 151 | 3,775 | 145 | 3,625 |
| | 여름 | 162 | 4,050 | 156 | 3,900 |
| | 가을 | 167 | 2,175 | 156 | 3,900 |
| | 겨울 | 153 | 3,825 | 153 | 3,825 |
| | 전체 | 158 | 3,950 | 153 | 3,825 |
| 중기 이유식 | 봄 | 227 | 5,675 | 205 | 5,125 |
| | 여름 | 287 | 7,175 | 268 | 6,700 |
| | 가을 | 240 | 6,000 | 266 | 6,650 |
| | 겨울 | 294 | 7,350 | 289 | 7,225 |
| | 전체 | 262 | 6,550 | 257 | 6,425 |
| 후기 이유식 | 봄 | 294 | 7,350 | 248 | 6,200 |
| | 여름 | 334 | 8,350 | 304 | 7,600 |
| | 가을 | 296 | 7,400 | 272 | 6,800 |
| | 겨울 | 365 | 9,125 | 353 | 8,825 |
| | 전체 | 322 | 8,050 | 294 | 7,350 |

주: 1개월 25일 운영 기준으로 산출

- 도매 식단가는 소매기준의 단가보다 1인당 월별로 적게는 만 1-2세 B형 식단에서 5,700원, 많게는 만 3-5세 플러스 식단에서 12,700원의 큰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표 16 참조).
 - 0세아는 월령별로 소매단가 3,950원, 6,550원, 8,050원이고 도매단가로는 각각 3,825원, 6,425원, 7,350원임.
 - 1~2세는 A형 식단으로 소매단가 44,275원, 도매단가 38,325원임.
 - 3~5세는 A형 식단으로 소매단가 63,000원, 도매단가 54,800원이고, 플러스 식단은 유아의 경우 각각 73,950원, 61,250원임.
- 조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소모품류의 항목을 추출한 후, 각 품목별 단가 조사 및 시설 규모 별 소요 수량을 파악하고, 실제 구매 여부를 제시하였음.
- 이는 대형마트 등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한 산출결과의 차이는 시장조사 시기가 다르므로 인한 식재료비 차이, 시장조사 지역의 가격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표 16〉 영유아 1인당 급간식비

단위: 원

| 구분 | | 만 1-2세 | | | | 만 3-5세 | | | |
|---------------|----|--------|--------|-------|--------|--------|--------|-------|--------|
| | | 소매단가 | | 도매단가 | | 소매단가 | | 도매단가 | |
| | | 1일 | 월 | 1일 | 월 | 1일 | 월 | 1일 | 월 |
| A형 식단 | 봄 | 1,764 | 44,100 | 1,494 | 37,350 | 2,520 | 63,000 | 2,142 | 53,550 |
| | 여름 | 1,744 | 43,600 | 1,537 | 38,425 | 2,504 | 62,600 | 2,206 | 55,150 |
| | 가을 | 1,791 | 44,775 | 1,538 | 38,450 | 2,511 | 62,775 | 2,169 | 54,225 |
| | 겨울 | 1,783 | 44,575 | 1,564 | 39,100 | 2,546 | 63,650 | 2,251 | 56,275 |
| | 전체 | 1,771 | 44,275 | 1,533 | 38,325 | 2,520 | 63,000 | 2,192 | 54,800 |
| B형 식단 | 봄 | 1,842 | 46,050 | 1,546 | 38,650 | 2,632 | 65,800 | 2,208 | 55,200 |
| | 여름 | 1,749 | 43,725 | 1,568 | 39,200 | 2,506 | 62,650 | 2,247 | 56,175 |
| | 가을 | 1,815 | 45,375 | 1,583 | 39,575 | 2,587 | 64,675 | 2,246 | 56,150 |
| | 겨울 | 1,739 | 43,475 | 1,534 | 38,350 | 2,483 | 62,075 | 2,209 | 55,225 |
| | 전체 | 1,786 | 44,650 | 1,558 | 38,950 | 2,552 | 63,800 | 2,228 | 55,700 |
| 플러 스 식단 | 봄 | 2,089 | 52,225 | 1,652 | 41,300 | 2,978 | 74,450 | 2,368 | 59,200 |
| | 여름 | 2,054 | 51,350 | 1,754 | 43,850 | 2,930 | 73,250 | 2,511 | 62,775 |
| | 가을 | 2,062 | 51,550 | 1,734 | 43,350 | 2,976 | 74,400 | 2,499 | 62,475 |
| | 겨울 | 2,059 | 51,475 | 1,689 | 42,225 | 2,949 | 73,725 | 2,422 | 60,550 |
| | 전체 | 2,066 | 51,650 | 1,707 | 42,675 | 2,958 | 73,950 | 2,450 | 61,250 |

주: 월 식단가 1개월 25일 운영 기준으로 산출

□ 표준보육료 산출 시 구매 방법에 따른 식단가 적용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을 알 수 있음. 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부터 도매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함.

- 다양한 업체의 식재료 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고, 식단가 구매 방법 이외의 다양한 변수(운송 거리, 식자재 재고율 등)로 인해 추가적인 식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교재교구비

□ 선행연구 및 평가인증 지표, 영아 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어린이집 교재교구 범위 및 연령기준, 반 규모 등을 설정하였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반 구성은 만 0세, 1세 2세, 3세, 4·5세반으로 구분하였음.
- 반 구성은 연령 단독반을 원칙으로 함. 또한 0세, 1세, 2세반은 2반 기준, 3세와 4·5세는 1반을 기준으로 함.

- 교재교구 범위는 실내와 실외환경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로 구분하고, 실내환경은 앞서 살펴본 평가인증지표와 영아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흥미영역을 기초로 영역을 구성하며, 각 흥미영역별로 교재교구를 배치함(표 17 참조).
- 교재교구 종류나 양은 1년 동안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재교구로 구성함.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아기 침대, 교구장, 이불장, 에어컨 등의 비품성 교재교구와 색종이, 풀, 도화지 등 소모성 교재교구를 별도로 구성함.

〈표 17〉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 0세(6명) | 1세(10명) | 2세(14명) | 3세(15명) | 4·5세(20명) |
|---------------------|---------------------|---------|---------|-----------|
| 일상영역(수유, 기저귀갈이, 낮잠) | 일상영역(수유, 기저귀갈이, 낮잠) | 신체 | 언어 | 언어 |
| 신체 | 신체 | 언어 | 수·과학 | 수·과학 |
| 언어 | 언어 | 감각·탐색 | 역할 | 역할 |
| 감각·탐색 | 감각·탐색 | 역할·쌓기 | 쌓기 | 쌓기 |
| | 역할·쌓기 | 미술 | 음률 | 음률 |
| | 음률 | 음률 | 미술 | 미술 |
| 실외놀이 | 실외놀이 | 실외놀이 | 실외놀이 | 실외놀이 |
| 비품 | 비품 | 비품 | 비품 | 비품 |
| 소모품 | 소모품 | 소모품 | 소모품 | 소모품 |

〈표 18〉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 구분 | 단위: 원/월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5세 |
| 교재교구 | | | | | |
| 실내 | 37,833 | 31,472 | 18,628 | 22,563 | 17,569 |
| 실외 | 4,495 | 4,382 | 4,702 | 6,551 | 6,155 |
| 소모품 | 2,063 | 4,188 | 5,631 | 6,545 | 10,223 |
| 소계 | 44,391 | 40,042 | 28,961 | 35,659 | 33,947 |
| 비품 | 17,204 | 8,506 | 7,623 | 9,778 | 8,782 |
| 계 | 61,595 | 48,548 | 36,584 | 45,437 | 42,729 |

- 단가는 규모가 큰 3곳 업체의 제품단가를 비교한 후 중간 가격대를 단가산출에 적용하였고, 각 교재교구별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연·월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한 후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교재교구 비용을 산출하였음.

- 아동 1인당 실내외 교재교구와 소모품 구입 비용을 합산한 교재교구비는 0세 44,391원, 1세 40,042원, 2세 28,961원, 3세 35,659원, 4·5세 33,947원임(표 18 참조).
- 보육실에 설치하는 비품비는 0세 17,204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연령은 7천원~8천원 대로 차이가 크지 않음.

4) 관리운영비

- 본 연구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세출 계정과목 관리운영비 중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함.
- 어린이집 지출 수준에 의거하여 재무회계 지출액의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제시하였음.
 - 인건비 지원여부별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고, 있는 경우에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이용하였음.
- 각 연령구분별 지출액 전체 평균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은 77인 기준 4만원 수준임(표 19 참조).

〈표 19〉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 구분 | 단위: 원 | | | | | | |
|-----------|--------|--------|--------|--------|--------|--------|--------|
|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
| 기관운영비 | 2,757 | 2,831 | 1,990 | 1,952 | 1,301 | 3,094 | 3,094 |
| 직책급 | 6,228 | 3,312 | 2,872 | 2,550 | 2,178 | 1,494 | 1,494 |
| 회의비 | 204 | 274 | 221 | 249 | 413 | 326 | 326 |
| 여비 | 495 | 478 | 826 | 919 | 539 | 453 | 453 |
| 수용비 및 수수료 | 45,665 | 32,191 | 30,279 | 30,406 | 28,947 | 25,484 | 25,484 |
| 연료비 | 2,715 | 3,458 | 3,919 | 3,598 | 3,473 | 4,016 | 4,016 |
| 소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5) 시설비

가) 건축비

- 어린이집 건축비는 두 가지로 산출하였음.
 - 제1안은 1인당 면적 4.29㎡을 기준으로 ㎡당 단가 1,201,300원을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아동 1인당 월 비용은 14,315원임.

- 제2안은 아동 1인당 면적 기준은 4.29㎡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설 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당 1,670,000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25,871원임.

놀이터 시설비는 50평 기준 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을 적용함.

나) 시설유지관리비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물내부, 건물외부, 전기 소화설비, 급수 위생설비, 난방 급탕 설비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음.

산출방법은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음.

- 어린이집 사례의 도면을 분석하여 실내재료마감표와 동일하게 각 실별로 천장, 바닥, 벽 부위별 및 외부마감 면적을 분리하여 산정함.

- 산정된 각 실의 부위별 면적과 외부마감 면적 값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초기공사비를 계산함.

- 각 마감자재별 수선율과 수선주기, 교체주기 등을 주택법 시행규칙의 장기 수선계획을 반영하여 연간 내외부 마감별 연간 및 아동 1인당 시설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음.

- 산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소화, 급수위생, 난방급탕 등의 설비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추가함.

시설유지관리비를 20인 시설은 2,189원, 50인 시설은 4,148원 그 이상 규모는 3,746원으로 산출하였음.

5. 종일제 연령별 1인당 보육비용

가. 제1안

1안은 인건비 1안, 급간식비는 일반 식단에 주 22일을 적용하였고, 교재교구비는 충분성을 보통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설설치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수준을 반영하였음.

8시간 종일제 기준의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은 다음과 같음.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0세아는 20인 규모 어린이집 월 보육비용은 85만 7천원, 50인 어린이집은 90만원 수준이며 이후는 약간씩 감소하여 142인은 86만원이고 169인 규모 이상이면 861,660원이 됨.
- 만 1세의 보육비용은 20인 어린이집은 593,521원이고 50인이 634,493원이며 이후는 약간씩 감소하여 169인 규모 이상이면 596,586원임.
- 만 2세의 보육비용은 20인 규모가 467,909원이고 50인이 510,282원이며 이후는 약간씩 감소하여 169인 이상 어린이집은 47만원임.
- 만 3세의 보육비용은 50인 규모가 392,901원, 77인과 97인 어린이집이 37만원 수준이고 169인 규모면 352,994원으로 규모별 차이가 남.
- 4, 5세아의 보육비용은 50인 규모가 353,805원이고, 점차 낮아져 169인 이상이면 313,898원 수준이 됨.

〈표 20〉 0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704,068 | 758,802 | 739,723 | 740,267 | 735,338 | 725,709 | 726,973 |
| 급간식비 | 23,023 | 23,023 | 23,023 | 23,023 | 23,023 | 23,023 | 23,023 |
| 교재교구비 | 55,436 | 55,436 | 55,436 | 55,436 | 55,436 | 55,436 | 55,436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16,504 | 21,763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 소계 | 857,095 | 901,568 | 879,650 | 879,761 | 872,009 | 860,396 | 861,660 |

〈표 21〉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436,298 | 489,531 | 470,453 | 470,997 | 466,067 | 456,439 | 457,703 |
| 급간식비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 교재교구비 | 43,693 | 43,693 | 43,693 | 43,693 | 43,693 | 43,893 | 43,693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16,504 | 21,763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 소계 | 593,521 | 636,493 | 614,576 | 614,687 | 606,934 | 595,522 | 596,586 |

〈표 22〉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만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321,453 | 374,087 | 355,009 | 355,552 | 350,623 | 340,994 | 342,258 |
| 급간식비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38,962 |
| 교재교구비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32,926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16,504 | 21,763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 소계 | 467,909 | 510,282 | 488,365 | 488,475 | 777,065 | 469,110 | 470,374 |

〈표 23〉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만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 232,261 | 213,183 | 213,726 | 208,797 | 199,168 | 200,433 |
| 급간식비 |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 교재교구비 | | 40,893 | 40,893 | 40,893 | 40,893 | 40,893 | 40,893 |
| 관리운영비 |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 21,763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 소계 | | 392,901 | 370,984 | 371,094 | 363,342 | 351,729 | 352,9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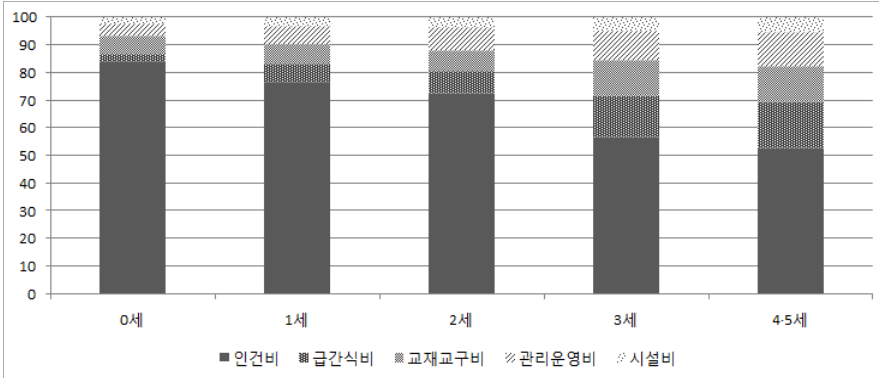
〈표 24〉 4, 5세 1인당 월 보육비용: 1만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 195,602 | 176,524 | 177,068 | 172,138 | 162,510 | 163,774 |
| 급간식비 |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55,440 |
| 교재교구비 | | 38,456 | 38,456 | 38,456 | 38,456 | 38,456 | 38,456 |
| 관리운영비 |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 21,763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21,361 |
| 소계 | | 353,805 | 331,888 | 331,999 | 324,246 | 312,634 | 313,898 |

- 77인을 기준으로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0세아 84%, 1세아 77%, 2세아 73%, 3세아 57%, 4세아 53% 수준임.
- 유아가 되면 급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인건비 비율은 낮아짐.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그림 1] 77인 어린이집 기준 1인당 월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 비율: 1안

나. 제2안

- 2안은 인건비 2안, 급간식재료비는 플러스 식단, 교재교구는 최대 배치를 적용하였고, 대규모 시설 설치비는 2안을 적용함. 관리운영비는 1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8시간 종일제 기준의 보육비용은 다음과 같음.
 - 0세아 월 보육비용은 77인 규모가 97만 8천원 수준임.
 - 만 1세 월 보육비용은 20인 어린이집이 67만원이 넘고 50인 규모가 72만원 이 넘으며 이후는 약간씩 감소하여 169인 이상이면 67만 7천원 수준이 됨.
 - 만 2세 월 보육비용은 20인 규모가 54만원이고 50인이 58만 6천원이며 이 후는 약간씩 감소하여 169인 이상이면 54만 2천원임.
 - 만 3세 월 보육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이 46만 2천원, 77인과 97인이 43만원 대이며 169인이면 418,742원임.

<표 25> 0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 구분 | 단위: 원 | | | | | | |
|-------|---------|-----------|---------|---------|---------|---------|---------|
|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인건비 | 779,418 | 836,802 | 813,258 | 808,631 | 819,497 | 804,502 | 800,894 |
| 급간식비 | 29,850 | 29,850 | 29,850 | 29,850 | 29,850 | 29,850 | 29,850 |
| 교재교구비 | 61,595 | 61,595 | 61,595 | 61,595 | 61,595 | 61,595 | 61,595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28,060 | 34,219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 소계 | 956,987 | 1,005,010 | 978,627 | 973,567 | 981,610 | 964,631 | 961,023 |

〈표 26〉 1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494,244 | 550,128 | 526,583 | 521,956 | 532,822 | 517,828 | 514,219 |
| 급간식비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 교재교구비 | 48,548 | 48,548 | 48,548 | 48,548 | 48,548 | 48,548 | 48,548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28,060 | 34,219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 소계 | 674,368 | 720,891 | 694,507 | 689,447 | 697,490 | 680,512 | 676,903 |

〈표 27〉 2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371,940 | 427,225 | 403,680 | 399,053 | 409,919 | 394,924 | 391,316 |
| 급간식비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45,452 |
| 교재교구비 | 36,584 | 36,584 | 36,584 | 36,584 | 36,584 | 36,584 | 36,584 |
| 관리운영비 | 58,064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28,060 | 34,219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 소계 | 540,100 | 586,024 | 559,640 | 554,580 | 562,623 | 545,644 | 542,036 |

〈표 28〉 3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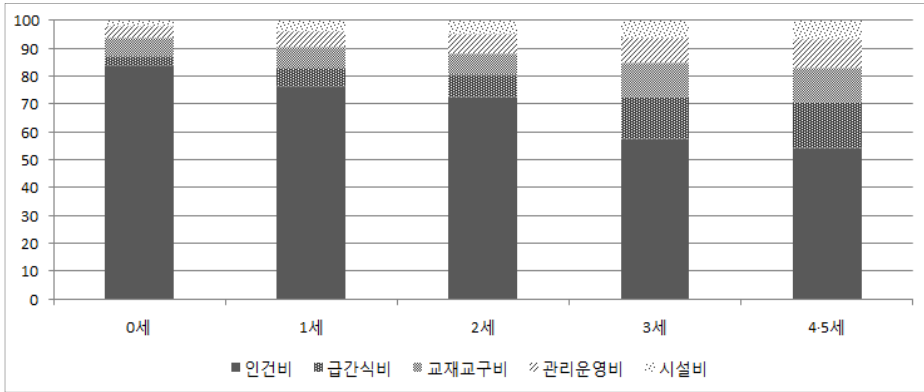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 275,454 | 251,909 | 247,282 | 258,148 | 243,153 | 239,545 |
| 급간식비 |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 교재교구비 | | 45,437 | 45,437 | 45,437 | 45,437 | 45,437 | 45,437 |
| 관리운영비 |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 34,219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 소계 | | 462,730 | 436,346 | 431,286 | 439,329 | 422,350 | 418,742 |

〈표 29〉 4, 5세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

단위: 원

| 구분 | 20인 | 50인 | 77인 | 97인 | 124인 | 142인 | 169인 이상 |
|-------|-----|---------|---------|---------|---------|---------|---------|
| 인건비 | | 236,619 | 213,075 | 208,447 | 219,313 | 204,319 | 200,711 |
| 급간식비 |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65,076 |
| 교재교구비 | | 42,729 | 42,729 | 42,729 | 42,729 | 42,729 | 42,729 |
| 관리운영비 | | 42,544 | 40,107 | 39,674 | 36,851 | 34,867 | 34,867 |
| 시설비 | | 34,219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33,817 |
| 소계 | | 421,187 | 394,804 | 389,743 | 397,786 | 376,375 | 377,200 |

- 만 4세 이상의 보육비용은 50인이 42만 1천원 수준이고 77인이 39만 5천원 정도이며 169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37만원대로 다소 낮아짐.
- 규모 77인 기준 항목별 구성비는 1안과 다르지 않음. 영아는 인건비 비율이 높고 점차 급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비율은 낮아짐.



[그림 2] 77인 어린이집 기준 1인당 월 보육비용 항목별 구성 비율: 2안

6. 향후 정책과제

- 본 보육비용 산출과 더불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항목별 기준 설정 검토
 - 보육교사 급여 수준은 유사한 교육직군 수준에 맞춰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다른 직종에 비하여 제한적인 수당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1안에 적용한 보육교사 급여액은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임금 174만원이나 2, 3년제 대학 졸업자 여성 평균임금인 177만원 수준에 근접함. 교육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으므로 사회복지보다는 교육직 인건비 정도로 임금수준을 맞춰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직종에 비하여 제한되어 있는 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식자재비는 주 5일 기준의 적용과 규모의 경제 반영을 검토함.
 - 관리운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각 항목별 구분 및 적절한 수준 제시가 필요함.

- 시설 건축비는 대부분이 소규모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인 상황에서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상적 자료로 재무회계로 보고 자료가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재무회계 계정과목이 항목별 지출 실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 보육비용과 보육료 및 정부의 지원 단가는 구분되어야 함. 보육비용에서 시설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 보육료가 되어야 할 것임.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근무환경개선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에는 인건비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부모보조금과 별도로 지원하므로 보육료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함.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금도 제외되어야 함.
- 장애아동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서비스, 단축형 또는 반일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의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함.
 - 다양한 서비스의 보육비용 산출 시에는 결국 인건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비용 산정을 통하여 현재 종일제 보육료가 근로자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였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수익자 부담인 항목 중에서 보육과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으로 수렴하여야 하는 항목은 없는지 검토를 요함.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 준비금, 차량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임.

참고문헌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임양미·엄지원(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김은설

요약

-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 현황 파악은 국가 지원 수준의 적정성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본 조사의 결과는 공·사립 설립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제 교육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학비 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사립은 평균 11만원 이상을 학부모가 내고 있으며,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공립은 월 평균 22천원, 사립은 39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립유치원 원아 대상 정부 지원액 월 60,000원은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며, 사립유치원은 현 수준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최종 30만원까지 지원될 때 무상교육이 거의 실현될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방과후과정 필요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 차이를 둔 비용 지원을 고려할 만함. 농어촌에 대한 현 방과후과정 지원 비용의 감액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요구됨.

1. 문제제기

-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교육을 지향하면서 모든 유아에게 월 22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 그것은 기본 교육비 이외에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 부모 부담은 큰 차이로 줄이지 않기 때문임.
- 국가가 만 3~5세 전체 유치원 유아들에 대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전히 유치원 학비를 지불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본 이슈페이퍼는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표준유아 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무상교육’이라는 기본 정책 방향이 있음에도 학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이 크지 않음은 실제 학비 지불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정부는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2013년부터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해 2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었고 이는 무상교육을 현실화한 정책이 되었음.
- 어린이집에서는 2011년도까지 197,000원이 저소득 만 5세에게 지원되던 데 비해 비용지원이 높아진 결과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운영여건이 보다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을 보임(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으로써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육비용이 낮아졌다는 체감도가 높아짐.
- 평균 교육비가 월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치원의 관점에서 보면, 20만원 지원은 5세 교육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운영자의 측에서는 총 수입의 차이가 없으며 부모의 입장에서도 학비 외에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교재교구비 등의 추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김은설 외, 2012).
- 2013년부터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전 연령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22,000천원으로 상향되었고 2014년 현재 이 지원 금액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유치원 아동 1인당 필요한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비용 규모를 추정해보고 이에 비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 학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이 연구는 향후 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부모 부담 수준을 가늠하여 그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2012년 9월부터 정부는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유치원의 재정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시하도록 함.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정보공시에 제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치원 교육비 현황과 부모 부담 비용 규모를 알아보려고 함.

2. 정부의 유아 학비 지원 정책

- 무상 유아교육의 실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 지원 수준을 살펴봄.
 - 정부는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비 지원, 교사 수당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는 부모 교육비 부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유아 학비 지원의 현황만 제시하고자 함.
- 정부가 학부모에 대해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누리과정 학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이 그것임.

가.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 교육비 지원

-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기본과정 교육비가 전액 지원됨으로써 취학전 3년간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 되어 있음.
 - 가구 소득수준이나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재원 유아는 일일 3~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비는 행정상 부모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현재는 농협은행(주. 지역별 차이 있음)에서 발급하는 '아이즐거운 카드'를 신청하여 이 카드로써 국가지 지원한 교육비를 부모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과 2항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 원칙을 설명하고 있음.

제24조(무상교육)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의 단가는 2014년 현재 3~5세 전 연령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월 220,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월 60,000원이 아동별로 부모에게 지원됨.

나.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 기본과정과 더불어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부모에게 국가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조건은 반드시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함. 15일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http://childdschool.mest.go.kr/>).
- 지원금액은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 월 50,000원, 사립유치원 월 70,000원임.

다. 유아 교육비 지원 예산 규모

- 교육비 예산 중 학비 지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만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즉 2013년 예산 기준 1조 4천 6백억원이며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은 1조 1천 5백억원 이상임.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유아교육에 대한 학비지원의 규모는 2조 6천억이 넘음.

<표 1>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보육료 포함)

단위:백만원, 명

| 시도명 | 누리과정 예산 | | | | | | |
|-----|------------|-----------|-----------|---------|---------|---------|-----------|
| | 소요액(확정교부액) | | | 지원인원 | | | |
| | 유치원 교육비 | 보육료 | 계 | 3세 | 4세 | 5세 | 계 |
| 서울 | 247,265 | 254,810 | 502,075 | 68,463 | 74,324 | 78,558 | 221,345 |
| 부산 | 102,402 | 52,082 | 154,484 | 21,655 | 23,638 | 25,291 | 70,584 |
| 대구 | 82,560 | 37,395 | 119,955 | 17,381 | 19,098 | 20,756 | 57,235 |
| 인천 | 89,211 | 60,155 | 149,366 | 22,927 | 24,567 | 26,397 | 73,891 |
| 광주 | 47,911 | 36,403 | 84,314 | 12,337 | 13,418 | 14,607 | 40,362 |
| 대전 | 56,699 | 31,410 | 88,109 | 12,651 | 13,817 | 14,802 | 41,270 |
| 울산 | 43,108 | 23,101 | 66,209 | 9,711 | 10,328 | 11,012 | 31,051 |
| 세종 | 1,888 | 4,506 | 6,394 | 1,036 | 1,161 | 1,166 | 3,363 |
| 경기 | 406,937 | 310,398 | 717,335 | 106,121 | 115,591 | 123,310 | 345,022 |
| 강원 | 30,126 | 36,990 | 67,116 | 10,681 | 11,376 | 12,626 | 34,683 |
| 충북 | 32,394 | 44,487 | 76,881 | 12,314 | 13,121 | 14,180 | 39,615 |
| 충남 | 52,394 | 54,709 | 107,103 | 16,847 | 18,077 | 19,114 | 54,038 |
| 전북 | 49,123 | 43,490 | 92,613 | 13,657 | 14,852 | 16,091 | 44,600 |
| 전남 | 35,577 | 47,550 | 83,127 | 13,442 | 14,323 | 15,444 | 43,209 |
| 경북 | 74,140 | 46,491 | 120,631 | 18,959 | 20,342 | 21,781 | 61,082 |
| 경남 | 108,271 | 70,834 | 179,105 | 26,966 | 29,183 | 31,354 | 87,503 |
| 계 | 1,460,006 | 1,154,811 | 2,614,817 | 385,147 | 417,216 | 446,487 | 1,248,850 |

자료: 교육부 예산 자료(2013).

- 연간 2,614,817백만원의 예산이 누리과정 지원에 투입되고 있고 총 1,248,850명의 유아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 유아교육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유아교육 예산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시도별로 동일하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아동 당 월 220,000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 차이는 없음.

3. 유치원 교육비 현황

-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정보공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 유치원 교육비를 산출함. 이때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과 유치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된 비용을 산출하였음.

가. 활용 자료

- 교육비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 기간에(2013년 5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탑재된 유치원 재정 관련 정보 중 활용이 가능한 2013년 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함.
- 교육비 현황 분석을 위해 표집한 유치원은 공립 242개, 사립 562개 등 총 804개원으로, 유치원 규모, 소재한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무선 표집함.
 - 공립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모(母) 기관인 초등학교 재정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어려웠으므로, 단설유치원 위주로 교육비 현황을 수집함. 그러나 병설유치원 중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유치원의 원아 수 규모 또한 교육비 산정을 다르게 만드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문무경 외, 2012), 한 학급을 20명 정도로 보았을 때(김은설·황성온·정영혜, 2012) 연령별 1개 총 3개 학급 유치원은 소규모로, 연령별 2개 학급, 총 6개 학급까지를 중규모로, 7개 학급 이상을 대규모로 구분함.
 -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지역으로, 읍·면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함. 결과적으로 <표 2>와 같이 총 804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함.

〈표 2〉 유아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 수집 대상 유치원 표본 수

단위: 개원

| 지역 | 설립유형 | 규모(원아 수) | | | 계 |
|------|------|-------------|-----------------|--------------|-----|
| | | 소 (60이하) | 중 (61~120이하) | 대 (121이상) | |
| 대도시 | 공립 | 46 | 67 | 28 | 141 |
| | 사립 | 84 | 87 | 78 | 249 |
| 중소도시 | 공립 | 15 | 35 | 13 | 63 |
| | 사립 | 79 | 73 | 24 | 176 |
| 읍면 | 공립 | 6 | 22 | 10 | 38 |
| | 사립 | 50 | 59 | 28 | 137 |
| 계 | | 280 | 343 | 274 | 804 |

주: 이후 모든 분석은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내 해당 유치원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분석 결과

1) 공립유치원 1인당 교육비 현황

- 유치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연간 3,042.6천원으로 추정되고 월간 비용으로 보면 1인당 253.6천원임.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직원 평균 연봉의 아동 1인당 표준분담금 3,253천원(김은설 외, 2013 참조)을 더하면 1인당 연간 교육비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하면, 약 6,295.6천원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보면 결국 524.6천원이 됨.
- 유치원 규모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 소재 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높아져 최대 1,458.1천원 차이가 남.
- 중소도시, 읍면 지역 또한 유치원 규모가 작은 경우 교육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인적자원운용비, 학교시설 확충비, 재무활동비가 초등학교 예산과 통합 운영되어 실제 비용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간에는 특히 교육복지비용(급식관리, 보건관리, 학생복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에 위치한 중규모·대규모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복지비용이 586.6천원에서 838.8천원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임. 보건이나 급식과 관련한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추후 필요해 보임.

〈표 3〉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 지역 | 유치원 규모 | 인적 자원 운용 |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 기본 교육 | 선택적 교육 | 교육 활동 지원 | 일반 운영 비 | 학교 시설 확충 | 재무 활동비 | 계 (연간) | 1개월 기준 |
|------------------------|--------|----------|--------------|-------|---------|----------|---------|----------|--------|---------|--------|
| 대도시 | 대 | 29.7 | 838.8 | 443.4 | 833.9 | 211.0 | 508.2 | 8.2 | 5.4 | 2,878.7 | 239.9 |
| | 중 | 393.5 | 586.6 | 512.5 | 1,291.4 | 314.0 | 469.5 | 54.2 | 9.5 | 3,631.2 | 302.6 |
| | 소 | 54.3 | 692.1 | 553.4 | 1,884.9 | 589.1 | 539.1 | 13.7 | 13.7 | 4,336.8 | 361.4 |
| 중소도시 | 대 | 27.6 | 1,266.0 | 432.4 | 457.0 | 240.3 | 712.6 | 37.6 | 8.1 | 3,181.5 | 265.1 |
| | 중 | 34.3 | 1,287.4 | 418.1 | 627.3 | 239.6 | 868.6 | 1.4 | 3.6 | 3,480.3 | 290.0 |
| | 소 | - | 289.2 | 708.9 | 466.9 | 46.1 | 268.8 | - | - | 1,781.0 | 148.4 |
| 읍면 | 대 | 22.8 | 1,155.6 | 374.8 | 338.0 | 212.6 | 564.2 | 17.9 | 7.5 | 2,693.5 | 224.5 |
| | 중 | 66.4 | 1,148.6 | 428.4 | 518.8 | 303.3 | 870.9 | 36.7 | 8.4 | 3,381.5 | 281.9 |
| | 소 | - | 369.4 | 450.3 | 401.8 | 143.9 | 641.1 | - | - | 2,019.0 | 168.3 |
| 전체 | | | | | | | | | | 3,042.6 | 253.6 |
| ※ 표준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포함 시 | | | | | | | | | | 6,295.6 | 524.6 |

2)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비 현황

-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교육비로 연간 평균 5,817.4천원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월간으로 계산하면 유아 1인당 월 484.8천원으로 평균 교육비가 산출됨.
 - 유치원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지역 상관없이 소규모 유치원에서의 인건비 수준이 확연히 높았음. 이는 소규모 유치원의 세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관이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 비교에 의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한하여 사립유치원이 대규모 시설 일 때 1인당 비용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운영비도 적절한 정도를 나타냄.
 - 읍면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 지원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표 4 참조).

〈표 4〉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 지역 | 유치원 규모 | 인건비 | 관리 운영비 | 학교재무 활동 | 학교운영 지원비 | 계 (연간) | 1개월 기준 |
|----------|-----------|---------|-----------|------------|-------------|-----------|-----------|
| 대도시 | 대 | 2,541.7 | 1,363.9 | 269.7 | 1,417.1 | 5,592.4 | 466.0 |
| | 중 | 2,874.3 | 1,212.3 | 268.5 | 1,554.3 | 5,909.0 | 492.4 |
| | 소 | 3,530.8 | 1,456.5 | 181.0 | 1,677.2 | 6,845.0 | 570.4 |
| 중소 도시 | 대 | 2,335.2 | 1,285.1 | 296.4 | 1,258.0 | 5,174.7 | 431.2 |
| | 중 | 2,701.1 | 1,372.0 | 257.9 | 1,975.4 | 6,306.5 | 525.5 |
| | 소 | 3,031.2 | 1,167.2 | 407.4 | 2,075.3 | 6,681.0 | 556.8 |
| 읍면 | 대 | 2,306.9 | 1,244.2 | 280.8 | 1,337.3 | 5,169.2 | 430.8 |
| | 중 | 2,433.0 | 1,194.5 | 251.3 | 1,210.5 | 5,089.3 | 424.1 |
| | 소 | 2,966.9 | 1,424.2 | 213.4 | 984.5 | 5,589.1 | 465.8 |
| 전체 | | 2,746.8 | 1,302.2 | 269.6 | 1,498.8 | 5,817.4 | 484.8 |

4. 학부모 부담비용 분석

- 유치원정보공시 사이트에서는 유치원별 세출예산서 외에 부모부담 비용을 별도로 제시해 두고 있어 이를 설립유형별, 규모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다시 살펴봄.
- 부모부담 비용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부모가 얼마의 비용을 유치원에 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세출예산 중 어느 정도가 부모부담인지, 국가는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파악해 보는 데 유용함.

가. 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비용

1) 교육과정(누리과정) 교육비

- 대도시 소규모 공립유치원에서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현장학습비와 급식비를 합쳐 월평균 61,383원으로 보고됨. 이것은 누리과정 국가 지원비인 1인당 60,000원 교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1,383원임. 중규모는 56,478원, 대규모는 56,286원으로 조사되므로 이 경우 실제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음.
- 대도시 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3학급 이하 매우 작을 때 부모가 월 1,400원을 부담하지만 규모가 그보다 커지면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5〉 대도시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납입액 ¹⁾ | 실제 납입액 |
|----|------|--------|--------|------------|-----------|-----------|--------|------------------------|-----------|
| 소 | 평균 | 7,859 | 45,341 | 10,401 | - | 9,321 | 26,116 | 61,383 | 1,383 |
| 규 | 표준편차 | 2,864 | 8,147 | 13,674 | - | 4,091 | 21,804 | 21,290 | |
| 모 | 사례수 | 68 | 87 | 12 | - | 82 | 9 | 94 | |
| 중 | 평균 | 9,105 | 44,645 | 8,168 | - | 10,066 | 16,706 | 56,478 | 0 |
| 규 | 표준편차 | 10,112 | 10,094 | 4,532 | - | 11,799 | 17,831 | 23,785 | |
| 모 | 사례수 | 47 | 67 | 8 | - | 57 | 6 | 75 | |
| 대 | 평균 | 8,969 | 42,795 | 16,258 | - | 6,705 | - | 56,286 | 0 |
| 규 | 표준편차 | 3,941 | 8,733 | 10,726 | - | 3,038 | - | 14,106 | |
| 모 | 사례수 | 20 | 30 | 5 | - | 28 | - | 32 |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6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중소도시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기본과정이 월 평균 65,212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급식비 46,951원, 교재/재료비 16,095원, 현장 학습비 12,604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소 | 평균 | 8,964 | 46,951 | 16,095 | 7,340 | 12,604 | - | 65,212 | 5,212 |
| 규 | 표준편차 | 8,093 | 6,847 | 10,018 | 3,518 | 6,087 | - | 19,909 | |
| 모 | 사례수 | 49 | 82 | 38 | 5 | 81 | - | 93 | |
| 중 | 평균 | 11,873 | 43,639 | 24,941 | - | 12,837 | 12,775 | 64,164 | 4,164 |
| 규 | 표준편차 | 13,143 | 9,559 | 29,757 | - | 7,296 | 8,787 | 33,362 | |
| 모 | 사례수 | 32 | 60 | 27 | - | 56 | 12 | 72 | |
| 대 | 평균 | 12,867 | 46,444 | 20,631 | - | 11,304 | 16,770 | 63,544 | 3,544 |
| 규 | 표준편차 | 5,780 | 14,561 | 14,523 | - | 7,257 | 15,257 | 18,458 | |
| 모 | 사례수 | 14 | 32 | 16 | - | 29 | 9 | 39 |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6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1) 본 원고에 제시되고 있는 모든 표에서 ‘총 납입액’은 앞서의 간식비, 급식비, 교재재료비, 현장 학습비 등의 총합과는 다른 개념임. 각 비용 항목별로 보고된 사례 수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총 납입액의 경우에도 전체 비용을 제시한 사례만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임.

- 중소도시에 위치한 중규모 공립 유치원의 월평균 학부모 부담 비용은 64,164 원, 대규모는 63,544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유치원의 비용이 조금 높은 정도를 보임.
- 읍면지역에 소재한 공립유치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담에 해당하는 비용은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월 평균 49,878원, 중규모는 63,036원, 대규모 60,430원으로 나타남. 여기에 국가 부담을 제외하면 실제 납입액은 월 0~3,000원 정도임.

〈표 7〉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 소규모 | 평균 | 13,635 | 44,971 | 22,198 | - | 12,793 | 20,730 | 49,878 | 0 |
| | 표준편차 | 11,018 | 11,452 | 15,046 | - | 11,198 | 19,694 | 26,113 | |
| | 사례수 | 46 | 66 | 28 | - | 43 | 14 | 103 | |
| 중규모 | 평균 | 18,540 | 42,909 | 28,128 | - | 18,538 | 7,600 | 63,036 | 3,035 |
| | 표준편차 | 14,475 | 16,898 | 13,669 | - | 28,901 | 4,459 | 46,487 | |
| | 사례수 | 9 | 16 | 13 | - | 18 | 5 | 26 | |
| 대규모 | 평균 | - | 47,190 | 12,867 | - | 10,224 | - | 60,430 | 430 |
| | 표준편차 | - | 17,235 | 6,501 | - | 7,420 | - | 26,430 | |
| | 사례수 | - | 11 | 6 | - | 12 | - | 13 |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6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2) 방과후과정 교육비

- 대도시 소규모 유치원의 방과후 교육비는 평균 109,957원이 부모 부담액이나 이 중 50,000원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59,957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임. 중규모 유치원의 부모 실제 부담액은 68,620원, 대규모는 27,316원으로 규모가 큰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 교육비용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과정 교육비에는 특성화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27,000원~60,000원까지의 차이를 두고 지불하는 것을 볼 때 대규모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표 8〉 대도시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소 | 평균 | 88,521 | 31,352 | - | 17,344 | - | 5,997 | 37,027 | 109,957 |
| 규 | 표준편차 | 2,644 | 7,920 | - | 5,439 | - | 4,077 | 19,091 | 43,862 |
| 모 | 사례수 | 68 | 23 | - | 27 | - | 31 | 75 | 94 |
| 중 | 평균 | 86,988 | 27,306 | - | 17,754 | - | 9,144 | 35,904 | 118,620 |
| 규 | 표준편차 | 9,847 | 5,005 | - | 6,161 | - | 7,133 | 20,558 | 39,939 |
| 모 | 사례수 | 66 | 7 | - | 13 | - | 30 | 64 | 75 |
| 대 | 평균 | 78,906 | 23,885 | - | 17,388 | - | 6,605 | 31,774 | 77,316 |
| 규 | 표준편차 | 20,792 | 5,839 | - | 8,360 | - | 6,799 | 23,713 | 44,439 |
| 모 | 사례수 | 17 | 13 | - | 12 | - | 8 | 19 | 33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5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중소도시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 중 실제 학부모 부담 비용을 보면, 소규모 유치원은 14,062원, 중규모는 12,658원, 대규모는 10,547원으로 나타남. 규모가 작을수록 방과후과정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도시의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앞서 제시한 대도시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와 비교할 때 동일 규모에서 최대 48,000원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성화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됨.

〈표 9〉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소 | 평균 | 41,307 | 30,769 | - | 15,059 | - | 9,712 | 31,681 | 64,062 |
| 규 | 표준편차 | 15,385 | 40,188 | - | 9,126 | - | 8,138 | 16,189 | 33,013 |
| 모 | 사례수 | 46 | 49 | - | 31 | - | 6 | 58 | 93 |
| 중 | 평균 | 38,372 | 28,065 | - | 13,928 | - | 8,103 | 30,288 | 62,658 |
| 규 | 표준편차 | 16,801 | 7,676 | - | 10,235 | - | 2,567 | 23,685 | 26,750 |
| 모 | 사례수 | 19 | 59 | - | 31 | - | 4 | 53 | 72 |
| 대 | 평균 | 51,771 | 29,121 | - | 12,707 | - | 8,586 | 22,569 | 60,547 |
| 규 | 표준편차 | 23,528 | 7,114 | - | 6,503 | - | 4,954 | 18,670 | 26,888 |
| 모 | 사례수 | 7 | 34 | - | 14 | - | 7 | 31 | 39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5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읍면지역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보면 대규모 유치원에서만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중규모나 소규모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대도시, 중소도시 방과후 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 읍면지역 내 규모별 유치원을 비교해보면, 소규모나 중규모는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액이 전혀 없고 대규모는 11,290원으로 중규모 도시의 방과후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음.

〈표 10〉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운영비 | 현장학습비 | 기타 | 총비용 | 실제납입액 |
|-----|------|--------|--------|--------|--------|-------|--------|--------|--------|
| 소규모 | 평균 | 19,834 | 33,279 | - | 16,980 | - | 31,909 | 47,435 | -2,565 |
| | 표준편차 | 17,033 | 10,647 | - | 11,740 | - | 25,768 | 37,233 | |
| | 사례수 | 6 | 68 | - | 38 | - | 51 | 103 | |
| 중규모 | 평균 | - | 27,700 | - | 12,905 | - | 23,120 | 45,271 | -4,728 |
| | 표준편차 | - | 6,973 | - | 8,222 | - | 11,736 | 18,057 | |
| | 사례수 | - | 21 | - | 10 | - | 19 | 26 | |
| 대규모 | 평균 | - | 28,383 | - | 16,933 | - | 20,179 | 61,290 | 11,290 |
| | 표준편차 | - | 7,987 | - | 11,007 | - | 14,660 | 33,637 | |
| | 사례수 | - | 12 | - | 10 | - | 7 | 12 |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5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비용

1) 교육과정(누리과정) 교육비

- 대도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월 평균 기본 과정 교육비는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334,371원, 중규모는 361,186원, 대규모는 375,798원으로 대체로 33만원에서 38만원 사이에 이룸. 대도시의 경우 규모가 큰 유치원의 비용이 조금 높은 편임.
- 국가가 지원하는 유아 1인당 월 220,000원의 교육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14,000원~156,000원 정도임. 이 비용은 기본과정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상기하면 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거의 없음에 비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 대도시 사립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 소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41,519 57,265 79 | 12,800 5,583 15 | 43,381 13,109 74 | 33,014 17,993 62 | 21,273 10,743 46 | 13,666 6,973 43 | 29,091 21,659 11 | 334,371 73,469 79 | 114,371 |
| 중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59,639 51,105 97 | 16,930 14,080 32 | 45,085 11,860 95 | 29,920 14,054 79 | 21,382 10,026 52 | 19,722 15,893 48 | 35,471 27,586 17 | 361,186 69,674 97 | 141,186 |
| 대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72,362 47,709 99 | 17,532 9,770 33 | 45,149 12,139 95 | 33,577 21,460 82 | 25,306 17,081 64 | 18,545 21,522 49 | 35,235 35,828 15 | 375,798 81,946 100 | 155,798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22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1개월 기준으로 기본과정 학비가 325,081원이고 이 중 국가지원금을 빼면 실제 부담 비용은 105천원 정도임. 이에 비해 중규모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실제 부담 학비는 월 121,203원이고 대규모 유치원은 154,953원임. 따라서 대도시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기본과정 교육비도 2~3만원씩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음.

〈표 12〉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 소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29,394 44,410 80 | 16,222 28,990 27 | 47,661 25,081 73 | 34,984 21,137 71 | 18,803 13,800 33 | 16,366 7,792 43 | 26,355 13,491 22 | 325,081 94,479 82 | 105,081 |
| 중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39,897 47,933 97 | 11,539 6,087 31 | 43,016 14,161 91 | 35,102 32,824 90 | 16,104 7,408 41 | 18,089 14,771 59 | 36,036 19,599 28 | 341,203 89,106 98 | 121,203 |
| 대 규 모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255,947 32,505 92 | 13,111 5,853 34 | 49,493 23,247 87 | 39,829 22,837 82 | 24,453 12,591 43 | 15,858 10,832 47 | 32,404 22,169 35 | 374,953 66,909 92 | 154,953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22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월 평균 부담하는 기본 교육비는 259,792원으로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학비보다 낮음. 이는 중규모나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 유치원의 경우 모두 3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보이는 데 비해 읍면지역은 소규모와 중규모 모두 20만원대의 학비 수준을 보임.
- 읍면지역 학부모의 실제 납입액은 4만원~10만 2천원 정도로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 2~4만원 정도까지 차이를 보임.

〈표 13〉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운영비 | 현장학습비 | 기타 | 총비용 | 실제납입액 |
|-----|-------------------------------------|-----------------------|------------------------|------------------------|-----------------------|------------------------|------------------------|-------------------------|---------|
| 소규모 | 평균 214,630 표준편차 28,029 사례수 73 | 13,760 5,071 25 | 33,169 12,730 48 | 22,001 15,804 46 | 14,126 8,359 25 | 12,059 16,631 41 | 31,167 19,890 9 | 259,792 63,528 76 | 39,792 |
| 중규모 | 평균 224,306 표준편차 14,477 사례수 62 | 14,553 8,672 17 | 32,120 10,980 49 | 25,471 14,039 47 | 19,582 7,552 19 | 12,936 24,676 34 | 39,442 34,583 15 | 286,389 63,196 64 | 66,389 |
| 대규모 | 평균 244,191 표준편차 25,666 사례수 47 | 11,977 5,129 11 | 38,257 7,878 43 | 25,020 13,819 36 | 20,500 7,249 22 | 11,312 5,845 24 | 32,625 32,864 8 | 322,085 40,819 47 | 102,085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22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2) 방과후과정 교육비

-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대도시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 119,133원, 대규모 120,905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중 국가 지원금 7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대도시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월 4만원~5만원 정도임. 유치원 규모에 따라 약 1만원 가량 차이가 있음.
- 방과후과정 중의 급·간식비는 조사에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대도시 지역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정보공시된 자료 분석에 의하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차이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공립이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함(<표 8>과 <표 14>의 비교 결과임).

〈표 14〉 대도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소 규 모 | 평균 91,658 표준편차 108,050 사례수 76 | 20,667 9,059 24 | - - - | 16,938 10,357 16 | 12,500 5,000 4 | - - - | 53,068 33,477 30 | 119,133 113,715 79 | 49,133 |
| 중 규 모 | 평균 84,649 표준편차 28,310 사례수 94 | 18,913 10,108 30 | - - - | 18,078 12,504 24 | 13,617 12,169 6 | - - - | 41,433 22,324 40 | 110,745 42,008 97 | 40,745 |
| 대 규 모 | 평균 85,242 표준편차 34,818 사례수 98 | 22,147 8,497 36 | - - - | 18,682 7,669 23 | 14,894 12,906 11 | - - - | 49,939 46,114 45 | 120,905 62,569 100 | 50,950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7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소규모 112,239원, 중규모 107,052원, 대규모 121,967원으로 나타남. 대도시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 유치원의 방과후 교육비가 가장 높은데 이는 대도시 대규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임.
- 실제 중소도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비용은 약 37,000원~52,000원임. 소규모 사립유치원이나 중규모 유치원에 비해 대규모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성화교육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비용에서의 차이가 이를 일부 설명해주고 있음.

〈표 15〉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실제 납입액 |
|-------------|---|-----------------------|-------------|------------------------|------------------------|-------------|------------------------|-------------------------|-----------|
| 소 규 모 | 평균 81,237 표준편차 70,427 사례수 78 | 17,957 8,139 41 | - - - | 14,881 9,345 32 | 18,181 10,159 12 | - - - | 35,446 24,744 37 | 112,239 78,033 82 | 42,239 |
| 중 규 모 | 평균 74,822 표준편차 31,862 사례수 94 | 17,061 8,335 44 | - - - | 17,018 14,817 38 | 15,000 7,360 13 | - - - | 35,449 24,927 49 | 107,052 41,929 98 | 37,052 |
| 대 규 모 | 평균 83,081 표준편차 31,821 사례수 89 | 19,878 6,907 41 | - - - | 17,070 12,736 31 | 12,736 5,812 12 | - - - | 53,874 27,199 42 | 121,967 38,224 92 | 51,967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7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 읍면지역의 사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 학비로 92,000원~99,000원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음. 중규모의 유치원이 98,804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고 이는 소규모 91,695원에 비해 7,200원 정도가 더 많음.
- 읍면지역 실제 부모 부담 교육비는 21,695원에서 28,804원 사이로, 대부분 3만원 이하의 방과후과정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나 대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용이 낮은 결과임.

<표 16>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월 평균 학부모 부담 교육비

단위: 원, 개원

| 구분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운영비 | 현장학습비 | 기타 | 총비용 | 실제납입액 | |
|-----|------|--------|--------|--------|--------|--------|----|--------|--------|--------|
| 소규모 | 평균 | 65,575 | 15,589 | - | 39,500 | 11,750 | - | 35,167 | 91,695 | 21,695 |
| | 표준편차 | 12,764 | 7,259 | - | 65,614 | 5,679 | - | 17,484 | 43,387 | |
| | 사례수 | 73 | 21 | - | 19 | 4 | - | 36 | 79 | |
| 중규모 | 평균 | 71,066 | 16,294 | - | 17,006 | 19,250 | - | 38,768 | 98,804 | 28,804 |
| | 표준편차 | 8,068 | 6,162 | - | 9,700 | 8,302 | - | 23,954 | 34,051 | |
| | 사례수 | 61 | 17 | - | 17 | 4 | - | 33 | 64 | |
| 대규모 | 평균 | 67,844 | 16,587 | - | 12,800 | - | - | 40,351 | 94,816 | 24,816 |
| | 표준편차 | 18,580 | 5,951 | - | 6,281 | - | - | 18,566 | 28,433 | |
| | 사례수 | 45 | 25 | - | 15 | - | - | 19 | 47 | |

주: 만 5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실제 납입액'은 국가 지원금 70,000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임.

다. 부모 부담 교육비의 지역별·규모별 비교

- 공립유치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는 국가학비 지원액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0원~5,212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부모 부담이 46원으로서, 거의 비용이 없다고 하겠음.
- 유치원 기본과정인 오전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에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이 대체로 3, 4천원 정도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방과후과정 교육비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월등히 높았고 읍면이 가장 낮았음.
- <표 17>에서, 학교 회계 합산으로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던 읍면 소규모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유치원 규모가 작을수록 학부모 부담 비용이 높음.

〈표 17〉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기본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비용 비교

단위: 원, 기준: 월

| 지역 | 유치원 규모 | 입학+ 원복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 재료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
|----------|-----------|-----------|--------|--------|------------|-----------|--------|---------|------------------|
| 대도시 | 대 | 47,905 | 8,969 | 42,795 | 16,258 | 6,705 | 11,963 | 56,286 | -3,714 |
| | 중 | 28,733 | 9,105 | 44,645 | 8,168 | 10,066 | 16,706 | 56,478 | -3,522 |
| | 소 | 24,047 | 7,859 | 45,341 | 10,401 | 9,321 | 26,116 | 61,383 | 1,383 |
| 중소 도시 | 대 | | 12,867 | 46,444 | 20,631 | 11,304 | 16,770 | 63,544 | 3,544 |
| | 중 | 44,293 | 11,873 | 43,639 | 24,941 | 12,837 | 12,775 | 64,164 | 4,164 |
| | 소 | | 8,964 | 46,951 | 16,095 | 12,604 | 19,000 | 65,212 | 5,212 |
| 읍면 | 대 | 47,437 | 16,200 | 47,190 | 12,867 | 10,224 | | 60,430 | 430 |
| | 중 | | 18,540 | 42,909 | 28,128 | 18,538 | 7,600 | 63,036 | 3,036 |
| | 소 | 33,556 | 13,635 | 44,971 | 22,198 | 12,793 | 20,730 | 49,878 | -10,122 |
| 전체 | | | 12,001 | 44,987 | 17,743 | 11,599 | 16,457 | 60,046 | 46 |

〈표 18〉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 비용 비교

단위: 원, 기준: 월

| 지역 | 유치원 규모 | 수업료 | 간식비 | 교재/ 재료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
|----------|-----------|--------|--------|------------|-----------|--------|---------|------------------|
| 대도시 | 대 | 78,906 | 23,885 | 17,388 | 6,605 | 31,774 | 77,316 | 27,316 |
| | 중 | 86,988 | 27,306 | 17,754 | 9,144 | 35,904 | 118,620 | 68,620 |
| | 소 | 88,521 | 31,352 | 17,344 | 5,997 | 37,027 | 109,957 | 59,957 |
| 중소 도시 | 대 | 51,771 | 29,121 | 12,707 | 8,586 | 22,569 | 60,547 | 10,540 |
| | 중 | 38,372 | 28,065 | 13,928 | 8,103 | 30,288 | 62,658 | 12,658 |
| | 소 | 41,307 | 30,769 | 15,059 | 9,712 | 31,681 | 64,062 | 14,062 |
| 읍면 | 대 | | 28,383 | 16,933 | 8,370 | 20,179 | 61,290 | 11,290 |
| | 중 | 20,000 | 27,700 | 12,905 | 3,000 | 23,120 | 45,271 | -2,565 |
| | 소 | 19,834 | 33,279 | 16,980 | 8,000 | 31,909 | 47,435 | -4,728 |
| 전체 | | 53,212 | 28,873 | 15,666 | 7,502 | 29,383 | 71,906 | 21,906 |

□ 제시된 <표 19>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월 331,206 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부모는 111,206원을 부담함.

- 지역과 무관하게 유치원의 규모가 큰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및 급식비, 입학/원복비가 높음. 읍면지역은 6만원~10만원 정도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약 10만~15.5만원까지 추가 수업료를 부과함.

□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 차이는 수업료 및 현장학습비에서 가장 뚜렷함.

〈표 19〉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기본교육과정 학부모 부담비용 비교

단위: 원, 기준: 개월

| 지역 | 유치원 규모 | 수업료 | 간식비 | 급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
|------|--------|---------|--------|--------|--------|--------|--------|--------|---------|---------------|
| 대도시 | 대 | 272,362 | 17,532 | 45,149 | 33,577 | 25,306 | 18,545 | 35,235 | 375,798 | 125,798 |
| | 중 | 259,639 | 16,930 | 45,085 | 29,920 | 21,382 | 19,722 | 35,471 | 361,186 | 141,186 |
| | 소 | 241,519 | 12,800 | 43,381 | 33,014 | 21,273 | 13,666 | 29,091 | 334,371 | 114,371 |
| 중소도시 | 대 | 255,947 | 13,111 | 49,493 | 39,829 | 24,453 | 15,858 | 32,404 | 374,953 | 154,953 |
| | 중 | 239,897 | 11,539 | 43,016 | 35,102 | 16,104 | 18,089 | 36,036 | 341,203 | 121,203 |
| | 소 | 229,394 | 16,222 | 47,661 | 34,984 | 18,803 | 16,366 | 26,355 | 325,081 | 105,081 |
| 읍면 | 대 | 244,191 | 11,977 | 38,257 | 25,020 | 20,500 | 11,312 | 32,625 | 322,085 | 102,085 |
| | 중 | 224,306 | 14,553 | 32,120 | 25,471 | 19,582 | 12,936 | 39,442 | 286,389 | 66,389 |
| | 소 | 214,630 | 13,760 | 33,169 | 22,001 | 14,126 | 12,059 | 31,167 | 259,792 | 39,792 |
| 전체 | | 242,432 | 14,269 | 41,926 | 30,991 | 20,170 | 15,395 | 33,092 | 331,206 | 111,206 |

주: 실제 부모 납입액은 위의 '총 납입액'에서 국가지원비용인 220,000을 제외한 금액임.

〈표 20〉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방과후과정 학부모 부담비용 비교

단위: 원, 기준: 개월

| 지역 | 유치원 규모 | 수업료 | 간식비 | 교재/재료비 | 차량 운영비 | 현장 학습비 | 기타 | 총 비용 |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
|------|--------|--------|--------|--------|--------|--------|--------|---------|---------------|
| 대도시 | 대 | 85,242 | 22,147 | 18,682 | 14,894 | 24,000 | 49,939 | 120,905 | 50,905 |
| | 중 | 84,649 | 18,913 | 18,078 | 13,617 | 10,000 | 41,433 | 110,745 | 40,745 |
| | 소 | 91,658 | 20,667 | 16,938 | 12,500 | - | 53,068 | 119,133 | 49,133 |
| 중소도시 | 대 | 83,081 | 19,878 | 17,070 | 12,736 | 13,500 | 53,874 | 121,967 | 51,967 |
| | 중 | 74,822 | 17,061 | 17,018 | 15,000 | 5,000 | 35,449 | 107,052 | 37,052 |
| | 소 | 81,237 | 17,957 | 14,881 | 18,181 | 10,000 | 35,446 | 112,239 | 42,239 |
| 읍면 | 대 | 67,844 | 16,587 | 12,800 | 15,000 | - | 40,351 | 94,816 | 24,816 |
| | 중 | 71,066 | 16,294 | 17,006 | 19,250 | - | 38,768 | 98,804 | 28,804 |
| | 소 | 65,575 | 15,589 | 39,500 | 11,750 | - | 35,167 | 91,695 | 21,695 |
| 전체 | | 78,353 | 18,344 | 19,108 | 14,770 | - | 42,611 | 108,595 | 38,595 |

5. 정책적 시사점

-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 지원 비용이 적정한지,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과정이라고 봄.
- 2013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본 조사의 결과는 공·사립 설립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 규모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줌.
 -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과정만 등록할 때는 별도로 내는 비용이 없음. 국가 지원금 유아당 60,000원으로 충당이 됨.
 - 공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평균 21,900원 가량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 지역은 7만원까지 부담하기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담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함.
 -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과정에 대해 평균 111,200원을 부담하여 무상인 공립에 비해 차이가 있음.
 -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추가로 평균 38,600원을 더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차가 큼. 결국,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사립유치원 유아는 실제로 1개월에 총 15만원 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소도시 지역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 최대 206,000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공립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월 60,000원은 매우 적절한 수준의 금액임.
 - 공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교육시간에 대해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무상교육을 지향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임. 향후 더 상향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필요하다면 물가 상승분 정도가 반영되면 충분할 것으로 봄.
 - 오히려, 농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농어촌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비용지원이 소폭 감소되어 실비 지출 정도를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함.

-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바, 그 원인을 지역 간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의 질적 또는 양적 수준 차이에서 찾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지원 방향 조정이 필요함.
 -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 간 차이는 주로 방과후수업료, 기타비용(주로 특성화교육비로 추측)에서의 차이로 나타남. 대도시 지역 공립유치원에서 특성화 등 방과후과정 수업을 높은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도·농 간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차이를 인식하게 함.
 -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 5만원은 지원 수준에서 적절해 보이나, 대도시의 방과후과정과 기타 지역의 방과후과정 간 양적·질적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 간 프로그램 수준의 차이를 메꾸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누리과정 지원에 있어 공·사립 간 지원비용 격차를 더 키우는 방향이 필요해 보임. 즉,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우 월 22만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공립 이용자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가 월 11만원 이상을 교육과정 교육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대규모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154,000원까지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은 점차 증액하여 30만원까지 높아진다면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의 경우 현황 자료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별로 차등을 둔 지원 수준 또한 고려할 만함.
 - 도시지역 유치원이 읍면지역에 비해 방과후과정 비용에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방과후과정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간 1만원 정도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임.
 - 사립유치원일지라도 농어촌지역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부모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농어촌 부모 중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맞벌이인 경우라도 소득이 높은 계층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읍면지역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에 보다 관대할 필요성도 논의되어야 함.

참고문헌

-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유아교육법.
- <http://chilschool.mest.go.kr/>
- <http://e-chilschoolinfo.mest.go.kr/>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이정원

요약

- 육아지원기관의 핵심인력인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지원업무의 중복 수행 부담으로 본래의 교육·보육활동의 충실한 수행이 어려우며, 이는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보육활동 외 추가되는 기타 지원업무 중복 수행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업무를 수행할 인력 충원이 요구됨.
- 생애주기적으로 경제적 욕구가 높고 양육 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여성을 육아지원기관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시 인력이 필요한 육아지원기관과 일자리를 원하는 중고령 여성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중고령 여성의 육아지원기관 취업 수요 조사 결과, 취업희망 중고령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육아지원기관 취업 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처 소개·연계’에 대한 취업 지원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 측에서도 중고령 여성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이며, 특히 보조교사, 교육·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취사부, 청결도우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기관 구인·구직 연계기관에서 육아지원인력을 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및 이러한 연계시스템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육아 지원인력의 업무별 ‘근로조건·자격조건’의 표준안 활용을 제안함.

1. 문제제기

가. 육아지원기관 지원인력 충원 필요성 제기

- 육아지원기관의 양적 증대에 의한 절대적 인력 수요 뿐 아니라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도 기본과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여성 지원인력 활용 방안 연구」(이정원·양유진, 2013)의 내용을 토대로 함.

- 핵심인력인 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누리과정 도입으로 대표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핵심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인력 충원 및 적절 배치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교사의 직무 만족도나 스트레스 정도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
 - 교육·보육 보조인력이나 청소·뒷정리, 차량지도 등 다양한 잡무를 지원하는 기타지원인력이 충원될 때 교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며, 이를 통해 교사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음(백영숙·강병재, 2013:25; 41~42; 정영희·이영숙, 2012:107; 127; 이경민·최윤정·이경애, 2012:509).

나.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제기

□ 중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 증가

-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마련의 연장선상에서 40~50대 이상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길어진 노년기 대비의 필요성에서 중고령층의 경제적 욕구 및 이에따른 근로 욕구도 증가함.
 - 40세 이후 ‘중고령층’은 가구의 소비 규모가 크고 은퇴 준비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욕구가 큼.
- 경력단절 여성 활용 측면에서도 중고령 여성을 위한 적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출산·양육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40대 이상 여성은 자녀의 출산·양육기를 이미 거쳐 시간적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육아지원기관의 인력 운영 현황

- 유치원과 유치원의 원장, 원감, 주임교사 등 인력채용 및 운영에 관해 응답할 수 있는 인력을 각각 300사례씩 총 600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장, 교사 등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기타 교육·보육교직원(이하 지원인력)의 기관 내 운영 현황을 살펴봄.

가. 지원인력 현황

□ 지원업무별 인력보유 현황

- 육아지원기관 지원업무별 인력보유율 차이 존재
 - 인력보유율 상위 항목은 교·보육환경 지원업무의 직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보유율이 높은 인력은 취사부(83.3%)이며, 보조교사 56.8%, 운전기사 53.5%, 사무원 32.0%, 청결도우미 31.8%의 보유율을 보임.
 - 운전기사를 제외한 지원인력의 성별은 대부분 여성으로, 육아지원기관 내 지원인력은 주로 여성이 선호됨.

〈표 1〉 지원인력 현황

단위: %(사례), 명

| 지원인력 | 인력 보유율 | 전체(수) | 평균 인력수 | 보유 인력 성별 | | | | |
|--------------|-----------|-------|------------|----------|------|-------|------|------------|
| | | | | 남자 | 여자 | 남·여 | 계(수) | |
| 교·보육 활동 지원업무 | 보조교사 | 56.8 | 100.0(600) | 1.91 | 1.5 | 97.9 | 0.6 | 100.0(341) |
| | 교육·보육 도우미 | 22.5 | 100.0(600) | 1.25 | 0.7 | 99.3 | - | 100.0(135) |
| 전문업무 | 특수교사 | 5.2 | 100.0(600) | 2.00 | - | 87.1 | 12.9 | 100.0(31) |
| | 영양사 | 28.3 | 100.0(600) | 1.00 | 1.2 | 98.8 | - | 100.0(170) |
| | 간호사 | 10.3 | 100.0(600) | 1.02 | 3.2 | 96.8 | - | 100.0(62) |
| | 치료사 | 2.5 | 100.0(600) | 4.13 | - | 100.0 | - | 100.0(15) |
| 교·보육 환경 지원업무 | 청결도우미 | 31.8 | 100.0(600) | 2.17 | 2.6 | 95.8 | 1.6 | 100.0(191) |
| | 사무원 | 32.0 | 100.0(600) | 1.85 | 10.4 | 78.1 | 11.5 | 100.0(192) |
| | 취사부 | 83.3 | 100.0(600) | 2.24 | 1.6 | 96.8 | 1.6 | 100.0(500) |
| | 운전기사 | 53.5 | 100.0(600) | 1.46 | 77.3 | 16.2 | 6.5 | 100.0(321) |
| | 차량지도인력 | 25.5 | 100.0(600) | 3.93 | 13.7 | 85.0 | 1.3 | 100.0(153) |
| | 기타 | 15.3 | 100.0(600) | 2.11 | 10.9 | 78.3 | 10.9 | 100.0(92) |

□ 지원인력의 타 업무 중복 수행 실태

- 대부분의 지원인력이 업무를 중복 수행함.
 - 특히 교·보육환경 지원업무 직군의 인력이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비율이 높음. 차량지도인력은 중복수행률이 68.6%이며, 기타인력, 사무원도 각각 62.2%, 58.9%로 높은 중복업무 수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2〉 지원인력의 타 업무 중복 수행 여부

| 지원인력 | | 중복수행업무 있음 | 중복수행업무 없음 | 단위: %(사례) 전체(수) |
|--------------------|----------|-----------|-----------|--------------------|
| 교·보육활동 | 보조교사 | 16.4 | 83.6 | 100.0(341) |
| 지원업무 | 교육·보육도우미 | 14.8 | 85.2 | 100.0(135) |
| 전문 업무 | 특수교사 | 6.5 | 93.5 | 100.0(31) |
| | 영양사 | 7.6 | 92.4 | 100.0(170) |
| | 간호사 | 35.5 | 64.5 | 100.0(62) |
| | 치료사 | 66.7 | 33.3 | 100.0(15) |
| 교·보육 환경 지원업무 | 청결도우미 | 38.7 | 61.3 | 100.0(191) |
| | 사무원 | 58.9 | 41.1 | 100.0(192) |
| | 취사부 | 17.8 | 82.2 | 100.0(500) |
| | 운전기사 | 23.1 | 76.9 | 100.0(321) |
| | 차량지도인력 | 68.6 | 31.4 | 100.0(153) |
| | 기타 | 62.2 | 37.8 | 100.0(312) |

- 지원인력 간 업무 중복 실태가 드러남.
 - 지원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본래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기관에서 지원인력을 본래 업무 외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뜻함.
- 핵심인력의 지원업무 중복 수행 실태가 드러남.
 - 68.6%로 가장 높은 타 업무 중복수행률을 보인 차량지도인력의 경우 <표 3>에 따르면 46.7%가 교사의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치료사의 경우 90.0%가 청결도우미·차량지도·교사의 업무를, 사무원의 38.1%가 원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업무 수행 인력이 원장, 교사의 업무를 중복수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원장과 교사가 지원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함.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즉, 원장은 사무원, 취사부, 운전기사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사는 차량지도와 청결도우미의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처럼 원장, 교사 등 핵심인력이 기관 내 지원업무를 중복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장이나 교사가 각종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지원업무 간 업무 중복 수행뿐 아니라 핵심인력의 지원업무 중복 수행은 교육·보육활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중복수행의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표 3〉 지원인력의 중복 수행 업무

단위: %(사례)

| 지원인력 | 중복수행비율 | 주요중복수행업무(복수응답) | | | | 계(수)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
| 교보육 활동 지원 업무 | 보조교사 | 16.4 | 차량지도 44.6 | 사무원 21.4 | 교육보육도우미 16.1 | 청결도우미 12.5 | 100.0(56) |
| | 교육·보육 도우미 | 14.8 | 보조교사 45.0 | 취사부(조리사) 30.0 | 청결도우미 25.0 | 간호사 10.0 | 100.0(20) |
| 전문 업무 | 특수교사 | 6.5 | 치료사 50.0 | 차량지도인력 50.0 | - | - | 100.0(2) |
| | 영양사 | 7.6 | 학교 61.5 | 취사부(조리사) 15.4 | 특성화 15.4 | 원장 7.7 | 100.0(13) |
| | 간호사 | 35.5 | 학교 36.4 | 원장 22.7 | 사무원(행정인력) 13.6 | 보조교사 9.1 | 100.0(22) |
| | 치료사 | 66.7 | 청결도우미 90.0 | 차량지도인력 90.0 | 교사 90.0 | 원장 70.0 | 100.0(10) |
| 교보육 환경 지원 업무 | 청결도우미 | 38.7 | 교사 35.1 | 취사부(조리사) 31.1 | 차량지도인력 25.7 | 사무원(행정인력) 21.6 | 100.0(74) |
| | 사무원 | 58.9 | 원장 38.1 | 교사 21.2 | 청결도우미 15.0 | 차량지도인력 15.0 | 100.0(113) |
| | 취사부 | 17.8 | 원장 55.1 | 청결도우미 14.6 | 운전기사 12.4 | 학교 9.0 | 100.0(89) |
| | 운전기사 | 23.1 | 원장 52.7 | 차량지도인력 33.8 | 취사부(조리사) 14.9 | 사무원(행정인력) 13.5 | 100.0(74) |
| | 차량지도 인력 | 68.6 | 교사 46.7 | 운전기사 25.7 | 청결도우미 19.0 | 보조교사 17.1 | 100.0(105) |
| | 기타 | 56.5 | 사무원(행정인력) 49.5 | 차량지도인력 35.6 | 취사부(조리사) 30.9 | 청결도우미 26.3 | 100.0(194) |

나. 지원인력별 채용 필요도 및 채용 시 애로사항

□ 지원인력의 채용 필요도

- 육아지원기관은 교·보육 환경 지원인력에 대한 ‘채용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인력 중 취사부가 85.2%로 채용필요성이 가장 높은 인력이며, 운전기사 55.8%, 사무원과 청결도우미도 각각 43.2%, 42.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교·보육활동 지원인력 중에서는 보조교사가 77.0%로 가장 높은 채용 필요율을 보임.

□ 지원인력의 충분성 및 채용 시 애로사항

- 지원인력별 현 인력의 충분성 정도에 차이가 남.
 - 현재 해당 지원인력이 없더라도 해당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음.
 - 사무원의 충분성이 가장 낮아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31.7%로 나타남. 반면 현장에서 가장 충분한 인력으로는 영양사와 운전기사가 81.1%, 73.8%, 취사부가 68% 순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활동 지원업무의 인력인 보조교사는 채용 필요성도 높고, 현재 현장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한 편(17.1%, 49.1%)’의 비율이 높아 인력의 충원 필요성이 높은 인력으로 나타남.

〈표 4〉 지원인력의 채용 필요성 및 현 인력의 충분성 정도

단위: %(사례)

| 지원인력 | 채용 필요율 ^{*)} | 현 인력의 충분성 정도 | | | | 계(수) | |
|--------------|----------------------|--------------|-------|-------|-------|------|------------|
| | | 매우 부족 | 부족한 편 | 충분한 편 | 매우 충분 | | |
| 교·보육 활동 지원업무 | 보조교사 | 77.0 | 17.1 | 49.1 | 31.8 | 1.9 | 100.0(462) |
| | 교육·보육도우미 | 37.2 | 18.8 | 48.9 | 30.0 | 2.2 | 100.0(223) |
| | 특수교사 | 9.2 | 16.4 | 43.6 | 32.7 | 7.3 | 100.0(55) |
| 전문 업무 | 영양사 | 30.0 | 1.7 | 17.2 | 73.9 | 7.2 | 100.0(180) |
| | 간호사 | 15.0 | 16.7 | 26.7 | 48.9 | 7.8 | 100.0(90) |
| | 치료사 | 3.3 | 15.0 | 25.0 | 55.0 | 5.0 | 100.0(20) |

(표 4 계속)

| 지원인력 | 채용 필요율 ^{주)} | 현 인력의 충분성 정도 | | | | 계(수) |
|--------------|-------------------------|--------------|-------|-------|-------|------------|
| | | 매우 부족 | 부족한 편 | 충분한 편 | 매우 충분 | |
| 청결도우미 | 42.2 | 17.0 | 41.1 | 37.9 | 4.0 | 100.0(253) |
| 교·보육 사무원 | 43.2 | 31.7 | 26.3 | 39.0 | 3.1 | 100.0(259) |
| 환경 취사부 | 85.2 | 10.9 | 21.1 | 63.1 | 4.9 | 100.0(512) |
| 지원 운전기사 | 55.8 | 8.4 | 17.9 | 66.3 | 7.5 | 100.0(335) |
| 업무 차량지도인력 | 31.3 | 14.4 | 29.3 | 49.5 | 6.9 | 100.0(188) |
| 기타 | 22.3 | 1.5 | 13.4 | 77.6 | 7.5 | 100.0(134) |

주: 1) 채용필요율 산출의 전체 사례수는 600개임.

2) 기타에는 관리인, 정원관리자, 특수교육보조, 하모니 보조인력, 교사(방과후 강사), 장애 이통합보조원, 특성화강사, 세대간 지혜나눔, 특강강사, 교육실무원, 시간연장교사, 체육보조 등이 응답됨.

- 지원인력의 주된 구인방법으로는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인 비율이 높고, 지인, 아는 기관 소개, 직업훈련·교육기관 의뢰 등이 많이 활용됨.

<표 5> 지원인력의 구인방법(복수응답)

단위: %(사례)

| 지원인력 | 홈페이지 | 지인, 아는 기관소개 | 직업훈련 ·교육 기관의뢰 | 지역 내 기관문의 | 유관기관 계시관 | 기타 | 전체(수) |
|--------------|------|-------------------|---------------------|--------------|-------------|-----|------------|
| 교·보육 활동 보조교사 | 56.0 | 50.5 | 35.6 | 15.4 | 13.9 | 5.4 | 100.0(461) |
| 지원업무 교·보육도우미 | 60.4 | 39.2 | 27.9 | 9.5 | 8.6 | 6.8 | 100.0(222) |
| 전문업무 특수교사 | 65.5 | 47.3 | 12.7 | 5.5 | 5.5 | 3.6 | 100.0(55) |
| 영양사 | 49.2 | 44.1 | 32.4 | 9.5 | 6.1 | 5.6 | 100.0(180) |
| 간호사 | 62.2 | 42.2 | 14.4 | 8.9 | 3.3 | 1.1 | 100.0(90) |
| 치료사 | 70.0 | 70.0 | 30.0 | 25.0 | - | - | 100.0(20) |
| 청결도우미 | 46.0 | 41.7 | 35.7 | 10.3 | 9.9 | 7.9 | 100.0(253) |
| 교·보육 사무원 | 48.8 | 38.0 | 36.0 | 11.2 | 10.1 | 3.1 | 100.0(259) |
| 환경 취사부 | 46.6 | 41.5 | 36.3 | 11.2 | 7.5 | 6.7 | 100.0(509) |
| 지원업무 운전기사 | 48.9 | 37.8 | 37.2 | 9.9 | 9.0 | 6.9 | 100.0(333) |
| 차량지도인력 | 48.7 | 42.8 | 40.6 | 13.4 | 12.8 | 7.0 | 100.0(187) |
| 기타 | 50.7 | 25.4 | 23.9 | 20.1 | 4.5 | 2.9 | 100.0(134) |

주: 지역 내 기관(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계시관(지역교육청, 보육정보센터 등)을 의미함.

- 지원인력별 채용 시 어려움의 차이 존재
 - 보조교사(27.9%)와 교육·보육도우미(30.0%), 전문 인력 중 치료사(40.0%), 운전기사(29.3%)와 차량지도인력(30.3%)은 구인자의 높은 희망 급여가 채용 시 어려움임. 현장의 지급 가능한 급여가 한정되어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수교사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부족(36.4%)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교·보육환경 지원인력의 기타인력(32.8%), 전문 인력인 영양사(26.1%)와 간호사(22.2%)는 지역 내 인력의 부족이 채용 시 어려움으로 나타남.

〈표 6〉 지원인력의 채용 시 어려운 점

단위: %(사례)

| | 지원인력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부족 | 지역내 인력 부족 | 인력 자질 부족 | 높은 희망 급여 | 관련 업무 인식 부족 | 구인 홍보 어려움 | 어려움 없음 | 계(수) |
|--------------|----------|---------------|-----------|----------|----------|-------------|-----------|--------|------------|
| 교·보육 활동 지원업무 | 보조교사 | 16.7 | 25.3 | 11.5 | 27.9 | 5.2 | 2.4 | 11.0 | 100.0(462) |
| | 교육·보육도우미 | 10.3 | 22.9 | 13.9 | 30.0 | 7.6 | 4.0 | 11.2 | 100.0(223) |
| 전문업무 | 특수교사 | 36.4 | 25.5 | 1.8 | 12.7 | 3.6 | 1.8 | 18.2 | 100.0(55) |
| | 영양사 | 12.8 | 26.1 | 3.9 | 20.6 | 1.1 | 2.2 | 33.3 | 100.0(180) |
| | 간호사 | 16.7 | 22.2 | 5.6 | 17.8 | 2.2 | 4.4 | 31.1 | 100.0(90) |
| | 치료사 | 25.0 | 15.0 | 15.0 | 40.0 | - | - | 5.0 | 100.0(20) |
| 교·보육 환경 지원업무 | 청결도우미 | 2.0 | 28.1 | 9.5 | 29.6 | 5.9 | 6.3 | 18.6 | 100.0(253) |
| | 사무원 | 1.9 | 18.9 | 7.7 | 37.5 | 5.4 | 3.9 | 24.7 | 100.0(259) |
| | 취사부 | 7.8 | 20.3 | 8.0 | 27.7 | 2.9 | 5.7 | 27.5 | 100.0(512) |
| | 운전기사 | 4.8 | 21.2 | 7.2 | 29.3 | 1.5 | 4.2 | 31.9 | 100.0(335) |
| | 차량지도인력 | 1.1 | 18.1 | 8.5 | 30.3 | 2.7 | 7.4 | 31.9 | 100.0(188) |
| | 기타 | 3.0 | 32.8 | 8.2 | 14.9 | 0.7 | 2.2 | 38.1 | 100.0(134) |

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여성 인력 활용 가능성

가. 육아지원기관의 중고령 인력 채용 의사

- 부족한 지원인력 충원을 위해 유휴 중고령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인력 운영 현황 및 향후 중고령 인력 채용 의사를 살펴 봄.

□ 중고령 인력 운영 현황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인력 활용률은 비교적 높음.
 - 현재 육아지원기관에서 활동하는 지원인력의 최고 연령대가 40세 이상인 경우는 매우 보편적임.
 - 특히, 교·보육환경 지원업무 중 운전기사는 75.1%, 청결도우미 62.3%, 취사부 59.0, 사무원 37.5%가 45세 이상이 최고 연령대로 교·보육환경 지원인력의 중고령 인력 활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7〉 지원인력 최고 연령대

| 지원인력 | | 단위: %(사례) | | | | | 계(수) |
|--------------------|----------|-----------|--------|--------|--------|--------|-----------------|
| | | 25세미만 | 25-30세 | 30-34세 | 35-40세 | 40-45세 | 45세이상 |
| 교·보육 활동 | 보조교사 | 5.0 | 21.1 | 24.0 | 15.8 | 19.1 | 15.0 100.0(341) |
| 지원업무 | 교육·보육도우미 | 0.7 | 13.3 | 13.3 | 14.8 | 14.8 | 43.0 100.0(135) |
| 전문업무 | 특수교사 | 12.9 | 35.5 | 29.0 | 16.1 | 6.5 | - 100.0(31) |
| | 영양사 | 0.6 | 6.5 | 14.7 | 30.0 | 32.4 | 15.9 100.0(170) |
| | 간호사 | - | 6.5 | 8.1 | 32.3 | 29.0 | 24.2 100.0(62) |
| | 치료사 | 6.7 | 13.3 | 13.3 | 13.3 | 13.3 | 40.0 100.0(15) |
| 교·보육 환경 지원업무 | 청결도우미 | 0.5 | 0.5 | 2.1 | 11.5 | 23.0 | 62.3 100.0(191) |
| | 사무원 | 1.6 | 7.8 | 12.0 | 18.8 | 22.4 | 37.5 100.0(192) |
| | 취사부 | - | 1.0 | 2.8 | 8.6 | 28.6 | 59.0 100.0(500) |
| | 운전기사 | - | 0.6 | 1.9 | 3.4 | 19.0 | 75.1 100.0(321) |
| | 차량지도인력 | 1.3 | 7.2 | 12.4 | 24.8 | 25.5 | 28.8 100.0(153) |
| | 기타 | 0.3 | 4.2 | 9.0 | 23.4 | 24.7 | 38.5 100.0(312) |

- 교·보육 활동 지원업무 직군 중에서는 교육·보육도우미의 중고령 인력 활용율이 높았음. 전문업무 직군은 상대적으로 중고령 인력 활용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치료사의 경우는 최고연령이 45세 이상인 인력이 40%로 전문업무 직군 중 가장 중고령 인력 활용율이 높은 업무로 나타남.

□ 향후 중고령 지원인력 채용 의사

- 육아지원기관에서 각 지원업무별 중고령 인력 채용 의사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8〉 지원인력 채용 가능 최고 연령대

| 지원인력 | | 단위: %(사례) | | | | | 계(수) |
|------|----------|-----------|--------|--------|--------|--------|-----------------|
| | | 25세 미만 | 25-30세 | 30-34세 | 35-40세 | 40-45세 | 45세 이상 |
| | 보조교사 | 0.6 | 7.8 | 26.2 | 28.6 | 24.5 | 12.3 100.0(462) |
| | 교육·보육도우미 | - | 4.5 | 17.9 | 25.6 | 26.9 | 25.1 100.0(233) |
| | 특수교사 | - | 7.3 | 16.4 | 41.8 | 20.0 | 14.5 100.0(55) |
| | 영양사 | - | 1.1 | 10.6 | 38.9 | 25.6 | 23.9 100.0(180) |
| | 간호사 | - | 1.1 | 6.7 | 36.7 | 32.2 | 23.3 100.0(90) |
| | 치료사 | - | - | 5.0 | 25.0 | 20.0 | 50.0 100.0(20) |
| | 청결도우미 | - | - | 0.8 | 14.2 | 24.1 | 60.9 100.0(253) |
| | 사무원 | - | 3.1 | 12.7 | 38.2 | 25.5 | 20.5 100.0(259) |
| | 취사부 | - | - | 1.2 | 9.8 | 28.5 | 60.5 100.0(512) |
| | 운전기사 | - | - | - | 6.6 | 18.8 | 74.6 100.0(335) |
| | 차량지도인력 | - | 1.1 | 15.4 | 38.8 | 14.9 | 29.8 100.0(188) |
| | 기타 | - | 4.2 | 4.2 | 31.3 | 25.0 | 35.4 100.0(48) |

- 향후 채용 시 각 지원업무별 가능한 최고연령대로 30대 후반 정도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각 지원업무별로 40세 이상의 인력에 대한 채용 의사가 적게는 34.5%에서 많게는 93.4%까지로 비교적 채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교육·보육도우미', '치료사', '취사부', '운전기사', '청결도우미' 등은 40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채용 의사가 가장 높은 직군이었음.

나. 중고령 여성 인력의 육아지원 기관 취업 의사 및 요구

□ 중고령 여성의 육아지원기관 취업 의사

- 미취업 중고령 여성 400사례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례는 355사례이며, 이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54.6%인 194사례에 해당함.

□ 육아지원 기관 취업 희망 중고령 여성의 특성

- 학력별로는 사례수가 미미한 중졸 학력자를 제외하면 2-3년제 대학졸업자의 육아지원기관 취업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62.1%).
- 육아지원 관련 전공자의 육아지원기관 취업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 취업희망자 중 관련분야 전공자 비율이 20.6%이며 육아지원기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은 13.7%로 취업희망자의 관련분야 전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 취업의사는 중고령 여성의 '적성'과 긴밀히 연관되는 특성을 보임.
 - 육아지원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아이를 좋아하여서)'로 30.4%가 해당함. 이밖에 '보람 있을 것 같아서' 23.0%, '자녀양육 경험이 많아서' 22.0%, '전공분야와 맞아서' 14.7%, '동일·유사분야 경력이 있어서'가 9.9%로 응답됨.
 - 전반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일을 좋아하거나(적성이 맞거나) 자녀양육 경험 등으로 이러한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 결국 육아지원기관의 취업희망과 취업 지속 가능성은 '적성'의 문제로 연결되며, 중고령 여성을 육아지원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이들의 '적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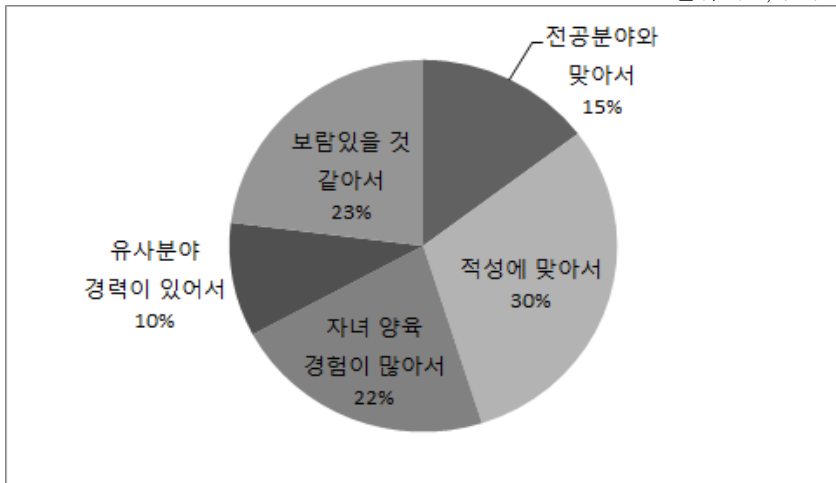
〈표 9〉 육아지원기관 취업의사 및 취업희망 이유

단위: %(명)

| 구분 | 취업 희망률 | 계(수) | 육아지원 기관 취업희망이유 | | | | | 계(수) |
|--------------|--------|------------|----------------|---------|---------------|--------------|-------------|------------|
| | | | 전공 분야와 맞아서 | 적성에 맞아서 | 자녀 양육 경험이 많아서 | 유사분야 경력이 있어서 | 보람 있을 것 같아서 | |
| 전체 | 54.6 | 100.0(355) | 14.7 | 30.4 | 22.0 | 9.9 | 23.0 | 100.0(194) |
| 학력별 | | | | | | | | |
| 중졸이하 | 63.6 | 100.0(22) | - | 23.1 | 15.4 | 7.7 | 53.8 | 100.0(14) |
| 고졸 | 51.9 | 100.0(206) | 6.6 | 35.8 | 23.6 | 7.5 | 26.4 | 100.0(107) |
| 2-3년제 대학졸 | 62.1 | 100.0(58) | 37.1 | 14.3 | 17.1 | 20.0 | 11.4 | 100.0(36) |
| 4년제 대학졸이상 | 52.9 | 100.0(68) | 22.2 | 33.3 | 25.0 | 8.3 | 11.1 | 100.0(36) |
| $\chi^2(df)$ | | | na | | | | | |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단위: %, n=194



[그림 1] 육아지원기관 취업 희망 이유

□ 육아지원 업무별 취업희망자의 특성

- 40대의 비중이 높음.
 - 40세 이상 중고령 인력 중 육아지원기관 지원업무 취업희망자의 연령대는 '청결도우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0세 미만의 40대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원업무별로는 '사무원'과 '보조교사' 취업희망자는 평균 45.2세, 45.6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이며, '청결도우미'와 '취사부'가 50세 전후로 평균적으로 가장 연령이 높은 여성들이 지원하고 있음.

〈표 10〉 지원업무별 취업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희망 지원업무 | 교육·보육활동 지원업무 | | 교육·보육환경 지원업무 | | | |
|--------------------------------|-----------------|--------------|-----------------|--------------|-----------|-----------|
| | 보조 교사 | 교육·보육 도우미 | 사무원 | 취사부 (조리사) | 청결 도우미 | 운전기사 |
| 연령 | | | | | | |
| 40~49세 | 76.5 | 64.2 | 85.7 | 52.8 | 42.1 | 64.3 |
| 50~54세 | 12.3 | 21.0 | 2.9 | 17.0 | 26.3 | 21.4 |
| 55~59세 | 7.4 | 11.1 | 8.6 | 18.9 | 15.8 | - |
| 60~64세 | 3.7 | 3.7 | 2.9 | 11.3 | 15.8 | 14.3 |
| 평균(세) | 45.6세 | 47.1세 | 45.2세 | 49.5세 | 50.5세 | 48.2세 |
| 학력 | | | | | | |
| 고졸이하 | 45.7 | 59.3 | 57.2 | 90.6 | 94.7 | 85.7 |
| 2·3년제대학졸 | 27.2 | 18.5 | 20.0 | 7.5 | - | 7.1 |
| 4년제대학졸 이상 | 28.2 | 22.3 | 22.9 | 1.9 | 5.3 | 7.1 |
| 관련자격보유율 | 27.2 | 17.3 | 5.7 | 18.9 | 5.3 | 57.1 |
| 취업경력 | | | | | | |
| 없음 | 6.2 | 6.2 | 5.7 | 7.5 | 15.8 | 14.3 |
| 1년 미만 | 2.5 | 3.7 | - | - | - | - |
| 1~3년 미만 | 6.1 | 6.2 | 11.5 | 3.8 | 5.3 | 7.1 |
| 3~5년 미만 | 9.9 | 6.2 | 5.7 | 11.3 | 10.5 | 7.1 |
| 5~10년 미만 | 34.6 | 38.3 | 42.8 | 24.5 | 15.8 | 7.1 |
| 10년 이상 | 40.7 | 39.5 | 34.3 | 52.8 | 52.6 | 64.3 |
| 영유아관련기관 ^{주)} 취업 경력 | | | | | | |
| 있음 | 28.4 | 19.8 | 14.3 | 7.5 | 5.3 | 7.1 |
| 없음 | 71.6 | 80.2 | 85.7 | 92.5 | 94.7 | 92.9 |
| 계(수) | 100.0(81) | 100.0(81) | 100.0(35) | 100.0(53) | 100.0(19) | 100.0(14) |

주: 영유아관련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타 영유아 대상 학원, 기관(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대상 체육기관, 문화센터 등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포괄함.

- 취업 희망 지원업무별 중고령 여성의 학력, 자격수준에 차이가 남.
 - '교육·보육활동 지원업무'에 속하는 '보조교사'와 '교육·보육도우미' 취업 희망자는 40% 이상이 2·3년제 대졸 이상 학력임. 이에 반해 '교육·보육 환경 지원업무' 직군인 '취사부', '청결도우미', '운전기사' 희망자는 '고졸 이하' 학력이 8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업무 관련 자격 보유율은 '운전기사' 희망자가 가장 높아 57.1%이며, '보조교사' 희망자 27.2%, '취사부' 희망자 18.9%, '교육·보육도우미' 희망자가 17.3%로 나타남.
 - '보조교사' 취업희망자 28.4%, '교육·보육도우미' 취업희망자 19.8%로 '교육·보육활동 지원 업무' 희망자에게서 영유아 대상 관련 기관에서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다. 지원업무별 육아지원기관-취업희망 중고령 여성 간 요구 근로조건 및 자격요건 합치도

□ 지원업무별 근로조건

- 육아지원기관에 취업의사가 있는 중고령 여성의 지원업무별 희망근로조건과 기관 측 요구의 합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기관에서 채용필요성이 가장 높은 6개의 지원업무에 대하여 기관과 중고령 여성의 희망근로조건을 비교함.
- 기관의 구인요건과 중고령 인력의 구직요건에 간극이 있음.
 - 보조교사와 교육·보육도우미에 대한 육아지원 기관의 구인 수요와 인력 측 취업 의사는 모두 비교적 높으나, 기관 측 추가 채용 수요가 높은 '사무원'과 '청결도우미'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음. 중고령 인력이 선호하지 않거나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업무로 보임.
 - 주당 희망근로일수는 육아지원기관과 인력이 모두 5~6일을 가장 선호함.
 - 일일 희망근로시간은 지원업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조교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기사는 각각 5~8시간, 청결도우미는 3~4시간으로 기관과 인력의 필요·가능수요가 합치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보육도우미는 기관은 3~4시간, 중고령 인력은 5~8시간의 근무를 위해 희망근로시간에 차이가 남.

〈표 11〉 육아지원기관과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비교

단위: %, 일, 시간, 만원

| | 채용·구직 필요 | | 주당근로희망일수 | 일일희망근로시간 | | 희망급여 | |
|----------|----------|--------|----------|----------|--------|-----------|----------|
| | 육아지원 기관 | 중고령 인력 | 육아지원 기관 | 육아지원 기관 | 중고령 인력 | 육아지원 기관 | 중고령 인력 |
| 보조교사 | 66.2 | 41.8 | 5~6일 | 5~8시간 | | 90~110만원 | |
| 교육·보육도우미 | 67.7 | 41.8 | | 3~4시간 | 5~8시간 | 30~50만원 | 90~110만원 |
| 사무원 | 58.0 | 18.0 | | 5~8시간 | | 110~130만원 | 90~110만원 |
| 취사부 | 32.0 | 27.3 | | 5~8시간 | | 110~130만원 | |
| 청결도우미 | 58.1 | 9.8 | | 3~4시간 | | 30~50만원 | 50~90만원 |
| 운전기사 | 26.3 | 7.2 | | 5~8시간 | | 150만원이상 | |

- 주: 1) 기관측 채용 필요성은 현 인력에 대해 '부족 + 매우 부족'으로 응답된 비율로 작성됨.
 2) 기관 및 중고령 여성의 '주당근로희망일수'는 육아지원기관과 중고령 인력의 필요근로일수와 희망근로일수의 일일 '1~2일', '3~4일', '5~6일', '토·휴일', '방학' 중 응답비중이 큰 범주로 산출함.
 3) 기관 및 중고령 여성의 '일일근로시간'은 육아지원기관과 중고령 인력의 필요 근로시간과 희망근로시간의 일일 '1~2시간', '3~4시간', '5~8시간', '8시간 초과' 중 응답비중이 큰 범주로 산출함.
 4) 기관 및 중고령의 '희망급여'는 육아지원기관과 중고령 인력의 지급가능급여와 희망급여의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90만원 미만', '90~110만원 미만', '110~130만원 미만', '13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중 응답비중이 큰 범주로 산출함.

- 희망급여는 지원업무별로 차이가 있어, 보조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는 육아지원기관과 인력의 희망급여 요건이 합치하나, 교육·보육도우미는 기관의 지급가능수준이 30~50만원, 인력의 희망급여가 90~110만원으로 상당히 큰 간극을 보임.
- 교육·보육도우미가 기관과 인력간의 희망급여의 차이가 큰 것은 기관의 필요근로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한데 반하여 인력의 희망근로시간이 5~8시간으로 차이가 나는데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원업무별 요구 자격요건

- 육아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지원업무별 자격 조건과 취업희망자의 조건에서 기관에서 인식하는 지원업무별 중고령 인력 채용 가능 연령대와 인력 쪽에서 희망하는 연령대의 합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기관에서는 중고령 여성을 보조교사, 교육·보육도우미, 사무원으로 활용할 경우 45세 이상보다는 40~45세 미만을 더 선호하며, 취사부, 청결도우

미, 운전기사로 활용할 경우는 45세 이상의 좀 더 연령이 높은 계층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에서 원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취업희망자의 지원업무별 연령대는 '교육·보육 도우미' 취업희망자만이 50% 미만을 차지하고 (43.2%) 그 외에는 모두 50% 이상이 해당함.

〈표 12〉 기관의 지원업무별 선호 자격 요건에 대비한 취업희망자 비율

단위: %

| | 연령대 ^{주)} | 기관 선호 | | 취업희망자 비율 | | |
|----------|-------------------|-------------------|------------------|-------------|------------|-----------|
| | | 자격증고려정도 (요구비율) | 경력고려정도 (요구비율) | 선호연령대 비율 | 자격증 보유율 | 경력 보유율 |
| 보조교사 | 40~45세 | ○(59.2) | △(21.7) | 54.3 | 27.2 | 28.4 |
| 교육·보육도우미 | 40~45세 | △(28.1) | △(21.7) | 43.2 | 17.3 | 19.8 |
| 사무원 | 40~45세 | △(28.1) | △(16.1) | 57.1 | 5.7 | 14.3 |
| 취사부 | 45세 이상 | ○(41.6) | △(12.6) | 67.9 | 18.9 | 7.5 |
| 청결도우미 | 45세 이상 | ×(3.1) | ×(3.1) | 73.7 | 5.3 | 5.3 |
| 운전기사 | 45세 이상 | ○(61.1) | △(19.6) | 71.4 | 57.1 | 7.1 |

- 주: 1) 기관의 '선호연령대'는 기관이 답한 지원인력 업무별 채용가능 최고 연령대 중 본 연구의 중고령에 해당하는 '40~45세 미만', '45세 이상'의 범주 중 응답 비중이 컸던 범주로 산출함.
 2) 자격증과 경력: ○ 반드시 요구, △ 우대, ×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자격증과 경력 요구 비율은 '반드시 요구'하는 비율로 표기

- 기관 측의 자격 요구와 취업희망자의 자격 정도의 격차 존재
 - 기관 측에서의 각 지원업무 관련 자격증의 고려 정도 및 필수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의 비율과 응답대상인 육아지원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중고령 여성의 관련자격 보유 비율을 살펴봄.
 - 관련자격증의 '필수 요구' 비율이 큰 지원업무는 '보조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로 자격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기관 비율은 운전기사가 61.1%로 가장 높고, 보조교사 59.2%, 취사부 41.6%로 나타남.
 -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도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지원업무는 '교육·보육도우미'와 '사무원'이며 이러한 지원업무에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기관 비율은 '교육·보육도우미' 28.1%, '사무원' 28.1%에 해당함.

- 중고령 여성 인력의 자격 소지 비율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비율과 차이가 많이 나서, '보조교사' 희망자는 27.2%만이, '취사부' 희망자는 18.9%만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음.
- 기관측에서 자격증 요구 비율이 높은 '보조교사', '운전기사', '취사부'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자격증 취득 기회를 높여야 함.
- 육아지원기관 지원업무의 경력 요구도는 높지 않음.
 - '경력'과 관련해 모든 지원업무에서 '관련 경력'을 우대하는 경우가 '필수로 요구'하는 비율보다 높아, '관련 경력 필수 요구' 비율이 가장 높은 '보조교사'와 '교육·보육도우미'가 21.7% 정도로 나타남.
 - 미취업 중고령 여성 중 육아지원기관 관련업무 취업희망자의 육아지원기관 경력보유율 또한 높지 않았음. '보조교사' 희망자의 보조교사 관련 경력보유율이 가장 높아 28.4%이며 '교육·보육도우미' 희망자 19.8%, '사무원' 희망자 14.3%로 육아지원기관 경력보유 비율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보조교사'와 '청결도우미' 희망자는 기관의 요구수준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채용 시 '우대사항'이 되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 취업희망자 중에서도 관련 경력보유 비율은 낮으며, 이는 취업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임. 따라서,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및 '실습'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육아지원기관과 중고령 인력의 희망 조건간 합치 가능성

- 육아지원기관과 육아지원기관 취업희망자에게 각각 조사를 할 경우 최대한의 희망사항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음. 취업희망자가 실제로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희망조건의 조정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음.
- 육아지원기관 대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된 근로조건을 표준으로 제시할 경우 중고령 여성 중 이를 수락할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함.

〈표 13〉 취업희망자의 육아지원기관 제시 근로조건 수락 가능 여부

단위: %(명)

| 지원 인력 | 주당 필요근로일수 | | 일일 필요근로시간 | | 제시 급여수준 | | 전체(수) |
|----------|--------------|-----------|-----------|-----------|-------------|-----------|-----------|
| | 요구조건 | 수락 가능성 | 요구조건 | 수락 가능성 | 요구조건 | 수락 가능성 | |
| 보조교사 | 5~6일 | 80.2 | 5~8시간 | 86.4 | 월 90~110만원 | 76.5 | 100.0(81) |
| 교육·보육도우미 | 5~6일 | 81.5 | 5~8시간 | 84.0 | 월 50~70만원 | 43.2 | 100.0(81) |
| 사무원 | 5~6일 | 94.3 | 5~8시간 | 94.3 | 월 110~130만원 | 91.4 | 100.0(35) |
| 취사부 | 5~6일 | 100.0 | 5~8시간 | 86.8 | 월 110~130만원 | 94.3 | 100.0(53) |
| 청결도우미 | 5~6일 | 84.2 | 3~4시간 | 94.7 | 월 30~50만원 | 26.3 | 100.0(19) |
| 운전기사 | 5~6일 | 92.9 | 5~8시간 | 85.7 | 월 150만원 이상 | 100.0 | 100.0(14) |

○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합치도는 높음.

- 모든 지원업무에 대해 기관측은 주 5~6일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러한 주 5~6일 근무에 대해 각 지원업무 취업 희망 중고령 여성들의 수락률도 80% 이상임.
- 기관측에서는 ‘청결도우미’에 대해 3~4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이를 제외한 지원업무는 모두 하루 5~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84% 이상의 취업희망자가 이를 가능하다고 응답함.
-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관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으나, 기관 측 선호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지원업무별로 취업희망자의 수락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남.
- 비교적 높은 급여가 제시된 사무원이나 취사부, 운전기사의 급여 수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90% 이상이나, 취업희망자의 희망 급여수준보다 기관측 제시 급여가 낮은 교육·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청결도우미는 그 정도 급여 수준에 취업할 의사는 낮게 나타남.
- 중고령 여성은 경제적 욕구에 의한 취업 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희망급여 수준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일자리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중고령 여성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4. 육아지원기관의 중고령 여성 인력 활용 제고 방안

가. 지역사회 기반 육아지원인력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 구축

- 중고령 여성을 육아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구인처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 내 '연계기관'과 연계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역 내 연계기관과 육아지원기관, 육아지원기관과 관련된 기타 기관, 인력 간의 연계·협력 내용을 구체화함.

□ 지역 내 공식적 구인-구직 채널(연계기관) 설정

- 젊은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방문, 상담하고 구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관으로 지역 내 여성직업훈련 교육기관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인력 구인-구직 연계기관의 역할 설정

- 육아지원기관-중고령 인력 간 구인·구직 조건 조율
 - 구인-구직 연계기관은 육아지원기관이 제시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급여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지원기관에 유사 기관의 근로조건, 급여 정보 등 비교 자료를 제공하여 근로조건, 급여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함.
 - 육아지원기관에 구직을 원하는 중고령 인력에게는 육아지원기관 지원업무의 근로조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여 상담 시 제공하도록 함.
- 취업상담 및 적정 교육 배치
 - 연계기관은 육아지원기관의 구인 정보와 육아지원기관이 원하는 인력에 대한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인력 취업 상담 시 활용하며, 중고령 여성이 육아지원기관 취업을 희망할 경우 관련된 적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배치하는 역할을 함.
- 지역 내 교육·훈련 수요 조사 실시
 - 육아지원기관과 지역 내 주민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해 육아지원기관 지원업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 제공

- 육아지원업무 관련 교육·훈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수요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교육 내용은 육아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 장소 제공, 교육 실시 후 강의 내용 평가는 연계기관이 담당함.

○ 홍보 및 취업 연계

- 연계기관은 홈페이지에 ‘육아지원기관 구인·구직 전용 게시판’ 운영과 전화·방문을 통한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의 구인 정보를 수합하며, 방문·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취업 희망 인력의 적성평가 및 상담을 통해 육아지원기관에 소개·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함.

나. 지원업무별 중고령 여성 지원인력 근로·자격조건 표준안 활용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여성 지원인력 활용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업무별 근로조건·자격조건 표준안(표 14)을 육아지원기관-중고령인력간 구인·구직 연계 시 활용하도록 함.
- 표준근로조건은 각 지원업무별로 기관의 요구도가 높은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과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 제시한 급여를 기준으로, 필요 시 기관의 현재 지원업무 담당 인력의 실제 근로조건을 참조하여 작성됨.

〈표 14〉 지원업무별 근로조건·자격조건 표준안

| | 표준근로조건 | | | 표준자격조건 | | |
|----------|---------|----------------|---------------------|---------------|-----|------|
| | 주당 근로일수 | 일일 근로시간 | 급여수준 | 연령대 | 자격증 | 관련경력 |
| 보조교사 | 5~6일 | 5~8시간 | 90~110만원 | 40대 초중반 | ○ | △ |
| 교육·보육도우미 | 5~6일 | 3~4시간 5~8시간 | 30~50만원 50~110만원 | 40대 초중반 | △ | △ |
| 사무원 | 5~6일 | 5~8시간 | 110~130만원 | 40대 초중반 | △ | △ |
| 취사부 | 5~6일 | 5~8시간 | 90~130만원 | 40대 중후반 이상 가능 | △ | △ |
| 청결도우미 | 5~6일 | 3~4시간 | 30~70만원 | 40대 중후반 이상 가능 | × | × |
| 운전기사 | 5~6일 | 5~8시간 | 130만원 이상 | 40대 중후반 이상 가능 | ◎ | △ |

주: 표준자격 정도의 ◎는 '필수 요구', ○는 '요구', △ '우대', ×은 '우대사항 아님'을 의미함.

다.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기관-인력간 희망급여 격차 해소
 - － 유치원 평가, 평가인증 등 평가가 높은 기관, 공공형 어린이집,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수준과 지원기간을 확대함.

참고문헌

- 백영숙·강병재(2013).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 및 교수 효능감과 교수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25-47.
- 이경민·최운정·이경애(2012). 유아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6), 509-523.
- 이정원·양유진(201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중고령 여성 지원인력 활용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영희·이영숙(2012).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환경과 민감성 분석. 미래유아교육학 회지, 19(2), 107-132.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양미선·서문희

요약

-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16개 시도 및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관련 애로와 요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모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 수당은 1개소 25,000원에서 부모는 30,000원, 보육전문가는 3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함.

1. 연구 배경

가. 문제 제기

- 정부의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영유아보육법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함.
 - 2013년 3월부터 230개 시군구에서 단계적으로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착수함.
 - 부모모니터링단은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조력을 제공하며, 이후 서비스의 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부모모니터링은 지도점검을 통한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행정체계와 현장, 수요자인 부모와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컨설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로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이나 관여가 쉽지 않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 또한 저조한 현실에서 부모모니터링 제도 도입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 강화, 보육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한편, 부모모니터링이 도입되어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비롯한 운영 방식,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및 역할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서 안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선을 비롯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 및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
 -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하고,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관련 선행연구 고찰, 관련 법과 보육사업안내,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등의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분석함.
- 16개 시도 및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관련 애로와 요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167명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34명이 조사에 참여함.

2. 부모모니터링 운영 및 요구

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한 시도 및 시군구는 6월말 기준 76.1% 정도인 175개 지역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함.

〈표 1〉 부모모니터링 구성 현황

단위: 시군구, %,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 | 부모모니터링단 인원 | | | |
|----|-----------------|-----|-----|-------|------------|-------|------|-------|
| | 시군구 | 구성 | 운영 | 운영률 | 부모 | 보육전문가 | 컨설턴트 | 전체 |
| 전체 | 230 | 226 | 175 | 76.1 | 897 | 482 | 70 | 1,449 |
| 서울 | 25 | 25* | 25 | 100.0 | 66 | 49 | - | 164 |
| 부산 | 16 | 16 | 15 | 93.8 | 75 | 31 | - | 106 |
| 대구 | 8 | 8 | 7 | 87.5 | 25 | 21 | - | 46 |
| 인천 | 10 | 9 | 9 | 90.0 | 62 | 13 | 3 | 78 |
| 광주 | 5 | 5 | 3 | 60.0 | 24 | 21 | - | 45 |
| 대전 | 5 | 5 | 5 | 100.0 | 25 | 25 | 3 | 53 |
| 울산 | 5 | 5 | 5 | 100.0 | 50 | 6 | 1 | 57 |
| 경기 | 31 | 31 | 18 | 58.1 | 135 | 109 | 6 | 250 |
| 강원 | 18 | 15 | 12 | 66.7 | 68 | 32 | 1 | 101 |
| 충북 | 12 | 12 | 8 | 66.7 | 34 | 28 | 5 | 67 |
| 충남 | 16 | 16 | 7 | 43.8 | 56 | 41 | - | 97 |
| 전북 | 14 | 14* | 14 | 100.0 | 8 | 11 | 1 | 20 |
| 전남 | 22 | 22 | 14 | 63.6 | 96 | 30 | - | 126 |
| 경북 | 23 | 23 | 15 | 65.2 | 76 | 36 | - | 112 |
| 경남 | 18 | 18 | 16 | 88.9 | 88 | 23 | 1 | 112 |
| 제주 | 2 | 2 | 2 | 100.0 | 9 | 6 | - | 15 |

주: 서울과 전북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각 시군구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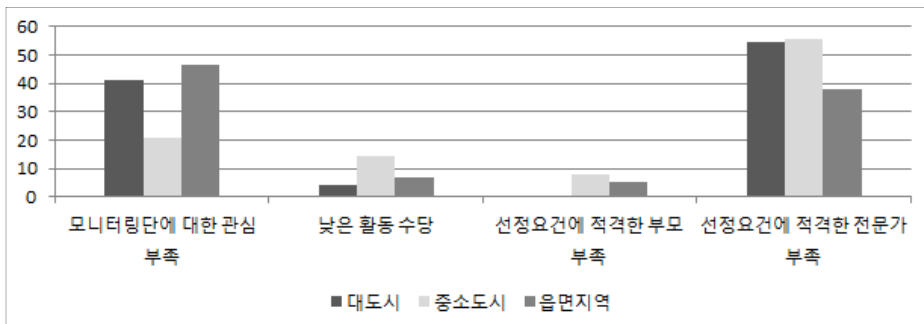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은 절반 정도는 부모 대 보육전문가 1:1 비율대로 구성하였고, 39.5%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부족,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부족함.
- 부모 또는 보육전문가 부족 시 모집인원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일부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원이 부족한 조에 반복 배치하여 운영함.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어려움은 절반 정도가 선정요건에 적합한 전문가 부족(49.1%),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이 35.3%, 낮은 활동 수당과 선정요건에 적합한 부모 부족이 10% 미만 수준임.

〈표 2〉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 | 낮은 활동 수당 | 선정요건에 적합한 부모 부족 | 선정요건에 적합한 전문가 부족 | 기타 | 계(수) |
|------|-----------------|----------|-----------------|------------------|-----|------------|
| 전체 | 35.3 | 9.0 | 4.8 | 49.1 | 1.8 | 100.0(167) |
| 대도시 | 41.3 | 4.3 | - | 54.3 | - | 100.0(46) |
| 중소도시 | 20.6 | 14.3 | 7.9 | 55.6 | 1.6 | 100.0(63) |
| 읍면지역 | 46.6 | 6.9 | 5.2 | 37.9 | 3.4 | 100.0(58) |



[그림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나.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은 활동 전에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조사지역 중 94%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시 횟수는 평균 1.1회임(표 3 참조).
 -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사전교육 실시 비율이 높음.
- 모니터링단 교체 인력 발생 시 교육 실시 및 방법을 조사한 결과,
 -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40% 정도이고, 23.6%는 일정 수의 신규인력이 모이면 교육하며, 소수이나 일부 지역은 월 또는 분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부모모니터링단 규모가 큰 도시지역은 신규인력 발생 시마다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 읍면지역은 일정 인원이 모이면 교육을 실시함.

〈표 3〉 사전교육 실시 여부 및 교체인력에 대한 교육

단위: %(명)

| 구분 | 사전교육 | | | 모니터링단 인력 교체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 | | | (수) |
|----------|------|-------|-----|--------------------------|--------------|------------------------|------|-------|
| | 실시 | (수) | 평균 |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교육 | 일정 인원 모이면 교육 | 정기적(월별, 분기, 반기 등)으로 교육 | 기타 | |
| 전체 | 94.0 | (167) | 1.1 | 40.7 | 23.6 | 6.5 | 29.3 | (123) |
| 대도시 | 97.8 | (46) | 1.0 | 51.5 | 18.2 | 3.0 | 27.3 | (33) |
| 중소도시 | 95.2 | (63) | 1.1 | 38.0 | 18.0 | 14.0 | 30.0 | (50) |
| 읍면지역 | 89.7 | (58) | 1.1 | 35.0 | 35.0 | - | 30.0 | (40) |
| <i>F</i> | | | 1.7 | | | | | |

-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대상의 보수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비율은 20% 미만 수준이며, 실시한 경우에도 주로 소그룹 교육 형태임. 일부 지역에서만 대집단 교육을 실시함.

〈표 4〉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보수교육 실시 주기

단위: %(명)

| 구분 | 보수교육의 필요성 | | | | | 보수교육 실시 주기 | | | | | (수) |
|----------|------------|---------|--------|-------|-----|------------|------|------|-----|------|-------|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하지 않음 | 대체로 필요 | 매우 필요 | 평균 | 분기 | 반기 | 매월 | 상시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1.8 | 22.2 | 62.9 | 13.2 | 2.9 | 22.2 | 66.7 | 2.4 | 3.2 | 5.6 | (126) |
| 대도시 | 4.3 | 19.6 | 67.4 | 8.7 | 2.8 | 18.9 | 78.4 | - | 2.7 | - | (37) |
| 중소도시 | - | 23.8 | 58.7 | 17.5 | 2.9 | 34.7 | 49.0 | 6.1 | 4.1 | 6.1 | (49) |
| 읍면지역 | 1.7 | 22.4 | 63.8 | 12.1 | 2.9 | 10.0 | 77.5 | - | 2.5 | 10.0 | (40) |
| <i>F</i> | | | | | 0.6 | | |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5.9 | - | 35.3 | 58.8 | 3.5 | 42.4 | 45.5 | 9.1 | - | 3.0 | (33) |
| 시도 | 6.7 | - | 26.7 | 66.7 | 3.5 | 57.1 | 42.9 | - | - | - | (14) |
| 시군구 | 5.3 | - | 42.1 | 52.6 | 3.4 | 31.6 | 47.4 | 15.8 | - | 5.3 | (19) |
| <i>t</i> | | | | | 0.4 | | | | | | |

-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70%가 넘는 과반수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필요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점임.

- 보수교육 주기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66.7%가 반기, 22.2%는 분기를 선택함.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데 반해 중소도시는 반기와 분기가 49%, 34.7% 정도임.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반기와 분기가 각각 45.5%, 42.4%임. 시도는 분기가 많으나 시군구는 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다. 부모모니터링 운영

1) 운영 주체의 적절성

-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고, 교육과 컨설팅 담당자 파견은 대부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맡음. 서울시의 경우, 사업 운영 및 교육업무 전반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함.
- 보육공무원 대부분이 운영, 교육, 컨설팅의 운영주체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운영은 시군구, 교육과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를 지적함.

〈표 5〉 사업별 운영 주체

단위: %(명)

| 구분 | 운영 | | | | 교육 | | | | | 컨설팅 | | | | | (수) |
|--------|------|------|--------------|--------|------|------|--------------|--------|-----|-----|------|--------------|--------|-----|-------|
|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관련 공공기관 | 보육정보센터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관련 공공기관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관련 공공기관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 | |
| 전체 | 12.6 | 25.7 | 23.4 | 38.3 | 5.4 | 2.4 | 10.8 | 80.8 | 0.6 | 5.4 | 2.4 | 10.8 | 80.8 | 0.6 | (167) |
| 대도시 | 10.9 | 28.3 | 37.0 | 23.9 | 6.5 | 4.3 | 17.4 | 71.7 | - | 6.5 | 4.3 | 17.4 | 71.7 | - | (46) |
| 중소도시 | 12.7 | 22.2 | 17.5 | 47.6 | 4.8 | 1.6 | 3.2 | 88.9 | 1.6 | 4.8 | 1.6 | 3.2 | 88.9 | 1.6 | (63) |
| 읍면지역 | 13.8 | 27.6 | 19.0 | 39.7 | 5.2 | 1.7 | 13.8 | 79.3 | - | 5.2 | 1.7 | 13.8 | 79.3 | -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 | |
| 전체 | 17.6 | 67.6 | 2.9 | 11.8 | 5.9 | 14.7 | 2.9 | 76.5 | - | 2.9 | 17.6 | 2.9 | 76.5 | - | (33) |
| 시도 | 33.3 | 46.7 | - | 20.0 | - | 6.7 | - | 93.3 | - | - | 6.7 | - | 93.3 | - | (14) |
| 시군구 | 5.3 | 84.2 | 5.3 | 5.3 | 10.5 | 21.1 | 5.3 | 63.2 | - | 5.3 | 26.3 | 5.3 | 63.2 | - | (19) |

라. 예산 운영

1) 예산 규모

□ 부모모니터링 사업예산은 2013년 6억 4,400만원(국비기준)이며, 2014년에는 1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됨.

2) 예산 편성 조정의 필요성

□ 차년도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 편성 시 필요한 항목으로 보육공무원은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32.3%, 부모모니터링단 교육비 22.2%,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교육 예산 증액,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등의 의견이 많음.

〈표 6〉 예산 편성 조정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필요없음 | 교육 예산 |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전체 | 29.9 | 22.2 | 6.6 | 32.3 | 9.0 | 100.0(167) |
| 대도시 | 32.6 | 13.0 | 10.9 | 28.3 | 15.2 | 100.0(46) |
| 중소도시 | 27.0 | 30.2 | 6.3 | 30.2 | 6.3 | 100.0(63) |
| 읍면지역 | 31.0 | 20.7 | 3.4 | 37.9 | 6.9 | 100.0(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전체 | 5.9 | 29.4 | 26.5 | 23.5 | 14.7 | 100.0(34) |
| 시도 | - | 26.7 | 33.3 | 20.0 | 20.0 | 100.0(15) |
| 시군구 | 10.5 | 31.6 | 21.1 | 26.3 | 10.5 | 100.0(19) |

3)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 기준

-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이 38.3%로 가장 높고, 무작위 선정도 29.9%로 높음.
- 지역규모별로도 지도점검·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 우선 선정, 무작위 선정 순이며, 특히 읍면지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한다는 비율이 12.1%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7〉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 기준

단위: %(명)

| 구분 | 무작위 선정 | 지도점검 시 지정명령·처분 우선 |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 선정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선정 |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 어린이집 선정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정 | 기타 | 계(수) |
|------|--------|-------------------|-------------------|------------------|---------------------|----------------|------------|------|
| 전체 | 29.9 | 38.3 | 7.8 | 0.6 | 1.2 | 22.2 | 100.0(167) | |
| 대도시 | 28.3 | 45.7 | 2.2 | - | - | 23.9 | 100.0(46) | |
| 중소도시 | 31.7 | 36.5 | 7.9 | - | 1.6 | 22.2 | 100.0(63) | |
| 읍면지역 | 29.3 | 34.5 | 12.1 | 1.7 | 1.7 | 20.7 | 100.0(58) | |

마. 사업 운영

1) 사업 운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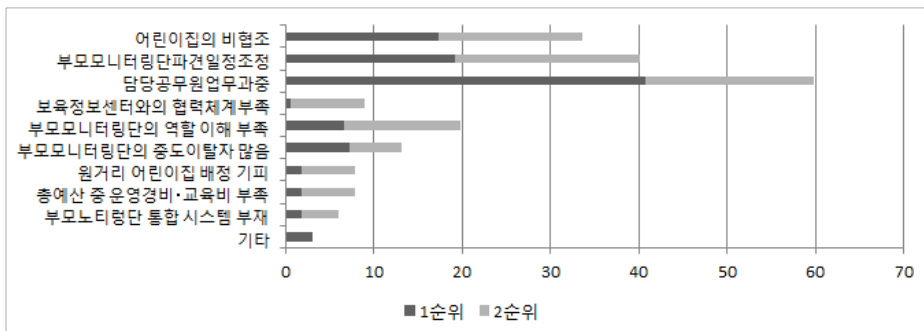
-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 파견일정 조정과 어린이집의 비협조가 17~19% 정도임.

〈표 8〉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집의 비협조 | 부모모니터링단 파견일정 조정 | 담당 공무원 업무과중 | 보육정보센터와의 협력체계 부족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이해 부족 | 부모모니터링단의 중도이탈자 많음 | 원거리 어린이집 배정 기피 | 총예산 중 운영경비·교육비 부족 | 부모모니터링단 통합시스템 부재 | 기타 | 계(수) |
|-------|-----------|-----------------|-------------|------------------|-------------------|-------------------|----------------|-------------------|------------------|-----|------------|
| 1순위 | 17.4 | 19.2 | 40.7 | 0.6 | 6.6 | 7.2 | 1.8 | 1.8 | 1.8 | 3.0 | 100.0(167) |
| 2순위 | 16.2 | 21.0 | 19.2 | 8.4 | 13.2 | 6.0 | 6.0 | 6.0 | 4.2 | - | 100.0(167) |
| 1+2순위 | 33.6 | 40.2 | 59.9 | 9.0 | 19.8 | 13.2 | 7.8 | 7.8 | 6.0 | 3.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그림 2〉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의 어려움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7%, 필요정도도 4점 척도로 평균 2.7점임.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공무원보다 필요성에 더 인식하고 있고, 필요정도도 평균 3.2점으로 높음.

〈표 9〉 부모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전혀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 | 매우 필요 | 계(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전체 | 1.2 | 31.1 | 61.7 | 6.0 | 100.0(167) | 2.7 |
| 대도시 | - | 28.3 | 65.2 | 6.5 | 100.0(46) | 2.8 |
| 중소도시 | 1.6 | 31.7 | 57.1 | 9.5 | 100.0(63) | 2.7 |
| 읍면지역 | 1.7 | 32.8 | 63.8 | 1.7 | 100.0(58) | 2.7 |
| <i>F</i> | | | | | | 0.7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전체 | - | 8.8 | 61.8 | 29.4 | 100.0(34) | 3.2 |
| 시도 | - | 6.7 | 53.3 | 40.0 | 100.0(15) | 3.3 |
| 시군구 | - | 10.5 | 68.4 | 21.1 | 100.0(19) | 3.1 |
| <i>t</i> | | | | | | 1.3 |

3) 운영 매뉴얼의 충분성

-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 매뉴얼의 충분성에 대해 보육공무원의 26.9%가 부족하다는 의견임. 특히 중소도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6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육공무원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시도 담당자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운영 매뉴얼 개정 시 추가할 내용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 보육공무원의 경우, 운영 매뉴얼 추가 내용 1순위로는 주요 상황별 FAQ와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이 28.3%, 26.1%로 높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이 10%대, 나머지는 5% 내외임.
 - 2순위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과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이 20%대로 높음.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과 다르게 1순위로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주요 상황별 FAQ,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 순서임.
- 2순위로는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 설명 순으로 높음.

〈표 10〉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1+2순위

단위: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 순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 컨설팅 방법 |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 주요 상황별 FAQ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 1순위 | 17.4 | 19.6 | 6.5 | 26.1 | 28.3 | 2.2 | 100.0(46) |
| 2순위 | 8.9 | 28.9 | 6.7 | 24.4 | 28.9 | 2.2 | 100.0(45) |
| 1+2순위 | 26.3 | 48.5 | 13.2 | 50.5 | 57.2 | 4.4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1순위 | 13.6 | 4.5 | 4.5 | 54.5 | 18.2 | 4.5 | 100.0(34) |
| 2순위 | 4.8 | 9.5 | 9.5 | 23.8 | 52.4 | - | 100.0(34) |
| 1+2순위 | 18.4 | 14.0 | 14 | 78.3 | 70.6 | 4.5 | |

4) 부모요원의 이탈과 충원

- 초기 모집된 부모요원 중 활동 중에 이탈한 비율과 충원률을 조사한 결과,
- 부모요원 이탈이 없다는 지역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24.6%는 초기 정원에서 20~40% 미만 이탈하였고, 12%는 모집정원의 40~60%가 이탈함.
 - 부모요원 이탈률은 38.9%이고, 인원 충원은 58.8%가 충원되고 있지 않음.

〈표 11〉 부모모니터링단 부모요원 이탈 및 충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 이탈 비율 | | | | | | | | 충원 비율 | | | | |
|------|-------|--------|-----------|-----------|-----------|--------|------------|---------|-------|--------|------|-----------|---------|
| | 없음 | 20% 미만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80% 미만 | 80% 이상 | 계(수) | 이탈 시 평균 | 없음 | 50% 이하 | 100% | 계(수) | 충원 시 평균 |
| 전체 | 49.1 | 4.8 | 24.6 | 12.0 | 7.2 | 2.4 | 100.0(167) | 38.9 | 58.8 | 8.2 | 32.9 | 100.0(85) | 36.4 |
| 대도시 | 52.2 | 8.7 | 21.7 | 8.7 | 8.7 | 0.0 | 100.0(46) | 34.2 | 54.5 | 9.1 | 36.4 | 100.0(22) | 38.5 |
| 중소도시 | 34.9 | 6.3 | 33.3 | 19.0 | 4.8 | 1.6 | 100.0(63) | 35.1 | 58.5 | 9.8 | 31.7 | 100.0(41) | 36.5 |
| 읍면지역 | 62.1 | 0.0 | 17.2 | 6.9 | 8.6 | 5.2 | 100.0(58) | 50.7 | 63.6 | 4.5 | 31.8 | 100.0(22) | 34.1 |
| F | | | | | | | | 5.4** | | | | | |

** p < .01

- 부모모니터링단 이탈 발생 원인은 활동이 비정기적이어서 일정 보수를 보장하는 곳으로 취업한다는 이유가 35.1%로 가장 많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이 19.8%, 부모모니터링단 책임감 부족이 15.3%를 차지함.
 - 지역규모별로, 도시지역은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낮은 보수가 가장 큰 이유이고, 읍면지역은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임. 특히 대도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책임감 부족이 20% 이상을 차지함.
- 이탈 인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단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추가 모집이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감소된 인원으로 활동량과 빈도를 높인다는 곳이 30.6%, 감소 인원으로 활동기간을 늘린다는 곳이 20.4%임.
 - 지역별로도 전체 응답과 동일하게 추가 모집이 가장 많으나 읍면지역은 감소인원으로 활동량과 운영기간을 늘린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음.

〈표 12〉 부모모니터링단 이탈 발생 이유 및 인원 감소 시 운영 방법

단위: %(명)

| 구분 | 모니터링단 이탈 발생 이유 | | | | | | 부모모니터링단 감소 후 운영 방식 | | | | |
|------|------------------------|--------|------------------|----------------|-----------------|------------|--------------------|---------------|--------------------|-----------|--|
| | 활동비정기적, 일정보수보장받는 직장 이동 | 활동수적에서 |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부족 | 부모모니터링단 책임감 부족 |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 | 기타 (수) | 추가 모집 | 감소 인원이 활동량 늘림 | 감소 인원 활동량, 운영기간 늘림 | 기타 (수) | |
| 전체 | 35.1 | 9.0 | 3.6 | 15.3 | 19.8 | 17.1 (111) | 42.6 | 30.6 | 20.4 | 6.5 (108) | |
| 대도시 | 35.7 | 10.7 | - | 25.0 | 17.9 | 10.7 (28) | 46.4 | 25.0 | 21.4 | 7.1 (28) | |
| 중소도시 | 40.8 | 6.1 | 2.0 | 14.3 | 12.2 | 24.5 (49) | 41.7 | 39.6 | 12.5 | 6.3 (48) | |
| 읍면지역 | 26.5 | 11.8 | 8.8 | 8.8 | 32.4 | 11.8 (34) | 40.6 | 21.9 | 31.3 | 6.3 (32) | |

5) 지표의 적절성

-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 지표 관련 의견을 6개 문항으로 정리하여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조사함(표 13 참조).

〈표 13〉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 개요

단위: %(명)

| 구분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계(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지표수가 많다 | 1.2 | 47.3 | 40.7 | 10.8 | 100.0(167) | 2.6 |
| 확인방법 중 문서가 많다 | 0.6 | 34.1 | 56.9 | 8.4 | 100.0(167) | 2.7 |
|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1.8 | 26.5 | 64.5 | 7.2 | 100.0(167) | 2.8 |
|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1.8 | 34.7 | 55.7 | 7.8 | 100.0(167) | 2.7 |
|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2.4 | 34.3 | 56.0 | 7.2 | 100.0(167) | 2.7 |
|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1.2 | 18.1 | 74.7 | 6.0 | 100.0(167) | 2.9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지표수가 많다 | - | 52.9 | 38.2 | 8.8 | 100.0(34) | 2.6 |
| 확인 방법 중 문서가 많다 | - | 32.4 | 47.1 | 20.6 | 100.0(34) | 2.9 |
|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2.9 | 14.7 | 58.8 | 23.5 | 100.0(34) | 3.0 |
|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2.9 | 5.9 | 64.7 | 26.5 | 100.0(34) | 3.1 |
|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 | 20.6 | 50.0 | 29.4 | 100.0(34) | 3.1 |
|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2.9 | 20.6 | 61.8 | 14.7 | 100.0(34) | 2.9 |

- 보육공무원은 6개 문항에 대해 50~80% 정도가 동의하고,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 수준으로 평가한다가 80.7%로 많음.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의견에도 과반수가 넘는 63.5%가 찬성함.
 - 동의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6~2.9점으로 높은 편임.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동의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91.2%,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82.3%,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는 의견과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에 80% 정도가 동의함.
-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70%,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90% 이상이 지표 개선에 대해 동의함.

바.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및 컨설팅

1)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부모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시 활용한다는 의견이 40.1%, 지도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21%이며,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한다는 지역도 38.3%로 높은 편임.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시 활용, 중소도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음.

〈표 14〉 부모모니터링 결과 활용

| 구분 |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 | 평가인증 조력 대상 선정 시 활용 |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 기타 | 계(수) |
|------|-----------------|--------------------|----------------|-----|------------|
| 전체 | 38.3 | 40.1 | 21.0 | 0.6 | 100.0(167) |
| 대도시 | 37.0 | 52.2 | 10.9 | - | 100.0(46) |
| 중소도시 | 44.4 | 33.3 | 22.2 | - | 100.0(63) |
| 읍면지역 | 32.8 | 37.9 | 27.6 | 1.7 | 100.0(58) |

2) 사후관리

- 컨설팅은 모니터링 결과점수가 총점 13점 이하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함.
- 대상 선정기준인 13점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적절하다가 과반수, 상향조정이 10% 정도이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 상향조정이 40% 정도로 높음.

〈표 15〉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기준 점수

| 구분 | 보육공무원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하향 조정 필요 | 적절 | 상향 조정 필요 | 계(수) | 구분 | 하향 조정 필요 | 적절 | 상향 조정 필요 | 계(수) |
| 전체 | 3.0 | 84.4 | 12.6 | 100.0(167) | 전체 | 5.9 | 55.9 | 38.2 | 100.0(34) |
| 대도시 | 2.2 | 82.6 | 15.2 | 100.0(46) | 시도 | 13.3 | 46.7 | 40.0 | 100.0(15) |
| 중소도시 | 1.6 | 84.1 | 14.3 | 100.0(63) | 시군구 | - | 63.2 | 36.8 | 100.0(19) |
| 읍면지역 | 5.2 | 86.2 | 8.6 | 100.0(58) | | | | | |

- 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컨설팅 대상이 있는 지역은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지원인력 부족과 어린이집의 비협조적 태도, 컨설턴트 부족을 지적함.
 - 지역별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전체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소도시는 사후관리에 대한 어린이집의 비협조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어린이집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표 16〉 컨설팅 어린이집 유무 및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컨설팅 대상 여부 | |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 | | | | | 계(수) |
|------|-----------|-------|-----------------|-----------------|-------------------------|--------------------|------|------|-----------|
| | 있음 | (수) | 컨설팅 팁트 부족 | 컨설팅 일정 조정 | 보육정보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 | 어린이집 비협조적 태도 | 기타 | 없음 | |
| 전체 | 32.9 | (167) | 14.3 | 6.1 | 30.6 | 28.6 | 16.3 | 4.1 | 100.0(49) |
| 대도시 | 37.0 | (46) | 13.3 | 6.7 | 40.0 | 20.0 | 6.7 | 13.3 | 100.0(15) |
| 중소도시 | 54.0 | (63) | 16.7 | 6.7 | 23.3 | 33.3 | 20.0 | - | 100.0(30) |
| 읍면지역 | 6.9 | (58) | - | - | 50.0 | 25.0 | 25.0 | - | 100.0(4) |

사. 부모모니터링단 처우

1) 활동 수당

-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 수당은 1개소 기준 25,000원으로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이 금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이고, 상향조정이 46.7%임.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상향조정이 과반수를 차지함.

〈표 17〉 활동 수당 및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활동 수당 조정 | | | 활동 수당 차등 지급 | | | | | (수) |
|--------|----------|------|----------|----------------|-------------------|----------------------|---------------------------------|-----|-------|
| | 하향 조정 | 적당 | 상향 조정 | 동일 수당 지급 | 지역별 수당 차등지급 | 읍면지역 교통비 추가 지원 | 거주지와 대상 어린이집 거리 따라 교통비 지원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전체 | 1.8 | 51.5 | 46.7 | 51.5 | 4.8 | 32.9 | 10.8 | - | (167) |
| 대도시 | 2.2 | 56.5 | 41.3 | 67.4 | 4.3 | 17.4 | 10.9 | - | (46) |
| 중소도시 | 1.6 | 54.0 | 44.4 | 52.4 | 7.9 | 33.3 | 6.3 | - | (63) |
| 읍면지역 | 1.7 | 44.8 | 53.4 | 37.9 | 1.7 | 44.8 | 15.5 | -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전체 | - | 26.5 | 73.5 | 17.6 | 11.8 | 35.3 | 32.4 | 2.9 | (34) |
| 시도 | - | 26.7 | 73.3 | 20.0 | 20.0 | 26.7 | 26.7 | 6.7 | (15) |
| 시군구 | - | 26.3 | 73.7 | 15.8 | 5.3 | 42.1 | 36.8 | - | (19) |

- 활동 수당 차등 지급 방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다수이고, 다음으로 읍면지역만 교통비 추가 지급, 거주지와 대상 어린이집 거리에 따라 교통비 추가 지급 순임.
 - 읍면지역은 교통비 추가 지원, 중소도시는 지역별 수당 차등지급 비율이 높음(표 17 참조).
- 활동 수당 상향 조정 시 적정 금액으로 보육공무원 42.7%는 3만원이라고 답하였고, 5만원도 22.7%를 차지함.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5만원이 다빈도이나 3~4만원대도 각각 20%대로 많음.

〈표 18〉 활동 수당 상향조정 시 적정금액

| 구분 | 단위: %(명) | | | | | | | 계(수) |
|--------|----------|-------|------|-------|------|-----|------|-----------|
| | 3만원 | 3.5만원 | 4만원 | 4.5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
| 보육공무원 | 42.7 | 13.3 | 10.7 | - | 22.7 | 8.0 | 2.6 | 100.0(75) |
| 보육정보센터 | 24.0 | 20.0 | 20.0 | 4.0 | 28.0 | - | 4.0 | 100.0(25) |

2)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 현재 안심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만 자체 예산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부모모니터링단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필요하다가 64.7%,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은 보육공무원보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80%임.

〈표 19〉 1일 활동량 및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 구분 | 1일 활동 개소수 | | | 상해 보험 가입 필요성 | | | (수) |
|--------|-----------|------|------|--------------|------|-----|-------|
| | 하향조정 | 적당 | 상향조정 | 필요 | 불필요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전체 | 16.2 | 74.3 | 9.6 | 64.7 | 33.5 | 1.8 | (167) |
| 대도시 | 8.7 | 89.1 | 2.2 | 52.2 | 43.5 | 4.3 | (46) |
| 중소도시 | 11.1 | 69.8 | 19.0 | 74.6 | 25.4 | - | (63) |
| 읍면지역 | 27.6 | 67.2 | 5.2 | 63.8 | 34.5 | 1.7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전체 | 14.7 | 82.4 | 2.9 | 79.4 | 17.6 | 2.9 | (34) |
| 시도 | 13.3 | 80.0 | 6.7 | 66.7 | 26.7 | 6.7 | (15) |
| 시군구 | 15.8 | 84.2 | - | 89.5 | 10.5 | - | (19) |

아. 부모모니터링 효과

1) 서비스 질 수준의 일치성

- 보육공무원은 대체로 일치한다 74.3%와 거의 일치한다 3.6%로 77.9% 정도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음.
 - 지역규모별로도 일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임. 중소도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 정도로 높으나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반면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일치한다는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차이가 없어 아직은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표 20〉 모니터링 결과와 서비스 질 일치도

단위: %(명)

| 보육공무원 | |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구분 | 전혀 일치하지 않음 | 일치하지 않음 | 대체로 일치 | 거의 일치 | 계(수) | 평균 | 구분 | 전혀 일치하지 않음 | 일치하지 않음 | 대체로 일치 | 거의 일치 | 계(수) | 평균 |
| 전체 | 1.2 | 21.0 | 74.3 | 3.6 | 100.0(167) | 2.8 | 전체 | 2.9 | 44.1 | 52.9 | - | 100.0(34) | 2.5 |
| 대도시 | - | 19.6 | 78.3 | 2.2 | 100.0(46) | 2.8 | 시도 | 6.7 | 53.3 | 40.0 | - | 100.0(15) | 2.3 |
| 중소도시 | 3.2 | 27.0 | 65.1 | 4.8 | 100.0(63) | 2.7 | 시군구 | - | 36.8 | 63.2 | - | 100.0(19) | 2.6 |
| 읍면지역 | - | 15.5 | 81.0 | 3.4 | 100.0(58) | 2.9 | | | | | | | |
| <i>F</i> | | | | | | 1.7 | <i>t</i> | | | | | | -1.6 |

2)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성

- 부모모니터링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 보육공무원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음.
 - 대도시 보육공무원은 부모모니터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도 지역이 부모모니터링 홍보 및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 동의 정도는 5점 평균 3.4점으로 높은 편이며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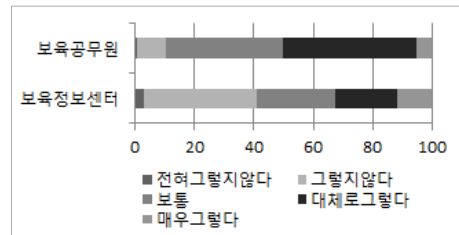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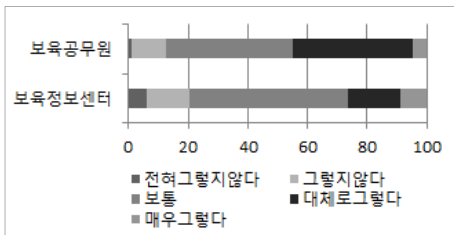
〈표 21〉 부모모니터링의 효과

단위: %(명)

| 구분 |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 | | | | |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도움 정도 | | | | | | (수)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
| 전체 | 1.2 | 11.4 | 42.5 | 40.1 | 4.8 | 3.4 | 0.6 | 9.6 | 39.5 | 44.9 | 5.4 | 3.4 | (167) |
| 대도시 | - | 2.2 | 39.1 | 54.3 | 4.3 | 3.6 | - | 4.3 | 34.8 | 56.5 | 4.3 | 3.6 | (46) |
| 중소도시 | 3.2 | 19.0 | 39.7 | 31.7 | 6.3 | 3.2 | 1.6 | 15.9 | 47.6 | 30.2 | 4.8 | 3.2 | (63) |
| 읍면지역 | - | 10.3 | 48.3 | 37.9 | 3.4 | 3.3 | - | 6.9 | 34.5 | 51.7 | 6.9 | 3.6 | (58) |
| <i>F</i> | | | | | | 3.8 [*] | | | | | | 5.4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
| 전체 | 5.9 | 14.7 | 52.9 | 17.6 | 8.8 | 3.1 | 2.9 | 38.2 | 26.5 | 20.6 | 11.8 | 3.0 | (34) |
| 시도 | 6.7 | 26.7 | 46.7 | 13.3 | 6.7 | 2.9 | - | 46.7 | 26.7 | 20.0 | 6.7 | 2.9 | (15) |
| 시군구 | 5.3 | 5.3 | 57.9 | 21.1 | 10.5 | 3.3 | 5.3 | 31.6 | 26.3 | 21.1 | 15.8 | 3.1 | (19) |
| <i>t</i> | | | | | | -1.2 | | | | | | -0.6 | |

* $p < .05$, ** $p < .01$

-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부모의 어린이집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보육공무원보다 크지 않음. 그렇다는 비율이 26.4%로 보육공무원의 절반 수준임.



[그림 3]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그림 4]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효과

-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도움정도에 대해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봄.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4점으로 높고, 지역 간에 차이가 유의함.

- 그러나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공무원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도움된다는 응답보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높음.

- 지역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시군구보다 시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이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3. 정책 제언

- 부모모니터링은 사업을 착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과 달리 '제2의 지도점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이는 부모모니터링 선정기준이나 지표 개발 등이 철저한 검증없이 급하게 진행된 데에 그 원인이 있음.
- 부모모니터링은 부모가 주체가 되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현재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는 부모가 아닌 보육전문가가 운영 주체이고, 모니터링인지 컨설팅인지 사업 목적이 불명확함.
- 부모가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교육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지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 2일, 현장실습 3회(1일 1회 기준) 총 5일(1주일)동안 진행함. 현장실습은 1조에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어린이집 규모별로 실시함.
 - 교체 인력에 대한 교육은 매달 실시하되, 교육 일정은 사전교육과 동일하게 운영함.
-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에 수당 및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비, 사업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 추가 편성함.
-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 수당을 차별화 및 현실화함.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수당은 부모 보육전문가에게 공통적으로 1개소당 2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모와 보육전문가 간 업무 기여도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모 30,000원, 보육전문가는 35,000원으로 차등 지급함.
 - 2013년보다 20~40% 인상된 금액으로 1일 2개소 모니터링 시 부모는 6만원, 보육전문가는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됨.

-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이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마련 후 추진함.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은 무작위 선정하며, 평가인증 받은 해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모니터링이 '제2의 지도점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또한 어린이집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움.
-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에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등을 보장함.
-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및 과건일정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관리, 업무연락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임.
- 부모모니터링이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함.
 -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역과 항목은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모모니터링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인증과 기준, 확인방법을 동일하게 맞추며, 기준이 모호한 관찰내용은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예를 보장하여 지표를 개선함.

참고문헌

양미선·서문희·임지희(2013).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운영·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유해미

요약

-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심이 보다 고조될 것으로 기대됨.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부모참여를 핵심 원리로 하여, 특히 교사 전문성, 보육·교육 프로그램, 급·간식 부문의 만족도가 높고, 보육 이용시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부합함.
- 그러나 기관별로 공동육아 철학과 운영 원리가 상이하어 그 취지가 의문시 될 수 있고, 영구 터전 마련 등 해결 과제를 안고 있음.
-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역내 유휴 공공기관 등의 발굴을 통한 설치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기구 마련, 조합원 교육체계 구축, 지역내 협의체 구성 등이 요구됨.

1. 연구 배경 및 방법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협동조합 방식의 시설보육은 애초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이 미약한 상황에서 등장하여 2004년 이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대안 보육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 1995년 여성 사회 참여 10대 과제로서 부모참여 공동육아 모델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5~1997년 ‘보육시설 확대 3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시설로서 설치·운영 시에 정부유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10년 ‘아이사랑플랜’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 확산 대책이 제시된 바 있음.
- 지역공동체 육아, 자연친화적 보육 환경, 놀이중심 보육을 강조하거나 일하는 부모 위주의 기관 운영 강조 등 기존 시설보육과는 차별화된 보육을 추구해왔음.

- 특히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은 향후 보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적극적인 부모참여가 요구되는 등으로 특정 부모들에 한정될 수 있으며, 설치 상 어려움과 교사 수급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육아지원의 다각화 차원에서 기존 보육과는 다른 육아를 추구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운영·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¹⁾

나. 연구 방법

-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년도 보육통계와 관련 기관 자료 등을 조사함.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의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 총 867명(56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25%와 41.1%를 차지하며, 조사 응답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공교) 소속 기관인 경우가 60.8%(527명)이고, 월 가구소득은 약 461만원, 학력은 4년대 대졸 이상이 83.1%를 차지함.

2.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 현황

가. 전반적 현황

- 2013년 12월 말 현재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총 1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0.3%, 보육 아동 수(현원)는 3,226명으로 0.2%를 차지함.
-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05년 28,367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로 50% 이상 증가한 데 비해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져 200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증가세가 뚜렷함.

1) 이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도 기본연구과제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연구 (유해미·김문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1〉 어린이집 설치 현황(2005-2013)

단위: 개소

| 연도 | 국공립 | 법인 | 법인의외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계 |
|------|-------|-------|-------|--------|--------|------|-----|--------|
| 2005 | 1,473 | 1,495 | 979 | 12,769 | 11,346 | 42 | 263 | 28,367 |
| 2006 | 1,643 | 1,475 | 1,066 | 12,864 | 11,828 | 59 | 298 | 29,233 |
| 2007 | 1,748 | 1,460 | 1,002 | 13,081 | 13,184 | 61 | 320 | 30,856 |
| 2008 | 1,826 | 1,458 | 969 | 13,306 | 15,525 | 65 | 350 | 33,499 |
| 2009 | 1,917 | 1,470 | 935 | 13,433 | 17,359 | 66 | 370 | 35,550 |
| 2010 | 2,034 | 1,468 | 888 | 13,789 | 19,367 | 74 | 401 | 38,021 |
| 2011 | 2,116 | 1,462 | 870 | 14,134 | 20,722 | 89 | 449 | 39,842 |
| 2012 | 2,203 | 1,444 | 869 | 14,440 | 22,935 | 113 | 523 | 42,527 |
| 2013 | 2,332 | 1,439 | 868 | 14,751 | 23,632 | 129 | 619 | 43,770 |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각년도 12. 31 기준).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는 2005년 933명에서 2013년 3,226명으로 약 3.5배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 증가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임.

〈표 2〉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현원)(2005-2013)

단위: 명

| 연도 | 국공립 | 법인 | 법인의외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계 |
|------|---------|---------|--------|---------|---------|-------|--------|-----------|
| 2005 | 111,911 | 125,820 | 56,374 | 552,360 | 129,007 | 933 | 12,985 | 989,390 |
| 2006 | 114,657 | 120,551 | 58,808 | 582,329 | 148,240 | 1,238 | 14,538 | 1,040,361 |
| 2007 | 119,141 | 118,211 | 55,906 | 612,484 | 177,623 | 1,444 | 15,124 | 1,099,933 |
| 2008 | 123,405 | 113,894 | 53,818 | 615,647 | 210,438 | 1,491 | 16,809 | 1,135,502 |
| 2009 | 129,656 | 112,338 | 52,718 | 623,045 | 236,843 | 1,655 | 18,794 | 1,175,049 |
| 2010 | 137,604 | 114,054 | 51,126 | 671,891 | 281,436 | 1,898 | 21,901 | 1,279,910 |
| 2011 | 143,035 | 112,688 | 50,676 | 706,647 | 308,410 | 2,286 | 24,987 | 1,348,729 |
| 2012 | 149,677 | 113,049 | 51,914 | 768,256 | 371,671 | 2,913 | 29,881 | 1,487,361 |
| 2013 | 154,465 | 108,834 | 51,684 | 770,179 | 364,113 | 3,226 | 34,479 | 1,486,980 |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각년도 12. 31 기준).

- 서울과 경기 지역과 도시 위주로 설치된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기관으로 50인 이상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함.

나.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속 여부별 설치 현황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크게 (사)공공교에 소속된 형태와 이외 형태(이하 공공교 소속 외 어린이집, 비공공교 소속)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교 소속 어린이집 수는 2005년 60개소였고 2013년 3월 현재 63개소로 큰 변동은 없으나, 아동 수는 200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속 부모협동어린이집 현황(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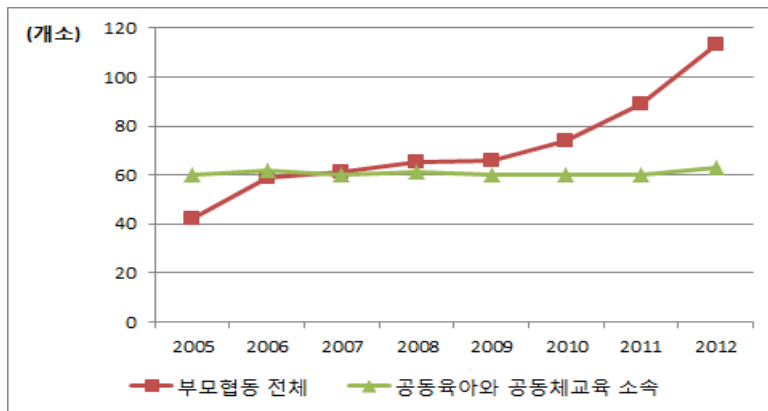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 연도 | 기관 수 | 아동 수(현원) | | 교사 수 | |
|------|------|----------|-------|------|-------|
| | | 아동 수(현원) | 증감 비율 | 교사 수 | 증감 비율 |
| 2005 | 60 | 1,422 | | 310 | |
| 2006 | 62 | 1,393 | -2.0 | 301 | -2.9 |
| 2007 | 60 | 1,378 | -1.1 | 318 | 5.6 |
| 2008 | 61 | 1,307 | -5.2 | 307 | -3.5 |
| 2009 | 60 | 1,432 | 9.6 | 326 | 6.2 |
| 2010 | 60 | 1,473 | 2.9 | 327 | 0.3 |
| 2011 | 60 | 1,490 | 1.2 | 322 | -1.5 |
| 2012 | 63 | 1,563 | 4.9 | 331 | 2.8 |
| 2013 | 63 | 1,673 | 7.0 | 358 | 8.2 |

주: 운영 형태는 부모협동어린이집 방식이나 2005년 이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재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13). 내부자료(2013.3. 13 기준).

- 2006년 이후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증가는 (사)공공교 소속 기관에 비해 비공공교 소속 기관의 증가에서 비롯됨.
- 공공교 소속 외 어린이집은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양극화된 경향이 있음.



[그림 1] 전체 부모협동 어린이집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속 어린이집 설치 현황(2005-2012)

- (사)공공교 소속 어린이집은 21~39명 규모가 가장 많은 반면, 공공교 소속 외 어린이집은 20명 이하 규모가 가장 많고, 50명 이상은 모두 해당 기관에 속함.

3.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이용 실태 및 수요

가. 참여 동기

- 현재 이용 중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참여 동기는 1순위 기준으로 보육·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가 4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동육아 방식의 육아,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각각 18.9%와 12.6%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에도 1순위와 2순위 응답율을 종합하면, 안전한 먹거리가 주된 동기로 지적됨.
- 1순위 응답 결과는 맞벌이 가구 여부나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차별화된 보육·교육내용, 믿을 수 있는 교사, 안전한 먹거리 등 기관에 대한 신뢰가 주된 참여 동기로 파악됨.

〈표 4〉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동기(1순위, 1+2순위)

단위: %(명)

| 구분 | 1순위 | 1+2순위 |
|-----------------------|------------|-------|
| 보육·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 47.3 | 71.6 |
| 공동육아 방식으로 키우려고 | 18.9 | 29.8 |
|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 12.6 | 31.0 |
|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서 | 7.7 | 31.6 |
| 타 유형 어린이집을 믿을 수 없어서 | 6.6 | 13.1 |
| 시설환경이 좋아서 | 3.6 | 9.0 |
| 부모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 2.0 | 5.9 |
| 부모들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 0.8 | 4.6 |
| 기타 | 0.6 | 1.4 |
| 계(수) | 100.0(867) | |

- 타 기관 불신으로 인한 참여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전에 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기관 변경 사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기관 변경 사유로는 어린이집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31.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어린이집 교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각각 22.8%와 8.6% 순으로 나타남.

〈표 5〉 기관 변경 사유

단위: %(명)

| 구분 | 전체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공공교 | 비공공교 |
| 어린이집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31.7 | 28.3 | 37.9 |
|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신뢰할 수 없어서 | 22.8 | 26.8 | 15.7 |
| 이사 | 10.9 | 8.7 | 15.0 |
| 졸업 | 9.1 | 10.2 | 7.1 |
| 어린이집 교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 8.6 | 9.1 | 7.9 |
|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 7.6 | 8.3 | 6.4 |
| 기타 | 9.1 | 8.7 | 10.0 |
| 계(수) | 100.0(394) | 100.0(254) | 100.0(140) |
| $\chi^2(df)$ | | 15.094(7)* | |

주: 기타 응답으로는 추가 보육비용이 과다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싶어서, 보육시간이 안 맞아서 등임.

* $p < .05$

- 한편 이전 기관 대비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급간식,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표 6〉 공공교 소속 여부별 이전 기관 대비 현재 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전체(n=394) | 공공교(n=254) | 비공공교(n=140) | t |
|-----------|-----------|------------|-------------|-----------|
| 급간식 | 4.64 | 4.68 | 4.56 | 2.173* |
| 교육·보육프로그램 | 4.46 | 4.48 | 4.43 | 0.752 |
| 교사 전문성 | 4.38 | 4.39 | 4.36 | 0.283 |
| 부모참여 | 4.15 | 4.12 | 4.22 | -1.238 |
| 시설 및 환경 | 4.11 | 4.07 | 4.18 | -1.260 |
| 보육 비용 | 3.58 | 3.36 | 3.96 | -6.588*** |

주: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이용 실태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총 이용 기간은 평균 22.1개월로, 2012년 기준 전국 평균인 14.8개월에 비해 약 7개월이 길게 나타남(서문희 외, 2012).²⁾
 - 해당 기간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5.8개월, 공공교 소속 기관은 약 23.7개월로 평균에 비해 길게 나타남.

〈표 7〉 어린이집 총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 구분 | 6개월 이하 | 6개월 | 1년 | 2년 | 3년 | 4년 초과 | 계(수) | 평균 | t |
|-----------|--------|----------|----------|----------|----------|-------|------------|-------|----------|
| | | 초과~1년 이하 | 초과~2년 이하 | 초과~3년 이하 | 초과~4년 이하 | | | | |
| 전체 | 23.9 | 11.3 | 26.8 | 16.8 | 12.1 | 9.1 | 100.0(867) | 22.10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 19.4 | 8.8 | 25.1 | 19.2 | 15.4 | 12.1 | 100.0(479) | 25.76 | 6.191*** |
| 비맞벌이 | 29.4 | 14.4 | 28.9 | 13.9 | 8.0 | 5.4 | 100.0(388) | 17.58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 (사)공공교 | 23.7 | 7.4 | 24.1 | 19.0 | 15.0 | 10.8 | 100.0(527) | 23.69 | 2.880** |
| 비공공교 | 24.1 | 17.4 | 30.9 | 13.5 | 7.6 | 6.5 | 100.0(340) | 19.63 | |

** $p < .01$, *** $p < .001$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1일 평균 총 이용 시간은 평균 8시간 12분으로, 2012년 기준 전국 평균인 7시간 34분에 비해 약 40분 가량 길게 나타남(서문희 외, 2012).
 - 해당 시간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와 공공교 소속 기관인 경우 각각 8시간 42분, 8시간 36분으로 평균에 비해 길게 나타남.

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서, 보육통계와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과대 표집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536명의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총 기간을 조사한 결과임.

〈표 8〉 어린이집 1일(평일) 평균 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 5시간 이하 | 5시간 초과~6시간 이하 | 6시간 초과~7시간 이하 | 7시간 초과~8시간 이하 | 8시간 초과~9시간 이하 | 9시간 초과~10시간 이하 | 10시간 초과~11시간 이상 | 계(수) | 평균 (표준편차) | t |
|-----------|--------|---------------|---------------|---------------|---------------|----------------|-----------------|------------|--------------|-----------|
| | 전체 | 3.8 | 8.1 | 18.6 | 30.5 | 18.8 | 13.3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 2.1 | 4.8 | 12.1 | 25.5 | 22.1 | 21.9 | 11.5 | 100.0(479) | 8.72(1.45) | 12.474*** |
| 비맞벌이 | 6.0 | 12.2 | 26.7 | 36.8 | 14.8 | 2.6 | 1.0 | 100.0(386) | 7.54(1.20)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
| (사)공공교 | 0.9 | 2.1 | 14.2 | 36.2 | 22.4 | 16.1 | 8.0 | 100.0(527) | 8.57(1.25) | 8.887*** |
| 비공공교 | 8.3 | 17.5 | 25.4 | 21.6 | 13.3 | 8.9 | 5.0 | 100.0(338) | 7.61(1.58) | |

*** $p < .001$

- 평일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 시각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평일 등원은 이르고, 하원 시간은 늦음.
 - 등원은 오전 8~9시인 경우가 52.5%로 가장 많았고 하원은 오후 4~5시가 35.4%, 오후 5~6시가 32.7%로 많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의 해당 비율인 50.9%와 30.0%, 20.5%와 차이를 보임.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는 경우와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의 해당 비율인 18.2%, 47.5%와 차이를 보임.
- 이 같은 기관 이용 시간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이외 기관 유형들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보다 부합하고 있음을 말해줌.

〈표 9〉 평일 어린이집 등원 시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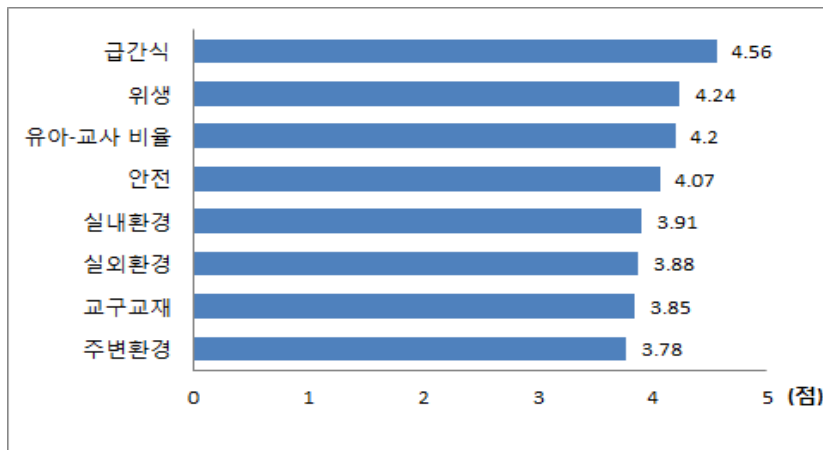
| 구분 | 오전 7시 | 오전 7~8시 | 오전 8~9시 | 오전 9시 이후 | 계(수) |
|-----------|-------|---------|---------|----------|------------|
| 전체 | 4.4 | 22.3 | 52.5 | 20.8 | 100.0(865)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7.5 | 32.4 | 43.2 | 16.9 | 100.0(479) |
| 비맞벌이 | 0.5 | 9.8 | 64.0 | 25.6 | 100.0(386)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사)공공교 | 5.9 | 20.5 | 52.4 | 21.3 | 100.0(527) |
| 비공공교 | 2.1 | 25.1 | 52.7 | 20.1 | 100.0(338) |

〈표 10〉 평일 어린이집 하원 시각

| 구분 | 단위: %(명) | | | | | 계(수) |
|-----------|----------|--------|--------|--------|---------|------------|
| | 오후3시 이전 | 오후3~4시 | 오후4~5시 | 오후5~6시 | 오후6시 이후 | |
| 전체 | 7.6 | 15.8 | 35.4 | 32.7 | 8.4 | 100.0(865)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 4.0 | 10.2 | 30.3 | 42.0 | 13.6 | 100.0(479) |
| 비맞벌이 | 12.2 | 22.8 | 41.7 | 21.2 | 2.1 | 100.0(386)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사)공공교 | 0.6 | 6.5 | 40.8 | 42.7 | 9.5 | 100.0(527) |
| 비공공교 | 18.6 | 30.5 | 26.9 | 17.2 | 6.8 | 100.0(338) |

2)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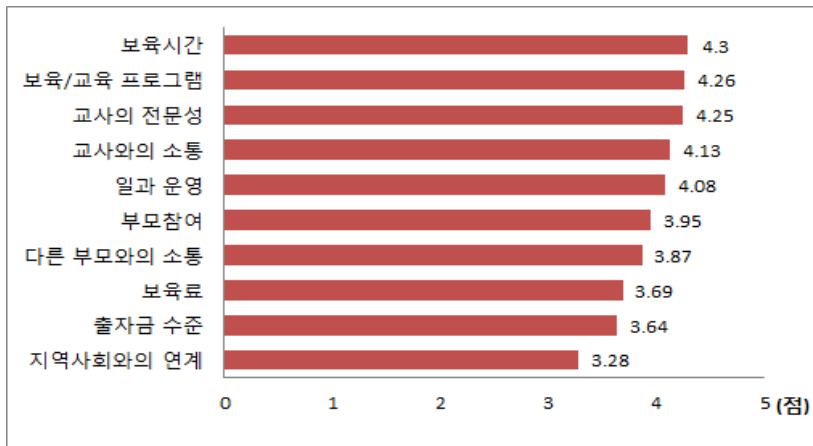
-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78점에서 4.5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영역별로는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가 4.5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생, 유아-교사 비율, 안전, 실내 환경, 실외 환경, 교구교재, 주변 환경 순으로 나타남.
- 이들 결과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외 기관 유형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말해줌.



주: 각 항목에 대해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그림 2] 어린이집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 실태조사 결과에서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항목(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건강관리, 교재교구 및 장비, 시설 설비 및 실내 환경, 주변 환경)의 만족도는 3.64~3.78점에 그침.
-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 시간, 보육·교육프로그램, 교사의 전문성, 교사와의 소통, 일과 운영은 4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비용 부문 즉 보육료와 출자금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이들 결과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 결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특히 부모참여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실태조사 결과에서 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교사, 교육 내용, 비용, 부모 참여)은 3.49~3.92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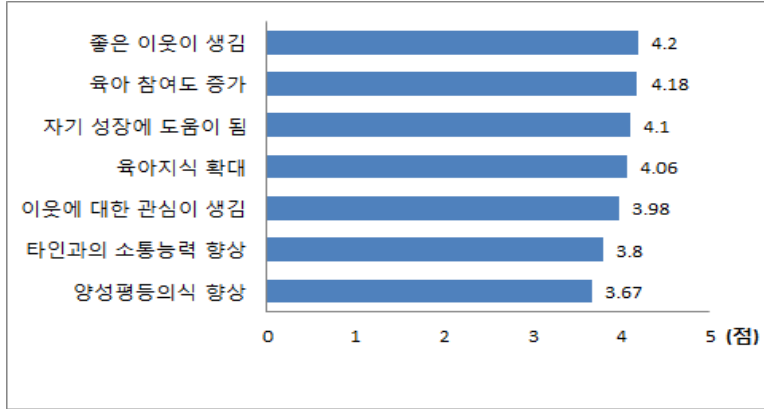


주: 각 항목에 대해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그림 3] 어린이집 운영 관련 만족도

-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3.67~4.20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의식 형성(좋은 이웃이 생겼다, 이웃에 관심이 생겼다), 육아 참여와 육아 지식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인식이 두드러짐.

□ 이용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사)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가 공동체 의식 형성 관련 긍정적 효과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이들 기관에서 공동체 지향이 보다 강조됨을 짐작케 함.



주: 각 항목별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매우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그림 4]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효과 인식

<표 11> 기관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효과

단위: 점, 명

| 구분 | 좋은 이웃이 생김 | 육아 참여도 증가 | 자기 성장 | 육아지식 확대 | 이웃에 대한 관심 생김 | 타인과의 소통능력 향상 | 양성평등 인식 향상 | 사례수 |
|------------|-----------------------|---------------------|----------------------|---------|----------------------|---------------------|--------------------|-----|
| 전체 | 4.20 | 4.18 | 4.10 | 4.06 | 3.98 | 3.80 | 3.67 | 867 |
| 기관 규모 | | | | | | | | |
| 20인 이하 | 4.07 ^a | 4.03 | 3.99 | 3.97 | 3.82 | 3.74 | 3.57 | 236 |
| 21~50인 이하 | 4.38 ^a | 4.23 | 4.20 ^a | 4.09 | 4.09 | 3.88 | 3.73 | 494 |
| 51~100인 이하 | 3.63 ^b | 4.21 | 3.83 ^b | 4.05 | 3.81 | 3.54 | 3.52 ^a | 104 |
| 100인 초과 | 4.30 ^a | 4.33 | 4.21 ^a | 4.27 | 4.15 | 3.88 | 3.94 ^b | 33 |
| <i>F</i> | 29.951 ^{***} | 4.075 ^{**} | 8.094 ^{***} | 2.097 | 7.637 ^{***} | 5.031 ^{**} | 3.633 [*]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사)공공교 | 4.41 | 4.20 | 4.21 | 4.05 | 4.09 | 3.88 | 3.71 | 527 |
| 비공공교 | 3.88 | 4.13 | 3.93 | 4.08 | 3.82 | 3.67 | 3.61 | 340 |
| <i>t</i> | 8.914 ^{***} | 1.364 | 4.583 ^{***} | -0.534 | 4.521 ^{***} | 3.343 ^{**} | 1.657 | |

주: 각 항목별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매우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 (사)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는 좋은 이웃이 생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김,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두드러짐.

다. 운영 현황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총회, 이사회, 교사-부모 정기 모임,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 등이 요구되므로, 이들 모임의 운영 여부를 조사함.
- 전체 조사 기관 중 정기총회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0%로 가장 높고, 이사회와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은 각각 95.3%, 95.2%, 교사-부모 정기 모임은 91.0%로 나타남.
- 해당 비율은 기관 규모와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임.
 - 20인 이하 기관은 전반적으로 운영 비율이 낮고, 100인 초과 기관은 100%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 부모협동어린이집 기구별 운영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운영 비율 | | | | 사례수 |
|--------------|--------------------------|---------------------------|--------------------------|--------------------------|-----|
| | 이사회 | 교사-부모 정기 모임 | 정기 총회 | 신입 조합원 (부모)교육 | |
| 전체 | 95.3 | 91.0 | 97.0 | 95.2 | 867 |
| 기관 규모 | | | | | |
| 20인 이하 | 88.6 | 89.0 | 92.8 | 90.3 | 236 |
| 21~50인 이하 | 97.2 | 100.0 | 98.2 | 96.2 | 494 |
| 51~100인 이하 | 100.0 | 50.0 | 100.0 | 100.0 | 104 |
| 100인 초과 | 100.0 | 100.0 | 100.0 | 100.0 | 33 |
| $\chi^2(df)$ | na | 266.846(3) ^{***} | na | 20.342(3) ^{***}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사)공공교 | 100.0 | 100.0 | 100.0 | 100.0 | 527 |
| 비공공교 | 87.9 | 77.1 | 92.4 | 87.6 | 340 |
| $\chi^2(df)$ | 66.704(1) ^{***} | 132.852(1) ^{***} | 41.546(1) ^{***} | 68.414(1) ^{***} | |

주: 비율은 응답 기관이 각 운영 기구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카이검정은 각 운영 기구별 응답기관의 운영 여부(운영함/운영안함)와 독립변인간의 교차분석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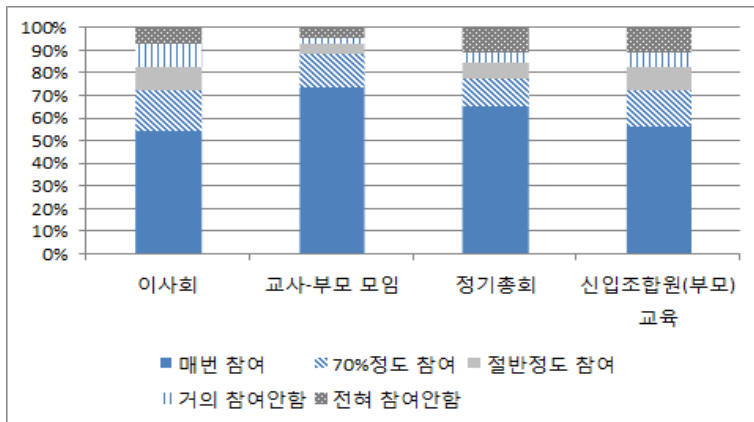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01$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공공교 소속 기관은 모든 항목에 걸쳐 100% 운영 중인 반면,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은 교사-부모 정기 모임의 경우 약 77%,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과 이사회는 약 88%에 그침.

- 정기총회 등 운영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부모의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부모 정기 모임이 높고, 이사회와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이 낮음.
- 각 모임별 참여 수준을 기관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공공교 소속 기관의 매번 참여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비율은 이사회 63.9%, 교사-부모 정기 모임 81.8%, 정기총회 76.7%, 신입조합원 66.4%로 공공교 이외 소속 기관의 38.8%, 57.1%, 47.0%, 38.7%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그림 5] 운영 모임별 부모참여 정도

- 운영 모임에 참여한 부모의 만족도는 3.92~4.26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교사-부모 정기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기총회에 대한 만족도가 3.9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13〉 운영 모임별 참여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이사회 | | 교사-부모 정기 모임 | | 정기총회 | | 신입 조합원 (부모)교육 | |
|------------|-----|--------------------|-------------|--------------------|------|------------|---------------|------------|
|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
| 전체 | 292 | 4.03(0.75) | 729 | 4.26(0.64) | 676 | 3.92(0.75) | 638 | 4.05(0.73)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맞벌이 | 171 | 4.06(0.73) | 419 | 4.27(0.62) | 403 | 3.98(0.71) | 384 | 4.09(0.69) |
| 비맞벌이 | 121 | 3.98(0.77) | 310 | 4.25(0.67) | 273 | 3.83(0.80) | 254 | 4.00(0.77) |
| <i>t</i> | | 0.910 | | 0.309 | | 2.542* | | 1.578 |
| 기관 규모 | | | | | | | | |
| 20인 이하 | 81 | 4.01(0.81) | 186 | 4.19(0.65) | 169 | 3.89(0.77) | 150 | 4.00(0.69) |
| 21~50인 이하 | 174 | 4.11(0.69) | 461 | 4.31(0.64) | 407 | 3.96(0.73) | 398 | 4.05(0.73) |
| 51~100인 이하 | 31 | 3.65(0.75) | 50 | 4.10(0.65) | 71 | 3.75(0.82) | 62 | 4.15(0.76) |
| 100인 초과 | 6 | 4.00(0.89) | 32 | 4.28(0.52) | 29 | 4.00(0.65) | 28 | 4.18(0.77) |
| <i>F</i> | | 3.493 [†] | | 2.586 | | 1.802 | | 0.886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사)공공교 | 198 | 4.06(0.74) | 509 | 4.30(0.63) | 458 | 3.92(0.73) | 455 | 4.03(0.71) |
| 비공공교 | 94 | 3.97(0.77) | 220 | 4.18(0.65) | 218 | 3.91(0.78) | 183 | 4.11(0.75) |
| <i>t</i> | | 0.988 | | 2.264 [†] | | 0.249 | | -1.393 |

주: 각 모임에 대해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라. 애로사항 및 요구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부모들의 48.0%가 운영 자원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 미비,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 미흡,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을 각각 11.4%, 11.3%, 11.3% 순으로 조사됨.

○ 해당 비율은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사)공공교 소속 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는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 미비와 신입 조합원(부모) 교육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공교 소속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는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4〉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명)

| 구분 | 운영 재원 부족 |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침 미비 | 신입 조합원 교육 미흡 | 부모와 교사와 의 갈등 | 부모들간 운영상 잡은 충돌 | 교사 재교육 체계 미비 | 기타 | 계(수) |
|--------------|----------------|-------------------------------|-----------------------|--------------------|-------------------------|-----------------------|------|------------|
| 전체 | 48.0 | 11.4 | 11.3 | 11.3 | 5.9 | 4.3 | 7.8 | 100.0(717) |
| 기관 규모 | | | | | | | | |
| 20인 이하 | 53.6 | 11.6 | 7.2 | 5.5 | 5.5 | 5.5 | 11.0 | 100.0(181) |
| 21~50인 이하 | 42.4 | 10.8 | 12.0 | 16.1 | 6.3 | 4.3 | 8.0 | 100.0(415) |
| 51~100인 이하 | 50.6 | 18.0 | 15.7 | 4.5 | 5.6 | 2.2 | 3.4 | 100.0(89) |
| 100인 초과 | 81.3 | - | 12.5 | - | 3.1 | 3.1 | - | 100.0(32) |
| $\chi^2(df)$ | | | | na | | |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사)공공교 | 45.0 | 9.7 | 9.1 | 16.3 | 6.6 | 4.6 | 8.6 | 100.0(453) |
| 비공공교 | 53.0 | 14.4 | 15.2 | 2.7 | 4.5 | 3.8 | 6.4 | 100.0(264) |
| $\chi^2(df)$ | | | | 50.061(7)*** | | | | |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01$

최근 1년간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27.8%가 있다고 응답함.

〈표 15〉 최근 1년간 조합 탈퇴 욕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chi^2(df)$ |
|------------|------|------|------------|--------------|
| 전체 | 27.8 | 72.2 | 100.0(867)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28.6 | 71.4 | 100.0(479) | 0.345(1) |
| 비맞벌이 | 26.8 | 73.2 | 100.0(388) | |
| 기관 규모 | | | | |
| 20인 이하 | 25.4 | 74.6 | 100.0(236) | 7.759(3) |
| 21~50인 이하 | 30.6 | 69.4 | 100.0(494) | |
| 51~100인 이하 | 18.3 | 81.7 | 100.0(104) | |
| 100인 초과 | 33.3 | 66.7 | 100.0(33)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사)공공교 | 34.0 | 66.0 | 100.0(527) | 25.480(1)*** |
| 비공공교 | 18.2 | 81.8 | 100.0(340) | |

*** $p < .001$

- 해당 비율은 이용 기관의 공공교 소속 기관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공공교 소속 기관의 부모들의 유 경험 비율은 34.0%로 공공교 소속 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탈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 그 이유로는 부모 참여 활동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부모들과의 갈등 19.1%, 교육관 또는 공동육아 철학의 차이 14.1% 순임.
- 이는 이용 기관의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이 (사)공공교 소속 기관에 비해 보육료 등 경제적 부담과 교사와의 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반면, 교육관 또는 공동육아 철학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16〉 최근 1년간 조합 탈퇴 욕구 발생 사유

단위: %(명)

| 구분 | 부모참여 활동부담 | 부모간 갈등 | 교육관 차이 | 교사와 소통 어려움 | 보육료 등 경제적 부담 | 아이들간 갈등 | 어린이집 환경 불만족 | 기타 | 계(수) |
|--------------|-----------|--------|--------|------------|--------------|---------|-------------|-----|------------|
| 전체 | 28.6 | 19.1 | 14.1 | 9.5 | 9.5 | 8.7 | 3.7 | 6.6 | 100.0(241)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 35.0 | 19.0 | 15.3 | 10.2 | 7.3 | 7.3 | 1.5 | 4.4 | 100.0(137) |
| 비맞벌이 | 20.2 | 19.2 | 12.5 | 8.7 | 12.5 | 10.6 | 6.7 | 9.6 | 100.0(104) |
| $\chi^2(df)$ | | | | | 14.623(8) | | | | |
| 기관 규모 | | | | | | | | | |
| 20인 이하 | 23.3 | 21.7 | 15.0 | 8.3 | 8.3 | 11.7 | 5.0 | 6.7 | 100.0(60) |
| 21~50인 이하 | 29.1 | 20.5 | 15.9 | 9.3 | 7.9 | 8.6 | 2.0 | 6.6 | 100.0(151) |
| 51~100인 이하 | 52.6 | 10.5 | 5.3 | 10.5 | - | 5.3 | 10.5 | 5.3 | 100.0(19) |
| 100인 초과 | 9.1 | - | - | 18.2 | 54.5 | - | 9.1 | 9.1 | 100.0(11) |
| $\chi^2(df)$ | | | | | na | | | | |
| 공공교 소속 여부 | | | | | | | | | |
| (사)공공교 | 29.1 | 20.1 | 16.8 | 8.4 | 7.3 | 10.1 | 2.2 | 6.1 | 100.0(179) |
| 비공공교 | 27.4 | 16.1 | 6.5 | 12.9 | 16.1 | 4.8 | 8.1 | 8.1 | 100.0(62) |
| $\chi^2(df)$ | | | | | 17.285(8)* | | | | |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영구 퇴진 마련이 2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조합원간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 공유 20.1%, 출자금과 보육료 등 비용 과다 해소 15.2% 순임.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1,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영구 터전의 마련 보다 조합원간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 공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경우는 (사)공공교 소속 기관에 비해 보육·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사 전문성 강화, 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7〉 어린이집 운영상 해결 과제(1순위)

| 구분 | 전체 | 단위: %(명) | |
|--------------------------------|------------|---------------------------|------------|
| | | 공공교 소속 여부 (사)공공교 | 비공공교 |
| 영구 터전(인프라) 마련 | 23.3 | 23.7 | 22.5 |
| 조합원간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 공유 | 20.1 | 21.6 | 17.6 |
| 출자금, 보육료 등 비용 과다 해소 | 15.2 | 16.1 | 13.7 |
| 이사회 참여 등 부모 참여 의식 고취 및 실천 강화 | 8.0 | 8.2 | 7.8 |
| 조합원 충원 | 7.8 | 8.0 | 7.5 |
| 보육·교육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 6.6 | 5.4 | 8.5 |
| 교사 전문성 강화 | 6.1 | 5.0 | 7.8 |
| 의사결정 효율성 강화: 이사회 등 운영관련 회의 간소화 | 5.6 | 6.8 | 3.6 |
| 보조인력 보강 | 4.1 | 3.3 | 5.6 |
| 교사 충원 | 2.6 | 1.4 | 4.6 |
| 기타 | 0.6 | 0.6 | 0.7 |
| 계(수) | 100.0(821) | 100.0(515) | 100.0(306) |
| $\chi^2(df)$ | | 45.323(11) ^{***} | |

*** $p < .001$

〈표 18〉 어린이집 운영상 해결 과제(1순위, 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1순위 | 1+2순위 |
| 영구 터전(인프라) 마련 | 23.3 | 31.9 |
| 조합원간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 공유 | 20.1 | 36.8 |
| 출자금, 보육료 등 비용 과다 해소 | 15.2 | 27.6 |
| 이사회 참여 등 부모참여 의식 고취 및 실천 강화 | 8.0 | 19.7 |
| 조합원 충원 | 7.8 | 15.8 |
| 보육·교육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 6.6 | 14.5 |
| 교사 전문성 강화 | 6.1 | 14.0 |
| 의사결정 효율성 강화: 이사회 등 운영관련 회의 간소화 | 5.6 | 15.5 |
| 보조인력 보강 | 4.1 | 11.0 |
| 교사 충원 | 2.6 | 4.9 |
| 기타 | 0.6 | 1.7 |
| 계(수) | 100.0(821) | |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 수준의 정책 과제로는 영구 터전(어린이집 부지)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이 48.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 수준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30.9%,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컨설팅 제공 기관 신설 등) 12.2%, 교사 재교육 지원 5.5% 순으로 조사됨.
- 이는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영구 터전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사)공공교 소속 기관 이용 부모들의 수요가 더 높은 반면, 국가 수준 운영 지침의 개발·보급에 대한 수요는 공공교 소속 외 기관 이용 부모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19> 부모협동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 영구터전 재정 지원 | 국가수준 운영지침 개발보급 | 설치·운영 지원 국가기구설치 | 교사 재교육 지원 | 보조 인력 지원 | 기타 | 계(수) |
|--------------|---------------|----------------------|-----------------------|-----------------|----------------|-----|------------|
| 전체 | 48.3 | 30.9 | 12.2 | 5.5 | - | 3.0 | 100.0(866) |
| 기관 규모 | | | | | | | |
| 20인 이하 | 52.1 | 30.5 | 8.9 | 5.5 | - | 3.0 | 100.0(236) |
| 21~50인 이하 | 49.9 | 28.2 | 12.8 | 5.9 | - | 3.2 | 100.0(493) |
| 51~100인 이하 | 32.7 | 41.3 | 18.3 | 4.8 | - | 2.9 | 100.0(104) |
| 100인 초과 | 45.5 | 42.4 | 9.1 | 3.0 | - | - | 100.0(33) |
| $\chi^2(df)$ | | | na | | | | |
| 공공교 소속여부 | | | | | | | |
| (사)공공교 | 51.7 | 27.8 | 11.8 | 6.1 | - | 2.7 | 100.0(526) |
| 비공공교 | 42.9 | 35.9 | 12.9 | 4.7 | - | 3.5 | 100.0(340) |
| $\chi^2(df)$ | | | 15.287(6)* | | | | |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5$

4. 정책 방안

-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기존 보육의 대안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참여 수준이 높고, 교사와 급간식 및 위생 등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게 나타나므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의 지원을 고려할만 함.

□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 2006년 이후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증가가 두드러져 기관간의 상이성이 두드러지므로 공동육아 철학과 기본 운영 원리가 견지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함.
- 현행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운영 사항을, (사)공공교가 제작한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지침서'는 공공교 소속 기관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함.

□ 기관 인프라 지원

-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어린이집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내 유휴 공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때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으로는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 지침 준수 여부, 출자 최소 수준, 부모협동어린이집 경력 교사 인원, 협동조합 법인 설립 최소 기간 등을 고려함.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기구 설치

- 2013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관련 상담은 (사)공공교에서 소속 기관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부모협동어린이집에게 설치·운영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별도 기관이 요구됨.
- 동 기관을 통해 컨설팅 이외에도 신입 조합원 교육, 운영 사례집 발간, 설명회 개최 등을 제공함.
- 동 기관의 설치는 공동육아의 전문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수행해 온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획재정부의 중간지원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함.

□ 조합원 교육체계의 구축

- 협동조합형 공동육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입 조합원 즉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 해당 교육은 공공교 소속 기관은 (사)공공교에서 실시하나, 공공교 소속 이외 기관은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모든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조합원에 대한 일관된 교육체계를 구축함.

□ 지역내 운영협의체 구성

- 자발적인 기관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들이 지역내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여 기관 운영 역량을 강화함.
- 이 때 협의체 구성은 지역내 타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함.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2010. 2).

보건복지부(2005-2013). 보육통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13). 내부자료: 소속 기관 현황.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II.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현황과 과제

서문희·이혜민

요약

-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도·감독의 강화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교재교구 및 교수 관련 정보, 회계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사업체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사업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정체성 유지와 질적 수준 제고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 정책과 더불어 제한적이지만 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음.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모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체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금전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 수행이 확대되었음.
- 보육이나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유형의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산업과 일자리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며, 보육이나 유아교육이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으로 크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체를 살펴봄.

* 본고는 2013년에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이 집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파견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며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회계관리 지원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며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교재교구 개발, 생산 판매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며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기타 사업체 사용 현황을 파악함.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임.
- 국내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사이트로 외국 자료를 수집하였음.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총 8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의 서비스 제공 실태, 특성, 비용 등을 조사함.
 - 보육·유아교육 관련 사업체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관련 사업

가.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1) 실태와 규모

-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아동은 2004년도 55.7%, 2009년 41.5%, 2012년 34.5%로 점차 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졌음.
-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으로 부모의 기관 이용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과 반비례하여 활동 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밖으로 나가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등의 활동도 실시함.
 -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정부가 적정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으며, 상한선의 지역적 격차도 심함. 최근에 시·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양상을 보임.
- 부모가 부담하는 월 비용 규모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605억, 유치원 원아 부모 290억원으로, 총 895억원 규모로 추정됨(표 1 참조).

-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66.5%인 아동이 평균 월 61,700원을 부담하고 유치원은 68.8%의 아동이 월 68,6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부모 부담 비용 추정

| 단위: 명, %, 천원 | | | |
|----------------------|------------|------------|------------|
|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소계 |
| 아동수 ¹⁾ | 1,475,061 | 613,752 | 2,088,813 |
| 실시율 ²⁾ | 66.5 | 68.8 | 67.2 |
| 1인당 비용 ³⁾ | 61.7 | 68.6 | 63.8 |
| 총 비용 | 60,522,490 | 28,967,130 | 89,489,620 |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2)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 통계.

3)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2) 강사 파견 사업체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교재 생산 사업 및 강사 파견 사업으로 구분됨.
 -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생산은 결합되어 있고, 강사 파견 사업은 다른 유형의 사업이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됨.
 - 강사 파견업체는 전국 규모의 전문 업체, 전문 영역별 소규모 사업체, 기업의 지사나 개인사업자 형태 등 다양함. 대부분은 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을 다루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소규모로 운영됨.
-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본금이나 매출액은 2011년 기준으로 파견 전문 대기업인 D사가 각각 20억, 57억 규모로 가장 크고 음악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C사가 2012년에 각각 8억 4,500만원, 21억 규모임.
 - 전체적으로 종업원의 규모는 불명확함.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파견 인력들의 규모 파악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강사 파견업은 지사장이나 독립적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혼자 운영하는 형태와 영업 사원을 두고 판매하는 형태가 있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 왔기 때문에 강사를 파견하는 자격 단위 소규모 사업자가 확장되어 온 상황으로, 강사 구직 광고를 보면 단독 사업체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음. 이는 사업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강사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함도 나타낸다고 하겠음.

강사 파견업 대표자는 남자가 80%이고 여자가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으로 보면 40~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3) 파견 강사

강사는 대부분이 업체로부터 파견된 강사이고 일부 개인사업자가 있고, 아주 소수이지만 미등록 개인임.

- 어린이집은 전 과목에 걸쳐 업체 파견 강사 비중이 매우 높으나 유치원은 업체 파견강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 특히 미등록 개인의 비중이 큼. 미술은 개인 미등록 강사 사용 비중이 가장 큼(표 2 참조).

〈표 2〉 외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파견 강사 이용률 및 강사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 어린이집 | | | | 유치원 | | | | |
|------|---------|--------|--------|-------|---------|--------|--------|------|-------|
| | 업체 파견강사 | 개인 사업자 | 미등록 개인 | (수) | 업체 파견강사 | 개인 사업자 | 미등록 개인 | 기타 | (수) |
| 미술 | 82.1 | 5.8 | 13.5 | (105) | 28.0 | 9.4 | 43.8 | 15.5 | (64) |
| 음악 | 96.3 | 2.5 | 8.3 | (348) | 67.3 | 24.7 | 19.9 | 5.0 | (101) |
| 체육 | 90.7 | 7.7 | 5.0 | (404) | 65.8 | 15.1 | 22.3 | 4.0 | 126) |
| 과학 | 100.0 | - | - | (13) | 24.3 | 24.3 | 6.5 | 33.3 | (45) |
| 수학 | 92.3 | 7.7 | - | (9) | 11.3 | 3.8 | 30.7 | 50.2 | (26) |
| 한글 | 83.7 | 2.0 | 18.4 | (33) | 20.2 | 3.9 | 20.2 | 56.1 | (25) |
| 교재교구 | 96.4 | 1.8 | 6.0 | (112) | 71.7 | 20.2 | 7.8 | 7.8 | (25) |
| 한자 | 33.3 | - | 33.3 | (2) | 16.3 | 32.6 | 16.3 | 32.6 | (6) |
| 영어 | 95.3 | 1.3 | 4.0 | (475) | 96.2 | 1.3 | 4.0 | - | (114) |
| 외국어 | - | 100.0 | - | (1) | 100.0 | - | - | - | (1) |
| 기타 | 81.4 | 10.2 | 11.9 | (40) | 91.9 | 8.9 | 8.9 | - | (11) |

주: 강사 종류의 경우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조사」 자료임.

강사는 특수고용 형태로 자격 기준이나 처우 등 근로자성은 취약함. 파견강사 모집공고를 중심으로 파악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연령대는 특별하지 않음. 모집 광고 중 하한 및 상한 연령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이고 무관하다고 표현한 곳이 10% 정도 있었음.
 - 학력조건은 전문대졸 이상이 86.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4년제 대학 이상은 5.0% 정도임. 그러나 8.5% 정도는 고졸이거나 또는 학력 무관임.
 - 급여 조건은 대부분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명시한 경우에는 연 1,600~1,8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성격상 정규직의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보험 가입을 명시한 사업체는 12% 정도였음.
 - 구직 공고 시 우대 조건은 다수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소수이지만 제시한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육교사 순이었음. 영어의 경우에도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 강사 구직 시 중요 요인의 하나는 지역임. 활동이 오후로 제한되면서 활동 가능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관에의 접근성과 짧은 이동거리가 수익 창출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지역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음.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로 실시하는 기관 수를 추정하고 일주일에 한 명의 교사가 나갈 수 있는 보육·교육기관 수를 가정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면 보육·교육기관 파견강사는 최소한 21,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됨(표 3 참조).
- 음악이나 체육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나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8곳, 과학, 수학, 한글은 6개소로 가정하였고 영어는 4개소로 가정하면 어린이집 파견강사의 수는 약 15,00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유치원 이용 아동 자료를 참고하여 한 사람이 하루에 방문하는 기관은 영어는 4개소, 기타 과목은 5개소로 방문으로 가정할 경우 유치원 파견 강사 수는 5,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파견강사 월 평균 수입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부모 부담 비용의 약 47% 정도가 됨. 이외 비용은 교재비와 사업자 수익,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리운영비로 추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기타경비 수입의 14%까지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표 3〉 파견 강사 수 추정

단위: %, 개소, 명

| 구분 | 어린이집 | | | 유치원 | | |
|-----|-------------------|----------|----------|-------------------|---------|---------|
| | 실시율 ¹⁾ | 실시 기관 | 강사 | 실시율 ²⁾ | 실시 기관 | 강사 |
| 미술 | 15.7 | 6,677 | 834 | 39.3 | 3,355 | 671 |
| 음악 | 47.0 | 19,988 | 2498 | 62.0 | 5,294 | 1,059 |
| 체육 | 53.6 | 22,794 | 2849 | 77.3 | 6,600 | 1,320 |
| 과학 | 6.0 | 2,552 | 319 | 27.6 | 2,356 | 471 |
| 수학 | 2.9 | 1,233 | 206 | 16.0 | 1,366 | 273 |
| 한글 | 5.8 | 2,467 | 411 | 15.3 | 1,306 | 261 |
| 컴퓨터 | 0.7 | 298 | 37 | - | - | - |
| 교구 | 15.2 | 6,464 | 808 | 15.3 | 1,306 | 261 |
| 한자 | 0.5 | 213 | 26 | 3.7 | 316 | 63 |
| 영어 | 62.9 | 26,749 | 6,687 | 69.9 | 5,968 | 1,492 |
| 외국어 | 1.0 | 425 | 53 | 0.6 | 51 | 10 |
| 기타 | 5.3 | 2,254 | 281 | 6.7 | 572 | 114 |
| (수) | | (42,527) | (15,012) | | (8,443) | (5,995) |

자료: 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2)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유치원 조사」 자료임.

4) 향후 전망

- 앞으로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강사 파견업은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이나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강사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중견 기업 중심으로 해외 진출로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 아동 발달 관점에서 질 좋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관리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재무회계 관련 사업

1) 사업체 이용 실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하면서 상당수가 예산 수립, 지출 월별 보고, 연말 결산 등의 회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 관련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이외에도 교사 급여, 소득신고 및 육아휴직,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도 있고, 또한 비용 수납까지도 외부에 의지하기도 함.

□ 어린이집의 78.5%가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고 4% 정도는 개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치원은 49.7%가 전문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19.5%는 개인 전문가 지원을 받으며, 상당수는 회계 담당 인력을 둠(표 4, 표 5 참조).

〈표 4〉 어린이집 회계 관리 지원 여부

| 구분 | 전문업체 지원 | 개인 지원 | 지원없음 | 단위: %(개소) (수) |
|--------|---------|-------|------|------------------|
| 전체 | 78.5 | 4.0 | 20.1 | (673) |
| 국공립 | 54.0 | 1.0 | 45.0 | (100) |
| 사회복지법인 | 80.9 | 4.4 | 16.2 | (68) |
| 기타 법인 | 71.0 | - | 29.0 | (31) |
| 민간 | 82.6 | 6.8 | 15.2 | (322) |
| 가정 | 86.2 | 0.7 | 13.8 | (15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어린이집 조사」 자료임.

〈표 5〉 유치원 회계업무 관련 특성

| 구분 | 전문업체 지원 | 개인 지원 | 지원없음 | 단위: %(개소) (수) |
|----------|---------|-------|------|------------------|
| 전체 | 49.7 | 19.5 | 30.8 | (163) |
| 소재지 | | | | |
| 대도시 | 43.5 | 22.6 | 33.9 | (66) |
| 중소도시 | 55.8 | 19.5 | 24.7 | (77) |
| 읍면지역 | 45.0 | 10.0 | 45.0 | (20) |
| 규모 | | | | |
| 50명 이하 | 50.0 | 8.3 | 41.7 | (12) |
| 51~100명 | 51.7 | 10.3 | 37.9 | (30) |
| 101~150명 | 47.2 | 22.6 | 30.2 | (54) |
| 151~200명 | 57.6 | 24.2 | 18.2 | (34) |
| 201명 이상 | 43.8 | 21.9 | 34.4 | (3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유치원 조사」 자료임.

2) 사업체 유형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회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체들은 20개 업체 이상으로 파악되었음.¹⁾
-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 업무 지원 사업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유형은 회계 프로그램 제공 유형임. 회계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가격은 보통 한 달에 만 원 내외이며, 약 45%의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됨.
 - 둘째는 회계 지원 운영 방식으로 보육·교육기관에서 사용자 모드에서 프로그램에 금액 및 비목을 입력하면 관리자가 계정을 잡아 회계를 정리하여 재무회계시스템에 업로드 함과 동시에 출납부 등 관련 서류를 인쇄하고 제본하여 택배로 각 어린이집에 보내주는 것임. 이때 대부분 계좌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함. 약 25%의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셋째 유형은 기관에 회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영수증까지 따로 전달받아 장부를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 유형임. 장부 정리 자체만으로는 업체가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급여 지급, 4대 보험 신고, 급여 신고 등도 대행하여 부가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 15% 정도의 어린이집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넷째는 개인 세무사나 세무사를 고용한 보험사들이 이 같은 영수증 정리부터 장부, 예결산 등 회계업무 대행을 담당하는 유형임. 개별 서비스 특성이 강하므로 비용도 상대적으로 고가임. 어린이집보다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유치원이 이러한 방식을 선호함.

3) 사업 규모

- 회계업체 비용은 어린이집 평균 연 20만원을 적용하여 총 비용을 산출하면 약 90억원 규모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연 평균 비용을 60만원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약 18억 6천만원 규모임(표 6 참조).

1) 프라임전자장부, 온앤온, 정보시스템, 보육나라, e보육컨설팅, 이편한시스템, 장부나라, 지앤비시스템, 아이와아이, e보육에스크로, 수전자장부, 키드애프, 이지그램, 대성지앤비솔루션, UR소프트, 소프트 21세기, 로프트, 키드키즈, 인하인슈, 제로위즈, 이륜소프트, 에듀키즈, 찬스원(무순) 등임.

〈표 6〉 어린이집 회계 지원 업체 연 평균 지출 비용

단위: 개소, %, 천원

| 구분 | 수 ¹⁾ | 비율 ²⁾ | 평균 ²⁾ | 총 비용 |
|--------|-----------------|------------------|------------------|-------------|
| 전체 | 42,527 | 82.5 | 248.6 | 8,959,803.4 |
| 국공립 | 2,203 | 55.0 | 137.9 | 167,086.5 |
| 사회복지법인 | 1,444 | 85.3 | 149.1 | 183,651.2 |
| 기타 법인 | 869 | 71.0 | 217.6 | 134,257.0 |
| 민간 | 14,440 | 89.4 | 303.4 | 3,916,699.8 |
| 가정 | 22,935 | 86.9 | 228.7 | 4,558,108.8 |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2)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어린이집 조사」 자료임.

- 어린이집 조사에서 회계 관련 업체에 지출하는 연 평균 비용은 248,600원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연평균 금액을 어린이집 규모와 회계 관련 업체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달리 상당수는 행정인력을 두고 회계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전문 회계인력을 두는 비율은 규모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30% 이상임(표 7 참조). 회계 관련 업체를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지출 단가는 최소 평균 월 5만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4,015개 사립 유치원에서 회계 관련 업체에 지출하는 연 평균 비용을 60만원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약 18억 6천만원 규모로 추정되었음.

〈표 7〉 유치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및 회계 관리 지원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 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 | | 회계 관리 지원 여부 | | | (수) |
|----------|------------------|------------|----------------|-------------|-------|-------|-------|
| | 유료 프로그램 사용 | 무료 프로그램 사용 | 회계 프로그램 사용 안 함 | 전문업체 지원 | 개인 지원 | 지원 없음 | |
| 전체 | 77.3 | 6.7 | 16.0 | 49.7 | 19.5 | 30.8 | (163) |
| 소재지 | | | | | | | |
| 대도시 | 75.8 | 12.1 | 12.1 | 43.5 | 22.6 | 33.9 | (66) |
| 중소도시 | 80.5 | 3.9 | 15.6 | 55.8 | 19.5 | 24.7 | (77) |
| 읍면지역 | 70.0 | - | 30.0 | 45.0 | 10.0 | 45.0 | (20) |
| 규모 | | | | | | | |
| 50명 이하 | 66.7 | - | 33.3 | 50.0 | 8.3 | 41.7 | (12) |
| 51~100명 | 76.7 | 6.7 | 16.7 | 51.7 | 10.3 | 37.9 | (30) |
| 101~150명 | 83.3 | 5.6 | 11.1 | 47.2 | 22.6 | 30.2 | (54) |
| 151~200명 | 85.3 | 8.8 | 5.9 | 57.6 | 24.2 | 18.2 | (34) |
| 201명 이상 | 63.6 | 9.1 | 27.3 | 43.8 | 21.9 | 34.4 | (3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유치원 조사」 자료임.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회계업무 지원 일자리는 일하는 전체 인력이 100여명인 업체와 50여명인 업체가 일부이고 그 이외는 대부분 인력 10여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업체임을 감안해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규모는 최소 300여개인 것으로 추정됨.

4) 전망

- 단·중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무회계 관리가 엄격해지면 회계 관련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어린이집부터 공적 회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들 업체는 회계 관련 교육이나 헬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와 연계한 새로운 아이টে을 개발할 것으로 추정됨.

다. 교재교구 관련 사업

1) 교재교구비 지출 규모

- 누리과정 등 영유아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로 교사용, 아동용, 보육교육 활동용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재교구가 개발 공급되고 쇼핑물 형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교재교구는 종류와 질적 수준의 폭이 매우 넓음. 교구는 대부분 수입함.
- 교재교구는 규격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가격 역시 제각각이며 정찰제가 아님.
 - 수입품은 20%, 이외는 30~40%를 낮추고 공급하고 있음. 일부 물품은 공장과 직거래 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30% 정도 낮춤.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가격에 물건을 맞춘다고 함.
-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보면 2013년 6월 한 달간 231억원이 교재교구비로 지출되었음(표 8 참조).
 -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출은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과활동경비를 평균 69만원으로 산정됨(우명숙 외, 2012).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출은 자료 부재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교재교구 사업자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보다 고가의 교재교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8〉 어린이집 월 교재교구비 지출 추정

단위: 천원(개소)

| 어린이집 유형 | 평균 | 표준편차 | 합계 | (수) |
|---------|-------|-------|------------|----------|
| 국공립 | 1,617 | 1,920 | 3,643,781 | (2,233) |
| 사회복지법인 | 1,541 | 1,883 | 2,219,139 | (1,432) |
| 법인단체 | 1,200 | 1,669 | 1,039,455 | (860) |
| 민간 | 919 | 1,522 | 13,497,183 | (14,394) |
| 직장 | 7,524 | 1,819 | 437,158 | (509) |
| 가정 | 95 | 227 | 2,244,237 | (22,941) |
| 부모협동 | 342 | 507 | 41,668 | (117) |
| 합계 | 532 | 1,215 | 23,123,451 | (42,487) |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5). 어린이집 재무회계. 내부자료.

2) 사업체 유형

□ 교재교구를 편의상 교구, 프로그램 활동에 소요되는 교재, 소모품으로서의 교재로 구분하였음.

- 교구는 영역에 공통으로 배치해 놓는 물품을 의미함. 특정 물품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음. 판매처마다 취급 물품이 다르므로, 한 군데에서 모든 교구를 구입하지는 않음. 구매자가 직접 가서 구입하거나 방문 판매자의 물품 구매, 인터넷 몰에서 저렴한 물품 구매 등임. 이러한 교구는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이 수입 상품임.
- 아동용 교재는 각 아동마다 갖게 되는 아동별 개인 교재로 주로 중간 판매자가 방문 판매함.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교재, 수 교재, 음악 활동집 등²⁾도 이에 해당됨.
- 교사용 교재는 교사들이 월간, 주간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활동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누리과정 자료 등의 교재가 있음. 교사용 교재교구 세트에 교수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 월간 전문지³⁾에서도 매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교구와 아동용 교사용 교구를 모두 포함한 토털 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체가 있음. 교수 지침서 등과 교구, 개인 교재 등이 포함된 월간용 교육자재를 판매함.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교사가 각종 교재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음.

2) 신한교재사 토리우리가 해당됨.

3) 꼬망새, 월간 유아 등임.

3) 사업체 개요

- 교재교구 관련 사업체도 특별활동 사업체와 같이 개수는 여러 개이지만 다수가 소기업으로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사업체는 많지 않음. 공개 가능한 기업 리포트가 있는 일부 업체의 사례를 알아보았음.
 - 교재교구 관련 사업체는 사업체마다 표방하는 업종은 다 다름.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문구용품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 등임. 다른 유형의 사업체로 등록하고 교재교구도 다루는 사례도 볼 수 있음.
 - 이들 사업체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일부 업체 매출은 70억원이 넘는 수준임. 2013년 현재 시장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사업체별로 인력 규모가 제시는 되어 있으나 이 인력이 모두 교재교구 사업 인력은 아니므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교구나 완구류는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미국,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교재교구들이 수입되고 있음. 롯데마트 완구 매장도 80% 이상이 수입품임.
 - 교재교구는 생산처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된 경우,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 제작하는 경우, 외국에서 개발되어 수입된 경우 등이고, 일부 외국 회사⁴⁾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음.
 - 2009년부터 완구류에 대한 관세청 기준 요건이 강화되어 수입 제품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됨.
 - 교재교구사와 독점 수입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임. 독점 수입 계약 시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음. 독점 상대 수입으로 판매 금액은 높게 책정됨.

4) 스텝, 구니카 등임.

4) 전망

- 교재교구 관련 사업은 전통적인 육아지원기관 지원 사업으로 필요성이 여전할 것이고, 부모나 기관운영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므로 교재교구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교재교구 시장에서는 지사, 매장,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체계가 흔들리는 양상임.
- 앞으로 창의, 인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접목시킨 부가가치가 높은 패키지형 교재교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와 오프라인 교재교구의 연계로 출판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원목이나 특수 재료를 기초로 하는 교구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계속될 전망이며, 독점 수입으로 가격 상승도 우려됨.
- 교재교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하여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 및 공급 사업체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저가 교재교구 공세로부터 운영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교재교구 선별 기준이나 인증 또는 등록제가 필요하고 교재교구 가격 정찰제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기타 지원 사업체

- 이외에도 청소대행, 쓰레기 수거, 방역대행은 CCTV 관리, 방범 및 안전보험, 타올 서비스, 정수기 렌탈, 공기청정기, 사무기기 렌탈, 수족관 관리, 비데 관리, 홈페이지 관리, 부모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음(표 9, 표 10 참조).
- 월 지출 비용은 어린이집 88억원, 유치원 22억 5천만원 규모로 추정됨.

〈표 9〉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기타 서비스 이용 비율

| 구분 | 단위: %(개소) | | | | | |
|----------|-----------|------|--------|-------|------|------|
| | 전체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민간 | 가정 |
| 부모 알림서비스 | 0.3 | 1.0 | - | - | 0.3 | - |
| 청소대행 | 2.2 | 4.0 | 2.9 | 3.2 | 1.9 | 1.3 |
| 방역대행 | 74.4 | 96.0 | 92.6 | 93.5 | 83.2 | 29.6 |

(표 9 계속)

| 구분 | 전체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민간 | 가정 |
|---------|-------|-------|--------|-------|-------|-------|
| 방법 및 안전 | 28.5 | 76.0 | 47.1 | 38.7 | 22.4 | - |
| 보험 | 96.9 | 97.0 | 97.1 | 96.8 | 97.2 | 95.9 |
| 타올 서비스 | 0.9 | 2.0 | 2.9 | 3.2 | 0.3 | - |
| 정수기 렌탈 | 82.6 | 89.0 | 88.2 | 93.5 | 85.7 | 67.1 |
| 공기청정기 | 31.9 | 38.0 | 29.4 | 35.5 | 32.6 | 27.0 |
| 사무기기 렌탈 | 66.9 | 78.0 | 77.9 | 74.2 | 71.7 | 42.8 |
| 홈페이지 관리 | 2.5 | 3.0 | 7.4 | 9.7 | 1.6 | 0.7 |
| 쓰레기 수거 | 3.6 | 11.0 | 1.5 | 6.5 | 2.8 | 0.7 |
| CCTV 관리 | 17.4 | 39.0 | 25.0 | 19.4 | 16.8 | 0.7 |
| 수족관 관리 | 10.5 | 17.0 | 7.4 | 9.7 | 9.9 | 9.2 |
| 비데 관리 | 1.9 | 8.0 | 1.5 | 3.2 | 0.9 | - |
| (수) | (673) | (100) | (68) | (31) | (322) | (15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어린이집 조사」 자료임.

<표 10> 지역 및 규모별 유치원 기타 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 전체 | 지역 규모 | | | 유치원 규모 | | | | |
|----------|-------|-------|-------|------|--------|---------|----------|-------------|---------|
| | | 대도시 | 중소 도시 | 읍면 | 50명 이하 | 51~100명 | 101~150명 | 151~200명 이상 | 201명 이상 |
| 부모알림서비스 | 7.4 | 3.0 | 9.1 | 15.0 | - | 6.7 | 11.1 | 2.9 | 9.1 |
| 청소대행 | 17.2 | 13.6 | 20.8 | 15.0 | - | 16.7 | 29.6 | 14.7 | 6.1 |
| 방역대행 | 88.3 | 89.4 | 85.7 | 95.0 | 66.7 | 90.0 | 92.6 | 91.2 | 84.8 |
| 방법 및 안전 | 54.0 | 48.5 | 54.5 | 70.0 | 8.3 | 43.3 | 59.3 | 58.8 | 66.7 |
| 보험 | 75.5 | 78.8 | 74.0 | 70.0 | 75.0 | 76.7 | 77.8 | 79.4 | 66.7 |
| 타올 서비스 | 11.7 | 9.1 | 13.0 | 15.0 | 16.7 | 16.7 | 7.4 | 17.6 | 6.1 |
| 정수기 렌탈 | 67.5 | 62.1 | 72.7 | 65.0 | 58.3 | 66.7 | 72.2 | 76.5 | 54.5 |
| 공기청정기 | 15.3 | 15.2 | 15.6 | 15.0 | 41.7 | 20.0 | 9.3 | 11.8 | 15.2 |
| 사무기기 렌탈 | 75.5 | 78.8 | 75.3 | 65.0 | 50.0 | 66.7 | 87.0 | 88.2 | 60.6 |
| 홈페이지 관리 | 30.1 | 22.7 | 35.1 | 35.0 | 16.7 | 30.0 | 25.9 | 38.2 | 33.3 |
| 쓰레기 수거 | 22.1 | 21.2 | 24.7 | 15.0 | 8.3 | 10.0 | 27.8 | 23.5 | 27.3 |
| 수족관 관리 | 1.2 | - | 2.6 | - | 8.3 | - | 1.9 | - | - |
| 소방 관리 | 3.7 | 1.5 | 6.5 | - | 8.3 | 3.3 | 1.9 | - | 9.1 |
| 엘리베이터 관리 | 3.7 | 1.5 | 6.5 | - | 8.3 | - | 3.7 | - | 9.1 |
| 키즈뱅킹 | 3.7 | 1.5 | 6.5 | - | 8.3 | 3.3 | 5.6 | - | 3.0 |
| 실내공기 관리 | 1.2 | 1.5 | 1.3 | - | 8.3 | - | 1.9 | - | - |
| 수목관리 | 1.8 | 1.5 | 1.3 | 5.0 | 8.3 | - | 1.9 | 2.9 | - |
| (수) | (163) | (66) | (77) | (20) | (12) | (30) | (54) | (34) | (3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지원기관 관련 사업체 조사: 유치원 조사」 자료임.

3. 향후 정책 추진 과제

가. 기본 방향

-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업체는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도·감독의 강화 등과 더불어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업체와의 계약이나 계약내용 이행 과정 등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함. 이 경우에 규제는 육아지원기관 중심으로 추진 되어야 함.
- 서비스의 대상이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나 기본 운영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육아지원기관은 물론, 아동 대상 서비스나 소요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 범주에 포함하여야 함.

나. 정책 과제

- 육아지원기관에 운영 기준 제시
 -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적정 과목 수, 과목당 주당 적절 빈도 및 1회당 시간 등 상세한 지침을 제시함.
 - 교재교구와 관련해서는 완전 시장 영역인 사업체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이 적절한 교재교구를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더 현실적임.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연령별 및 영역별로 적합하고 꼭 구비해야 하는 교재·교구 목록을 명시한 표준안 제시가 필요함. 유치원은 교구 설비 기준을 각 지방교육청마다 두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회계 관리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자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함.

□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와 각종 사업체와의 계약은 국가나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기준을 지켜야 함. 정부가 별도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도 적절함.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 사항, 계약 기간, 공급업체 기본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 포함하고 회의 결과 공개 방법으로 사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특별활동과 같은 수익자 부담 사업은 부모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직접 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포함한 각종 사안을 관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임.

□ 사업체 등록, 관계자 교육, 인증제 등 사업체에 대한 개입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관여와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사업체 등록을 검토함. 사업체 등록은 보육은 지방정부나 보육정보센터가 가장 적절하고 유아교육은 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함. 등록기관은 등록된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함.
- 등록 사업체 대표와 파견강사에게 사전 교육제도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강하도록 제도화하여 소정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 사업체 대표자 및 특별활동 강사 교육은 보육정보센터와 지방정부 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이 협동하여 담당하며, 분기별로 강의를 개설함. 특별활동 사업자 및 강사 대상 사전교육은 특별활동 운영기초와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건강·영양·안전 3개 영역 하루 정도로 구성함.
- 프로그램 인증제를 검토함. 업체의 자산, 운영 요건 등의 적합성과 프로그램의 영유아 발달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인증함. 이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함. 프로그램 인증 업무 기관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재인증 시 인증여부에 반영함. 또한 프로그램 교육비 및 연령별 교육시간을 산출하여 평가하고 표준화함.

- 회계 관련 사업체는 등록 형태로 관리를 하고 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회계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지원기관 운영자 회계 교육과 회계 시스템 헬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
- 교재교구 사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검토함. 특히 국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관련 아동 및 교사용 교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체나 교재교구 관련 사업체는 글로벌 창조경제 관점에서 해외 진출 촉진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함.

〈표 11〉 일반 사업체 관련 단계별 정책 방안

| 구분 | 정책 방안 | 세부 방안 |
|----|-------------------|---|
| 단기 | 계약 관련 공통 기준 마련 |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정 용역이나 서비스 공급 업체와 계약서 작성 의무화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 | 육아지원기관에 기준 제시 | -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 교재교구 구비 기준 제시 - 재무회계 사업체 활용 기준 제시 |
| | 사업체 관리 | - 재무회계 사업체 등록(또는 신고) 실시 |
| 중기 | 계약 관련 정보 공개 | - 다양한 지원 사업체와의 계약 관련 내용 공개 - 계약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 포함하고 회의록 공개 |
| | 계약을 부모단체가 담당 | - 수익자 부담 사업은 부모단체와 계약 추진 |
| 장기 | 사업체 관리 | - 특별활동, 교재교구 사업체 등록제 도입 - 재무회계 교육 및 헬퍼 기능 부여 - 프로그램 인증제 검토 |
| | 사업체 대외 경쟁력 지원 | - 특별활동, 교재교구 사업체 해외 진출 촉진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 통계.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5). 어린이집 재무회계. 내부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육아지원기관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우명숙·박은혜·김지하·김현철·김중환·김지만 외(2012).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Ⅲ. 육아지원 다각화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실태와 지원 강화 방안 | 이정원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강화 방안 | 유해미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 장혜진

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 이윤진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 이정림

아동패널 0-4세 영유아 성장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도남희

가구소득 격차에 따른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 이윤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 방안 | 양미선

Ⅲ. 육아지원 다각화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실태와 지원 강화 방안

이정원

요약

- 2011년 첫 자녀 출산 여성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비율이 전체 초산 중 약 10.7%를 차지함. 20년 전과 비교 시 이는 약 8.2배 증가한 수치임.
- 초산의 지연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고령출산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이들의 건강한 다자녀 출산을 가능케 할 지원이 필요함.
- 고령출산가족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출산이 이른 가족과 다른 특수한 욕구와 어려움을 드러냄. 즉, 조부모 등의 활용 가능한 양육지원인력이 부족하여 ‘기관’에의 의존도가 높고, 이에 자녀 양육을 위해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가장 크게 보이고 있음. 또한 부모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고령출산가족은 또한 임신·출산·양육 관련 이유로 경력 단절된 비율도 높게 나타남. 이들의 가장 큰 경력단절 이유는 ‘임신준비를 위해서(53.4%)’로 임신 전의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해 사회적 교육·보육 지원 시스템 강화와 고령출산가족의 은퇴 후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 대상의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이밖에 고령 취업모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난임휴가’ 도입을 제안함.

1. 문제 제기

가. 출산의 고령화 심화

고령 초산 비율 증가

○ 35세 이상 초산 급증

- 1990년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91.1%가 30세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30세 미만 초산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짐.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도 일반과제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지원 방안 연구-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토대로 함.

- 반면, 1990년에 1.3%에 불과하였던 35세 이상 모의 초산 비율은 2011년에는 전체 초산의 10.7%에 달하여 20년 전에 비해 약 8.2배 증가함.

〈표 1〉 모의 초산연령별 출생아 비율 추이

| 구분 | 단위: %(명) | | | |
|--------------|----------------|----------------|----------------|----------------|
| | 1990 | 2000 | 2005 | 2011 |
| 30세 미만 | 91.1 | 79.8 | 62.7 | 47.4 |
| 30~34세 | 7.6 | 16.6 | 31.2 | 41.9 |
| 35세 이상 | 1.3 | 3.6 | 6.1 | 10.7 |
| 총 출생아 수(첫째아) | 100.0(347,849) | 100.0(298,088) | 100.0(222,639) | 100.0(239,489) |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 이러한 고령출산의 증가는 자녀 양육에 있어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며, 국가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출산의 고령화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와 어려움

- 자녀 출산·양육 시기가 보편적인 생애주기보다 지연되는 ‘고령출산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양육지원인력 부족, 부모의 체력부담 증가,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 문제 등이 새로운 어려움으로 부상함.
- 조부모 등 양육지원인력 부족
 - 고령출산가족은 조모의 연령이 높아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낮고, 이들의 유병률 또한 높아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고령출산가족은 아버지의 연령과 취업경력도 높은 편으로 업무 부담과 책임이 큼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렵다는 비율이 초산연령이 낮았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즉, 고령출산가족은 조부모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어려운 집단이라는 특성을 보임.
- 이에 고령출산가족은 기관양육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높음.
 - 어머니 연령 만 35세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고령출산가족의 경우, 부모의 경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가장의 은퇴 이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
 - 이는 부모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후속출산을 포기하는 경제적 이유가 되며, 부모 은퇴 후 가계의 위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출산 고령화를 고려한 새로운 양육지원 정책 개발 필요
 -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상 애로사항을 고려한 양육지원 방안을 통해 출산을 하락 방지 필요

2. 고령출산가족의 증가 현황 및 이유

가. 고령출산의 증가

- 여성의 주요 출산 연령대 변화
 - 연령별 출산율 변화
 - 여성의 주요 출산 연령대는 2000년에는 25~29세 사이였으나 2012년에는 30~34세로 상향 이동함(통계청, 각년도).
 - 연령별 출산율은 2000년 35~39세 여성 인구 천명당 17.2명, 40~44세 여성 천명당 2.5명에서, 2012년에는 35~39세 여성 인구 천명당 38.9명, 40~44세 여성 천명당 4.9명으로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크게 증가하였음(통계청, 각년도).

〈표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0~2012)

단위: 명

| 연도 | 연령별 출산율 ¹⁾ | | | | | | | 합계 출산율 ²⁾ |
|------|-----------------------|--------|--------|--------|--------|--------|--------|----------------------|
|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
| 2000 | 2.5 | 38.8 | 149.6 | 83.5 | 17.2 | 2.5 | 0.2 | 1.47 |
| 2001 | 2.2 | 31.4 | 129.2 | 77.5 | 17.0 | 2.4 | 0.2 | 1.30 |
| 2002 | 2.6 | 26.5 | 110.9 | 74.5 | 16.6 | 2.4 | 0.2 | 1.17 |
| 2003 | 2.5 | 23.6 | 111.7 | 79.1 | 17.1 | 2.4 | 0.2 | 1.18 |
| 2004 | 2.3 | 20.6 | 104.5 | 83.2 | 18.2 | 2.4 | 0.2 | 1.15 |
| 2005 | 2.1 | 17.8 | 91.7 | 81.5 | 18.7 | 2.4 | 0.2 | 1.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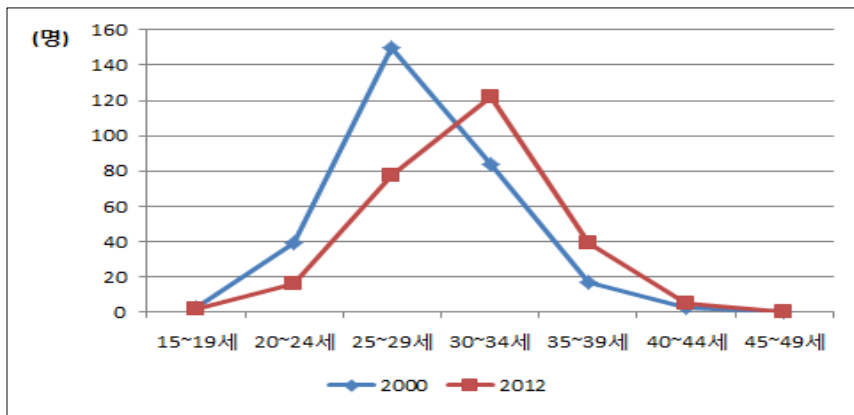
(표 2 계속)

| 연도 | 연령별 출산율 ¹⁾ | | | | | | | 합계 출산율 ²⁾ |
|------|-----------------------|--------|--------|--------|--------|--------|--------|----------------------|
|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
| 2006 | 2.2 | 17.6 | 89.4 | 89.4 | 21.2 | 2.6 | 0.2 | 1.12 |
| 2007 | 2.2 | 19.5 | 95.5 | 101.3 | 25.6 | 3.1 | 0.2 | 1.25 |
| 2008 | 1.7 | 18.2 | 85.6 | 101.5 | 26.5 | 3.2 | 0.2 | 1.19 |
| 2009 | 1.7 | 16.5 | 80.4 | 100.8 | 27.3 | 3.4 | 0.2 | 1.15 |
| 2010 | 1.8 | 16.5 | 79.7 | 112.4 | 32.6 | 4.1 | 0.2 | 1.23 |
| 2011 | 1.8 | 16.4 | 78.4 | 114.4 | 35.4 | 4.6 | 0.2 | 1.24 |
| 2012 | 1.7 | 16.0 | 77.4 | 121.9 | 38.9 | 4.9 | 0.2 | 1.30 |

주: 1)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출산아 수입.

2) 가입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입.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주: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출산아 수입.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그림 1]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2000, 2012)

□ 모의 평균 출산/평균 초산연령 변화

○ 평균 출산/초산연령의 지연

- 평균 출산연령과 첫 자녀 출산연령이 모두 매년 상승함. 1993년 평균 출산연령은 27.55세이며 평균 초산연령은 26.23세였으나, 2005년 평균 출산연령 30.22세로 30세 이상 출산이 보편화되고, 2010년에는 평균 초산연령도 30.10세로 첫 자녀의 출산이 30세 이후로 지연되는 양상을 보임.
- 법적 혼인 상태에서의 출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당연한 순서로 초산연령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임.

〈표 3〉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초산연령

| 구분 | 단위: 세 | | | | | |
|-------------|-------|-------|-------|-------|-------|-------|
| | 1993 | 1996 | 2000 | 2005 | 2010 | 2011 |
| 평균 출산연령 | 27.55 | 28.09 | 29.02 | 30.22 | 31.26 | 31.44 |
| 평균 초산연령 | 26.23 | 26.65 | 27.68 | 29.08 | 30.10 | 30.25 |
| 평균 초혼연령(아내) | 25.01 | 25.45 | 26.49 | 27.72 | 28.91 | 29.14 |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출생);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혼인).

나. 고령출산가족의 특성

1) 정의

의학적 기준에 의한 정의

-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 등 주로 의학계에서 ‘고령출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¹⁾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만 35세 초산’ 집단을 ‘고령출산가족’으로 조작적 정의함.

2) 유형

결혼 시기와 출산 시기에 의한 유형 구분

- 만 35세 이상에 첫 출산을 한 ‘고령출산가족’들도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에 따라 만 30세 미만 결혼적령기에 결혼하였으나 출산은 만 35세 이상에 첫 출산이 이루어진 집단, 만 30세 이상 만혼에 만 35세 이상 출산한 2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됨.
- 조사 대상 고령출산가족 300 사례 중 대부분(91.3%)은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은 ‘만혼, 고령출산집단’이었음.

3) 후속출산계획

낮은 출산의지

- 만 35세 이상에 첫 자녀를 출산한 고령출산집단은 둘째 자녀 이상의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18.0%로, 만 35세 미만 초산모의 후속출산계획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비해 현저히 낮았음.

1) 출처: 두산백과사전(www.doopedia.co.kr)

〈표 4〉 초산연령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 계획 있음 | 계획 없음 | 계 |
|----------|-------|-------|--------------|
| 전체 | 40.0 | 60.0 | 100.0(1,000) |
| 모초산연령 | | | |
| 만 35세 미만 | 49.4 | 50.6 | 100.0(700) |
| 만 35세 이상 | 18.0 | 82.0 | 100.0(300) |

- 고령출산가족은 '부모의 나이(고령)'에 대한 부담으로(42.3%) 추가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양육비 부담' 30.5%, '자녀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13.0%로 주된 출산 포기 이유였음. 반면 '이미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였다'라는 이유는 2.8%에 불과하여 1자녀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추가 자녀 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5〉 고령출산가족의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양육비 부담 때문에 | 체력 부담 때문에 |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 하여서 |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 또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 기타 | 계 |
|--------------|------------|-----------|---------------|-----------------|-------------|-----------------------------|-----|------------|
| 전체 | 30.5 | 13.0 | 7.3 | 2.8 | 42.3 | 1.2 | 2.8 | 100.0(246) |
| 모연령 | | | | | | | | |
| 만 35~40세 미만 | 35.1 | 14.9 | 9.5 | 2.7 | 33.1 | 2.0 | 2.7 | 100.0(148) |
| 만 40세 이상 | 23.5 | 10.2 | 4.1 | 3.1 | 56.1 | - | 3.1 | 100.0(98) |
| 가구소득 | | | | | | | | |
| 300만원 미만 | 39.1 | 19.6 | 2.2 | 2.2 | 34.8 | - | 2.2 | 100.0(46) |
| 300~400만원 미만 | 37.4 | 11.0 | 3.3 | 2.2 | 42.9 | - | 3.3 | 100.0(91) |
| 400~500만원 미만 | 24.1 | 13.8 | 6.9 | 5.2 | 43.1 | 3.4 | 3.4 | 100.0(58) |
| 500만원 이상 | 17.6 | 9.8 | 19.6 | 2.0 | 47.1 | 2.0 | 2.0 | 100.0(51) |
| 모 취업 여부 | | | | | | | | |
| 취업중 | 26.9 | 9.0 | 19.4 | 1.5 | 37.3 | 4.5 | 1.5 | 100.0(67) |
| 비취업 | 31.8 | 14.5 | 2.8 | 3.4 | 44.1 | - | 3.4 | 100.0(1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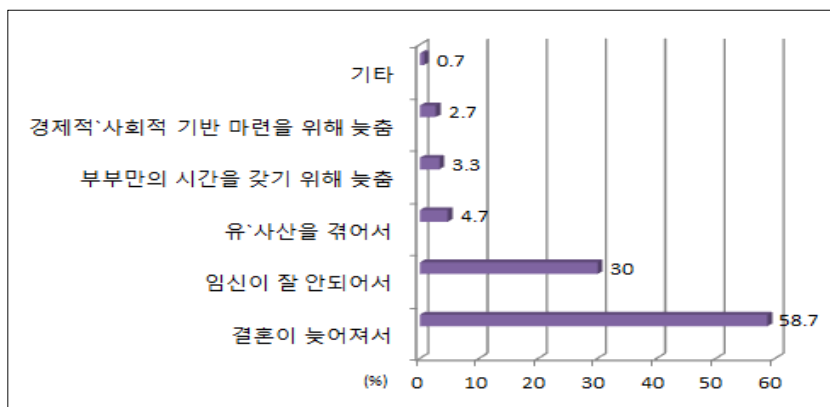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 고령출산가족 중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경우 '연령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어머니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아서'가 56.1%로 절대적인 추가 출산 포기의 이유였으며, 현재 연령이 만 35~40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음 (35.1%).
- 고령출산가족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도, 어머니가 취업중이 아니어도 추가 자녀 출산의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만혼 등으로 고령초산이 심화될 상황에서 출산을 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징임.

다. 고령출산의 이유

□ '만혼'과 '난임'이 주된 이유임.

- 고령출산가족 300사례 중 약 60%는 '결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도 늦어진 경우이며, 약 30%는 '임신이 잘 안되어' 출산이 늦어짐.
- '유·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4.7%이며,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신·출산을 미룬 경우는 6% 정도로 많지 않았음.
- 결혼이 출산의 관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늦은 결혼' 자체가 고령 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2] 35세 이상 고령 초산의 이유

□ 고령출산가족의 유형에 따른 고령출산 이유

- 만 30세 미만의 결혼적령기에 결혼했으나 자녀 출산은 만 35세 이후에 하게 된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집단'에서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 '유·사산을 겪어서'가 주된 고령출산 이유임. 이들은 곧 '난임부부'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임.
- 이들은 시험관 시술 등을 수차례 시행했음에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이 되어도 유·사산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 30세 이상에 이루어진 '만혼, 고령출산 집단'은 '결혼이 늦어져 출산이 늦어졌다'라는 것이 고령출산의 주된 이유이나(63.5%), '임신이 잘 안되어서'의 이유도 26.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
 - 결혼이 늦어져 임신 시도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임신'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생식 건강관리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득계층 간 고령출산의 이유 차이 존재

- '결혼이 늦어져 출산이 늦었다'라는 응답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르게 높으나,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는 '임신이 잘 안되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46.4%로 두드러지게 높으며,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유·사산을 겪어서'라는 비율이 1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6〉 만 35세 이상 고령 초산 이유

단위: %(명)

| 구분 | 결혼이 늦어져서 임신이 (결혼 후에는 곧 안되어서 임신함) | 임신이 잘 안되어서 | 유산·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짐 |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임신을 늦춤 | 경제적,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신을 늦춤 | 기타 | 계 |
|----------------|-------------------------------------|------------|-------------------|-----------------------|---------------------------|-----|------------|
| 전체 | 58.7 | 30.0 | 4.7 | 3.3 | 2.7 | 0.7 | 100.0(300) |
| 결혼&초산집단별 | | | | | | | |
| 결혼적령기 결혼, 고령출산 | 7.7 | 69.2 | 11.5 | 3.8 | 3.8 | 3.8 | 100.0(26) |
| 만혼, 고령출산 | 63.5 | 26.3 | 4.0 | 3.3 | 2.6 | 0.4 | 100.0(274) |

(표 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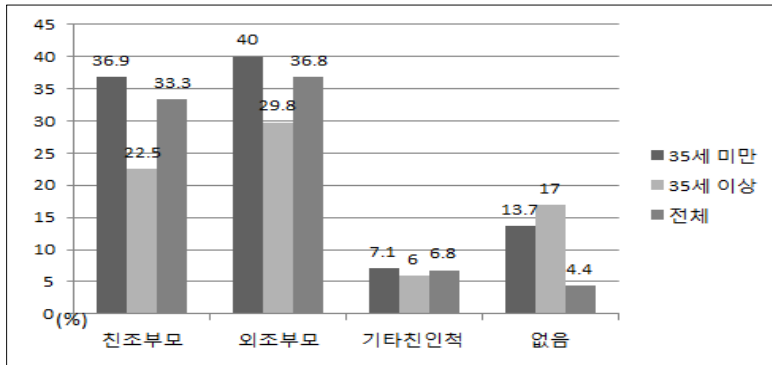
| 구분 | 결혼이 늦어져서 (결혼 후 에는 곧 임신했) | 임신이 잘 안되어서 | 유산· 사산을 겪어 출산이 늦어짐 |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임신을 늦춤 | 경제적, 사회적 기반 미련을 위해 임신을 늦춤 | 기타 | 계 |
|-----------|--------------------------------------|------------------|--------------------------------|-----------------------------------|---------------------------------------|-----|------------|
| 가구소득 | | | | | | | |
| 300만원 미만 | 41.1 | 46.4 | 3.6 | 3.6 | 5.4 | - | 100.0(56) |
| 300~400만원 | 66.7 | 26.1 | 2.7 | 2.7 | 0.9 | 0.9 | 100.0(111) |
| 400~500만원 | 57.5 | 28.8 | 4.1 | 2.7 | 5.5 | 1.4 | 100.0(73) |
| 500만원 이상 | 61.7 | 23.3 | 10.0 | 5.0 | - | - | 100.0(60) |

3.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실태와 요구

가.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실태

조부모 등 전통적 양육지원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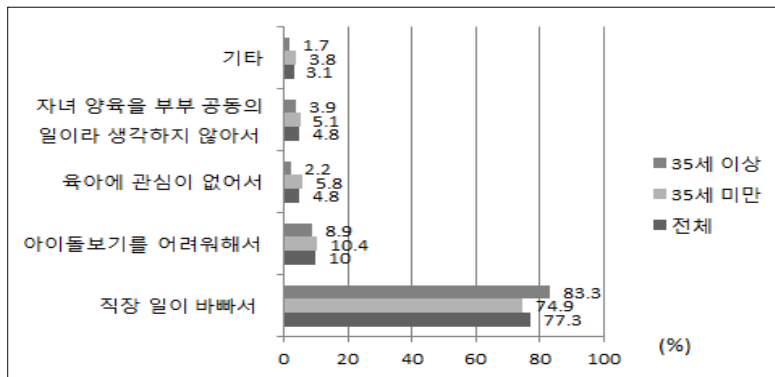
- 고령출산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된 사회 관계망을 분석 시, 조모 등 전통적인 양육지원 자원으로부터의 조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조부모의 연령과 유병률은 양육지원인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첫 출산 당시 조모들이 법적으로 분류되는 '노인'인 만 65세 이상인 경우가 만 35세 미만 초산 가족에서는 친조모 35.3%, 외조모 28.7%였음에 반하여, 만 35세 이상 고령출산가족에서는 친조모 57.2%, 외조모 51.3%로 나타남.
 - 조모의 유병률 또한 만 35세 미만 초산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여, 연령과 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조모로부터의 양육지원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고령출산가족은 기타 양육지원자원의 취약성을 보임.
 - 고령출산가족은 부부 외에 자녀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경우가 83.7%로, 만 35세 미만 출산한 가족의 77.3%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 고령초산 여부별 위급상황 시 자녀양육 지원 인력

○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부족함

- 고령출산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취업경력이 높아 업무 부담과 책임이 커므로 인해 양육 참여가 어렵다는 비율이 초산연령이 낮았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그림 4 참조).



[그림 4] 배우자(남편)의 양육 참여가 부족한 이유-1순위

□ 높은 기관 의존도

- 취업중인 고령초산모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은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취업모의 고령출산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

| 구분 | 이용 중임 ^{주)} | 이용하지 않음 | 계 | 단위: %(명) | |
|----------|---------------------|---------|------------|----------|------|
| | | | | χ^2 | (df) |
| 전체 | 68.7 | 31.3 | 100.0(259) | | |
| 모초산연령 | | | | | |
| 만 35세 미만 | 66.3 | 33.7 | 100.0(181) | .243(1) | |
| 만 35세 이상 | 74.4 | 25.6 | 100.0(78) | | |

주: 기관 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영유아 대상 학원을 포함해 1일 3시간 정기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함.

- 향후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조부모 등 친인척을 정기적·긴급 양육지원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과 아이돌보미 등 정기적·부정기적(긴급) 양육 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적인 양육지원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함께 부부 중심의 육아가 가능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주변의 지원 인력에서의 의존을 떠나 부부 중심의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출산·양육문제로 인한 취업·경력유지의 취약성
- 고령출산모의 취업·경력유지의 취약성 존재
 - 초산연령에 따른 취업률, 과거 정규직 취업경험에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 취업중인 경우 고령초산모의 상용직 비율은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8〉 고령초산여부에 따른 취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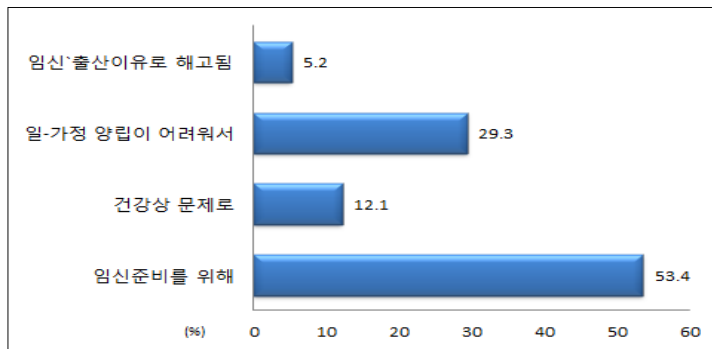
| 구분 | 취업상태 | | | 정규직 취업률 | | 결혼 후 경력 | |
|----------|---------------------|---------------------|----------------------|-------------------|-------------------|----------------------|--|
| | 취업 경험률 (n=1,000) | 현재 취업률 (n=1,000) | 현재 상용직 비율 (n=259) | 결혼 전 (n=1,000) | 결혼당시 (n=1,000) | 결혼 후 총 경력 (n=792) | 취업 경험자 중 경력단절 경험률 ^{주)} (n=794) |
| 전체 | 79.4 | 25.9 | 79.2 | 78.5 | 49.6 | 24.6개월 | 22.3 |
| 모초산연령 | | | | | | | |
| 만 35세 미만 | 78.9 | 25.9 | 80.1 | 76.9 | 58.4 | 22.2 | 21.6 |
| 만 35세 이상 | 80.7 | 26.0 | 76.9 | 80.6 | 47.7 | 29.9 | 24.0 |

주: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의미함.

- 고령출산모 집단은 임신·출산·양육 관련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만 35세 미만 초산모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고령초산모의 주요 경력단절 시기 및 이유

-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 경력단절의 시기와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는 고령출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만 35세 미만 초산모가 가장 많이 경력이 단절된 시기는 '첫째 임신 중'이었으나(58.8%), 만 35세 이상 고령초산모는 '첫째 임신 전'으로 경력단절경험이 있는 고령초산모 중 65.5%가 첫째 임신 전에 취업을 중단함. 즉, 취업모의 연령이 높으면 임신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큼이 확연히 드러남.
- 이들은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임신을 하기 위한 경력단절을 경험함으로써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만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고령초산모의 주된 경력단절 이유는 '임신준비를 위해'로 53.4%가 이에 응답함. 즉, 고령초산모는 '임신의 어려움'이 크며, 이것이 고령의 취업모에게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그림 5 참조).



[그림 5] 고령초산모의 경력단절 이유

- 이에 결혼이 늦은 취업여성에게 있어 자녀 출산 후의 '일-가정(자녀양육) 양립' 뿐 아니라 임신 전의 '일-가정(임신·출산 준비)의 양립'이 가능한 취업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고령출산가족의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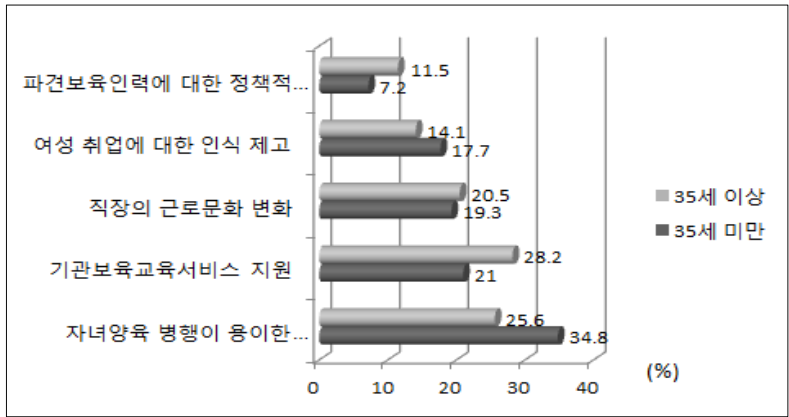
□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지원 요구

-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는 초산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시간제 정규직 등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 용이한 일자리의 확대' 32.0%, 기관교육·보육서비스 지원 23.2%, 정시 퇴근과 가족친화적인 인식 등 직장 근로문화의 변화 19.7%,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 변화 16.6% 순으로 응답됨.
 - 고령출산가족의 경우는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28.2%).
 - 취업중인 고령초산모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은 만 35세 미만 초산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양육지원시스템 강화 요구
 - 출산 연령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을 정기적·긴급 양육지원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임.
 -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과 아이돌보미 등 정기적·부정기적(긴급) 양육 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점차 출산 연령이 높아질 취업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기관'과 '믿을 수 있는 과견인력'이 가장 중요한 양육지원 자원이 될 수 있음.

〈표 9〉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단위: %(명)

| 구분 | 자녀 양육 병행이 용이한 일자리 확대 | 기관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 직장 근로 문화 변화 |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 과견 보육 인력 지원 | 계 | $\chi^2(df)$ |
|---------|----------------------------------|------------------------------|----------------------|-----------------------------|----------------------|------------|--------------|
| 전체 | 32.0 | 23.2 | 19.7 | 16.6 | 8.5 | 100.0(259) | |
| 모초산연령 | | | | | | | |
| 만35세 미만 | 34.8 | 21.0 | 19.3 | 17.7 | 7.2 | 100.0(181) | 4.328(4) |
| 만35세 이상 | 25.6 | 28.2 | 20.5 | 14.1 | 11.5 | 100.0(78) | |



[그림 6]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부부 중심의 육아 문화의 조성 요구
 - 주변의 인력에의 의존을 떠나 부부 중심의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 요구
 - 경력단절 경험자가 이용하였다면 경력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를 초산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초산연령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초산연령대에 따라서는 만 30세 미만에 초산한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 만 35세 이상에 초산한 경우는 난임(불임) 휴가와 유연근무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령출산모는 ‘난임’으로 인해 첫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이미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높음. 그로 인해, 임신을 하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불임) 휴가’의 사용을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남.
 - 근무시간과 형태, 장소 등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만 35세 이상 초산모에게서 특히 높게 응답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표 10〉 초산연령대별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제도-1순위

단위: %, 명

| 구분 | 전체 | 모초산연령 | | | $\chi^2(df)$ |
|-------------------|------|--------|-------------------|--------|--------------|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35세 미만 | 35세 이상 | |
| 유연 근무제 이용 | 31.1 | 28.8 | 31.7 | 32.8 | 29.563(22) |
| 귀하의 육아휴직 이용 | 26.6 | 20.3 | 36.7 | 22.4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13.0 | 22.0 | 8.3 | 8.6 | |
| 직장 어린이집 이용 | 7.3 | 11.9 | 5.0 | 5.2 | |
| 난임 (불임) 휴가 이용 | 6.8 | 1.7 | 6.7 | 12.1 | |
| 유·사산 휴가 이용 | 4.0 | 6.8 | - | 5.2 | |
| 가족간호 휴가제 이용 | 2.8 | - | 3.3 | 5.2 | |
| 배우자의 육아휴직 | 2.3 | 3.4 | 3.3 | - | |
| 유급 태아 검진시간 이용 | 2.3 | 3.4 | 1.7 | 1.7 | |
| 배우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1.7 | 1.7 | 1.7 | 1.7 | |
| 아이 돌보미 이용 | 1.7 | - | 1.7 | 3.4 | |
| 유치원 이용 | 0.6 | - | - | 1.7 | |
| 사례 수 | 177 | 59 | 60 | 58 | |

4.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및 경력유지 지원 방안

가. 양육지원 방안

1) 양질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교육기관이 확대되어야 함.
- 고령출산모의 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
 - 기관 이외의 양육 지원 자원이 취약한 고령출산모의 기관 이용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나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연령의 어머니에 부여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입소우선순위 사항에 대한 보완 항목으로 사용하여 동일 순위 시 연령에 따라 부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임.

2) 부부 중심의 양육 활성화

- 고령출산가족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의 자녀양육 참여와 협조가 더욱 필요함.
 - 고령 출산이 심화될수록 자녀 양육에 조부모 등의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환아의 간호, 병원 진료 동행, 부모 상담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지 기관보육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 '양육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를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움.
-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활성화
 - 다양한 자녀 양육의 욕구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 이용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임.
- 부부 모두의 양육 참여가 가능한 근로문화 조성
 - 정시 퇴근 등 부부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3) 고령출산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고령출산가족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은퇴 후까지 지속될 수 있음.
 - 은퇴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경감 방안이 필요함.
-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 기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부모가 은퇴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원
 -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의무교육 기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고령출산 가구의 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을 부모가 은퇴한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출산이 늦은 가구의 양육비, 특히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함.
- 아동수당 도입
 -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한 수당 도입
 -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유자녀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대표적인 제도임(최성은, 2010:318).

- 기준이 되는 아동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 또는 최소노동연령을 기준으로 함(유해미, 2010:10).
- 급여 지급 방식은 소득에 연계 혹은 소득에 무관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유해미, 2010:10~13).
- 가족주기의 지연으로 인해 부모의 은퇴 후에도 적절한 양육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 아동이 점차 증가할 수 있음. 이에 해외 사례에 준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도입 방안을 제안함(표 11 참조).

〈표 11〉 아동수당(안)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 취학 이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연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금을 소득 산정 시 포함) |
| 수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 자녀당 지급 |
| 급여 수준 | 10~20만원 | 해외사례(영국, 독일) 등에 준하며, 현재 '양육수당' 지급액 수준에 준하도록 설계 |
| 양육수당과의 중복 가능성 | 불가 | 미취학 연령대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교육비 지원' 중 선택, 취학 이후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고령출산 가구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저소득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음.
- 만 18세에 도달 전인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해외 사례 및 현재 미취학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수준을 감안해 월 10~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함이 적절할 것임.
- 미취학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 시 '보육·교육비 지원'과 기관 미이용 시 '양육수당' 중 선택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은 실질적으로 취학연령 이후의 아동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의 양육비 지원 방안으로 도입하도록 제안함.

나. 고령 취업모 경력유지 지원 방안: 난임휴가 도입

□ 난임으로 인한 취업모 경력단절 방지

- 고령출산모는 임신 전에 '난임'으로 인해 경력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불임'으로 간주되는 임신 계획 후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은 취업모를 위해 '난임 휴가' 도입을 제안함.

〈표 12〉 난임휴가(안)

| 구분 | 내용 | 비고 |
|-------|---|--|
| 필요성 | 취업중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의 형평성 제고 | · 자녀 임신·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기회에서 배제됨. |
| 신청대상 | 적극적 ¹⁾ 임신 시도 후 1년이 지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 법률혼, 사실혼 불문 ·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시술(시험관)의 필요성, 혹은 임신을 위한 정밀 검진과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혹은 의료기관 방문 기록(1년 이상의 임신 시도 증빙)제출 |
| 사용 기간 | 기본 6개월 사용 후 사유에 따라 1년까지 연장 가능 | · 6개월 사용 후 임신이 안 된 경우, 모연령 35세 이상과 연령을 불문하고 3년 이상 임신 시도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 급여 | 유급 | · 최초 6개월 유급(통상임금) |
| 권리/의무 | 휴가 사용 중 임신한 경우 잔여 기간 사용 가능 | - |

주: 1)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 등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 신청 대상은 법률혼·사실혼을 불문하고 자녀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적극적 임신 시도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하며, 의료기관의 관련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방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난임 휴가의 오용을 방지함.
- 사용 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모연령 35세 이상이거나 난임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임신의 어려움이 큰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급여는 산전후 휴가나 유·사산 휴가에 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의 선이용 형태로 활용가능한 제도로 도입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 83, 국회입법조사처.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3).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 지원 방안 연구-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최성은(2010). 아동수당 재원조달의 국제비교와 재원조달 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6(2), 317-341.
- 통계청(2000~2012). 인구동향조사.

Ⅲ. 육아지원 다각화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강화 방안

유해미

요약

-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부담은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수행에는 자신감을 보이거나 양육 기술이나 양육관련 정보는 미흡하다고 인식하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실시 대상을 살펴보면, 아버지 교육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업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사회 순으로 높은 실시율을 보이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지역사회, 어린이집/유치원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체험프로그램 이용율이 33.2%로 가장 높고, 육아정보제공서비스 이용 횟수가 평균 약 4.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강화하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며, 아버지 교육은 기업 위주로 최소 3회 이상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지역내 서비스 기관 위주로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4주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1. 연구 배경 및 방법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현상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대한민국 정부, 2011:27).
-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4분으로 여성의 55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22~24).

- 최근 서울시의 기혼남성 대상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수행하는 육아활동은 주로 '놀이주기'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58).
- 201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6만 7,323명, 남성이 2,29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3.3%로 10년 전인 2003년(1.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4:29).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 시 어려움 및 스트레스 대처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반면,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 기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인식하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106).
- 일·가정 양립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 참여에 주목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는 저출산 대응 이외에도 남성의 부모권 보장, 아동 발달, 부부 관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
- 이 연구에서는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세부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봄.
- 설문조사
 -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아버지 1,083명을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를 파악함.
 - 서비스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08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50명을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함.

1) 이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도 일반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유해미·정주영·양유진)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2.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문화 형성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남성의 자녀 돌봄 확대 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아버지 육아 관련 각종 홍보 및 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봄.

가.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상 돌봄지원 사업

-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강조하는데, 제1차 계획(2006~2010)에서는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제2차 계획(2011~2015)에서는 가족 가치의 확산 차원에서 추진됨.
 - 제2차 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 가치와 가족 위기 예방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 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서 부각한 점으로, 아버지 가족생활 참여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함.
 - 2006년과 2007년에는 아버지 교육이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남성 대상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32).
 - 2010년부터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패밀리데이, 2011년부터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프로그램이 정착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19).
 - 각 세부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확대·실시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일·가정 양립 중요성, 가족친화제도 등이며, 교육 시간은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됨.

- 2012년 기준 가족교육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총 10,225회기(참석 인원 367,105명)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남성 대상 교육은 총 2,123회(참석 인원 59,655명)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65).²⁾
 - 아버지 교육 사업은 전국 총 147개소 센터 중 91.2%인 134개소에서 실시하였음.

□ 아버지 - 자녀가 함께 하는 돌봄 프로그램

- 아버지 - 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은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에 따라 해당 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2년 기준 104개소에서 실시됨.
- 사업 대상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 자녀와 아버지이며, 자녀 돌봄과 품앗이, 상담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토요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105).

□ 가족 참여 프로그램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중 남성의 참여가 가능한 가족 단위의 문화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 여가 문화 활동, 축제 및 행사 등을 들 수 있음.
- 참여 대상은 지역내 모든 가족이며,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됨(여성가족부, 2013b:32).

나. 보건복지부의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사업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등

-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5월에 가정의 날을 맞아 남성의 자연스런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아빠 놀이왕 대회'를 개최함(보건복지가족부, 2008:1~2).

2)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3,483회,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2,127회, 남성 대상 교육 2,123회, 자녀 대상 교육 940회로 나타나며, 전체 참여 인원 중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106,781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57,915명, 자녀 대상 교육 90,698명, 남성 대상 교육 59,655명의 순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65).

- 2011년에는 남성의 가정내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비 또는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함(보건복지부, 2011a:1).
 - 2011년 8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아빠들이 동참하는 육아 참여 비법을 공개하여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유도함(보건복지부, 2011c:1).
 - 같은 해 11월과 12월 양일에 걸쳐 임신·출산 문화강좌 ‘마더하세요’를 개최함(보건복지부, 2011d:1).
 - 2011년 9월에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함(보건복지부, 2011b:1).
 - 2012년 3월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더하세요’ 블로그 내용을 자료집(100인의 아빠단)으로 발간함(보건복지부, 2012:1~3).
 - 2013년에는 민간 기업³⁾의 후원으로 총 10회에 걸쳐 800가족을 무료로 초청하여 ‘웃는 아빠 캠프’ 개최 계획을 수립함(보건복지부, 2013a:1).
 - 같은 해 4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예비 엄마와 아빠가 마음을 더하는 임신·출산 주말 강좌’를 개최함(보건복지부, 2013b:1).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영유아 대상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정보 및 상담, 놀이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됨(보건복지부, 2014:423).
 - 이에 따라 향후 영유아를 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주목할 만함.

3.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요구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를 수행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기준 기관별 사업 운영 현황과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음.

3) 기업은행, 한국감정원, 블랙야크 등(보건복지부, 2013a:1)

가. 서비스 기관별 실시 현황

□ 전반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4.4%가 아버지 교육을, 64.8%가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히 28%였고, 48%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아버지 대상 양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 여부

단위: %(명)

| 구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아버지 교육 | 94.4 | 28.0 |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 64.8 | 28.0 |
| 기타 | 14.8 | 14.0 |
| 추진 중인 사업 없음 | 1.9 | 48.0 |
| 사례수 | (108) | (50) |

□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실시 현황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57.8%, 기업체 32.8% 순으로 조사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6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54.9%로 나타난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7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64.3% 순이며, 특히 기업체의 실시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임.
- 대상별 교육시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약 28.6시간, 어린이집/유치원 약 19.8시간인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시간은 각각 2.6시간과 3.1시간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버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됨.

〈표 2〉 대상별 아버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 시간

| 구분 | 실시율 | (수) | 총 참석 인원 (표준편차) | 총 회차 (표준편차) | 교육시간 (표준편차) | |
|--------------|----------|------|-------------------|----------------|----------------|--------------|
| 전체 | 32.8 | (38) | 126.6(227.74) | 5.0(13.27) | 5.7(19.16) | |
| 기업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 36.3 | (37) | 129.5(230.16) | 5.1(13.43) | 5.9(19.41)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7.1 | (1) | 1.0 | 1.0 | 1.0 |
| 어린이집 /유치원 | 전체 | 57.8 | (67) | 111.4(149.31) | 4.4(4.21) | 17.0(59.55)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54.9 | (56) | 116.2(157.48) | 4.7(4.41) | 19.8(64.86)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78.6 | (11) | 86.8(99.68) | 3.0(2.79) | 3.1(3.65) |
| 지역사회 | 전체 | 65.5 | (76) | 89.2(124.51) | 4.7(5.83) | 25.5(116.79)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65.7 | (67) | 89.1(128.01) | 5.0(6.10) | 28.6(124.17)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64.3 | (9) | 90.0(100.75) | 2.3(2.29) | 2.6(1.51) |

주: 2013년 7월말 기준임.

총 참석 인원과 총 회차는 기관 당 평균이고, 교육시간은 1인당 평균임.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실시율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7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35.7%로 나타남.
- 기업체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시율도 21.4%에 불과함.

〈표 3〉 대상별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 시간

| 구분 | 실시율 | (수) | 총 참석 인원 (표준편차) | 총 회차 (표준편차) | 참여 시간 (표준편차) | |
|--------------|----------|------|-------------------|----------------|-----------------|--------------|
| 전체 | 19.0 | (16) | 127.3(290.35) | 3.8(4.85) | 2.3(2.65) | |
| 기업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 21.4 | (15) | 135.1(298.51) | 2.7(2.26) | 2.3(2.74)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7.1 | (1) | 20.0 | 1.0 | 2.0 |
| 어린이집 /유치원 | 전체 | 35.7 | (30) | 88.3(82.08) | 5.8(10.73) | 12.6(38.26)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37.1 | (26) | 97.9(83.85) | 4.2(3.30) | 13.7(41.06)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28.6 | (4) | 25.8(22.78) | 16.0(29.34) | 5.5(4.76) |
| 지역사회 | 전체 | 73.8 | (62) | 118.8(111.88) | 7.1(11.35) | 26.2(121.75)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75.7 | (53) | 122.5(13.16) | 7.7(12.09) | 30.0(131.46)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64.3 | (9) | 96.7(107.54) | 3.7(4.06) | 3.6(4.22) |

주: 2013년 7월말 기준임.

총 참석 인원과 총 회차는 기관당 평균이고, 교육 시간은 1인당 평균임.

나.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1)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에서 1순위 기준으로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이 각각 42.5%와 45.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이 64.2%를 나타내어 기업체 섭외 시 고충을 알 수 있음.

〈표 4〉 아버지 교육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다양한 자녀 연령으로 타겟 선정 어려움 | 3.8 | 12.3 | 4.5 | 13.6 |
|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 | 34.0 | 64.2 | 9.1 | 9.1 |
|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 부족 | 7.5 | 28.3 | 4.5 | 18.2 |
|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부족 | 2.8 | 6.6 | 4.5 | 4.5 |
| 사업 예산 부족 | 6.6 | 8.5 | 18.2 | 27.3 |
| 담당 인력 부족 | 1.9 | 9.5 | 0.0 | 4.5 |
| 사업 운영시간을 확보 어려움 | 0.9 | 7.5 | 13.6 | 40.9 |
| 사업 운영 지침 미비 | - | 0.0 | - | 4.5 |
|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 | 42.5 | 62.3 | 45.5 | 77.3 |
| 기타 | - | 0.9 | - | 0.0 |
| 계(수) | 100.0(106) | - | 100.0(22) | - |

- 아버지 교육 사업의 개선 과제로는 양 기관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업 홍보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정부 지원체계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와 사업 홍보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4%와 29.2%로 가장 높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정부 지원체계의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3%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8.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버지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을 말해줌.

〈표 5〉 아버지 교육 사업 개선 과제

단위: %(명)

| 구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 26.4 | 45.3 | 27.3 | 31.8 |
| 사업 홍보 강화 | 29.2 | 50.0 | 9.1 | 18.2 |
| 기관 필수(기본)사업 지정 | 13.2 | 20.3 | 13.6 | 36.4 |
| 프로그램 내실화 | 3.8 | 12.5 | 18.2 | 31.8 |
| 기업주의 인식 전환 | 12.3 | 28.9 | 4.5 | 13.6 |
|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 10.4 | 36.7 | 22.7 | 54.5 |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0.0 | 0.0 | 4.5 | 9.1 |
| 사업 실무진 교육 강화 | 3.8 | 5.7 | 0.0 | 4.5 |
| 기타 | 0.9 | 1.9 | 0.0 | 0.0 |
| 계(수) | 100.0(106) | - | 100.0(22) | - |

2)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아버지 교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 기관 모두에서 남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가운데, 아버지 교육에 비해 주요 타겟 선정의 어려움과 담당 인력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업 대상 기업체의 모집 어려움에 이어 사업 예산 부족이 12.3%로 나타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운영 시간 부족 18.2%, 사업 예산 부족 13.6% 순임.

〈표 6〉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다양한 자녀 연령으로 타겟 선정 어려움 | 6.6 | 20.8 | 13.6 | 18.2 |
|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 | 17.9 | 30.2 | 0.0 | 0.0 |
|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 부족 | 3.8 | 17.0 | 4.5 | 9.1 |
|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부족 | 3.8 | 12.3 | 4.5 | 13.6 |
| 사업 예산 부족 | 12.3 | 22.6 | 13.6 | 27.3 |
| 담당 인력 부족 | 6.6 | 14.2 | 4.5 | 13.6 |
| 사업 운영시간 확보 어려움 | 6.6 | 23.6 | 18.2 | 50.0 |
| 사업 운영 지침 미비 | 0.9 | 0.9 | 0.0 | 0.0 |
|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 | 41.5 | 56.6 | 40.9 | 68.2 |
| 기타 | - | 1.9 | - | 0.0 |
| 계(수) | 100.0(106) | - | 100.0(22) | - |

〈표 7〉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개선 과제

단위: %(명)

| 구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 20.8 | 39.6 | 18.2 | 18.2 |
| 사업 홍보 강화 | 34.9 | 62.3 | 9.1 | 13.6 |
| 기관 필수(기본)사업 지정 | 7.5 | 14.2 | 9.1 | 27.3 |
| 프로그램 내실화 | 6.6 | 13.2 | 22.7 | 54.5 |
| 기업주의 인식 전환 | 11.3 | 25.5 | 0.0 | 0.0 |
|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 12.3 | 33.0 | 31.8 | 68.2 |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1.9 | 3.8 | 9.1 | 13.6 |
| 사업 실무진 교육 강화 | 2.8 | 6.6 | 0.0 | 4.5 |
| 기타 | 1.9 | 1.9 | 0.0 | 0.0 |
| 계(수) | 100.0(106) | - | 100.0(22) | - |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의 개선 과제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업 홍보 강화 34.9%,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20.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31.8%, 프로그램 내실화 22.7% 순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그 밖에도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양 기관에서 약 18~21%의 응답율을 나타내어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됨.

4.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수요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의향, 이용 경험 그리고 적정 시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이용 경험 여부 및 이용 횟수

- 각 프로그램별 이용율을 살펴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이 3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아정보 제공 28.0%, 아버지 교육 22.8% 순이며, 육아 상담은 13.8%로 저조한 수준을 보임.
- 평균 이용 횟수는 육아정보 제공 약 4.5회, 가족체험프로그램 약 3.6회, 아버지 교육과 육아상담이 공히 약 3회를 나타냄.

-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별 차이를 보임.
 - 가족체험프로그램의 이용율은 3세아 이상에서 4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아버지 교육은 2세아와 3세아 이상에서 각각 28.1%와 26.4%를 나타냄.

〈표 8〉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용 횟수

단위: %(명), 회

| 구분 | 이용 경험 | | 이용 횟수 | | | | | | |
|----------|-------|--------------|-------|------|------|-------|------|------------|--|
| | 있음 | 전체(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평균 | 계(수) | |
| 가족체험프로그램 | 33.2 | 100.0(1,083) | 33.1 | 25.8 | 17.8 | 23.3 | 3.65 | 100.0(360) | |
| 아버지 교육 | 22.8 | 100.0(1,083) | 47.8 | 29.2 | 9.3 | 13.8 | 3.03 | 100.0(247) | |
| 육아상담 | 13.8 | 100.0(1,083) | 45.6 | 24.8 | 11.4 | 18.1 | 3.03 | 100.0(149) | |
| 육아정보 제공 | 28.0 | 100.0(1,083) | 39.1 | 20.5 | 12.9 | 27.5 | 4.53 | 100.0(302) | |

- 위의 프로그램 이용 실태에 의하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1세 이하 자녀부터 활발히 이용되며, 아버지 교육은 자녀가 2세 이후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 부모와 출산 직후 아버지 대상 교육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이용 장소 및 만족도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를 살펴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과 아버지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각각 41.9%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사회복지관 16.9%, 육아종합지원센터 13.5%, 주민자치센터 12.9% 순이며,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18.6%, 사회복지관 16.2% 순으로 나타남.
-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기관별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6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78.1%인 반면,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3.28점에 그침.
-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가족체험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평균 3.84점(만점 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이외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임.

〈표 9〉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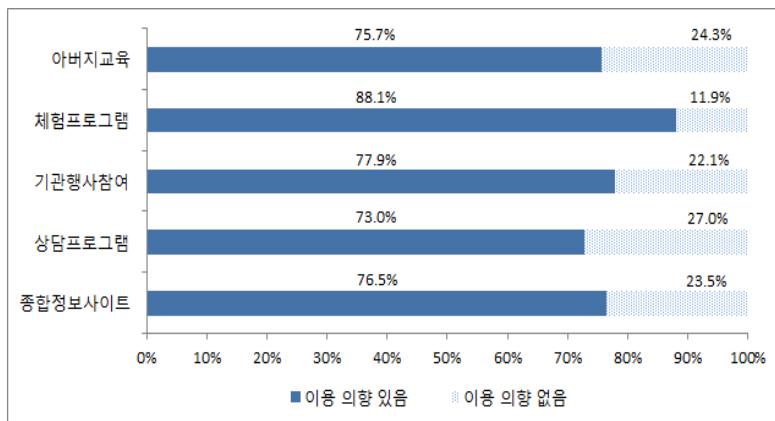
| 구분 | 이용 장소 | | | | | | (수) | 이용 만족도 | | | | | 평균 (수) |
|--------|----------------|----------------------|---------------|----------------|----------------------|--------|-------|----------|------|------|---------|---------------|------------|
| | 보육 정보 센터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 사회 복지 관 | 주민 자치 센터 | 어린 이집 /유 치원 | 기 타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 만족 | 매우 불 만족 | |
| 체험프로그램 | 13.5 | 9.0 | 16.9 | 12.9 | 41.9 | 5.9 | (356) | 9.7 | 48.3 | 36.1 | 4.7 | 1.1 | 3.61 (360) |
| 아버지 교육 | 10.5 | 12.6 | 16.2 | 18.6 | 32.4 | 9.7 | (247) | 13.4 | 47.0 | 34.0 | 5.3 | 0.4 | 3.68 (247) |
| 육아상담 | 21.5 | 18.8 | 20.8 | 17.5 | 19.5 | 2.0 | (149) | 6.7 | 36.9 | 47.0 | 8.1 | 1.3 | 3.40 (149) |
| 육아정보제공 | 25.5 | 10.6 | 12.9 | 19.2 | 24.2 | 7.6 | (303) | 5.3 | 40.3 | 46.9 | 6.6 | 1.0 | 3.42 (303) |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육아상담의 경우는 서비스 기관별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사회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만족도가 각각 평균 3.61점과 평균 3.5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표 9 참조).
- 육아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이외 기관들에 비해 높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평균 3.84점, 만점 5점)인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외 기관들은 유사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 평균 약 3.3점~3.4점임.

나. 수요

1)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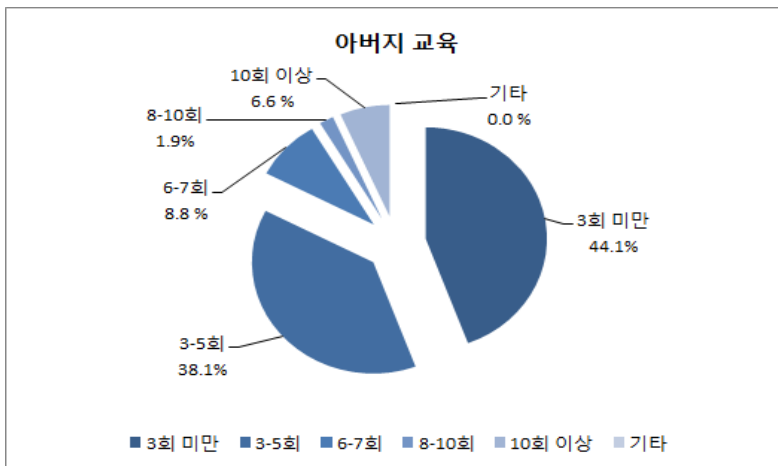


[그림 1]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의향

- 각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주말)체험프로그램 (이하 체험프로그램)’이 88.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그림 1 참조).
 - 그 다음으로는 ‘기관 행사 참여’ 77.9%, ‘아버지 역할 수행 관련 종합정보사이트(이하 종합정보사이트)’ 76.5%, ‘아버지 교육’ 75.7%, ‘아버지 역할 수행 관련 상담프로그램(이하 상담프로그램)’ 73.0%로 조사됨.
-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차이를 보임.
 - 20대 아버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낮은 가운데,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기관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4%와 53.8%로 낮은 관심도를 보임.
 - 30대 아버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기관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4%와 7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걱정 시행 수준

-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걱정 시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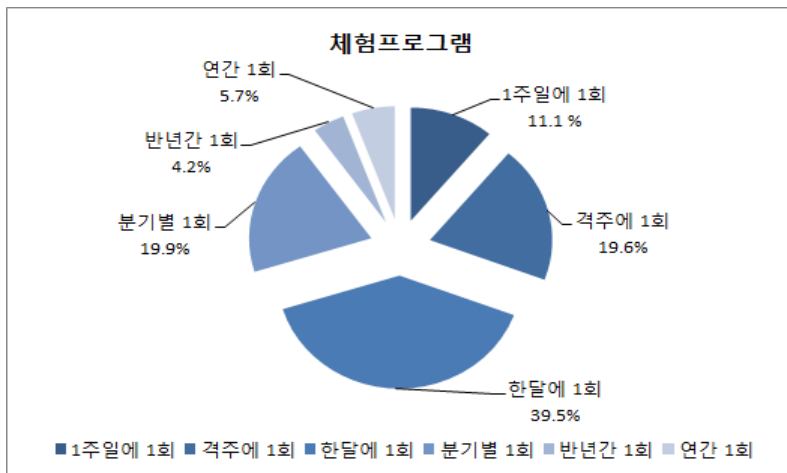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 교육 희망 참여 수준

□ 아버지 교육

- 3회 미만 44.1%, 3~5회 38.1%로 나타나므로 1인당 아버지 교육의 총 실시회기는 최소 3회 이상을 고려할만함(그림 1 참조).

□ 체험프로그램

- 희망 참여 수준은 한 달에 1회 39.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분기별 1회 19.9%, 격주에 1회 19.6%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실시 빈도는 한 달에 1회를 고려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격주 또는 1주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함.



[그림 3] 체험프로그램 희망 참여 수준

□ 기관 행사 참여

- 분기별 1회가 34.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다음으로는 한 달에 1회 22.7%, 반 년간 1회 17% 순으로 조사됨.
- 기관 행사 참여는 앞서 다룬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버지 교육에 비해 아버지들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기관 행사에 아버지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3) 희망 서비스 기관

- 부모교육과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이용하고 싶은지를 각각 질문한 결과, 기관 선호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양 프로그램 모두에서 집 근처 공공기관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해당 응답율은 각각 32.9%와 33.5%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 29.3%, 지역내 복지시설 24.2%, 직장/회사 20.6% 순이며, 체험프로그램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 29.8%, 지역내 복지시설 25.9%, 지역내 공공기관 22.9% 순으로 조사됨.
- 아버지 교육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일차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서비스 연계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0〉 부모교육/체험프로그램 이용 희망 장소

| | 단위: % | |
|------------|--------------|--------------|
| | 부모교육 | 가족체험프로그램 |
| 집 근처 공공기관 | 32.9 | 33.5 |
| 자녀가 다니는 기관 | 29.3 | 29.8 |
| 지역내 복지시설 | 24.2 | 25.9 |
| 직장/회사 | 20.6 | 16.5 |
| 지역내 공공기관 | 19.5 | 22.9 |
| 기타 | 0.3 | 0.3 |
| 계(수) | 100.0(1,007) | 100.0(1,029) |

주: 집 근처 공공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임.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의미함.
 지역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등'임.
 지역내 공공기관은 '주민자치센터 등'임.

5. 정책 방안

가. 기본 방향

- 남성 대상 돌봄지원은 일관된 방향성을 요하며, 가족문화적 차원보다는 일·가정 양립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형성을 통해 남성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제고에 기여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나, 아버지 교육에 비해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일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기관으로 아버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모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외 서비스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함.
- 이와 동시에 영유아 육아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나. 세부 방안

-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서비스 기관으로 본인의 직장 보다는 지역내 기관을 선호하므로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보장이 중요함.
 - 지리적 접근성은 수요자 특성 즉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관련 사업 강화가 요구됨.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사업 현황 조사에 의하면, 남성 대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48%에 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사항에 기본 사업으로 명시함.
 - 지역내 서비스 실시 기관인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중 111개소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 사회복지관 등 지역내 유관 기관에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함.
 - 지자체 담당 부서는 당해 년도의 지역내 남성 대상 양육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주말 운영 의무화

- 아버지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현실적으로 주말에만 가능한 실정이므로 토요일 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권고함.
-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시에 전문 인력을 배치함.

□ 서비스 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시되므로 각 지역 센터의 사업 수행 시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강사풀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내 서비스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체험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주요 사업 대상의 차별화

- 지역내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일정 참여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함.
 - 아버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재혼 가구, 입양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사업 대상 기관은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기업체,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추진함.
- 사업 대상 아동 연령은 서비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버지 교육 사업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부터 유아까지로 확장함.

□ 프로그램 내실화

- 아버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심화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교육의 희망 참여 수준은 3회 미만 44.1%, 3~5회 38.1%로 나타나므로 3회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 할만함.
 - 교육 방식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아버지 역할 수행에

-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모임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교육 대상은 단지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 시에 아내가 협력하도록 함.
 - 교육 평가는 참여 인원 위주의 실적 평가를 지양하여 대상별 심층적 접근을 확산함.
- 체험프로그램은 영유아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당 인력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인력과 적정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운영함.
- 지역내 서비스 기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체험프로그램의 희망 참여 수준은 한 달에 1회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4주 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만함.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5.6). 5월 가정의 달, '아빠 놀이왕'에 도전하세요.
- 보건복지부(2011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1.13). 아빠라서 행복해요, 예비/초보 아빠의 육아 노하우를 한 자리에.
- 보건복지부(2011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8.29). 아이와 놀아주며 마음을 더 하세요! 마더하세요.
- 보건복지부(2011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9.5). 엄마 힘내세요! 100인의 아빠 단 총출동.
- 보건복지부(2011d).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11.11). 아빠들 마음을 더하세요, 마더하세요.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3.16). 육아 달인 아빠 따라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2013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23). 아빠 어디 가? 웃고 싶은 아빠 모두 모여라.
- 보건복지부(2013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4.12.). 아빠가 궁금한 출산과 산후 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
- 보건복지부(2013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4.12.). 아빠가 궁금한 출산과 산후 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여성가족부(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3). 201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Ⅲ. 육아지원 다각화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장혜진

요약

-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의 행복을 가능해본 결과 전반적인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이나 대인관계 및 가족과의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을 살펴보면 성격별로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실행, 성장역량 순으로 나타나 부모로써 실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 간의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지원을 위해 부모의 반성적 사고 격려, 부모교육 대상자 확대,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내용 제안,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부모가 행복한 사회 조성, 부모교육 질 관리 및 내실화,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강화, 영유아 행복 관련 및 부모역량 제고 관련 연구가 필요함.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필요성

가. 영유아 행복의 중요성

-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본 원고는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이후 삶의 모습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왔지만 영유아 현재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영유아를 접근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영유아기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 영유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 영유아 시기의 부모 역할은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임.
 - 부모역량 제고는 영유아 개인의 성장과 발달, 영유아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강한 가족 가치의 확산을 도울 수 있음.
-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부모 대상 정서적 지원 등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 그러나 부모역량 지원 관련 연구가 일반 부모보다는 주로 취약 계층이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영유아의 권리나 웰빙, 행복 측면에서 부모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 영유아의 궁극적 존재 가치인 행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파악하고 부모역량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영유아 행복의 관점에서 부모역량 개념을 도출하고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을 토대로 부모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부모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추출함.
 - 부모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영유아 부모 대상 부모역량의 실태를 확인함.

다. 연구방법

- 부모역량과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문헌분석
 - 부모역량의 개념, 범주, 세부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
 - 국제지표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행복이나 웰빙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의 종류와 각 지표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알아봄.
-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 만 4·5세 유아 면담
 - 영유아 부모와 부모역량 전문가 각각 13명, 만 4·5세 유아 4학급을 면담함.
- 영유아 부모 총 1,000명(모 580명, 부 420명)을 대상으로 함.
 - 부모역량을 성격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구분하고 내용별로 7개 범주로 나누어 총 69개 문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국제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

- 영유아 행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아동 수준의 행복 및 웰빙에 대한 국제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을 진단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가. OECD 아동웰빙지표

- OECD 아동웰빙지표는 6개 영역(물질적 웰빙, 건강과 안전, 교육적 복지, 주거와 환경, 학교생활의 질, 위험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전반적 웰빙 수준이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음.
 - 가계소득이나 저소득층 가정 내 영유아 비율 측면에서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임.
 - 교육적 복지와 위험행동 영역에서 한국의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음.
 -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이나 영유아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OECD 국가 간 아동웰빙지표 비교

| | 단위: 순위 | | | | | |
|-------|-----------|----------|-----------|-----------|----------|-------------|
| | 물질적 웰빙 | 주거 환경 | 교육적 복지 | 건강과 안전 | 위험 행동 | 학교 생활의 질 |
| 호주 | 15 | 2 | 6 | 15 | 17 | - |
| 오스트리아 | 5 | 9 | 18 | 27 | 27 | 11 |
| 덴마크 | 2 | 6 | 7 | 4 | 21 | 8 |
| 핀란드 | 4 | 7 | 1 | 6 | 26 | 18 |
| 프랑스 | 10 | 10 | 23 | 19 | 12 | 22 |
| 독일 | 16 | 18 | 15 | 9 | 18 | 9 |
| 그리스 | 26 | 19 | 27 | 23 | 7 | 24 |
| 아이슬랜드 | 8 | 4 | 14 | 2 | 8 | 1 |
| 일본 | 22 | 16 | 11 | 13 | 2 | - |
| 한국 | 13 | - | 2 | 10 | 2 | - |
| 멕시코 | 29 | 26 | 29 | 28 | 30 | n.a |
| 노르웨이 | 1 | 1 | 16 | 16 | 4 | 2 |
| 스웨덴 | 6 | 3 | 9 | 3 | 1 | 5 |
| 미국 | 23 | 12 | 25 | 24 | 15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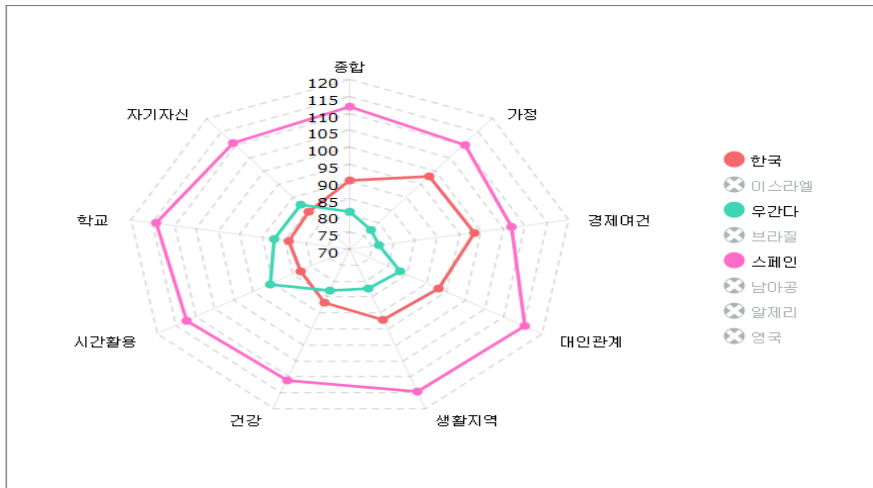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23의 표를 재구성함.

- 하지만, 충분한 교육적 기회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조기교육, 필요 이상의 기관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 영유아의 기관 이용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기관 이용은 영유아의 행복과 상충될 수 있음.
- 영아기의 긴 기관 이용시간은 발달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Belsky, 1988) 보육시설을 경험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오전에 비해 오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Watamura·Donzella·Alwin & Gunnar).

나.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는 어린이가 느끼는 행복도를 8개 영역(가정, 경제여건, 대인관계, 생활지역, 건강, 시간활용, 학교, 자기자신)으로 나누어 수치화 하였음(이봉주·유민상, 2013).
- 어린이행복종합지수 결과를 보면 한국은 90.3점으로 조사대상 8개국(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중 7위에 그침.
-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1인당 GDP가 우리의 1/5 수준인 알제리(6위, 99.5점)보다 낮아 행복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경제적 조건은 알제리의 2배, 우간다의 4배가 넘지만 경제여건의 만족도는 8개국 중 7위에 그침.



자료: 동아닷컴(2013. 6. 22) 한국 어린이, 8개국 중 행복지수는.

[그림 1]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비교-한국, 우간다, 스페인

- 우리나라 어린이의 학교만족도와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8위로 나타났으며 가정과 대인관계의 만족도도 모두 7위로 최하위권임.
- ‘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가?’란 세부질문에 3점 만점에 평균 1.52점을 받아 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어른이 어린이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8위에 그침.

다.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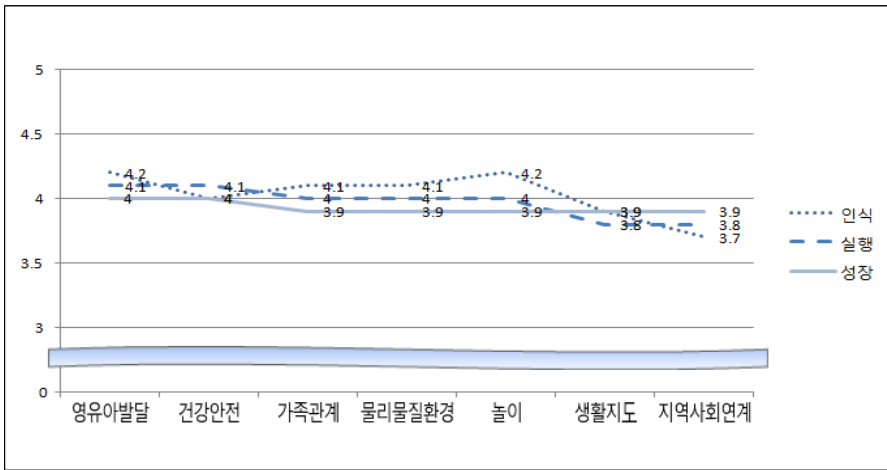
-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은 9개의 영역(아동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아동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및 보육, 아동의 사회생활과 참여, 비행 및 일탈)으로 구성되어 있음(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5kg미만 저체중아 출산율이 많이 증가하였음.
- 영아사망율은 한 사회의 아동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1990년대에 3.0명(천명당 영아사망수)였다가 이 후 4.5명 이상으로 높아졌음.

-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 3.6%, 2000년 7.7%, 2004년 8.8%로 나타나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가족유형별로 한부모가정 12.7%, 조손가정의 48.5% 아동이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저연령의 아동빈곤율이 고연령의 아동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사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북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중북 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은 즉각적 개입의 필요성과 전문 개입이 보다 절실함을 보여줌.
 - 과거에 학대로 인식하지 않았던 정서 학대나 방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학대에 대한 홍보나 교육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줌.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

가. 부모역량의 성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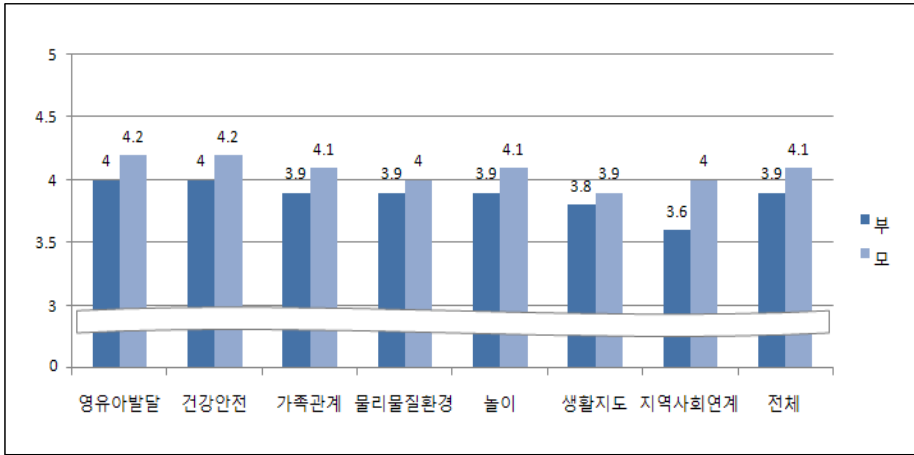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성격 측면에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고 내용 측면에서는 7개 영역인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로 나누어 부모역량 현황을 분석함.
 - 부모역량에 대한 인지적 차원 외 실행역량을 통해 실천적 행위를, 성장역량을 통해 부모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를 함께 진단함.
- 영유아 부모 1000명(모 580명, 부 420명)을 조사한 결과, 성격별로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실행, 성장역량 순으로 나타나 부모로써 실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인식역량은 전반적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보이나 생활지도나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역량은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가장 낮아 부모의 성장역량 향상이 요구됨.



[그림 2] 부모역량의 성격별 비교

나. 부모역량의 영역별 현황

- 영역별 전반적 현황을 아래 <표 2>에서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 연계가 3.8점, 생활지도가 3.8점으로 가장 낮음.
 - 영유아 부모에게 발달, 건강, 안전과 같은 주제는 비교적 친숙하나 영유아 생활지도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유아 면담 결과, 유아 행복을 위해 부모의 생활지도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지도에 대한 부모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줌.
- 모든 영역에서 부에 비해 모의 역량 점수가 0.1~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간 부모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남($p < .001$).
 -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지역사회 연계로 부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역량이 모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줌.



[그림 3] 부모역량의 영역별 비교

- 연령별로 35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영역별로 같은 점수를 보이거나 34세 이하 집단의 부모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로 이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양육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 부모 학력 측면에서는 영역별로 거의 비슷하나 영유아 발달과 놀이, 생활지도 측면의 부모역량 점수가 대졸 이상에서 더 높아 부모 학력에 따라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대개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역량 수준이 일치함.
 - 이러한 차이는 가계소득이 상과 중인 부모보다 중과 하인 부모 사이에서 더 컸으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점수가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가구소득의 역순으로 역량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전무하여 가구소득별 역량의 차이가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남.
 - 특히, 영유아 발달, 놀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p < .001$).

- 지역규모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 영유아 발달과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의 부모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남($p < .05$).
 - 자녀가 유아보다 영아인 경우, 가족관계 영역에서 부모역량이 더 높게 나타남($p < .01$).

〈표 2〉 부모역량 영역별 전반적 현황

단위: $M(SD)$

| 구분 | 부모역량 영역 | | | | | | | 전체 | |
|------|----------|-------------|-------------|-------------|------------|-------------|-------------|-------------|-------------|
| | 영유아 발달 | 건강 안전 | 가족 관계 | 물리물질 환경 | 놀이 | 생활 지도 | 지역사회 연계 | | |
| 영역별 | 4.1(0.5) | 4.1(0.4) | 4.0(0.4) | 4.0(0.4) | 4.0(0.4) | 3.8(0.4) | 3.8(0.6) | 4.0(0.4) | |
| 부모연령 | 34세 이하 | 4.1(0.4) | 4.1(0.4) | 4.1(0.4) | 4.0(0.4) | 4.1(0.4) | 3.9(0.4) | 3.9(0.6) | 4.1(0.4) |
| | 35세 이상 | 4.1(0.5) | 4.1(0.4) | 4.0(0.4) | 4.0(0.4) | 4.0(0.4) | 3.8(0.4) | 3.8(0.6) | 4.0(0.4) |
| | <i>t</i> | 2380(982)* | 2983(963)** | 4826(969)** | 2818(959)* | 3456(971)** | 3661(940)** | 3498(998)** | 4100(971)** |
| 부모학력 | 고졸 이하 | 4.0(0.5) | 4.1(0.5) | 4.0(0.5) | 4.0(0.5) | 4.0(0.5) | 3.8(0.4) | 3.8(0.7) | 4.0(0.4) |
| | 대졸 이상 | 4.1(0.4) | 4.1(0.4) | 4.0(0.4) | 4.0(0.4) | 4.0(0.4) | 3.9(0.4) | 3.8(0.6) | 4.0(0.4) |
| | <i>t</i> | 3892(998)** | 1259(433) | 1688(998) | 1416(998) | 2480(998)* | 2538(998)* | 1955(998) | 2466(998)* |
| 가구소득 | 상 | 4.2(0.4) | 4.1(0.4) | 4.1(0.4) | 4.0(0.4) | 4.1(0.4) | 3.9(0.4) | 3.9(0.6) | 4.1(0.3) |
| | 중 | 4.1(0.5) | 4.1(0.4) | 4.0(0.4) | 4.0(0.4) | 4.1(0.4) | 3.8(0.4) | 3.9(0.6) | 4.0(0.4) |
| | 하 | 4.0(0.5) | 4.0(0.4) | 4.0(0.5) | 3.9(0.5) | 3.9(0.5) | 3.8(0.4) | 3.7(0.6) | 3.9(0.4) |
| | <i>F</i> | 12681(2)** | 5501(2)** | 4195(2)* | 6411(2)** | 7404(2)** | 1709(2) | 10810(2)** | 8388(2)** |
| 지역규모 | 대도시 | 4.1(0.4) | 4.1(0.4) | 4.0(0.4) | 4.0(0.4) | 4.0(0.4) | 3.8(0.3) | 3.8(0.6) | 4.0(0.3) |
| | 중소 | 4.1(0.5) | 4.1(0.5) | 4.0(0.5) | 4.0(0.5) | 4.0(0.5) | 3.9(0.4) | 3.8(0.6) | 4.0(0.4) |
| | 읍면 | 4.0(0.4) | 4.0(0.4) | 4.0(0.4) | 3.9(0.4) | 4.0(0.5) | 3.8(0.5) | 3.7(0.6) | 4.0(0.4) |
| | <i>F</i> | 3.317(2)* | 2.384(2) | 0.172(2) | 3.054(2)* | 0.013(2) | 1.601(2) | 2.563(2) | 0.793(2) |
| 자녀 | 영아 | 4.1(0.5) | 4.1(0.4) | 4.1(0.4) | 4.0(0.4) | 4.0(0.4) | 3.8(0.4) | 3.8(0.6) | 4.0(0.4) |
| | 유아 | 4.1(0.5) | 4.1(0.5) | 4.0(0.5) | 4.0(0.5) | 4.0(0.5) | 3.8(0.4) | 3.8(0.6) | 4.0(0.4) |
| | <i>t</i> | 0.508(995) | 1.077(998) | 3.003(998)* | 1.754(998) | 0.569(998) | 1.170(997) | 0.053(998) | 1.594(998) |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증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역량의 성격·영역 간 상관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중 성격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인식역량과 성장역량의 상관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부모의 양육지식과 성장의지 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부모역량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식역량이 0.904로 가장 높고 실행역량이 0.7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식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표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성격 간 상관

| 구분 | 인식 | 실행 | 성장 | 평균* |
|-----|----------------------|----------------------|----------------------|-----|
| 인식 | 1 | | | |
| 실행 | 0.892 ^{***} | 1 | | |
| 성장 | 0.991 ^{***} | 0.842 ^{***} | 1 | |
| 평균* | 0.904 ^{***} | 0.730 ^{***} | 0.880 ^{***} | 1 |

주: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냄.

*** $p < .001$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 영역에 대한 부모역량의 수준이 다른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 한 개인의 부모역량이 하위 영역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 영역에서 부모역량 수준이 제고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부모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부모역량의 하위 영역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영유아 발달과 타 영역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역량이 기본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전체 부모역량 점수와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이 0.728 수준에서 가장 높고, 지역사회 연계가 0.5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간 상관

| 구분 | 영유아 발달 | 건강 안전 | 가족 관계 | 물리적·물질적 환경 | 놀이 | 생활 지도 | 지역사회 연계 | 평균* |
|------------|----------|----------|----------|------------|----------|----------|----------|-----|
| 영유아 발달 | 1 | | | | | | | |
| 건강과 안전 | 0.849*** | 1 | | | | | | |
| 가족관계 | 0.882*** | 0.740*** | 1 | | | | | |
| 물리적·물질적 환경 | 0.908*** | 0.715*** | 0.765*** | 1 | | | | |
| 놀이 | 0.853*** | 0.666*** | 0.712*** | 0.752*** | 1 | | | |
| 생활지도 | 0.912*** | 0.740*** | 0.749*** | 0.776*** | 0.754*** | 1 | | |
| 지역사회연계 | 0.783*** | 0.590*** | 0.643*** | 0.667*** | 0.621*** | 0.717*** | 1 | |
| 평균* | 0.728*** | 0.616*** | 0.588*** | 0.584*** | 0.549*** | 0.615*** | 0.518*** | 1 |

주: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냄.

*** $p < .001$

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가. 단기 정책 방안

1) 부모의 반성적 사고 격려

- 영유아 행복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부모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체크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함.
 - 지역사회에 있는 영유아 관련 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아과 등)이나 부모교육 담당 기관에 배포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함께 배부하여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진단하도록 함.
 - 진단이 완료된 뒤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내용 제안

- 부모역량 현황 조사에서 부모역량이 낮게 나타난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 특히 유아 면담 부분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훈육 방법이나 부모의 감정관리나 절제에 대한 홍보나 부모교육이 요구됨.

- 부모교육에 대한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모가 수동적인 학습자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영유아의 참여를 확대함.
 - 영유아가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교육이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부모교육 대상자 확대

- 부모교육은 부모 대상 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 예비부모나 탁아 시설의 교사 등 부모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장려함.
- 아버지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버지의 부모역량을 제고함.
 -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고등학교나 군 복무, 민방위와 같은 기회에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교육을 접하기를 제안함.

<표 5> 부모교육 대상별 방법 및 주요 부처

| 대상 | 내용 | 주요 부처 |
|------------|---|-----------------------|
| 중고등학생 | - 교과목 내용으로 부모 역할 관련 내용 강화 | 교육부 |
| 대학생 | - 강좌 내용으로 부모됨이나 부모의 역할, 행복한 자아, 행복한 부부 관계 형성에 대한 논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성인남녀 | - 군대나 예비군, 민방위 교육에 30분 강좌 제공 | 교육부 국방부 |
| | -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부모교육 자료 배치나 영상자료 제공 |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 대중교통기관에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육아 방법 탑재 | 교육부 건설교통부 |
| | -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 부모 교육 자료 배치 |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 | - 대중매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부모교육 자료 공유 | 여성가족부 |
| 취업부모 | - 직장에서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 교육부 고용노동부 |
| 아동복지센터 관계자 | - 아동복지센터 교사 등에게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 | 교육부 보건복지부 |
| 조부모 | - 조부모 대상 부모교육 제공 | 교육부 보건복지부 |

- 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면 영유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포함시키며 기관이 속한 부처의 성격에 따라 부모교육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4)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취업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 직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함.
 - 부모교육의 효과가 단순히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이나 업무를 위한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가정 외에서 부모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모바일용 프로그램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나. 중기 정책 방안

1) 부모교육의 질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부모교육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강사풀에 등록하는 체제를 도입함.
 - 중앙부처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질 높은 수준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2)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 강화

- 부모의 상황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진단함.
 -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위치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

- 영유아 행복을 위해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영유아 부모 대상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내실화가 필수적임.

4) 영유아 행복 관련 연구와 부모역량 연계

- 영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통해 부모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함.
- 영유아 및 놀이 중심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역량 제고와 연계함.

다. 기대효과

- 영유아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 정책 추진에 이용함.
- 부모역량의 개념을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전 부모역량의 개념과 차별화함.
- 영유아 행복을 위해 제고되어야 할 부모역량의 내용·성격을 확인하고 부모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여 부모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동아닷컴(2013. 5. 28). 한국 어린이,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
http://news.donga.com/Issue/Top_03010000000006에서 2013. 6. 22. 발췌함.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 이봉주·유민상(2013).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연구: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서울.
-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계숙·김정혜·김미정(2003).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9(-), 117-140.
- Belsky, J.(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Watamura, S., Donzella, B., Alwin, J., & Gunnar, M.(2003). Morning-to-Afternoon Increase in Cortisol Concentra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 Age Differences and Behavio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4(4), 1006-1020.

Ⅲ. 육아지원 다각화

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이윤진

요약

- 통일의 가상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3단계(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육아지원 분야의 각 단계별 추진과제와 추진전략, 추진방향 등을 도출함.
- 통합이론의 최근 연구동향을 연구의 기초로 삼아 논의를 전개함. 제도적 통합보다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주목하는 ‘사회통합 이론’과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의 통일성이란 양 측면을 수렴하려는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고찰함.
-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남북 유아교육·보육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다가 이 협의체가 정례화가 되면 민·관 협력방식으로 점차 확대 추진함.
-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유사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1체제”로 통합해 나갈 때는 남북한 어느 한쪽으로서의 통합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도 및 기준 정비”, “생애 초기부터 차별받지 않는 육아정책수립 및 시행”의 중요성이 높게 나옴.
- 추진전략으로는 성인세대 → 유아세대, 비정치적 영역 → 정치적 영역, 행사성 → 정례화, 부분(개별) → 전체, 호혜주의 하에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실천전략으로는 ‘반관반민 기구’, ‘전문위원 협의체 구성’, ‘안정적 재정 확보’, ‘제3의 중재자’로서 국제기구 활용 등을 제시함.

1. 연구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통일대박론’을 연속으로 언급하면서 통일담론이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가 됨.

* 본고는 이윤진·구자연(2013)의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면서 통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
 -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통일대박론’을 재차 언급하면서,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인도적 측면’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경제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함.
 -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함. ‘통일대박’ 선언 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주축으로 통일 준비를 직접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이처럼 대통령이 남북통일에 대해 국내외로 여러 차례 천명하고 구체적인 구상까지 제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아지원분야에서 통일 대비 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고에서는 통일의 가상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3단계(교류·협력¹⁾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각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향, 쟁점사항 등을 도출함.
- 각 단계별 제시한 통일대비 로드맵은 남한 전문가 44명[교육·보육학계에서 통일연구 수행 교수, 기타 전공에서 통일연구 전문가, 북한을 다년간 경험한 현장 전문가]과 북한이탈주민 37명[북한에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보육원(탁아소 교사) 또는 교양원(유치원 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²⁾

1) 본래 화해·협력 단계이나, 2000년대 남북한이 화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화해 대신 교류라는 용어를 사용함.

2) 본 전문가 의견조사의 설문지는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델파이 결과를 기초로 작성함. 다시 말해서, 북한연구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질문 문항의 적절성은 담보되었다고 하겠음.

다. 우리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 개요

-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을 견지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완성됨.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제시한 '남북연합 단계'이전에 '화해·협력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영삼 정부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이란 3단계로 구체화함(한만길 외, 2012).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명시한 3단계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교류·협력 단계: 남북한이 대립·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
 - 남북연합 단계: 상호 다른 제도 하의 차이점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단계로서 초기단계(느슨한 연합)와 후기단계(긴밀한 연합)로 구분됨.
 - 통일국가 단계: 제도적 통합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사회심리통합까지 이루어진 단계
 - 독일은 통일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체제통합 6년, 내적통합(사회심리통합)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왔으나, 통일 후 16년이 지난 2006년에의 조사에서는 내적통합에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함(양민석·송태수, 2010). '진정한' 통일이 제도적 통합에서 더 나아가 사회심리통합까지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통합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라. 통합이론의 최근 동향: 사회통합이론, 상호문화주의

- 본고는 동·서독인 간의 통합이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는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심리적 통합에 주목함. 사회통합으로 번역되는 개념으로는 크게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3개 용어가 있음.
 - Social Inclusion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사회통합이라는 표현보다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하겠음(노대영, 2009).

- Social Integration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나, 때로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함. 예를 들어 비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공교육기관에서 각종 종교적 활동은 용납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슬람 여성들의 홀라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어짐(노대영, 2009).
- Social Cohesion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임(노대영, 2009).
-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문화주의의 다양성과 민족주의 통일성이란 양 측면을 수렴한 통합이론으로서 소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 하겠음(박영자, 2012).
 -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삶과 실천 영역에서 '사이(inter-)'를 주목하고 이를 재구성하면,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추출할 수 있고 이 보편성을 기초로 공생발전의 합의와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론임(박영자, 2012).
- 본고에서의 사회통합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Social Cohesion과 다양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를 의미함. 개인들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의미의 통합이론에서 남북의 사회통합을 논의할 때 남북의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관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2. 남북 육아지원분야 3단계 추진과제

가.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 다음 <표 1>의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남북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요성 1순위는 ⑥ 민·관 단체 협의체 구성(3.51점/4점), 2순위 ⑦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3.40점), 3순위 ⑤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3.36점), 4순위 ① 유아교육·보육전문가 학술행사 개최(3.23점)임.

- 중요성이 가장 낮은 문항은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실시(2.58점),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2.72점), ⑧ 육아박람회 공동행사 개최(2.74점)임.
- 실행가능성 1순위는 ① 유아교육·보육전문가 학술행사 개최(2.75점), 2순위 ⑥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2.68점), 3순위 ⑨ 어린이날 공동행사 개최(2.62점), 4순위 ② 원장·교사 상호방문(2.38점)임.
- 실행가능성이 가장 낮은 문항은 ③ 유아들의 상호방문(1.88점)이며 ④ 남북공동수업계획안 개발(1.96점), ⑤ 남북한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2.04점)임.

〈표 1〉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 |
|--------------------------|
|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
|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
|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
|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
| ⑤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
|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
|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
| ⑧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
|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
|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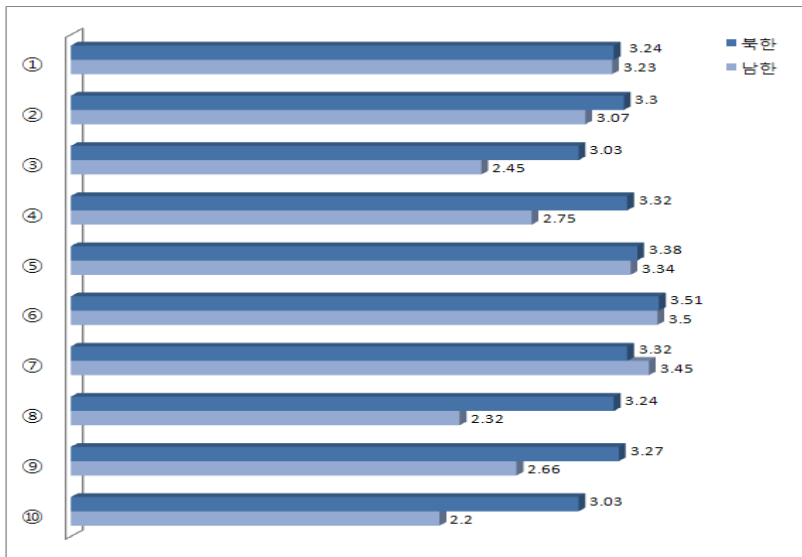
〈표 2〉 교류·협력 단계의 추진과제별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단위: 점

| 구분 | 중요성 | | 실행가능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 3.23 | .88 | 2.75 | .89 |
|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 3.17 | .91 | 2.38 | .98 |
|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 2.72 | 1.13 | 1.88 | .94 |
|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 3.01 | 1.03 | 1.96 | .95 |
| ⑤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 3.36 | .83 | 2.04 | .87 |
|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 3.51 | .59 | 2.68 | .85 |
|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산출 | 3.40 | .82 | 2.11 | .91 |
| ⑧ 남북 공동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 2.74 | 1.02 | 2.37 | .87 |
|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 2.94 | .90 | 2.62 | .81 |
|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 2.58 | 1.07 | 2.20 | .91 |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높으면서 남북한 전문가 간의 의견차이가 적은 추진과제 순으로 정리하면(그림 1 참조),
 -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만함.
 - 중요성: 남측 3.23점, 북측 3.24점/실행가능성: 남측 2.77점, 북측 2.73점
 - ⑥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협의체가 정례화되어 정착되면 민·관 협력방식으로 확대 추진함.
 - 중요성: 남측 3.50점, 북측 3.51점/실행가능성: 남측 2.70점, 북측 2.65점
 -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⑦ 남북 육아지원기관 관련 통계를 공동 산출, ⑤ 남북 공통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남북이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성인들의 상호교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 유아들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중요성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에서 높게 나온 “남북 어린이 공동행사 개최” 일회성 행사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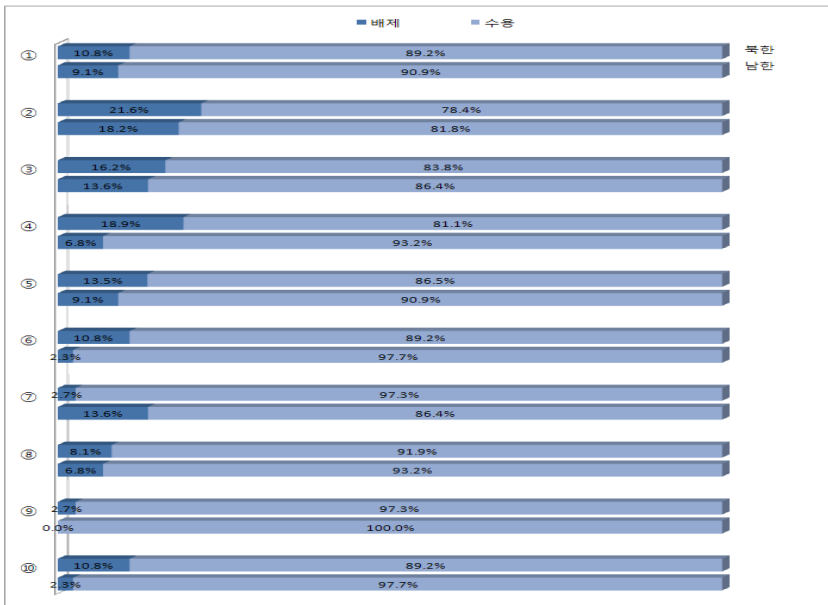
[그림 1] 교류·협력 단계에서 추진과제별 중요성(출신별)

나.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모색할 만한 과제로는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1) 남북한이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법조항 10개(표 3 참조), 2) 남한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육아지원정책 중 수용 가능한 법조항 4개(표 4 참조)를 발췌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봄.

<표 3>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남북한 공통 또는 유사한 법조항

- ① 어린이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
- ② 탁아소 이용은 부모의 선택이다(제3조)
- ③ 모든 어린이들을 최고의 현대적인 기관에서 자라도록 배려(제7조)
- ④ 이주민(외국인) 가정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제9조)
- ⑤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에게” 원칙 준수는 국가·사회 의무(제12조)
- ⑥ 지역사회 곳곳에 아동공원, 놀이터 설치하는 국가·사회 의무(제14조)
- ⑦ 임신, 출산에 이르기까지 무상지원 다둥이(다자녀) 출산모에게 특별 혜택(제20조, 21조)
- ⑧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조직·지도한다(제37조)
- ⑨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하는 주택지구와 직장을 고려하여 배치(제46조)
- ⑩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제5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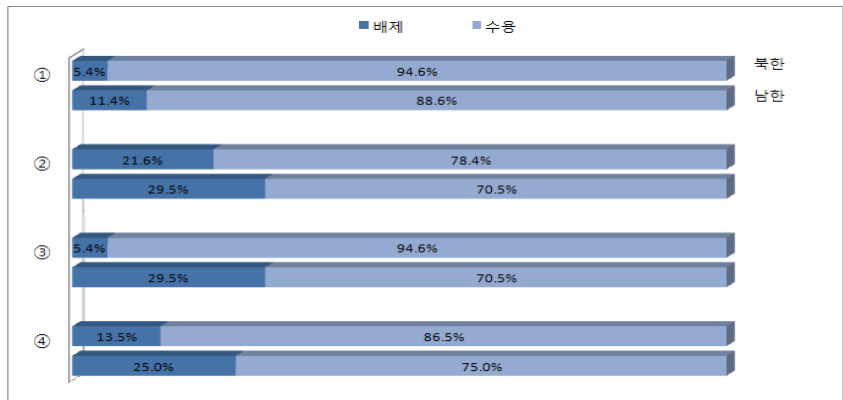


[그림 2] 남한과 유사한 북한육아지원정책(어린이보육교양법) 수용정도(출신별)

- 10개 법조항 모두 남북한 전문가들이 ‘수용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였으며 6개 항목에 대해서는 90% 이상 수용하다고 하였음.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는 주택지구와 직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는 98.8%라는 거의 전원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90% 미만의 나머지 4개 법조항도 “탁아소는 부모의 선택이다”(80.2%)를 제외하고는 85% 이상이 ‘수용한다’고 응답함.
- 북한 육아지원정책의 철학이나 기조에 대해 남한 전문가들은 90% 전후의 높은 수치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함. 이는 오늘날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철학이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 하겠음.
- 4개 조항 모두 배제보다 수용이 훨씬 더 높게 나옴. 남북한 출신별로는, 앞서 남북한 공통 또는 유사한 육아지원정책보다는 남한 전문가의 수용 정도가 북한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4〉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남한 미실행 법조항

- ①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무상의료치료(제24조)
- ② 유치원 높은반 1년은 학교전 의무교육 실시(제36조)
- ③ 유치원 높은반에서 학교교육 준비교육(셈하기, 쓰기 등) 실시(제37조)
- ④ 여성의 취업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 주·월 탁아소를 널리 운영(제47조)



[그림 3] 남한 미실행 북한육아지원정책(어린이보육교양법) 수용정도(출신별)

- 남북연합 단계 후기단계에서 추진할 만한 과제로써, 남북이 육아지원 분야에서 세부 영역별(교육·보육 이념, 체제, 설립주체, 교육·보육과정, 교원양성 등) 통합 방향에 대해 알아봄.
 - 교육·보육 통합이념으로 '남북한 절충형'이 38.3%로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 출신별로 의견이 갈림. 남한 전문가는 '남한 교육·보육 이념추구'를 45.5%로 가장 희망한 반면, 북한 전문가는 '남북한 절충형'을 가장 많이 희망함.

〈표 5〉 교육·보육 통합이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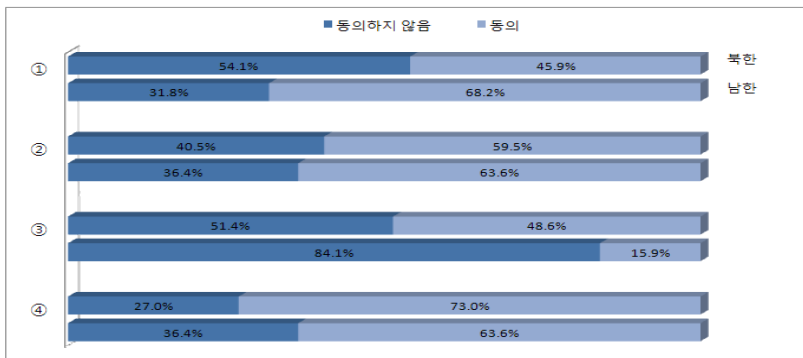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남한 교육·보육 이념 추구 | 북한 교육·보육 이념 추구 | 남북한 절충형 | 제3의 대안형 | 계(수) | $\chi^2(df)$ |
|--------|----------------|----------------|---------|---------|-----------|--------------|
| 전체 | 33.3 | 3.7 | 38.3 | 24.7 | 100.0(81) | |
| 전문가 집단 | | | | | | |
| 북한 출신 | 18.9 | 8.1 | 54.1 | 18.9 | 100.0(37) | 13.166(3)** |
| 남한 출신 | 45.5 | 0.0 | 25.0 | 29.5 | 100.0(44) | |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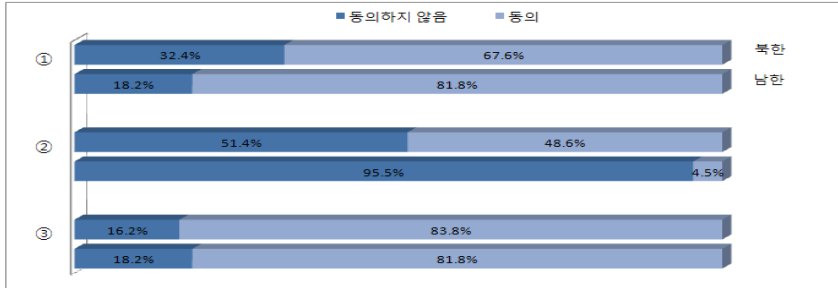
- 통일국가에서의 육아지원기관 체제는 현행 남한의 어린이집의 만 0세~만 5세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면서, 어느 일방의 통합은 반대함. 즉, 현행 남한 유치원 방식(3년제)으로의 통합에 대해 북한출신 전문가의 54.1%가 반대하며, 현행 북한 유치원 방식(2년제)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남한출신 전문가의 84.1%가 반대함.



- 주: ① 현행 남한의 유치원 3~5세 방식으로 통합
 ② 현행 남한의 어린이집 0~5세 방식으로 통합
 ③ 현행 북한의 유치원 4~5세 방식으로 통합
 ④ 북한의 유치원 높은 반(취학 1년 전) 의무교육제도 수용

[그림 4] 남북 통합 시 육아지원기관 체제에 대한 의견(출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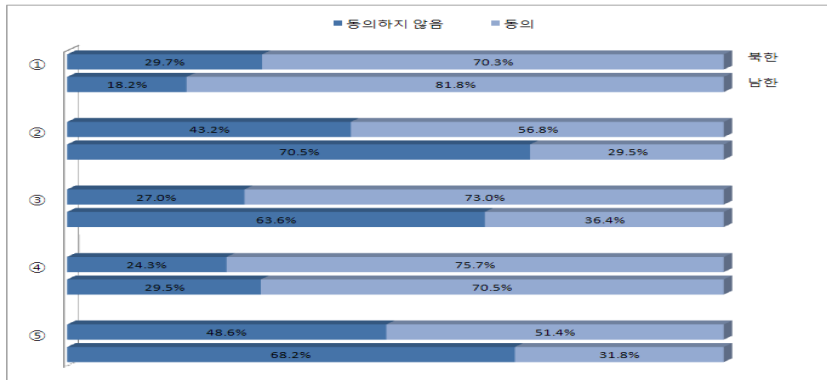
- 통일국가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설립주체는 '남북한 절충형'을 가장 많이 선호함. 남한 전문가는 북한의 국영 일변도의 설립에 대해 95.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함.



- 주: ① 남한의 국공립, 민간, 법인의 다양한 설립주체 수용
 ② 북한의 국영 일변도의 설립주체 수용
 ③ 남북한 절충형(예: 국공립 반, 민간 반)

[그림 5] 남북 통합 시 육아지원기관 설립주체에 대한 의견(출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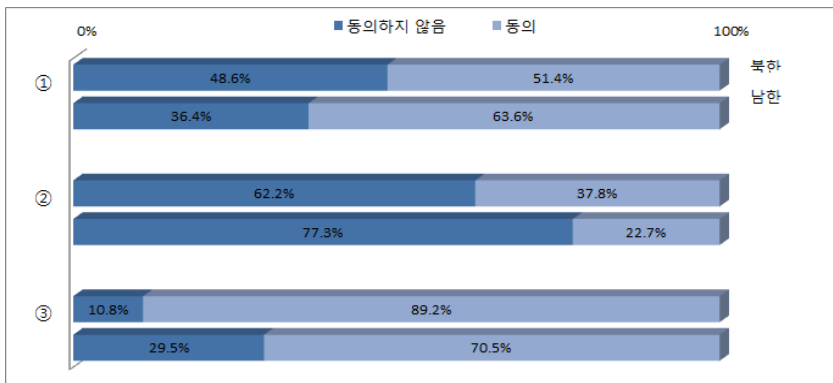
- 통일국가에서 교원양성에 대해서는 남한의 전문대 이상 대학교 학력 기준으로 통합을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남한의 유치원과 초등교원 분리양성을 북한의 통합양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 ① 남한의 전문대학 이상 대학(4년제) 학력 기준 중심으로 통합
 ② 북한의 교원대학(3년제) 학력 기준 중심으로 통합
 ③ 남북한 공통의 통신교육에 의한 교원양성제 수용
 ④ 남한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분리 양성제도 수용
 ⑤ 북한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통합 양성제도 수용

[그림 6] 남북 통합 시 육아지원기관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출신별)

-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교원대학(3년제) 학력기준으로 통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으며 통신교육을 통한 교원양성제에 대해 북한 전문가의 73.0%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 전문가는 63.6%가 반대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통일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보육과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아닌 “제3의 새로운 교육·보육과정 개발”을 가장 선호함. ‘경애하는 김일성(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과 같은 사상교육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교육·보육과정으로의 통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북한 전문가는 남한 중심의 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해 약 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주: ① 남한의 교육·보육과정 중심으로 통합
 ② 사상교육을 배제한 북한의 교육·보육과정 중심으로 통합
 ③ 제3의 새로운 교육·보육과정 개발

[그림 7] 남북 통합 시 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한 의견(출신별)

- 통일국가에서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이 각기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의견에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통합이 아닌 협의와 조정을 통한 제3의 대안을 가장 희망함.
-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56.8%), ‘주민대상 공모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21.0%)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음.

〈표 6〉 육아지원분야의 용어 통일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남한의 용어로 통합 | 북한의 용어로 통합 | 주민대상 공모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 |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 | 계(수) | $\chi^2(df)$ |
|--------|------------|------------|----------------------|---------------|-----------|--------------|
| 전체 | 21.0 | 1.2 | 21.0 | 56.8 | 100.0(81) | |
| 전문가 집단 | | | | | | |
| 북한 출신 | 24.3 | 2.7 | 27.0 | 45.9 | 100.0(37) | 4.145(3) |
| 남한 출신 | 18.2 | .0 | 15.9 | 65.9 | 100.0(44) | |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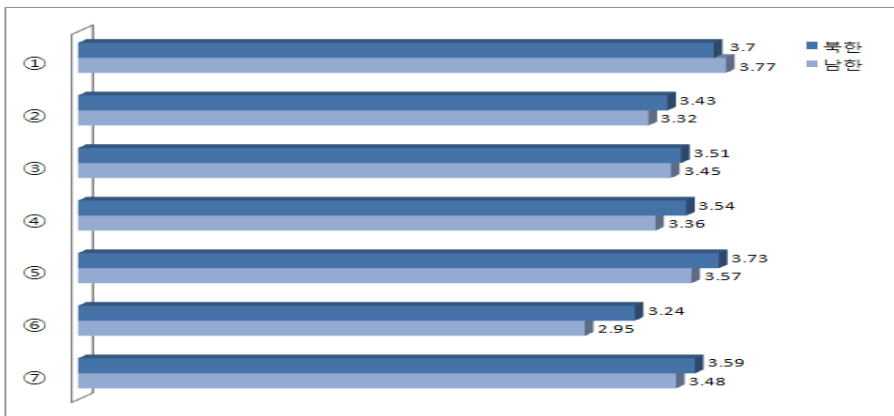
-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전주어 봤을 때, 남북연합의 후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남북 통합의 접점을 모색할 때, 남북 어느 일방의 통합을 대체로 반대하면서 자신의 제도에 대한 동의(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그 어느 단계에서 보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제3안의 대안, 남북한 절충형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남북이 상대방의 무엇을 얼마만큼 수용 또는 배제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남한의 수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북한 전문가-북한이탈주민이란 한계는 있지만-들이 남한제도로의 통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통일국가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 통일국가에서는 남북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심리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총 7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모두 항목에서 평균 3.5점 전후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온 추진과제는 ⑤ “남북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원양성, 배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정비”와 ① “생애초기부터 차별 받지 않는 육아정책수립 및 시행”임.
 - ⑥ “남북 교원의 순환제 실시”는 남북한 전문가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함.

〈표 7〉 통일국가에서 육아지원분야의 사회심리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 | | |
|---|---|
| ① | 통일국가 “생애초기부터 차별받지 않는 육아정책” 수립 및 시행 |
| ② | 교원과 유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지속적 실시 |
| ③ | 남북 교육·보육과정의 교수용어 표준화 |
| ④ | 남북 교원의 학력·임금 차별 방지 |
| ⑤ | 남북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원양성, 배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정비 |
| ⑥ | 남북 교원의 순환제 실시 |
| ⑦ | 남북 어린이집(탁아소)·유치원 설치 및 운영의 표준화 |



[그림 8] 통일국가에서 사회심리통합을 위한 육아지원분야 추진과제(출신별)

- 통일국가는 남북한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차별받는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사회심리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육아지원분야에서의 통합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실시되어야 함.

3.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을 위한 실천전략

가. 추진방향과 기본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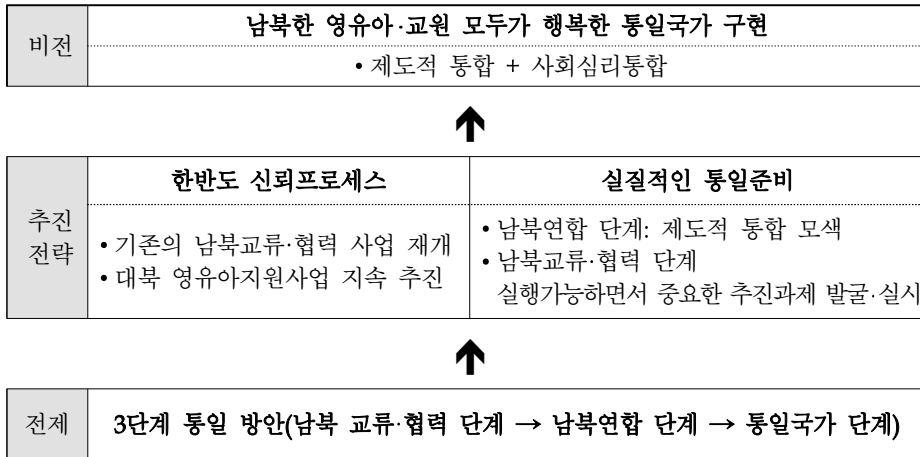
-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3단계 통일방안(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을 견지하면서 단계별 통합방안을 모색함.

- 교류·협력 단계는 남북이 화해를 전제로 '교류'를 강조하는 단계이며,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제도적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통일 이후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강조점을 두면서 각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함.

| | 남북 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
|----------|-------------|---------|---------|
| 교류·협력 | ◎ | | |
| 제도적 통합 | | ◎ | |
| 사회심리적 통합 | | | ◎ |

[그림 9] 3단계별 중점 과제

- 통일 대비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방안을 위한 추진방향은 새정부의 통일정책 국정기조와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그림 10]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 추진방향

-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전제로 1) 남북한 신뢰회복 개선 급선무, 2) 남북 평화 공동체 기반 조성, 3) 남북 관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제시함.

- 남북한이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비전을 공유하고, 사회·경제·문화·환경 공동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평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며 이는 다시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계속 확대, 확산해 나감.
- 한반도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 분단의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국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임. 국제적으로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 창출이 반드시 필요함.

나.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 선(先) 성인세대, 후(後) 유아세대

-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먼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성인세대가 먼저 교류·협력하고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른 후에 유아들의 상호교류를 추진함.
 - 북한은 유아들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이 비교되고 체제의 불리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남북한 유아들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비(非)정치적 영역부터 교류·협력 시작

- “어린이날 공동 개최 행사”나 “육아박람회 공동 개최”는 북한에서 대단히 정치성을 띠는 행사이므로 남측에서 잘 알지 못하고 공동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에 좋지 않은 인식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최대한 정치색이 배제되면서 남북한의 공통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연날리기, 공기놀이, 재기차기, 줄다리기 등)를 시작으로 점차 남북한 유아들이 즐겁게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나감.

□ 선(先) 행사성, 후(後) 정례화

- “남북한 어린이 공동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실시해 보고,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 자체를 남북 대화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감.

- 대화를 통해 점차 상호 간의 친분과 신뢰가 쌓이게 되면 '남북 육아지원협정'(가칭)을 체결하여 행사를 정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감.

□ 선(先) 부분, 후(後) 전체

- 중요성은 높으나 실행가능성이 낮고 실행여부의 의견이 갈리는 추진과제들은 작은 부분부터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은 중요성 3.40점, 실행가능성 2.11점으로 나왔으나 실행가능성에서 ‘가능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 모두 32.1%로 팽팽하게 나뉨.
 - 당장 남북 전 지역의 교육·보육 통계 산출은 요원하지만,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 북한의 특정 행정지역 단위와 결연을 맺고 지자체(예: 남한의 강원도와 북한의 남북 강원도, 경기도와 평양 당곡리)는 결연을 맺고 있는 개별 지역단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탁아소)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산출할 것을 제안함.

□ 호혜주의 하에 상호 이익 창출의 win-win 전략

- 남북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육아지원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 전문가 학술 행사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함.
 - 예를 들어, 북한에서 발달한 영재교육과 예술교육을 주제로 해서 “북한의 영재교육·예술교육제도 운영과 시사점”을, 남한에서 발달한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을 주제로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중심의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사례” 등의 제목으로 남북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다.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 남북 공통점 찾기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이념과 체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북한의 육아지원제도라 하더라도 남한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음.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상호 공통점을 찾고, 이 공통분보를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남북 이질성 이해와 수용 노력

-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는 북한의 육아지원정책 중 육아지원기관의 무상의료체제, 취학 1년 전(유치원 높은반) 의무교육, 유치원 높은 반에서 학교준비교육, 주 또는 월단위로 자녀를 맡기는 탁아소(유치원)에 대해 남한 전문가는 북한 전문가보다는 수용 정도는 낮지만 약 7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함.

□ 남북 절충형 모델 창출을 위한 협력

- 이 단계가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시기로 예상됨. 남한의 통치이념과 지배원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더라도 남한 중심의 “1체제”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통합을 향한 “1체제”는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3의 모델을 개발해야 함. 일반적으로 상이한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때, 하드웨어는 우수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흡수하고 소프트웨어는 두 체제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 때 재정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함.
 - 독일 통일에서 동독이 서독의 제도로 대부분 편입되었지만, 영아보육은 동독이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동독의 영아보육제도를 수용함.

라. 통일국가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 제도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 간의 심리통합에 주력해 나감. 이전 단계부터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는 ‘상호 호혜주의’ 방향으로 추진해 오면, 독일과 같이 사회심리통합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
- 획일화된 목적을 향한 통합(integration)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배경을 인정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통합(cohesion)이 되어야 함.
- 통일 후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차별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겨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그리고 제도적으로 “표준화”³⁾ 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음.

3)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통일국가의 육아지원기관의 교육·보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공통기준을 정하고 이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임.

마.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을 위한 실천전략

□ 추진 주체: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

-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남한은 정부 일방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협치(governance)방식이나 시민단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NGO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함.
 - 남북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는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가 적절, 국책연구소로서 관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육아정책연구소’가 적격임.

□ 행정 체계: 전문위원 협의체 구성

- 교류·협력 단계에서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공동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로서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 육아지원정책 협의회”(가칭) 혹은 “남북 육아지원정책 통합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상시 운영함.
 - 이상의 협의체(또는 위원회)에서 남북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고 점차 ‘남북 육아지원정책포럼’과 같이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협의함.
- 북한은 대남 교류채널로서 ‘민화협’으로 단일 창구이지만, 남한은 민간단체 별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음.⁴⁾ 따라서 북한과 공동으로 육아지원분야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방문교류를 할 때, 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육아정책연구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안정적 재정 확보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필요함.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기금은 교류·협력사업에만 사용가능하고 연구나 연구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함.

4) 북한이 남한의 어떤 NGO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단체가 어렵다고 하면 그 단체와 협상을 계속하기 보다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다른 NGO 단체로 협상창구를 옮길 수 있는 구조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의 주체인 남한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옴.

- 정부는 통일을 위한 연구비와 연구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연구비와 연구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제3의 중재자'로서 국제기구 활용

- 남북이 공동의 육아지원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쟁점사항이 발생할 때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큼. 또,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이가 좁쳐럼 되지 않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음.
- 남북 공동의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교재·교구, 게임 등을 제작할 경우, 콘텐츠의 방향이나 내용에서 의견이 갈릴 때, '제3의 기준'으로 국제적 기준을 놓고 협의를 하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노대명(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9, 6-19.
- 박영자(2012).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299-333.
- 양민석·송태수(2010).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3-34.
- 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만길·강구섭·권성아·박재윤·양승실·조정아(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부록. 3단계별 로드맵

〈부록 표 1〉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로드맵

| 시기 | 초기 | 후기 |
|---------------|--|---|
|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전략 | <p>남한 내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p> <p>남한에서 평화통일교육개발</p> <p>개별 단위별 교육·보육 통계 공동 산출</p> <p>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개성공단 탁아소 남북</p> <p>남북 공동 애니메이션, 동화책 개발·보급 어린이날 행사 공동 개최(민속전통놀이)</p> | <p>남북 육아지원정책포럼(년 2회) 남북 공동 평화통일교육 개발 개발한 평화통일교육으로 남북 공동수업계획안 개발·실시</p> <p>남북 전 지역 교육·보육 통계 공동산출 및 자료 DB화</p> <p>근로자 자녀 공동 육아 육아지원기관 유아 상호방문</p> <p>육아박람회 공동개최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p> |
| | <p>-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남북한 공동 추진 가능 사업 - 일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전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 비정치적 분야 → 정치적 분야 - 성인세대 → 유아세대</p> | |
| 기본전제 | <p>- 선(先) 조건 없는 교류·협력 제안 - 인도주의, 상호 호혜주의 - 기존 대북 지원사업 및 교류·협력사업(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재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구축 - 남북 관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p> | |
| 추진전략 | <p>- 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지속 실시 - 육아지원분야 연구·연구사업 control tower 기구 설치 : 육아정책연구소 내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센터”(가칭) 설치 - 안정적인 재정지원</p> | |
| 쟁점 | <p>- 추진과제 사안에 따라 남남갈등(예: 남북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남북 간 의견 대립(예: 유아 상호방문) 발생 가능 - 북측은 유아들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이 남한 유아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상호교류를 꺼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불리함과 남한체제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음.</p> | |

〈부록 표 2〉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로드맵

| | 시기 | 초기 | 후기(1체제) | 쟁점 |
|--|---|----------------------------|--------------------------------|-------------------|
| 주 제 별 추 진 과 제 및 세 부 추 진 전 략 | 교육·보육 통합이념 | 상 호 체 제 인 정 | 남북한 절충형 | 북한 주체사상 |
| | 육아지원기관 체제 | | 만 0~5세 기관일원화 | 남북 상호 유치원 체제 반대 |
| | 육아지원기관 설립주체 | | 국공립과 민간·사립 균형있게 설립 | 부모의 기관선택권 범위 정도 |
| | 육아지원기관 비용지원 | | 영유아별 차등지원, 모든 영유아에게 일정 비용 동일지원 | 무상지원의 범위 정도 |
| | 육아지원기관 교원양성 | | 남한 학력 기준 및 교원양성제 | 통신교육양성제도 |
| | 육아지원기관 교육·보육과정 | | 남북한 절충형 | 북한사회주의 교육학 |
| | 관련 용어 통일 | | 전문가협의 또는 주민대상 여론조사로 결정 | |
| | 취학 1년전 의무교육 | | 취학 1년 의무교육제도화 | 취학전 의무교육에 대한 반대의견 |
| | - 남북 공통점 찾기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남북 상호 비슷한 정책에 대해 수용정도가 높았음. - 남북 이질성 이해 및 수용 노력 - 절충형 모델 창출을 위한 남북 협력 강화 | | | |
| 기 본 전 제 | - 인도주의, 상호 호혜주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확대·강화 - 남북 관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 | | |
| 추 진 전 략 | - 남북 교류·협력 단계 추진과제 지속 실시(남북연합 단계 초기까지) - 육아지원분야 연구·연구사업 control tower 기구(육아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 안정적인 재정지원 - 연합후기 단계에서 국제적 기준 고려 및 국제기구의 중재 | | | |

〈부록 표 3〉 통일국가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로드맵

| 시기 | 제도적 통합 완성기 | 통일 성숙기 |
|---------------|--|--|
|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전략 | <p>중장기 생애초기단계부터 “차별받지 않은” 육아지원정책 수립</p> <p>학력·임금 차별방지를 위한 중장기 “통일 후 교원양성정책” 수립</p> <p>최종 확정된 표준화 용어 단계별 적용 → 전(全) 기관의 표준화된 교수 용어 사용</p> <p>남북 교사 재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 → 공정한 교원양성 및 처우 정책 실시</p> <p>남북 육아지원기관 격차 해소 → 육아지원기관 설립·운영의 표준화</p> <p>지역별 영유아 인구수·설립주체 현황에 따른 육아지원기관 설립</p> <p>북한 출신 학자, 교원 연구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p> <p>남북 교원 순환근무제 실시</p> | <p>- 사회심리통합 중심의 육아지원정책 수립</p> <p>- 차별 없는 육아지원정책으로 한민족 평화공동체 구현</p> <p>- 구성원이 통일국가로의 통합이 아닌, 통일국가가 구성원의 소속감 제고 정책</p> |
| 기본전제 | <p>-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인정</p> <p>- 기회균등 보장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p> <p>-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p> | |
| 추진전략 | <p>-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 단계 추진사업은 종료</p> <p>- 통일 후 육아지원정책 연구와 연구사업 지속</p> <p>- 육아지원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p> | |

Ⅲ. 육아지원 다각화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이정림

요약

-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였으며,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였음.
- 영아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유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 연령의 하향화 추세임.
- 영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김.
-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많았고,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도 빨랐음.
- 영유아 시기의 한 곳에서의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경험 학습 기회 부족, 공감 능력 및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 미숙,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 차단이 되고 있었음.
-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 이용을 좋아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함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 확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음.

1.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일과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미디어 매체(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용과 연관되어 있음.
- 2012년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만의 이용률은 72.8%이고, 유아 인터넷 이용자수는 1,020천명(전년대비 140천명 증가)으로 전년대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에서는 전국 만 5세 이상 9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 군의 인터넷 중독률이 7.3%로 성인(20세 이상·59세 이하)의 중독률 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인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연구'를 토대로 구성됨.

- 한편,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구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기준 63.7%로 전년도의 31.3%에서 1년간 2배 이상이 증가되었음(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신체적으로는 시력저하, 수면장애 등 문제를 일으키며 산만함, 대인관계문제, 폭력성 발현 등 정신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급속도로 스마트폰 노출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스마트폰 이용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 연령의 하향화와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유아 스마트폰의 이용 및 노출실태를 파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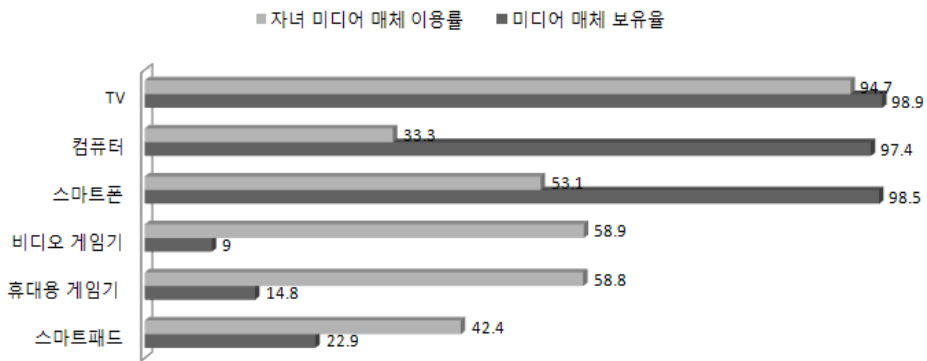
2.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부모의 개입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가.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현황

1) 가정 내 미디어매체(스마트폰 포함) 보유율 및 영유아 이용률

- 가정 내 TV,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반적인 미디어 매체 보유율은 각각 모두 97%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 내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98% 이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아의 이용률은 68.4%로 영아 34.9%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현대의 스마트폰 증가로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가정 내 미디어 매체 보유율, 영유아 이용률

2) 영유아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

-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시기의 평균을 살펴보면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인 영아시기에 이미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영아와 유아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유아 2.86세, 영아 0.84세로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가 더 빨라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조사 대상 영유아의 출생연도가 2008년~2013년인 점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이 2010년경에 시작된 것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음.
 - 0세 영아의 10.7%가 0세에 스마트폰을 이용했으며 1세는 12.1%가 0세에, 18.1%가 1세에 스마트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 구분 | 최초 이용 연령 | | | | | | | 평균 | 전체 | 2.27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계(수) | | | |
| 연령 | 0세 | 10.7 | - | - | - | - | - | 10.7(9) | 0.00 | 영아 평균 |
| | 1세 | 12.1 | 18.1 | - | - | - | - | 30.2(55) | 0.60 | |
| | 2세 | 8.5 | 27.1 | 12.2 | - | - | - | 47.9(90) | 1.08 | |
| | 3세 | 1.2 | 14.5 | 22.5 | 23.7 | - | - | 61.8(107) | 2.11 | 유아 평균 |
| | 4세 | 2.2 | 3.9 | 15.6 | 31.3 | 14.0 | - | 67.0(120) | 2.76 | |
| 5세 | 1.0 | 4.1 | 6.7 | 21.6 | 27.3 | 13.9 | 74.7(145) | 3.50 | | |

- 응답 대상 1세 영아 중 30.2%가 1세 이하에 스마트폰을 최초로 이용했으며, 2세 영아의 경우는 47.9%가 2세 이하, 3세의 경우 61.8%가 3세 이하, 4세의 67.0%가 4세 이하, 5세의 74.7%가 5세 이하에서 최초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의 최초 이용 시기가 0세인 경우 이용 시간이 33.45분, 1세는 32.84분, 2세 29.54분, 3세 34.42분, 4세 28.65분, 5세 24.81분으로 나타났음.
-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자녀 스마트폰 최초이용시기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시간

| 연령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단위: 분 |
|----|------|--------|-------|-------|-------|
| | | | | | 계 |
| 0세 | 0.00 | 300.00 | 33.45 | 45.98 | 55 |
| 1세 | 0.00 | 240.00 | 32.84 | 29.93 | 124 |
| 2세 | 0.00 | 120.00 | 29.56 | 22.06 | 103 |
| 3세 | 0.00 | 240.00 | 34.42 | 36.47 | 139 |
| 4세 | 0.00 | 120.00 | 28.65 | 19.76 | 78 |
| 5세 | 0.00 | 60.00 | 24.81 | 17.45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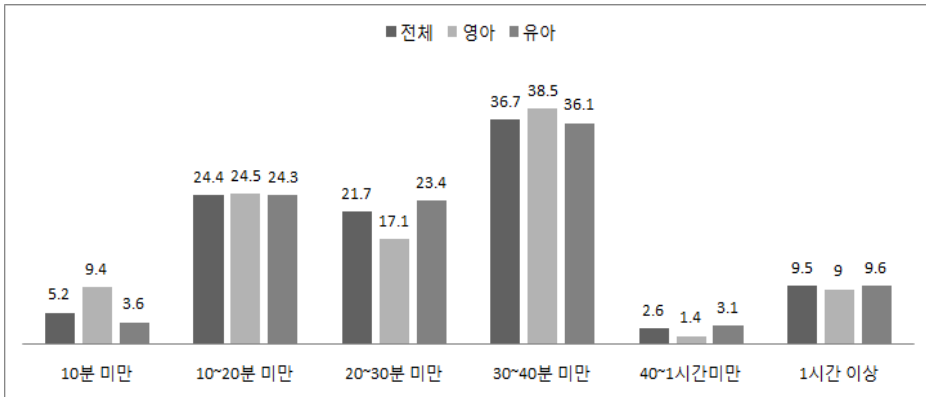
3)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빈도

- 스마트폰 주중 전체 평균 이용 시간은 31.65분, 영아 이용 32.53분, 유아 평균 31.28분으로 나타났음.
- 주말 이용 시간은 전체 평균 39.05분, 영아 평균 39.19분, 유아 평균 39.82분으로 나타나서 주말 평균 이용 시간이 주중 평균 이용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영아 이용이 유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노출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영유아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 구분 | 단위: %(분) | | | | | | | | |
|------|----------|-------|------------|------------|----------------|-------|------------|------------|-------|
| | 주중 일일 평균 | | | |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계 | t | 평균 | 표준편차 | 계 | t | |
| 전체 | 31.65 | 30.85 | 100.0(526) | | 39.05 | 36.40 | 100.0(526) | | |
| 스마트폰 | 영아 | 32.53 | 37.19 | 100.0(154) | 0.42 | 37.19 | 38.94 | 100.0(154) | -0.75 |
| | 유아 | 31.28 | 27.85 | 100.0(372) | | 39.82 | 35.33 | 100.0(372) | |

- 전체 연령의 36.7%가 30~40분 미만, 24.4%가 10~20분 미만, 21.7%가 20~30분 미만을 사용하였음.
- 영유아의 대부분은 10~40분 사이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영유아도 9.5%로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임.



[그림 2] 영유아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지난 1달 간을 기준으로 질문한 문항에 대해 일주일에 1-2회 사용이 4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스마트폰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 한 달에 1-2회 | 일주일에 1-2회 | 일주일에 3-4회 | 일주일에 5-6회 | 매일 | 계 | $\chi^2(df)$ |
|---------|-----------|-----------|-----------|-----------|------|------------|--------------|
| 전체 | 3.2 | 41.3 | 34.0 | 6.7 | 14.8 | 100.0(526) | 5.49(4) |
| 스마트폰 영아 | 5.2 | 35.1 | 37.0 | 6.5 | 16.2 | 100.0(154) | |
| 유아 | 2.4 | 43.8 | 32.8 | 6.7 | 14.2 | 100.0(372) | |

4)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장소

-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다음으로는 카페 및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장소

| 구분 | 단위: %(명) | | |
|----------------------|------------|------------|------------|
| | 전체 | 영아 | 유아 |
| 전체 | 100.0(947) | 100.0(429) | 100.0(518) |
| 가정 | 71.9 | 71.4 | 72.0 |
| 카페 및 식당 | 9.5 | 11.0 | 8.9 |
| 개인용 승용차 | 7.8 | 5.8 | 8.6 |
| 다른 사람(친구 등)의 집 | 4.9 | 4.5 | 5.1 |
| 백화점, 마트, 쇼핑몰 | 2.3 | 2.6 | 2.2 |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 1.7 | 2.6 | 1.3 |
|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관공서) | 1.1 | 1.9 | 0.8 |
| 기타 | 0.6 | - | 0.8 |
| 유모차 안 | 0.2 | - | 0.3 |

* 복수응답임.

5)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이유

-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녀가 좋아해서가 7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유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매체의 노출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6〉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 구분 | 단위: %(명) | | |
|--------------|------------|------------|------------|
| | 전체 | 영아 | 유아 |
| 전체 | 100.0(526) | 100.0(154) | 100.0(372) |
| 자녀가 좋아해서 | 70.9 | 70.8 | 71.0 |
| 또래와 공감대 형성 | 12.5 | 12.3 | 12.6 |
| 정보검색 등 지식 습득 | 4.8 | 1.3 | 6.2 |
| 습관적 사용 | 6.1 | 9.1 | 4.8 |
| 기타 | 5.5 | 6.5 | 5.1 |
| 모름/무응답 | 0.2 | - | 0.3 |
| $\chi^2(df)$ | | 9.50(5) | |

6) 영유아 이용 스마트폰 서비스

-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전체 연령에서 만화 30.5%, 게임 26.0%, 음악(노래) 13.1%, 교육용 콘텐츠 12.1%, 카메라, 사진첩 11.7%, DMB 2.9%, 영화 1.4%, 검색 0.9%, 웹서핑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영유아 선호 스마트폰 서비스

| 구분 | 단위: %(명) | | |
|---------------------|--------------|------------|------------|
| | 전체 | 영아 | 유아 |
| 전체 | 100.0(1,043) | 100.0(286) | 100.0(757) |
| 만화 | 30.5 | 35.0 | 28.8 |
| 게임 | 26.0 | 16.1 | 29.7 |
| 음악(노래) | 13.1 | 17.8 | 11.4 |
| 교육용 콘텐츠 | 12.1 | 13.3 | 11.6 |
| 카메라, 사진첩 | 11.7 | 12.2 | 11.5 |
| TV프로그램(DMB) | 2.9 | 3.5 | 2.6 |
| 영화중계 | 1.4 | 0.7 | 1.7 |
| 검색 | 0.9 | 0.7 | 0.9 |
| 일반적인 웹서핑 | 0.6 | - | 0.8 |
| 채팅,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 0.6 | 0.7 | 0.5 |
| 커뮤니티(카페/클럽) | 0.2 | - | 0.3 |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 0.1 | - | 0.1 |

* 복수응답임.

나.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부모의 개입

1) 부모 스마트폰 이용 실태

가) 가정 내 스마트폰 주 이용자 및 이용 시간

- 가정 내(회사에서 업무용 사용제외)에서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스마트폰 주 이용자로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버지 28.5%로 나타났다.

〈표 8〉 가정 내 스마트폰 주 이용자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없음 | 아버지 | 어머니 | 조부모 | 형제 | 친척 | 기타 | 모름 | 계 |
| 전체 | 0.4 | 28.5 | 62.7 | 0.4 | 6.5 | 0.8 | 0.4 | 0.4 | 100.0(526) |
| 영아 | 0.6 | 25.3 | 66.2 | 0.6 | 5.2 | 1.3 | 0.6 | - | 100.0(154) |
| 유아 | 0.3 | 29.8 | 61.3 | 0.3 | 7.0 | 0.5 | 0.3 | 0.5 | 100.0(372) |

- 주중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주 이용자들의 주중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71.31분이었고, 영아 가정의 주 이용자는 82.58분, 유아 가정의 주 이용자는 66.64분이었음.
-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주 이용자들의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71.9분이었고, 주중 일일 평균 이용 시간과는 약 0.59분 정도로 별 차이가 없었음.

〈표 9〉 주 이용자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분

| 구분 | 주중 일일 평균 이용 시간 | | | |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이용 시간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계 | t | 평균 | 표준편차 | 계 | t |
| 전체 | 71.31 | 56.47 | 100.0(522) | 1.07 | 71.90 | 62.45 | 100.0(522) | 2.08* |
| 영아 | 82.58 | 68.43 | 100.0(153) | | 80.72 | 76.25 | 100.0(153) | |
| 유아 | 66.64 | 50.06 | 100.0(369) | | 68.24 | 55.42 | 100.0(369) | |

* $p < .05$

나) 주양육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영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의 관계

- 주양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영아 및 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음.
- 주양육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음.

〈표 10〉 영유아-주양육자 스마트폰 이용 상관관계

| | 주양육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 |
|---------------|-----------------|
| 영아-스마트폰 이용 시간 | 0.21** |
| 유아-스마트폰 이용 시간 | 0.24** |
|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 | -.15** |

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일일 스마트폰 이용 평균시간임.

** $p < .01$

2) 자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 의견 및 이용 제한

-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 및 이용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부모의 58.5%는 '허용하고 있다'고 응답, 41.5%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 및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미디어 중독과 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1〉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문항 | 단위: %(명) | | |
|---------------|------------|------------|------------|
| | 전체 | 영아 | 유아 |
| 전체 | 100.0(220) | 100.0(70) | 100.0(150) |
|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 | 40.0 | 35.7 | 42.0 |
| 유해 콘텐츠 접근가능성 | 14.5 | 14.3 | 14.7 |
| 인지발달에 저해 | 12.7 | 15.7 | 11.3 |
| 신체 발달 저하 | 13.2 | 8.6 | 15.3 |
| 사회성 발달 저하 | 11.8 | 17.1 | 9.3 |
| 광고에 과도하게 노출 | 4.5 | 2.9 | 5.3 |
| 개인신상 정보 노출 | 3.2 | 5.7 | 2.0 |
| $\chi^2(df)$ | 8.03(6) | | |

□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사용 시간, 사용가능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가 전체의 52.8%로 나타났으며, ‘없다’가 47.2%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가정에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학부모 중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다소 높았으나, 유아 학부모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9%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주양육자 교육정도로 살펴보면 주양육자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소득 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 | | | 단위: %(명) |
|--------------|------|------|--------------|--------------|
| 구분 | 있다 | 없다 | 계 | $\chi^2(df)$ |
| 전체 | 52.8 | 47.2 | 100.0(1,000) | |
| 영유아 | | | | |
| 영아 | 41.9 | 58.1 | 100.0(454) | 40.00(1)*** |
| 유아 | 61.9 | 38.1 | 100.0(546) | |
| 주양육자 교육정도 | | | | |
| 고졸 이하 | 45.6 | 54.4 | 100.0(307) | 11.94(3)** |
| 대학(2-3년제) 졸업 | 53.8 | 46.2 | 100.0(290) | |
| 대학교(4년제) 졸업 | 58.1 | 41.9 | 100.0(360) | |
| 대학원 졸업 | 64.3 | 35.7 | 100.0(28) | |
|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34.9 | 65.1 | 100.0(63) | 21.50(5)*** |
| 200~300만원 미만 | 47.1 | 52.9 | 100.0(204) | |
| 300~400만원 미만 | 54.0 | 46.0 | 100.0(376) | |
| 400~500만원 미만 | 54.7 | 45.3 | 100.0(159) | |
| 500~600만원 미만 | 53.5 | 46.5 | 100.0(114) | |
| 600만원 이상 | 70.2 | 29.8 | 100.0(84) | |

** $p < .01$, *** $p < .001$

-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규칙 있는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32.79분, 없는 집단에서 34.95분으로 나타났음.

〈표 13〉 자녀 스마트폰 이용규칙 유무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시간

| | | | | 단위: 분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계 | t |
| 있음 | 32.79 | 28.95 | 293 | -.83 |
| 없음 | 34.95 | 30.63 | 230 | |

-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프로그램 및 시간제한에 따른 자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폰은 프로그램 제한을 하는 집단은 31.5분, 하지 않는 집단은 45.50분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자녀의 스마트폰의 이용 시에 프로그램 제한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었음.

〈표 14〉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제한 여부에 따른 자녀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분

| 구분 | 프로그램 제한 | | | | 시간 제한 | | | |
|--------|---------|-------|-----|--------|-------|-------|-----|-------|
| | 평균 | 표준 편차 | 계 | t | 평균 | 표준 편차 | 계 | t |
| 스마트폰 | | | | | | | | |
| 제한 | 31.50 | 28.79 | 266 | -2.41* | 31.81 | 29.13 | 267 | -1.87 |
| 제한하지않음 | 45.50 | 27.90 | 27 | | 42.85 | 25.34 | 26 | |

* $p < .05$

- 시간제한은 31.81분, 제한하지 않는 집단은 42.85분으로 11분 정도의 사용 시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

3) 자녀 미디어 매체 이용 부모 교육

- 전체에서는 88.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학부모는 85.7%, 유아 학부모는 91.4%로 나타나 유아의 학부모에서 미디어매체 이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15〉 자녀의 미디어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 교육 필요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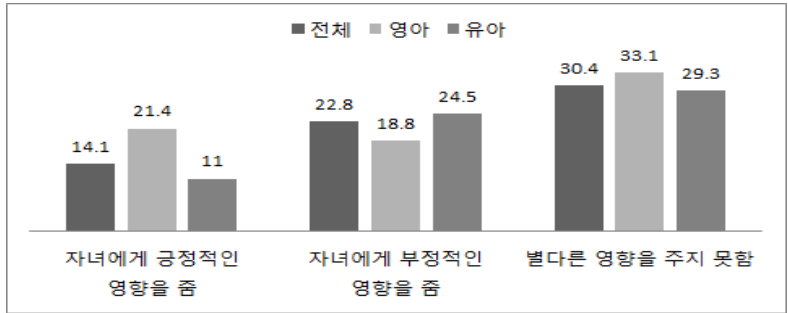
| 구분 | ① 매우 불필요 | ② 불필요 | ③ 보통 | ④ 필요 | ⑤ 매우 필요 | ④+⑤ | 계 | $\chi^2(df)$ |
|----|-------------|----------|---------|---------|------------|------|--------------|--------------|
| 전체 | 1.7 | 2.7 | 6.8 | 64.1 | 24.7 | 88.8 | 100.0(1,000) | |
| 영아 | 2.2 | 3.1 | 9.0 | 61.0 | 24.7 | 85.7 | 100.0(454) | 9.01(4) |
| 유아 | 1.3 | 2.4 | 4.9 | 66.7 | 24.7 | 91.4 | 100.0(546) | |

* $p < .05$, ** $p < .01$

4) 부모의 영유아 스마트폰 관련 의견

가)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준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30.4%,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줌 22.8%, 긍정적인 영향을 줌 14.1%였음.



[그림 3]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나)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 21.9%, 매우 부정적 1.0%, 긍정적 13.9%로, 보통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보다 많았음.
- 이러한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영아의 경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21.4%로 유아 10.8%보다 높았음.

<표 16>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 매우 부정적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모름/무응답 | 계 | $\chi^2(df)$ |
|----|--------|------|------|------|--------|------------|--------------|
| 전체 | 1.0 | 21.9 | 62.5 | 13.9 | 0.8 | 100.0(526) | |
| 영아 | 0.6 | 18.2 | 59.1 | 21.4 | 0.6 | 100.0(154) | 10.95(4)* |
| 유아 | 1.1 | 23.4 | 64.0 | 10.8 | 0.8 | 100.0(372) | |

* $p < .05$

5)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정책적 요구

가)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가정 내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되어 있음' 18.8%, '설치되어 있지 않음' 72.2%, '모름' 8.9%로 조사되었음.

<표 17>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설치되어 있음 | 설치 안됨 | 모름 | 계 | 단위: %(명) $\chi^2(df)$ |
|----|---------|-------|------|------------|--------------------------|
| 전체 | 18.8 | 72.2 | 8.9 | 100.0(526) | |
| 영아 | 24.7 | 64.9 | 10.4 | 100.0(154) | 6.09(2)* |
| 유아 | 16.4 | 75.3 | 8.3 | 100.0(372) | |

* $p < .05$

나)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나 법

-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나 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함'에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8.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필요 안함'에 응답한 경우는 11.2%로 조사되었음.

<표 18>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 필요 여부

| 구분 | 필요함 | 필요 안함 | 계 | 단위: %(명) $\chi^2(df)$ |
|----|------|-------|--------------|--------------------------|
| 전체 | 88.8 | 11.2 | 100.0(1,000) | |
| 영아 | 86.1 | 13.9 | 100.0(454) | 5.99(1)* |
| 유아 | 91.0 | 9.0 | 100.0(546) | |

* $p < .05$

3.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의심 사례조사

- 소아정신과 및 치료기관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유아 사례와 육아지원기관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사례를 조사하였음.
-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총 9명의 유아 사례를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2명, 아동상담사를 통하여 3명, 소아정신과 의사를 통하여 4명의 유아 정보를 4회에 걸쳐 수집하였음.

가.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의심 사례 유아 특성

- 아래의 <표 19>는 교사, 치료사 및 의사를 통하여 수집된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유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였음.

〈표 19〉 사례조사 대상 유아 특성

| 번호 | 대상 | 가정배경 | 치료 시기 및 방법 |
|----|-------------|--|---------------------------------|
| 1 | 만 4세 남아 | - 맞벌이 가정 | |
| 2 | 만 4세 남아 | - 맞벌이 가정 - 만 2세까지 조부모 돌봄 | - 2011년부터 주 1회 놀이치료, 언어치료 |
| 3 | 만 4세 남아 | - 맞벌이 가정 - 만 1세까지 조부모가 함께 육아 | |
| 4 | 만 3세 2개월 남아 | - 부모 갈등 - 모의 산후우울증 | - 2013년 7월부터 주 2회 놀이치료 |
| 5 | 만 5세 남아 | - 맞벌이 부부, 조부모의 양육 - 부모 갈등 | - 놀이치료 |
| 6 | 만 4세 5개월 여아 | - 맞벌이 부부 - 불안정한 애착 - 오빠는 ADHD, 컴퓨터 중독으로 상담치료 | - 놀이치료 |
| 7 | 만 5세 남아 | - 만 4세부터 맞벌이 부부 - 현재 모는 직장을 그만 둠. | - 2013년 3월부터 약물치료, 4월부터 놀이치료 병행 |
| 8 | 만 4세 남아 | - 1년 전 부의 무능력으로 부모 이혼 후 조부모와 함께 생활 - 부는 만성 게임 중독 | - 2013년 7월 3차례 방문 후 경제적 이유로 중단 |
| 9 | 만 4세 여아 | - 다문화가정으로 모가 일본인, 부는 한국인 - 부는 일용직 노동자 - 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됨 | - 2개월 약물치료 - 모.한국어교육프로그램에 참여 |

나. 사례조사 내용

□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감정표현의 미숙함
 - 감정표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화가 나면 때리는 행동과 함께 공격적으로 사자소리를 내면서 매우 크게 화를 냄(A).
 -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흥분된 감정의 상태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뛰는 모습을 보임(E).
-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물거나 때리고 밀치는 방법을 사용함(A).

- 기관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장난감 등의 놀이기구에도 관심을 주지 않음(G).
- 의사소통 방식의 어려움
 - 또래나 교사의 말에 반응이 없음(A).
 - 경청이 되지 않고 언어적 표현 능력도 낮으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음(E).
 -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표현만 함(F).
- 공격성을 나타냄
 - 자신이 의도한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면 친구나 교사를 물거나 발을 구르며 화를 표현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응함(F).
 - 자신을 방해하는 또래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특히 게임을 많이 해서인지 게임 속의 공격적인 행동(태권도를 빙자한)을 일과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빈도수가 많아짐(D).
-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분노발작의 경향을 보임
 - 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기만 하고,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침대에서도 게임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면 울고불고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물거나 할퀴는 양상을 보였음(G).
 -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집요하게 조르고 소리치고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음(H).
- 신체발달 저하
 - 잠깐의 야외활동에도 피로해 한다고 하며 앉아 있는 자세가 매우 구부정한 모습이고 또래들과 달리 신체활동에 의욕이 없어 보임(D).

4.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사례조사에 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측면과 부모 측면을 구분하여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영유아 측면

1)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 영아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유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 연령의 하향화 추세를 알 수 있었음.
 -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시기가 빨라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었음.
 - 작금의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점점 빨라지고 사용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임.

2) 스마트폰 중독 의심 유아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

- 발달의 모든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경험이 부족하고 관계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정서 사회성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한 곳에서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하여 영유아시기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기회도 적어짐.
 -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방법도 미숙해짐.

나. 부모 측면

1)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인식

-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의 이용 시간과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많았으며,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도 빨랐음.
 - 한편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이용 프로그램 제한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미디어 스마트폰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볼 때,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자녀의 건전한 미디어 매체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음.
-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었음.

2)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신념의 변화

- 부모의 양육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 및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한편, 스마트폰 이용을 교육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에게 실제 경험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접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학습했다고 생각하고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5.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보호 대책 방안

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

1)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의 법적 규제 조항 구체화

- 현재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과 관련된 규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통신은 물론 방송, 영상의 경우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규제조항은 있으나 영유아관련 규제조항은 없음.
- 최근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 법적 측면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임.
- 결국, 현재는 법적인 개정보다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연장선에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판단됨.

2)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 교사 양성과정 및 실무자 직무 연수 시 스마트폰 관련 내용 교육 실시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시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기관 및 관련기관에서의 예방교육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유아대상 학원과 같은 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 대상으로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에 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기관의 기관장이나 교사가 반드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육아지원기관 평가 시 평가문항 내용으로 추가
 -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이나 유치원 평가 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아대상의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작성하도록 함.

3)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강화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부모교육 체계화 및 강화

-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과 이용은 주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 및 가정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영유아 스마트폰 과다 노출이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개입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제공이 필요
 - 바쁜 부모들을 위해서 e-learning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부모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안과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부모 지침서 제공
 -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작성하여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하여 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다. 사회적 지원 방안

- 영유아를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및 정착
 - 부모들이 집에 있는 주말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음.
 -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통한 놀이 대신 신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 제공,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확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캠프 등의 문화 확산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에서의 지원 및 협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직장에서의 매월 정시 퇴근을 조장하는 패밀리데이(family day)의 활성화 및 기존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지정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라.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노출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수행되지 않았던 이유로 간과되었으나 실제 본 조사 결과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정도가 다소 심각한 상태임.
 - 따라서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방향
 - 영아와 유아에 대한 척도 개발은 분리되어 시도되어야 함.
 - 교사용과 학부모용이 따로 제작되어야 할 것임.
 - 위험군판별을 위한 표준점수 확정에 최소 1년의 시간과 큰 표집군이 필요함.

-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표준점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과 큰 표집군이 필요함.

참고문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2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Ⅲ. 육아지원 다각화

아동패널 0-4세
영유아 성장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와 정책 시사점

도남희

요약

- 한국아동패널의 0~4세(1차년도부터 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 특성과 양육환경의 종단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여 임시직과 자영업의 비율이 증가하나 아버지의 정규직 비율은 안정적이고 자영업이 증가함.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이가 크며 아버지의 주말 양육참여 시간이 주중에 비해 조금 많음.
-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은 주변의 가용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 어머니들은 지역사회 안전성과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이용 편리성에는 어느 정도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편리성에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핵가족이 대부분인 가족구조를 고려하여 양육이 어머니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가구 형편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아이를 키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함.

1. 연구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자녀양육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자녀양육은 부부의 공동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
 - 변화된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요구됨.

- 사회적 변화와 아이의 연령 증가에 따른 부모의 양육특성과 양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여 양육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 한국아동패널의 0~4세(1~5차년도)에 이르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거시적 양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한국아동패널의 0~4세(1차년도부터 5차년도)의 자료¹⁾를 분석함.
- 종단 자료 중 부모의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특성과 양육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종단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함.
 - 양육특성으로서 부모특성의 변화와 양육환경으로서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의 변화를 보고자 함.
- 양육특성과 양육환경 변인들을 분석하여 양육 관련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어 양육지원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양육환경의 변화

가. 부모 특성

1) 근로 특성

-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패널 아동 4세에 취업 중인 어머니는 43%이며, 나머지 57.0%는 미취업/학업 상태임.
 - 어머니의 연령별 취업 비율은 0세 29.2%, 1세 31.3%, 2세 32.9%, 3세 38.5%, 4세 43.0%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아버지는 전체의 94.7%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직업이 있었고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3%로 나타남.

1) 본고는 '한국아동패널 2012'의 보고서의 0~3세(1차년도~4차년도) 조사결과와 '한국아동패널 2013'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췌, 재구성하였음.

〈표 1〉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명

| 구분 | 어머니 | | | | | 아버지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취업중 | 29.2 | 31.3 | 32.9 | 38.5 | 43.0 | 98.5 | 98.1 | 97.5 | 98.3 | 94.7 |
| 학업중 | 0.8 | 0.2 | 0.2 | 0.6 | | 0.4 | 0.3 | 0.3 | 0.1 | |
| 미취학/미취업 | 70.0 | 68.4 | 66.9 | 60.9 | 57.0 | 1.1 | 1.6 | 2.1 | 1.6 | 5.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5차년도(4세)는 학업 중을 취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아동이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부에서 취업모로 변화를 추측할 수 있음
- 정규직 및 상용직의 비율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취업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상용직 각각 61.0%와 74.1%, 비정규직 중 임시직도 각각 12.9%와 2.0%로 나타남.

〈표 2〉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분 | 어머니 | | | | | 아버지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정규직/상용직 | 86.0 | 80.8 | 70.0 | 67.1 | 61.0 | 81.9 | 83.6 | 72.4 | 74.4 | 74.1 |
| 비정규직 중 임시직 | 4.9 | 7.4 | 12.0 | 12.4 | 12.9 | 4.2 | 3.5 | 2.7 | 3.1 | 2.0 |
| 비정규직 중 일용직 | 1.4 | 2.4 | 1.6 | 1.2 | 2.9 | 2.2 | 2.7 | 2.8 | 3.3 | 2.6 |
| 고용주/자영업자 | - | 0.0 | 0.0 | 14.1 | 18.0 | 0.0 | 10.3 | 20.7 | 7.4 | 20.4 |
| 무급가족 종사자 | - | 7.3 | 12.7 | 5.2 | 5.2 | 0.0 | 0.0 | 1.1 | 10.9 | 0.9 |
| 기타 | 7.7 | 2.1 | 3.8 | - | - | 11.7 | 0.0 | 0.4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3세에 기타를 삭제함.

- 어머니의 경우는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주/자영업자는 3세와 4세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버지의 경우는 정규직/상용직의 경우는 큰 변화는 없으며 고용주/자영업자는 4세에 증가하고 있음.
-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가 있게 되고 성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2) 자녀양육 특성

가)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시간

-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은 주중에는 평균 5시간 10분, 아버지들은 주중에는 평균 1시간 28분의 양육참여를 하며, 주말에 어머니는 평균 7시간 38분, 아버지는 4시간 30분을 양육에 참여함.
-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주중에는 4배 이상, 주말에는 2배 이상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시간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음.

〈표 3〉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단위: 시간

| 구분 | 어머니 | | | 아버지 | | |
|-----------|------|------|------|------|------|------|
| | 2세 | 3세 | 4세 | 2세 | 3세 | 4세 |
| 주중 | | | | | | |
| 평균 | 5.8 | 5.1 | 4.6 | 1.4 | 1.6 | 1.4 |
| 표준편차 | 4.1 | 3.0 | 2.4 | 1.3 | 1.5 | 1.4 |
| 최소값 | 0.0 | 0.0 | 0.0 | 0.0 | 0.0 | 0.0 |
| 최대값 | 24.0 | 24.0 | 13.5 | 16.0 | 20.0 | 15.0 |
| 주말 | | | | | | |
| 평균 | 7.5 | 9.0 | 6.4 | 4.1 | 4.9 | 4.5 |
| 표준편차 | 3.9 | 3.6 | 2.3 | 3.0 | 3.1 | 2.6 |
| 최소값 | 0.0 | 1.0 | 0.0 | 0.0 | 0.0 | 0.0 |
| 최대값 | 24.0 | 24.0 | 18.0 | 24.0 | 24.0 | 15.0 |

주: 1일 기준의 부모의 양육참여 시간을 환산하여 제시함. 2세는 원래 주중 총 양육참여 시간과 주말 총 양육참여 시간을 재분석하여 제시함.

-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참여 시간이 약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버지의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주중보다는 주말의 양육 참여 시간은 약간 증가했음.
- 어머니가 평정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6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
- 0세에서 2세까지는 평균 3.73점으로 증가하여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아지다가 3세에서 4세 사이에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음.

〈표 4〉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어머니 응답)

| 단위: 점 | | | | | |
|-------|------|------|------|------|------|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3.60 | 3.64 | 3.73 | 3.60 | 3.56 |
| 표준편차 | 0.80 | 0.88 | 0.83 | 0.80 | 0.79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함.

나) 양육행동

-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사회적 양육의 평균점수는 3.84점으로 아이에게 대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음.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양육행동 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한계설정에 대한 양육행동도 3세에 비해 약간 낮아지고 있음.

〈표 5〉 부모의 양육행동

| 단위: 점 | | | | | |
|-----------|------------|------------|------------|------------|------------|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어머니 사회적양육 | 4.05(.50) | 3.89(.49) | 3.80(.51) | 3.80(.49) | 3.66(.54) |
| 한계설정 | - | - | - | 3.50(.46) | 3.37(.52) |
| 아버지 사회적양육 | - | - | - | 3.64(.58) | 3.55(.59) |
| 한계설정 | - | - | - | 3.47(.52) | 3.25(.60) |

주: 0-2세까지는 양육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양육 관련 문항만 질문하다가 3세부터 한계 설정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

- 아버지가 평정한 자신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사회적 양육에 대해서는 평균 3.60점, 한계설정은 3.36점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비교할 때 사회적 양육과 한계 설정 모두 낮은 점수임.

3) 가정환경의 질

- 패널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EC-HOME을 어머니들에게 실시하였으며 EC-HOME의 각 하위척도(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의 총점과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더불어 중위수 및 중위수와의 편차를 제시함.
- EC-HOME의 각 하위척도의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가정이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질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표 6〉 HOME: 가정환경 총점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계(수) | F | 중위수 | 편차≤6 | 편차=7 | 편차≥8 |
|-----------|---------------------|------|-------|----------------------|-------|------|------|------|
| 4세 | 49.13 | 4.42 | 1,690 | - | 50.00 | 98.8 | 0.2 | 1.1 |
| 가구소득 | | | | | | | | |
| 240만원 이하 | 47.99 ^b | 5.8 | 175 | 4.86 ^{**} | 49.00 | 97.1 | 0.6 | 2.3 |
| 241-454만원 | 49.00 ^{ab} | 4.64 | 915 | | 50.00 | 98.4 | 0.2 | 1.4 |
| 455만원 이상 | 49.65 ^a | 3.44 | 598 | | 50.00 | 99.8 | 0.0 | 0.2 |
| 3세 | 43.88 | 4.31 | 1,753 | | 45.00 | 95.6 | 0.9 | 3.5 |
| 가구소득 | | | | | | | | |
| 300만원 이하 | 42.79 | 5.02 | 588 | 28.16 ^{***} | 44.00 | 89.1 | 1.9 | 9.0 |
| 301~400만원 | 43.79 | 3.95 | 419 | | 45.00 | 90.9 | 2.9 | 6.2 |
| 401~530만원 | 44.24 | 3.61 | 310 | | 45.00 | 94.8 | 0.0 | 5.2 |
| 531만원 이상 | 45.20 | 3.64 | 436 | | 46.00 | 92.9 | 1.4 | 5.7 |

** $p < .01$, *** $p < .001$

- 4차년도의 경우는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43.88점이었고, 전체 가구의 95.6%가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중위수에서 6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냄.
- 5차년도의 경우,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49.13점이었고, 전체 가구의 98.8%가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중위수에서 6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음.
- 가구소득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정환경 검사총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 상위 집단의 가정환경 총점이 하위 집단보다 높았음.

4) 부모참여

-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 형태와 부모의 방문 빈도를 조사함.
 - 3세 부모가 보고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 행사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부모참여 형태는 담임 상담(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내용)의 경우 참여율이 높았고, 가장 적게 참여한 행사로는 기관 운영 의사 결정과 관련된 기관 운영위원회와 재정적 기여로 나타남.
 -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교사가 보고한 4세 부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참여 행사로 담임 상담, 가정통신문에 대한 답장(활용)과 오리엔테이션 등이었고, 가장 적게 참석한 부모참여 행사는 기관 운영위원회와 급식준비 순이었음.

〈표 7〉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형태

단위: %

| 구분 | 오리엔 테이션 | 아동 행사 | 담임 상담 ¹⁾ | 부모 교육 프로 그램 | 자원 봉사 | 기관 운영 의사 결정 | 가정 통신문 답장 ²⁾ | 재정적 기여 | 계 |
|----|------------|----------|------------------------|----------------------|----------|----------------------|-------------------------------|-----------|-------|
| 3세 | - | 28.7 | 45.1 | 9.7 | 8.0 | 4.1 | 7.6 | 1.5 | 100.0 |
| 4세 | 19.2 | 15.2 | 21.1 | 11.2 | 3.6 | 2.0 | 20.3 | 7.4 | 100.0 |

주: 3세에는 어머니가 응답하였고, 4세에는 기관의 교사가 응답한 결과임. 1)은 3세에는 담임 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2)는 가정통신문 활용으로 조사함.

〈표 8〉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

단위: %(명)

| 구분 | 주 1회 | 주 2~3회 | 월 1회 | 월 2~3회 | 6개월에 1~2회 | 6개월에 3~4회 | 1년 간 1~2회 | 거의 가지 않음 | 계(수) |
|----|---------|-----------|---------|-----------|--------------|--------------|--------------|----------------|--------------|
| 3세 | 6.9 | 7.6 | 19.3 | 8.4 | 21.2 | 7.2 | 13.5 | 15.9 | 100.0(1,387) |
| 4세 | 6.6 | 7.1 | 15.3 | 6.7 | 29.2 | 9.2 | 15.1 | 10.1 | 100.0(1,631) |

-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지난 1년 동안의 방문 횟수는 3세와 4세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6개월에 1~2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 1회 순으로 적어도 6개월에 1~2회 이상은 기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가구 특성

1) 가구원 특성

- 패널 가구의 가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 수를 알아 본 결과, 대상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3.14명으로 나타남.
 - 대부분 패널 아동을 제외하고는 3명 정도의 가족구성원임.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 구성원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임.
- 패널 가구의 88.4%가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짐.
 -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7.7%, 조부모와 부부, 자녀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원 구성이 2.0% 순임.

- 0세에서 2세까지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0% 내외였으나 3세에 이르러 조부모와 사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90% 정도가 핵가족 형태임.

〈표 9〉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 구성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가구구성원수 | 2.86 | 2.82 | 2.93 | 3.05 | 4.06 |
| 부부+자녀 | 86.7 | 88.2 | 86.2 | 91.3 | 89.7 |
| 조부모+부부+자녀 | 8.9 | 7.8 | 9.3 | 6.3 | 6.1 |
| 부부+자녀+친척 | 2.1 | 1.3 | 1.6 | 0.6 | 0.5 |
| 조부모+부부+자녀+친척 | 2.3 | 2.7 | 2.2 | 1.6 | 1.3 |
| 기타(무응답 가구) | 0.0 | 0.0 | 0.6 | 0.2 | 2.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가구구성수는 아동을 제외한 평균 가구구성원수이며 가구구성은 응답자가 친척일 경우, 부모를 구성원 수에 따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기타'에 포함함.

2) 물리적 환경

- 패널 가구의 83.9%가 자가나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세가 감소하면서 자가 소유가 많아짐.
 -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4.5%, 전세 39.5%, 보증부 월세 7.2%, 무상 주택 6.7% 순임.

〈표 10〉 주택 소유형태

| 구분 | 단위: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 자가 | 43.0 | 42.5 | 44.9 | 47.5 |
| 전세 | 42.2 | 40.8 | 38.5 | 36.3 |
| 전월세(보증부 월세) | 8.4 | 8.1 | 6.3 | 5.9 |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0.2 | 0.5 | 0.2 | 0.4 |
| 무상 | 5.7 | 7.0 | 7.0 | 7.2 |
| 공공임대 | 0.0 | 0.0 | 1.7 | 1.5 |
| 기타 | 0.5 | 1.2 | 1.5 | 1.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표 11〉 거주 중인 주택 유형

| 구분 | 단위: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 단독주택 | 9.1 | 7.4 | 8.3 | 9.6 |
|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 67.6 | 71.0 | 73.6 | 73.9 |
| 연립주택(빌라 포함) | 13.5 | 12.2 | 10.9 | 11.0 |
|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 7.2 | 6.9 | 4.7 | 3.9 |
|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 2.1 | 1.7 | 1.9 | 1.3 |
| 오피스텔 | 0.4 | 0.6 | 0.4 | 0.1 |
| 기타 | 0.0 | 0.0 | 0.2 | 0.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거주 중인 주택의 유형은 4년 평균 아파트가 71.5%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 11.9%, 단독주택 13.6%, 다세대주택 5.7% 순으로 나타남.
 - 1세~3세에 걸쳐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3) 가계경제요소

- 패널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년 동안 401.89만원으로 나타남.
 - 0세에서 3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가구들 간의 편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이 늘어나지만 가구들 간의 소득 차이는 증가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표 12〉 월평균 가구 소득

| 구분 | 단위: 만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318.16 | 337.36 | 360.07 | 508.96 | 484.92 |
| 표준편차 | 151.93 | 267.25 | 262.24 | 663.66 | 472.16 |
| 중위값 | 300 | 300 | 300 | 380 | 399.87 |
| 최소값 | 0 | 50 | 0 | 0 | 0 |
| 최대값 | 1,300 | 7,000 | 6,000 | 21,400 | 8,150 |

- 가구의 총 지출은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월 평균 274.51만원으로 추측됨.
 - 가구 총 지출은 0세부터 2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3세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4세 이르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13〉 월평균 가구 총지출

| 구분 | 단위: 만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243.60 | 278.43 | 289.29 | 212.76 | 348.48 |
| 표준편차 | 122.55 | 287.54 | 243.88 | 106.92 | 190.07 |
| 중위값 | 220 | 235 | 250 | 200 | 304.06 |
| 최소값 | 6 | 44 | 40 | 50 | 0 |
| 최대값 | 1,200 | 4,200 | 3,600 | 1,600 | 3,000 |

-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평균적으로 월평균 68.44만원으로 추정됨.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녀 지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3세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아동의 출생 당시에는 자녀 관련 소비가 일어나고 2세까지는 지출되는 초기 양육비용이 점차 줄어들다가 유아기에 이르면서 3세부터는 다른 형태(교육비용)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됨.

〈표 14〉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 구분 | 단위: 만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61.12 | 50.31 | 48.75 | 85.46 | 96.56 |
| 표준편차 | 68.54 | 82.59 | 56.82 | 58.05 | 59.45 |
| 중위값 | 40 | 35 | 35 | 70 | 82.83 |
| 최소값 | 0 | 5 | 3 | 5 | 7 |
| 최대값 | 720 | 1805 | 2010 | 700 | 700 |

4)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 육아지원서비스 유형

-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나 대리 양육자가 아닌 기관을 통한 육아지원서비스에 거의 의존하고 있음.
- 0세에서는 84.4%가 부모였으나 1세에는 72.3%, 2세에는 48.1%, 3세에는 17.3%, 4세에는 3.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반대로 점차 높아져 1세에는 27.7%였는데 점점 증가하여 4세에는 96.8%가 부모 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 구분 | 단위: %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부모(주로 어머니) | 84.4 | 72.3 | 48.1 | 17.3 | 3.2 |
|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 | 15.6 | 27.7 | 51.9 | 82.7 | 96.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낮시간(오전 8시~오후8시) 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임.

-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패 널 가정 중,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는 0세에는 개인대리양육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츰 낮아져 3세에는 1.4%, 4세에는 0.1%에 머무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0세 2%에서 1세 10%, 2세 41%, 그리고 3세에는 전체의 75.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 4세부터는 3세에 1.5%이던 유치원의 이용율이 34.3%로 증가하여 이전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 16〉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 구분 | 단위: %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전체 | 15.6 | 27.8 | 51.7 | 82.8 | 94.5 |
| 개인대리양육자 | 13.5 | 16.8 | 9.5 | 1.4 | 0.1 |
| 어린이집 | 2.0 | 10.1 | 41.2 | 75.6 | 60.7 |
| 유치원 | - | - | - | 1.5 | 34.3 |
| 반일제 이상 학원 | - | - | 0.2 | 1.2 | 4.3 |
| 기타기관 (선교원 등) | - | - | 0.2 | 0.2 | 0.7 |
| 개인대리양육자 + 어린이집 병행 | 0.1 | 0.9 | 0.6 | 2.6 | |
| 개인대리양육자 + 유치원 병행 | - | - | - | 0.2 | 2.2 |
| 개인대리양육자 + 반일제 학원 병행 | - | - | - | 0.1 | |
| 어린이집 + 기타기관 병행 | - | - | - | 0.1 | - |

주: 3세에 유치원, 개인대리양육자와 반일제이상학원, 개인대리양육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학원, 어린이집과 기타기관 보기를 추가함. 그러나 4세에는 교사의 기관 질문지를 통해 응답하여 기관 중심의 응답임.

나) 육아지원기관 유형

- 2세보다는 3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4세부터는 점차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이용에서 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이용하는 기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표 17〉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 구분 | 단위: % | | |
|----------------|-------|-------|-------|
| | 2세 | 3세 | 4세 |
| 어린이집 | 98.9 | 95.1 | 60.7 |
| 유치원 | - | 1.9 | 34.3 |
| 영어학원(영어유치원) | - | 0.4 | |
| 놀이학교 | 0.1 | 1.6 | 4.3 |
| 미술,태권도 등의 각종학원 | - | 0.3 | |
| 선교원 | 0.3 | 0.5 | 0.7 |
| 기타 | 0.6 | 0.3 |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5차년도(4세)에는 육아지원기관 유형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기타(선교원 등)으로 분류함.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영아기인 0세에는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16.0%였으나 점차 낮아져 3세에는 1.1%에 이름.
-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4세에는 99.3%가 주 5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0세에 나타났던 주중 필요할 때 이용하는 간헐적 이용이 거의 사라지고 있음.

〈표 18〉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 구분 | 단위: % |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16.0 | 13.3 | 3.3 | 1.1 | 0.5 |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78.1 | 85.7 | 96.0 | 98.2 | 99.3 | |
| 일주일 내내 | 0.0 | 1.0 | 0.7 | 0.0 | 0.1 | |
| 일주일에 며칠만 | 5.9 | 0.0 | 0.0 | 0.6 | 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주: 0세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2078명의 21.6%에 해당하는 249명임.

-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은 감소하고 있음.
 - 0세에서 4세까지 이용 시간을 볼 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을 살펴 본 결과, 0세 12시간 44분 정도 이용하다가 4세 7시간 09분을 이용하고 있었음.
 -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취업 등 돌봄의 필요성에 의해 기관보육을 많이 이용하다가 점차로 사회성, 인지 발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단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별활동 등과 같은 사교육 기관으로 이용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19〉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 구분 | 단위: 시간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12.44 | 8.76 | 7.79 | 7.39 | 7.09 |
| 표준편차 | 3.25 | 2.08 | 1.86 | 1.55 | 1.44 |
| 중위값 | 13.50 | 9.00 | 8.00 | 7.00 | 7.00 |
| 최소값 | 2.00 | 3.00 | 1.10 | 2.50 | 3.50 |
| 최대값 | 16.83 | 13.98 | 15.50 | 13.00 | 13.00 |

주: 0세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2,078명의 21.6%에 해당하는 249명임.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지불되는 비용을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꾸준히 평균 비용이 줄어들다가 4세에 다시 증가하고 있음.
 - 4세에는 평균 비용도 증가하고 표준편차도 더 커지면서 최대값도 매우 높아,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관이 다양해져 가구 당 이용 비용이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됨.

〈표 20〉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 구분 | 단위: 만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평균 | 29.94 | 28.85 | 23.36 | 19.85 | 25.25 |
| 표준편차 | 11.38 | 12.56 | 15.11 | 17.04 | 20.23 |
| 중위값 | 37 | 31 | 26 | 11 | 29.82 |
| 최소값 | 5 | 3 | 1 | 1 | 0 |
| 최대값 | 50 | 60 | 100 | 120 | 186 |

-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확인한 결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1세 19.6%, 2세 51.9%, 3세 44.1%, 4세 56.3%로 약간의 비율의 변화가 있음.
 - 부담되지 않는다는 경우를 보면, 1세 53.7%, 2세 27.1%, 3세 26.1%, 4세 18.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되지 않는 비율이 매우 감소한다는 것은 부담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임.

〈표 21〉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 구분 | 단위: %, 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 | 10.2 | 13.8 | 7.6 | 5.5 |
|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 - | 43.5 | 13.3 | 18.5 | 12.5 |
| 적당하다 | - | 26.7 | 21.1 | 29.9 | 25.7 |
| 부담되는 편이다 | - | 13.3 | 38.3 | 30.5 | 40.7 |
| 매우 부담된다 | - | 6.3 | 13.6 | 13.6 | 15.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 | 3.38 | 3.25 | 3.24 | 3.48 |
| 표준편차 | - | 1.04 | 1.24 | 1.13 | 1.07 |

다. 지역사회 특성

1) 주거지역 유형

-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5년에 걸쳐 일반아파트 지역이 가장 높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반주택지역, 상가/회사지역 및 공장(단)지역은 감소하고 있음.

〈표 22〉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 구분 | 단위: %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일반주택지역 | 32.1 | 25.9 | 25.2 | 23.7 | 22.8 |
| 일반아파트지역 | 59.5 | 66.4 | 68.9 | 71.2 | 71.0 |
| 상가/회사지역 | 4.2 | 3.0 | 2.0 | 1.9 | 2.2 |
| 공장(단)지역 | 1.0 | 1.0 | 0.7 | 0.5 | 1.0 |
| 농어가지역 | 2.6 | 3.3 | 2.9 | 2.5 | 3.1 |
| 기타 | 0.6 | 0.4 | 0.3 | 0.2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가) 전반적 양육적절성

-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양육 적절성에 대한 평균값은 평균 3.22점으로 전반적으로 좋거나 매우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37.1% 정도로 전반적 양육적절성은 보통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패널 가구들의 소득이나 주거형태를 고려할 때 양육적절성 수준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 23〉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

| 구분 | 단위: %, 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매우 좋지 않음 | 2.4 | 2.3 | 1.8 | 2.7 | 2.7 |
| 좋지 않음 | 16.6 | 15.0 | 14.7 | 12.0 | 12.9 |
| 보통임 | 42.4 | 47.1 | 47.7 | 50.1 | 44.1 |
| 좋음 | 33.9 | 31.8 | 32.3 | 32.7 | 33.8 |
| 매우 좋음 | 4.7 | 3.9 | 3.4 | 2.5 | 6.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22 | 3.20 | 3.21 | 3.20 | 3.29 |
| 표준편차 | 0.86 | 0.82 | 0.80 | 0.78 | 0.87 |

나) 가용 육아지원기관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은 주변의 가용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보다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표 24〉 지역사회의 가용 육아지원기관

| 구분 | 단위: 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어린이집 | 3.44(1.00) | 3.37(0.95) | 3.44(0.96) | 3.26(0.93) | 3.13(1.00) |
| 유치원 | 3.27(1.01) | 2.98(0.99) | 3.03(1.02) | 2.79(1.00) | |
| 사교육기관 | 3.26(1.04) | 2.98(0.99) | 3.00(1.01) | 2.78(1.01) | 2.88(1.08) |

주: 5차년도인 4세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육아지원기관을 총괄하여 응답함.

- 지역사회는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각각에 대하여 평균 3.33점, 3.04점, 2.98점으로 나타남.
- 이는 아이가 기관을 더 이용하게 되는 연령이 될수록 주변의 가용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서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다) 지역사회의 시설 이용편리성

- 어머니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이용 편리성에는 어느 정도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편리성에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여가시설의 이용편리성과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각각의 평균은 3.18점과 2.47점이었음.
 - 공공 여가시설이나 공간 이용에 비해 문화시설 이용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표 25〉 지역사회의 시설 이용 편리성

| 구분 | 단위: 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공공 여가 공간 | 3.22(1.10) | 3.13(1.07) | 3.22(1.05) | 3.12(1.02) | 3.13(1.04) |
| 문화시설 | 2.53(1.09) | 2.50(1.05) | 2.55(1.03) | 2.50(1.02) | 2.29(.89) |

주: 5차년도(4세)는 이용 편리성의 분류를 공공 여가 공간은 놀이터(3.22), 공원(3.07), 산책로(3.10)로 조사하였고, 문화시설은 박물관(2.17), 미술관(2.06), 공연시설(2.30), 영화관(2.78) 장난감 대여센터(2.14)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이에 각각의 분류의 평균 점수를 사용함.

라) 지역사회의 안전도

-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안전도는 4년에 걸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안전성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머니들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안전도에 대한 각각의 평균은 각각 3.28점과 3.13점이었음.

〈표 26〉 지역사회의 안전도

| 구분 | 단위: 점 | | | | |
|---------|------------|------------|------------|------------|----|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 치안 안전성 | 3.34(0.87) | 3.26(0.79) | 3.25(0.80) | 3.26(0.81) | - |
| 안전사고 측면 | 3.15(0.92) | 3.14(0.82) | 3.10(0.84) | 3.11(0.81) | - |

주: 5차년도 4세에는 지역사회 안전도를 조사하지 않음.

3. 정책제언

가.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과 홍보 필요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나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구직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아버지는 정규직/상용직으로서 큰 변화는 없으나 고용주/자영업 비율이 약간 증가함.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 어머니가 출산 후에도 정규직에 복귀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고용시스템이나 할당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 어머니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이 필요함.
 - 출산 후 어머니 취업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시간제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도록 함.
 - 어머니의 출산 전 다양한 취업 경험과 학력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영아기의 부모양육 선택권을 부여하여 형편에 맞는 양육을 하도록 함.
 - 0~1세는 거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높음.
 - 취업모에게는 신뢰로운 양육도우미의 파견이나 비용 지원이 효과적임.
 - 비취업모에게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설이나 지원 제공이 필요함.
-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양육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사회적·국가적 지원 필요함.
 - 여성이나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에서 양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과다 노동시간과 회식문화를 최소화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가족의 날을 지정함.
-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과 양육행동이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유지되거나 증가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함.
 - 부부가 양육을 함께 하고 자녀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한계설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바람직한 양육을 위하여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결혼 초기 또는 임신 초기부터 실시하도록 함.

나.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가구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서비스 다양화가 시급함.
 - 어머니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함.
 - 취업모들에게는 근무형태에 따라 종일제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비취업모들에게는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와 양육도우미의 선택을 통해 취업모들과는 다른 육아지원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함.
- 가구의 소득에 따라 가정환경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양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지원이 요구됨.
 -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양육지식 제공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양육을 위한 물품이나 아이를 위한 책과 교재 등에 대한 대여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도록 함.
-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의 증가와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연령에 따른 자녀에 대한 지출 증가를 볼 때 영유아 필수 물품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체계가 필요함.
- 보육료, 교육비와 양육수당의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이용 부담을 느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의 모색이 필요함.

다. 지역사회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강화

- 가용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가용 육아지원 기관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 지역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이 상이하여 거주자가 있는 지역의 충분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급이 어려움.
 - 지역 내의 육아지원 기관의 수급 조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
- 주변의 공공 여가시설과 공간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가족과 아이들과의 여가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의 주기적 시설 관리를 통해 접근성 확대가 요구됨.
 - 지역규모에 따른 문화시설과 이용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문화시설 규모 파악과 관리가 요구됨.
 -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시설 유형과 이용의 차이를 인식하여 비용 지원이나 문화이용권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지역사회 내의 박물관, 기념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홍보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함.

라. 기대효과

-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의 양육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체계와 양육비용의 현실적 토대를 제공함.
- 양육 관련한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문화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함.

- 영유아기의 연령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생애맞춤형 양육지원 설계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함.

참고문헌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엄지민(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육아정책연구소.

Ⅲ. 육아지원 다각화

가구소득 격차에 따른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이윤진

요약

- 영유아들은 출생 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문화시설별로 이용의 차이는 있음. 집근처 놀이터는 95.3%가 이용한 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이상, 공공재 문화시설이라 명명)의 이용은 약 20% 안팎으로 저조함.
- 영유아들의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이 낮은 것에 비해, 놀이공원 70.5%, 수족관·동식물원 62.2%, 사설 키즈카페 48.8%, 극장 47.7%(이상, 소비재 문화시설이라 명명) 등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최근 1년 동안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향도 유사함.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소비재 문화시설의 이용이 많으며,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대체적으로 모든 문화시설의 이용이 높음. 특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같이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은 일반가구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놀이터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일찍 이용하는 보편적인 문화시설임(만 1세 기준 영유아의 약 74%가 이용함). 문화시설마다 이용목적의 차이가 있지만, 이용이 많은 소비재 문화시설의 경우 '자녀의 놀이활동', '가족과의 시간향유'의 이유가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높음.
- 영유아기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2) 문화바우처 가구원별 비용지원, 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4) 기존 공공재 문화시설 활용과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5)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6)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7)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함.

* 본고는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의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1. 연구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2013년에 출범한 새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하고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수준의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함.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수준의 격차에서 ‘소득’에 따른 문화 향유율이 가장 낮음.
 - 문화향유율 전체 평균 69.6%, 지역 52.7%, 연령 30.4%, 소득 26.9%로 집계(문화체육관광부, 2013)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율은 26.9%이지만, 월 500만원 이상은 83.5%로 격차가 상당히 큼(문화체육관광부, 2012c:41).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의하면, 영유아기의 문화체험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자는 이후 문화예술 관람율이 약 90%에 달했으나, 비경험자는 60%로 낮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c:40)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도 유아동기의 경험자는 58.7%가 이용했지만, 비경험자는 36.0%에 그침(문화체육관광부, 2012:66).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누린 아이들이 이후 문화생활을 향유할 경우가 높다고 하겠음.

나. 연구 목적

-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문화시설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가구 소득’에 초점을 두고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집단 간의 영유아 자녀의 문화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여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전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 782사례, 저소득가구 218사례 등 총 1,000사례를 표집함.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가구인데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게다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정보는 더더욱 알 수 없음.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Target sampling을 실시함.

다. 용어 정의

- 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의 종류, 영유아 문화인프라의 용어정의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함.
- 본고에서 다룬 문화인프라의 종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하고 이를 “공공재 문화시설”로 범주화함.
 - 그 밖에 문화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 동식물원은 “소비재 문화시설”로 범주화함.

<표 1> 용어 정의

| 용어 | 조작적 정의 |
|--------------|--|
| 문화인프라 |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함. |
| 문화인프라 종류 | 1.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류 : <u>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u> 2.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시설 : <u>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u> ※ 1, 2의 공통 시설(밑줄 친 시설)을 문화인프라 종류로 정하고 여기에 영유아의 특성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u>어린이놀이터</u> 포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 : 공공재 문화시설 +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 동식물원 : 소비재 문화시설 |
| 영유아 문화인프라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처럼 어린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문화인프라와 동의어로 사용함. |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가. 출생 후 문화시설 이용 여부

- 집근처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출생 후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표 2 참조). 본 연구에서 규정한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이용은 매우 저조함.
 - 영유아들은 집근처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95.3%) 놀이공원 70.5%, 수족관·동식물원 62.2%, 사설 키즈카페 48.8%, 극장 47.7% 순임.
 - 집근처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이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규정한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이용은 매우 저조함.
- 영유아들은 공공재적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보다는 값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놀이공원이나 사설 키즈카페 등과 같은 소비재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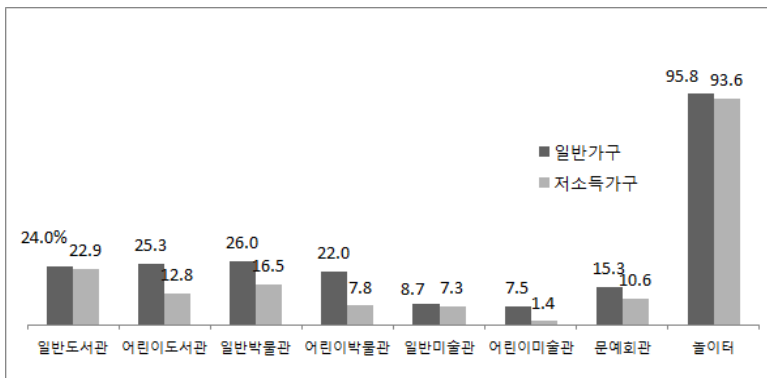
〈표 2〉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 구분 | 이용 경험 | | 계 |
|-----------|-------|---------|--------------|
| | 이용함 | 이용하지 않음 | |
| 일반도서관 | 23.8 | 76.2 | 100.0(1,000) |
| 어린이도서관 | 22.6 | 77.4 | 100.0(1,000) |
| 일반박물관 | 23.9 | 76.1 | 100.0(1,000) |
| 어린이박물관 | 18.9 | 81.1 | 100.0(1,000) |
| 일반미술관 | 8.4 | 91.6 | 100.0(1,000) |
| 어린이미술관 | 6.2 | 93.8 | 100.0(1,000) |
| 문예회관 | 14.3 | 85.7 | 100.0(1,000) |
| 놀이터 | 95.3 | 4.7 | 100.0(1,000) |
| 극장 | 47.7 | 52.3 | 100.0(1,000) |
| 놀이공원 | 70.5 | 29.5 | 100.0(1,000) |
| 사설 키즈카페 | 48.8 | 51.2 | 100.0(1,000) |
| 수족관/동·식물원 | 62.2 | 37.8 | 100.0(1,000)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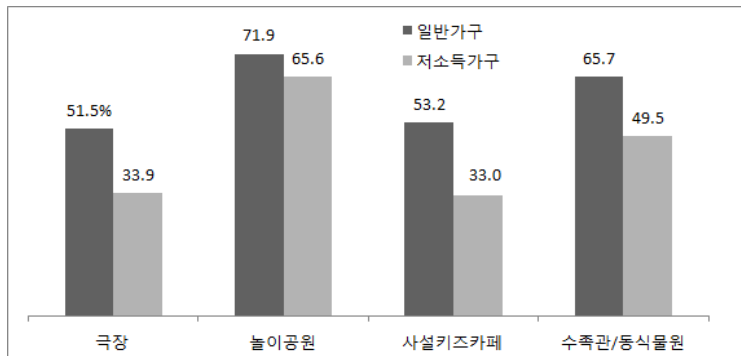
- 놀이공원의 입장료와 이용료, 수족관·동식물원의 입장료가 1인당 1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으며, 1회 이용 시 1~2시간의 시간제한을 두면서 1인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1~2만원이 소요되는 사설 키즈카페의 이용이 48.8%로 높게 나타남.

- 영유아기에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 아동의 놀이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가구소득별로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모든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앞서 이용한 것으로 나옴.
- 가구소득별 이용 격차가 큰 문화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음.



[그림 1]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소비재 문화시설 이용도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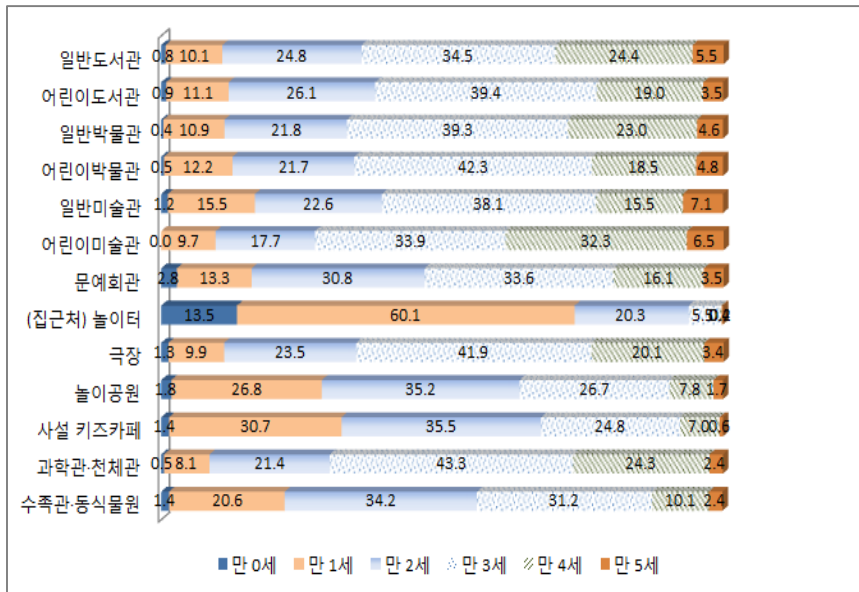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 놀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시설의 이용 격차는 약 15%~20%이며 사설 키즈카페의 이용 격차가 20.2%로 가장 큼.

나. 문화시설 처음 이용 시기

-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종류별로 이용 시기를 알아봄.
 - 가장 일찍 이용하기 시작한 문화시설은 놀이터로서 만 0세에 13.5%, 만 1세에 60.1%가 이용하는 등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용하기 시작하며 걷기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영유아 문화시설임.
 - 영유아기에 이용 경험이 많은 문화시설일수록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도 대체로 빠름.
 - 이용 경험이 많은 놀이공원의 경우 처음 이용시기가 만 1세 26.8%, 만 2세 35.2%로 영아기에 약 62.0%가 이용함.
 - 미이용 경험이 가장 많이 나온 어린이미술관의 경우 처음 이용 시기는 만 3세 33.9%, 만 4세 32.3%로 약 66.2%가 유아기에 이용함.



[그림 3]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시기

다.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실태

1)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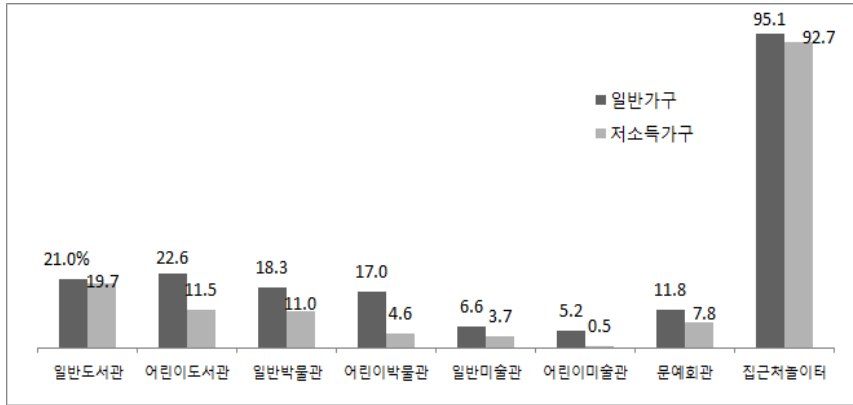
- 지난 1년(설문조사 실시 기준) 동안 집근처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함(94.6%). 놀이공원 60.5%, 수족관/동·식물원 47.1%, 사설 키즈카페 44.0%, 극장 42.1% 순으로 이용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이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상당히 적음.

〈표 3〉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 여부

| 구분 | 단위: %(명) | | 계 |
|------------|----------|---------|-------------|
| | 이용함 | 이용하지 않음 | |
| 일반도서관 | 20.8 | 79.2 | 100.0(1000) |
| 어린이도서관 | 20.2 | 79.8 | 100.0(1000) |
| 일반박물관 | 16.7 | 83.3 | 100.0(1000) |
| 어린이박물관 | 14.3 | 85.7 | 100.0(1000) |
| 일반미술관 | 6.0 | 94.0 | 100.0(1000) |
| 어린이미술관 | 4.2 | 95.8 | 100.0(1000) |
| 문예회관 | 10.9 | 89.1 | 100.0(1000) |
| 집근처 놀이터 | 94.6 | 5.4 | 100.0(1000) |
| 극장 | 42.1 | 57.9 | 100.0(1000) |
| 놀이공원 | 60.5 | 39.5 | 100.0(1000) |
| 사설 키즈카페 | 44.0 | 56.0 | 100.0(1000) |
| 과학관, 천체관 | 15.3 | 84.7 | 100.0(1000) |
| 수족관, 동·식물원 | 47.1 | 52.9 | 100.0(1000)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공공재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같이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일반가구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에서의 어린이도서관 22.6%, 어린이박물관 17.0%, 어린이미술관 5.2%가 최근 1년 이용했다면, 저소득가구는 동일 문화시설 이용이 각각 11.5%, 4.6%, 0.5%에 불과함.
- 가구소득이 어렸을 때부터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정도

2)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목적

- 도서관은 독서·대출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림전시와 같은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함. 즉, 문화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이용하고 있음.

<표 4>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문화시설별 이용 목적

단위: %(명)

| 구분 | 관람 | 프로 그램 참여 | 놀이 활동 | 독서· 대출 | 지식 습득 | 가족과 시간 향유 | 부모 휴식 | 계 |
|------------|------|----------------|----------|-----------|----------|-----------------|----------|------------|
| 일반도서관 | 3.9 | 8.7 | 2.4 | 77.3 | 1.4 | 5.8 | 0.5 | 100.0(207) |
| 어린이도서관 | 5.0 | 7.9 | 2.5 | 76.2 | 4.5 | 3.5 | 0.5 | 100.0(202) |
| 일반박물관 | 52.7 | 3.0 | 2.4 | 6.6 | 11.4 | 22.2 | 1.8 | 100.0(167) |
| 어린이박물관 | 56.6 | 15.4 | 2.1 | 2.1 | 10.5 | 12.6 | 0.7 | 100.0(143) |
| 일반미술관 | 71.7 | 8.3 | 1.7 | 6.7 | 5.0 | 5.0 | 1.7 | 100.0(60) |
| 어린이미술관 | 66.7 | 19.0 | 0.0 | 0.0 | 9.5 | 4.8 | 0.0 | 100.0(42) |
| 문예회관 | 57.8 | 15.6 | 8.3 | 0.0 | 0.9 | 17.4 | 0.0 | 100.0(109) |
| 집근처 놀이터 | 0.4 | 0.4 | 80.9 | 0.4 | 0.1 | 14.7 | 3.1 | 100.0(946) |
| 극장 | 74.3 | 1.9 | 7.1 | 0.0 | 0.5 | 14.3 | 1.9 | 100.0(421) |
| 놀이공원 | 4.1 | 1.2 | 47.3 | 0.0 | 0.5 | 44.3 | 2.6 | 100.0(605) |
| 사설 키즈카페 | 2.0 | 3.9 | 74.8 | 0.2 | 1.1 | 8.0 | 10.0 | 100.0(440) |
| 과학관, 천체관 | 39.9 | 9.8 | 3.9 | 0.0 | 24.2 | 20.9 | 1.3 | 100.0(153) |
| 수족관, 동·식물원 | 22.9 | 2.5 | 7.9 | 0.2 | 7.4 | 55.2 | 0.4 | 100.0(471)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한 경우가 일반 도서관·박물관·미술관보다 많음.
- ‘가족과 시간 향유’ 또는 ‘자녀의 놀이활동’을 위해서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었음.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놀이공원이나 수족관, 동식물원의 주된 이용 목적은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가 각각 44.3%, 55.2%로 주를 이룸.
- 이는 영유아 자녀와 함께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려면, 문화시설 그 자체가 재미있고 편안하면서 자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가구특성별로 지난 1년 동안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앞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알 수 있음. 문화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도서관은 독서·도서 대출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은 관람을 위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이용 이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이용한 사례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5 참조).
- 어린이박물관의 이용가구가 총 143사례라면, 이 중 일반가구는 133사례(일반가구 중 이용가구 17.0%)이며 저소득가구는 10사례(저소득가구 중 이용가구의 4.6%)에 불과함. 다른 공공재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임.

〈표 5〉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관람 | 프로그램 참여 | 놀이 활동 | 독서·대출 | 지식 습득 | 가족과 시간향유 | 부모 휴식 | 계 |
|-----------------------|------|---------|-------|-------|-------|----------|-------|------------|
| ----- | | | | | | | | |
| 일반도서관 | | | | | | | | 100.0(207) |
| 일반가구 | 4.9 | 9.8 | 1.8 | 75.0 | 1.2 | 6.7 | 0.6 | 100.0(164) |
| 저소득가구 | 0.0 | 4.7 | 4.7 | 86.0 | 2.3 | 2.3 | 0.0 | 100.0(43) |
| ----- | | | | | | | | |
| $\chi^2(df)=6.458(6)$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도서관 | | | | | | | | 100.0(202) |
| 일반가구 | 5.6 | 8.5 | 2.4 | 74.6 | 4.5 | 4.0 | 0.6 | 100.0(177) |
| 저소득가구 | 0.0 | 4.0 | 4.0 | 88.0 | 4.0 | 0.0 | 0.0 | 100.0(25) |
| ----- | | | | | | | | |
| $\chi^2(df)=3.895(6)$ | | | | | | | | |
| ----- | | | | | | | | |
| 일반박물관 | | | | | | | | 100.0(167) |
| 일반가구 | 53.1 | 2.8 | 2.1 | 7.0 | 9.1 | 23.8 | 2.1 | 100.0(143) |
| 저소득가구 | 50.0 | 4.2 | 4.2 | 4.2 | 25.0 | 12.5 | 0.0 | 100.0(24) |
| ----- | | | | | | | | |
| $\chi^2(df)=7.038(6)$ | | | | | | | | |

(표 5 계속)

| 구분 | 관람 | 프로그램 참여 | 놀이 활동 | 독서· 대출 | 지식 습득 | 가족과 시간향유 | 부모 휴식 | 계 |
|-----------------------|------|------------|----------|-----------|----------|-------------|----------|------------|
| 어린이박물관 | | | | | | | | 100.0(143) |
| 일반가구 | 58.6 | 15.0 | 2.3 | 1.5 | 9.0 | 12.8 | 0.8 | 100.0(133) |
| 저소득가구 | 30.0 | 20.0 | 0.0 | 10.0 | 30.0 | 10.0 | 0.0 | 100.0(10) |
| $\chi^2(df)=8.956(6)$ | | | | | | | | |
| 일반미술관 | | | | | | | | 100.0(60) |
| 일반가구 | 75.0 | 7.7 | 1.9 | 3.8 | 3.8 | 5.8 | 1.9 | 100.0(52) |
| 저소득가구 | 50.0 | 12.5 | 0.0 | 25.0 | 12.5 | 0.0 | 0.0 | 100.0(8) |
| $\chi^2(df)=7.258(6)$ | | | | | | | | |
| 어린이미술관 | | | | | | | | 100.0(42) |
| 일반가구 | 68.3 | 19.5 | 7.3 | 0.0 | - | 4.9 | - | 100.0(41) |
| 저소득가구 | 0.0 | 0.0 | 100.0 | - | - | 0.0 | - | 100.0(1) |
| <i>na</i> | | | | | | | | |
| 문예회관 | | | | | | | | 100.0(92) |
| 일반가구 | 59.8 | 13.0 | 6.5 | - | 1.1 | 19.6 | - | 100.0(17) |
| 저소득가구 | 47.1 | 29.4 | 17.6 | - | 0.0 | 5.9 | - | 100.0(109) |
| $\chi^2(df)=6.744(4)$ | | | | | | | |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최근 1년 문화시설 미이용 이유

- 최근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임.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의 미이용 이유는 '근처에 이용 가능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를 많이 응답함.
 -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표 6〉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 비용 부담 | 시간 부족 | 이용할 필요 못느껴서 | 시설 수준 불만족 | 마음에 드는 프로 그램 부족 | 자녀가 어려서 | 기 타 | 계 |
|--------|--------------------------------|----------|----------|-------------------|-----------------|-----------------------------|------------|--------|------------|
| 일반도서관 | 21.9 | 26 | 10.2 | 19.8 | 1.3 | 4.0 | 39.5 | 0.6 | 100.0(793) |
| 어린이도서관 | 43.2 | 3.6 | 10.8 | 13.9 | 1.0 | 2.0 | 24.6 | 0.9 | 100.0(798) |
| 일반박물관 | 30.5 | 5.6 | 11.4 | 15.2 | 1.3 | 4.6 | 30.9 | 0.5 | 100.0(833) |

(표 6 계속)

| 구분 |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 비용 부담 | 시간 부족 | 이용할 필요 못느껴서 | 시설 수준 불만족 |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부족 | 자녀가 어려서 | 기타 | 계 |
|----------|--------------------|-------|-------|-------------|-----------|----------------|---------|-----|------------|
| 어린이박물관 | 48.7 | 6.0 | 10.4 | 11.0 | 0.8 | 2.0 | 20.3 | 0.9 | 100.0(857) |
| 일반미술관 | 33.7 | 6.7 | 8.1 | 17.9 | 0.2 | 4.3 | 28.8 | 0.3 | 100.0(940) |
| 어린이미술관 | 50.1 | 5.2 | 10.0 | 11.8 | 0.1 | 2.6 | 19.3 | 0.7 | 100.0(958) |
| 문예회관 | 29.1 | 11.0 | 9.2 | 15.9 | 0.4 | 5.8 | 28.1 | 0.4 | 100.0(891) |
| 놀이터 | 24.1 | 1.9 | 13.0 | 22.2 | 5.6 | 0.0 | 33.3 | 0.0 | 100.0(54) |
| 극장 | 11.7 | 12.8 | 10.7 | 11.1 | 0.7 | 9.7 | 43.4 | 0.0 | 100.0(579) |
| 놀이공원 | 31.4 | 20.3 | 12.2 | 6.1 | 2.0 | 0.5 | 27.3 | 0.3 | 100.0(395) |
| 시설 키즈카페 | 30.4 | 28.9 | 10.0 | 13.4 | 2.5 | 1.4 | 13.4 | 0.0 | 100.0(560) |
| 과학관/천체관 | 36.8 | 12.5 | 10.4 | 9.9 | 0.5 | 3.1 | 26.2 | 0.6 | 100.0(847) |
| 수족관/동식물원 | 32.1 | 16.3 | 17.0 | 9.5 | 2.1 | 1.9 | 20.6 | 0.6 | 100.0(529)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공공재 문화시설에 국한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가구특성별로 분석함(표 7 참조).
 -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일반도서관은 ‘자녀가 어려서’를, 어린이도서관은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어린이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성이 있는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어린이도서관이 집 주변 가까이에 설립될 필요성을 보여줌.
 - 박물관은 가구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일반가구는 일반박물관의 미이용 이유로 ‘자녀가 어려서’, 어린이박물관은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함.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일반 및 어린이박물관 모두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박물관의 미이용 이유로 ‘비용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약 4배 이상 높음.
 - 미술관도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미이용 이유로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자녀가 어려서’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용부담’과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음.

- 문예회관은 가구특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일반가구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순으로 나온 반면, 저소득가구는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와 ‘비용부담’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옴.
- 저소득가구에서 ‘비용부담’의 응답비율이 일반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음. 음악회, 뮤지컬, 작품전시회 등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료나 관람표가 대체로 고액이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에서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음.

〈표 7〉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 비용 부담 | 시간 부족 | 이용 필요를 못 느끼서 | 시설 수준 불만족 | 프로그램 부족 | 자녀가 어려서 | 기타 | 계 |
|---------------------------|--------------------|-------|-------|--------------|-----------|---------|---------|-----|------------|
| 일반도서관 | | | | | | | | | |
| 일반가구 | 22.3 | 2.1 | 10.4 | 18.4 | 1.0 | 4.4 | 40.8 | 0.7 | 100.0(793) |
| 저소득가구 | 20.6 | 4.6 | 9.7 | 24.6 | 2.3 | 2.9 | 34.9 | 0.6 | 100.0(175) |
| $\chi^2(df)=10.609(9)$ | | | | | | | | | |
| 어린이도서관 | | | | | | | | | |
| 일반가구 | 42.8 | 2.6 | 10.6 | 14.5 | 1.2 | 1.7 | 25.8 | 0.9 | 100.0(798) |
| 저소득가구 | 44.6 | 6.7 | 11.4 | 11.9 | 0.5 | 3.1 | 20.7 | 1.0 | 100.0(193) |
| $\chi^2(df)=12.103(8)$ | | | | | | | | | |
| 일반박물관 | | | | | | | | | |
| 일반가구 | 29.9 | 3.3 | 11.1 | 15.3 | 1.6 | 5.3 | 33.0 | 0.5 | 100.0(833) |
| 저소득가구 | 32.5 | 13.4 | 12.4 | 14.9 | 0.5 | 2.1 | 23.7 | 0.5 | 100.0(194) |
| $\chi^2(df)=36.896(8)***$ | | | | | | | | | |
| 어린이박물관 | | | | | | | | | |
| 일반가구 | 52.1 | 3.4 | 9.1 | 10.6 | 0.8 | 1.8 | 21.3 | 0.9 | 100.0(857) |
| 저소득가구 | 38.0 | 13.9 | 14.4 | 12.0 | 1.0 | 2.4 | 17.3 | 1.0 | 100.0(208) |
| $\chi^2(df)=45.528(8)***$ | | | | | | | | | |
| 일반미술관 | | | | | | | | | |
| 일반가구 | 35.1 | 4.5 | 8.6 | 17.3 | 0.3 | 3.8 | 30.1 | 0.3 | 100.0(940) |
| 저소득가구 | 29.0 | 14.3 | 6.2 | 20.0 | 0.0 | 5.7 | 24.3 | 0.5 | 100.0(210) |
| $\chi^2(df)=30.916(7)***$ | | | | | | | | | |
| 어린이미술관 | | | | | | | | | |
| 일반가구 | 52.8 | 3.2 | 9.3 | 10.7 | 0.1 | 3.0 | 20.1 | 0.8 | 100.0(958) |
| 저소득가구 | 41.0 | 12.0 | 12.4 | 15.7 | 0.0 | 1.4 | 16.6 | 1.0 | 100.0(217) |
| $\chi^2(df)=41.235(9)***$ | | | | | | | | | |
| 문예회관 | | | | | | | | | |
| 일반가구 | 29.6 | 6.5 | 9.4 | 16.1 | 0.3 | 6.5 | 31.2 | 0.4 | 100.0(891) |
| 저소득가구 | 27.4 | 26.4 | 8.5 | 15.4 | 1.0 | 3.5 | 17.4 | 0.5 | 100.0(201) |
| $\chi^2(df)=70.886(7)***$ | | | | | | | | |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4)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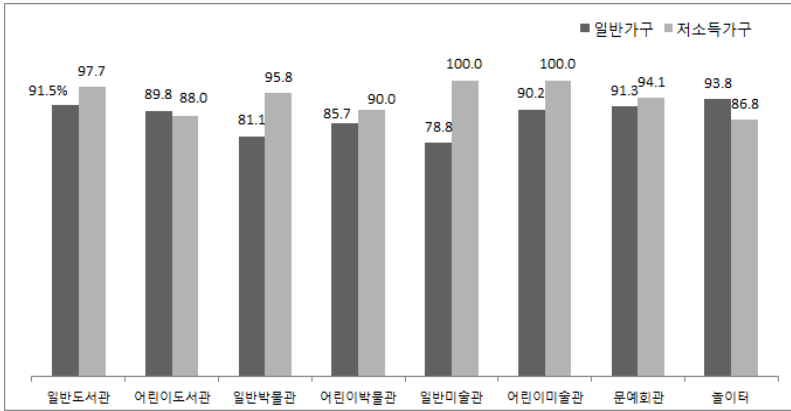
-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족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근처 놀이터의 이용 만족도는 92.3%로 일반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더불어 가장 높음(표 8 참조).
 - 일반미술관 18.3%, 일반박물관 16.8%, 어린이박물관 14.0%, 어린이도서관 10.4%로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음.
- 대체로 공공재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극장,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의 이용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와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표 8〉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 구분 | 단위: %(명) | | 계 |
|------------|----------|---------|------------|
| | 만족함 | 만족하지 않음 | |
| 일반도서관 | 92.8 | 7.2 | 100.0(207) |
| 어린이도서관 | 89.6 | 10.4 | 100.0(202) |
| 일반박물관 | 83.2 | 16.8 | 100.0(167) |
| 어린이박물관 | 86.0 | 14.0 | 100.0(143) |
| 일반미술관 | 81.7 | 18.3 | 100.0(60) |
| 어린이미술관 | 90.5 | 9.5 | 100.0(42) |
| 문예회관 | 91.7 | 8.3 | 100.0(109) |
| 집근처 놀이터 | 92.3 | 7.7 | 100.0(946) |
| 극장 | 91.7 | 8.3 | 100.0(421) |
| 놀이공원 | 90.6 | 9.4 | 100.0(605) |
| 사설 키즈카페 | 89.3 | 10.7 | 100.0(440) |
| 과학관, 천체관 | 90.8 | 9.2 | 100.0(153) |
| 수족관, 동·식물원 | 89.0 | 11.0 | 100.0(4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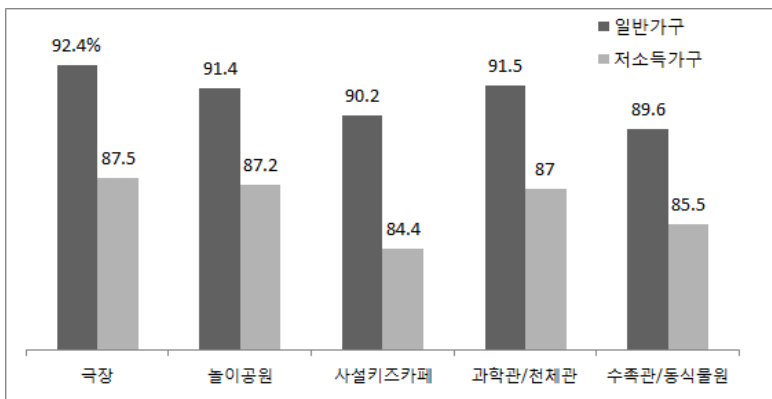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가구특성별로 보면,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공공재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했으나 만족도는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가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옴(그림 5 참조).



[그림 5]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소비재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공공재 문화시설과는 반대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옴.



[그림 6]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라.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 학부모들의 대다수는(92.2%)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경험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27.1%) '창의성 계발을 위해'(18.8%)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17.3%) 순으로 응답함.

-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25.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0.4%),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18.4%) 순으로 응답함(1순위 기준).
 - 중복응답에서는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15.5%)이 ‘프로그램 다양화’(22.3%) 다음으로 많았음.

〈표 9〉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1+2순위)

단위: %(명)

| 1순위 | 비율 | 1+2순위 | 비율 |
|---------------------|-------|---------------------|-------|
| 전체(1,000명) | 100.0 | 전체(1,000명) | 100.0 |
|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 25.5 |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 22.3 |
|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 20.4 |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 15.5 |
|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18.4 |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 14.3 |
|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 14.5 |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13.8 |
|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 7.0 |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 11.0 |
|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 5.1 |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 8.1 |
|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 3.8 |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 6.8 |
|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 3.3 |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 5.9 |
|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 2.0 |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 2.3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문화시설 이용할 때 비용지원이나 문화바우처 비용확대와 같은 비용지원을 더 희망함. 문화바우처의 지원확대는 일반가구보다 6배 가량 많이 응답함.
 - 일반가구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포함한 시설확충과 이용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함.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희망했다면, 읍면지역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배치(28.1%), 시설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6.4%)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변인별

단위: %(명)

| 구분 | 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지역 간 균형 배치 | 프로그램 다양화 | 어린이 전용 시설 확충 |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 이용 정보 제공 | 이용 시간 확대 | 자녀 동반 이용시 비용 지원 | 바우처 지급 대상 비용 확대 | 계 |
|------------------------------|------------------|------------|----------|--------------|---------------------|----------|----------|-----------------|-----------------|------------|
| 전체 | 20.4 | 18.4 | 25.5 | 14.5 | 3.8 | 7.0 | 3.3 | 5.1 | 2.0 | 100.0(922) |
| 가구특성 | | | | | | | | | | |
| 일반 | 21.4 | 17.9 | 26.0 | 14.8 | 4.0 | 7.4 | 3.0 | 4.7 | 0.8 | 100.0(743) |
| 저소득 | 16.2 | 20.7 | 23.5 | 13.4 | 2.8 | 5.6 | 4.5 | 6.7 | 6.7 | 100.0(179) |
| $\chi^2(df)=32.147(8)^{***}$ | | | | | | | | | | |
| 지역규모 | | | | | | | | | | |
| 대도시 | 18.5 | 16.6 | 23.9 | 15.9 | 4.1 | 8.0 | 3.2 | 7.1 | 2.7 | 100.0(410) |
| 중소도시 | 20.5 | 17.4 | 29.7 | 13.6 | 2.8 | 7.2 | 3.3 | 3.8 | 1.8 | 100.0(391) |
| 읍면지역 | 26.4 | 28.1 | 17.4 | 13.2 | 5.8 | 3.3 | 3.3 | 2.5 | 0.0 | 100.0(121) |
| $\chi^2(df)=32.025(16)^*$ | | | | | | | | | |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설치 또는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희망함.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 수족관/동식물원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11〉 현재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1+2순위)

단위: %(명)

| 1순위 | 비율 | 1+2순위 | 비율 |
|------------|-------|------------|-------|
| 전체(1,000명) | 100.0 | 전체(1,000명) | 100.0 |
| 어린이도서관 | 25.7 | 어린이도서관 | 19.1 |
| 어린이박물관 | 12.5 | 어린이박물관 | 12.6 |
| 수족관, 동·식물원 | 10.7 | 수족관, 동·식물원 | 11.7 |
| 집근처 놀이터 | 8.6 | 놀이공원 | 8.6 |
| 놀이공원 | 6.9 | 어린이미술관 | 8.4 |
| 사설 키즈카페 | 6.8 | 집근처 놀이터 | 7.9 |
| 어린이미술관 | 6.3 | 극장 | 7.2 |
| 문예회관 | 5.9 | 사설 키즈카페 | 6.4 |
| 극장 | 5.7 | 문예회관 | 4.8 |
| 일반도서관 | 3.2 | 일반도서관 | 2.4 |
| 일반박물관 | 2.4 | 일반박물관 | 2.3 |
| 일반미술관 | 1.1 | 일반미술관 | 1.4 |
| 기타 | 0.2 | 기타 | 0.1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거주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 문화시설로 ‘②어린이도서관(25.7%)’, ‘④어린이 박물관(12.5%)’, ‘⑬수족관/동식물원(10.7%)’ 순임.
- 저소득가구에서 ‘⑧놀이터(15.1%)’와 ‘⑬수족관/동식물원(15.1%)’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옴.
- 읍면지역에서 ‘⑧놀이터(12.8%)’ 설치에 대한 수요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옴. 읍면지역은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어린이 문화시설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설치되어야 하겠음.

<표 12> 거주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변인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기 타 | 계 |
|------|---------------------------|------|-----|------|-----|-----|-----|------|-----|-----|------|-----|------|--------|--------------|
| 전체 | 3.2 | 25.7 | 24 | 12.5 | 1.1 | 6.3 | 5.9 | 8.6 | 5.7 | 6.9 | 6.8 | 4.0 | 10.7 | 0.2 | 100.0(1,000) |
| 가구특성 | | | | | | | | | | | | | | | |
| 일반 | 3.5 | 27.0 | 24 | 11.5 | 1.2 | 7.0 | 6.0 | 6.8 | 6.6 | 6.9 | 7.2 | 4.3 | 9.5 | 0.1 | 100.0(782) |
| 저소득 | 2.3 | 21.1 | 23 | 16.1 | 0.9 | 3.7 | 5.5 | 15.1 | 2.3 | 6.9 | 5.5 | 2.8 | 15.1 | 0.5 | 100.0(218) |
| | $\chi^2(df)=36.428(13)**$ | | | | | | | | | | | | | | |
| 지역규모 | | | | | | | | | | | | | | | |
| 대도시 | 3.1 | 25.8 | 1.8 | 11.2 | 2.2 | 5.4 | 6.5 | 7.6 | 5.6 | 5.6 | 11.0 | 3.6 | 10.1 | 0.2 | 100.0(445) |
| 중소도시 | 3.3 | 26.0 | 3.3 | 15.1 | 0.0 | 6.3 | 5.6 | 8.4 | 5.6 | 7.9 | 3.0 | 3.7 | 11.6 | 0.2 | 100.0(430) |
| 읍면지역 | 3.2 | 24.0 | 1.6 | 8.0 | 0.8 | 9.6 | 4.8 | 12.8 | 6.4 | 8.0 | 4.8 | 6.4 | 9.6 | 0.0 | 100.0(125) |
| | $\chi^2(df)=10.399(26)**$ | | | | | | | | | | | | | | |

주: ①일반도서관, ②어린이도서관, ③일반박물관, ④어린이박물관, ⑤일반미술관, ⑥어린이 미술관, ⑦문예회관, ⑧놀이터, ⑨극장, ⑩놀이공원, ⑪사실 키즈카페, ⑫과학관/천체관, ⑬ 수족관·동식물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3.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지원방안

- 가구특성에 따라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이용 시기, 이용하는 시설 종류, 만족도 등의 차이가 발생함. 저소득가구의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따라서 저소득가구에 국한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모든 영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에 본고는 저소득가구의 지원방안과 아울러 일반가구 대상의 지원방안도 같이 제시함.

가.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 가구특성별로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정도, 이용 시기, 미이용 이유, 희망하는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문화시설 이용이 적고, 이용하는 시기도 늦으며, 미이용의 이유에서도 비용부담이 높게 나타남.
- 부르디외(P. Bourdies)의 문화자본론에 의하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의 차이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 제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정책 영역으로서 영유아기의 문화이용 정도가 이후 생애단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더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애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문화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나.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처음에는 가구원별 지원에서 현재 가구단위 지원으로 변경되어 한 가구당 1년에 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들은 문화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임. 가구당 지원을 하면 영유아 자녀를 위한 문화생활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리고 1년 5만원은 가족단위로 영화 한 편 이상을 관람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비용확대를 제안함. 본 설문조사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가 좀 더 많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일반가구 총 자녀수 1.57명, 저소득 가구 1.69명)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문화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문화바우처 취지에 부합됨.

- 영유아 자녀를 위해 사용한 문화시설의 이용료는 일정 금액을 포인트 적립 식으로 누적하여 이듬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렸을 때 부터 문화생활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임.

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음.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도시거주 부모들은 ‘프로그램 다양화’(29.7%)를 가장 희망한 반면, 읍면지역 부모들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배치’(28.1%), ‘문화시설 확충’(26.4%)을 더 희망함.
- 따라서 양질의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전남 순천시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이동도서관 ‘과란 달구지’은 몇 시간 머물렀다 가는 이동식 서비스가 아니라 몇 주 또는 1개월동안 지역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술 갤러리’ 등의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겠음.

4.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

가. 기존 문화시설 홍보 및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1) 적극적 홍보

-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꼽은 경우가 많았음. 이는 실제 없어서 이용을 못할 것일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있는 줄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내포할 수 있음.
 -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국민 대상의 홍보도 필요함.

- 홍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을 ‘아빠 어디가’와 같은 가족프로그램에 장소협찬으로 제공하여 장시간 보여주는 방법이 일회성의 뉴스식 보도보다는 효과가 클 것임.
- 가족이 함께하는 박물관 체험(가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공 문화시설에 시청자로 하여금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2)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 실제로 영유아가 이용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어서 문화시설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 문화시설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므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철역에 유모차를 구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함.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유아 문화시설에는 주차장이 중요한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함.
-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일반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이용하기에 제한점이 많음. 예컨대, 정숙을 요구하는 일반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기란 무리임.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화시설 내에 영유아 전용 공간을 구비하여 공간과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유아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화장실과 세면대를 영유아 눈높이에 맞게 구비하였으며, 바닥을 온돌로 깔아서 바닥에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영유아 발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함.
 - 본 설문조사에서 희망하는 문화정책으로 ‘어린이문화시설 확충’(15.5%)보다는 ‘프로그램 다양화’(22.3%)를 더 많이 꼽았으므로 새로운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음.

나.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항상 똑같은 전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간 도서 구비가 빈약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것임. 또, 영유

아 자녀 대상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겠음.

- 영유아 자녀들과 자주 이용하는 극장,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의 경우 ‘자녀가 좋아해서’와 ‘자녀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문화시설이 영유아 자녀뿐 아니라 부모나 가족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음.
 - －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자녀 눈높이에 맞춘 유물을 설명하는 동안, 부모들은 동일 시간대에 다른 동선으로 부모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각각 실시한 후, 부모와 자녀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다.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이터는 영유아들이 가장 일찍,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문화시설임. 놀이터가 없는 지역의 지자체는 영유아 인구가 많고 적음을 차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책무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 특히, 문화생활 향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 밀집 지역이나 농산 어촌의 놀이터에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놀이 시설을 구비할 것을 제안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놀이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라.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 본 조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 1순위로 꼽혔으며 또 공공재 문화시설 중에서 놀이터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나타남.
 - 박물관·미술관에 비해 자주 이용하며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문화시설이란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은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설립’이란 슬로건을 표방하여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이상 설치를 제안함.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Ⅲ. 육아지원 다각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양미선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규모를 파악하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총 비용 규모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0~5세 미취학 영유아 3,630명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740명의 자료를 분석함.
- 0세가 과반수 이상인 77.8%이고, 1세 44.4%, 2세 32.6%, 3세 16.7%를 차지함. 4, 5세 중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영유아는 없음. 전체 아동 기준으로 1인당 월 109,800원, 저소득아동은 29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남.

1. 연구 배경

가. 문제 제기

- 정부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공정한 출발선 보장,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음.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남.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 0세 32.5%, 1세 53.1%, 2세 77%에서 2012년 0세 38.3%, 1세 68.1^{*}%, 2세 79.2%로 증가함.
- 한편, 2013년에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된 양육수당이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함.
 - 양육수당은 0~2세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 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됨.

* 본 연구는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 양육수당 수혜 아동이 2012년 92,818명에서 2013년 1,060,484명으로 늘어남. 연령별로 2012년에는 0세 35,514명, 1세 40,997명, 2세 16,30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0세 382,327명, 1세 345,442명, 2세 143,948명, 3세 이상은 5만명 내외 수준임.
- 양육수당 확대가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 내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교육기회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서문희·이혜민(2013) 연구에서 양육수당 사용처로 일반 가계지출에 포함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3,4세와 저소득층 영아 부모가 이전에 비해 늘어남.
- 이는 공정한 출산선 보장이라는 0~5세 무상보육·교육 정책의 도입 취지와 어긋남. 따라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규모를 파악하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총 비용 규모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0~5세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현황을 파악함.
 -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이용 이유, 부담정도 및 만족도, 비용 등을 살펴봄.
 - 기관 미이용 영유아 1인당 총 비용을 추정하고 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함.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에 참여한 총 3,630명의 조사자료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740명의 자료를 분석함.
- 조사대상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유사 교육·보육기관, 시간제 교육학원 및 사설 문화센터,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인터넷 전화 교육, 개별보육 등이 포함됨.
-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특성은 <표 1>과 같음.

<표 1> 영유아 특성

단위: 명(%)

| 구분 | 백분율 | (수) | 구분 | 백분율 | (수) |
|----|-------|-------|--------|-------|-------|
| 성별 | | | 출생순위 | | |
| 남자 | 49.8 | (369) | 첫째 | 19.8 | (147) |
| 여자 | 50.2 | (372) | 둘째 | 64.9 | (481) |
| 연령 | | | 셋째 | 13.3 | (99) |
| 0세 | 66.2 | (490) | 넷째 이상 | 1.9 | (14) |
| 1세 | 20.3 | (150) | 장애여부 | | |
| 2세 | 6.2 | (46) | 건강 | 98.7 | (729) |
| 3세 | 2.5 | (18) | 질병 | 0.9 | (7) |
| 4세 | 2.5 | (19) | 장애 | 0.1 | (1) |
| 5세 | 2.3 | (17) | 장애와 질병 | 0.3 | (2) |
| 전체 | 100.0 | (740) | 전체 | 100.0 | (740) |

주: 연령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환산함.
영유아 빈도 및 백분율 분포는 가중치 미부여함.

□ 영유아 부모의 특성은 <표 2>와 같음.

<표 2> 아동 부모 특성

단위: %(명)

| 구분 | 부 | | 모 | | 구분 | 부 | | 모 | |
|-----------|-------|-------|-------|-------|-----------|-------|-------|-------|-------|
| | 백분율 | (수) | 백분율 | (수) | | 백분율 | (수) | 백분율 | (수) |
| 연령 | | | | | 건강상태 | | | | |
| 30세 미만 | 3.7 | (27) | 13.3 | (98) | 건강 | 98.4 | (729) | 98.7 | (731) |
| 30~35세 미만 | 37.1 | (273) | 54.4 | (402) | 질병 | 0.3 | (2) | 0.8 | (6) |
| 35~40세 미만 | 38.9 | (287) | 26.3 | (194) | 장애(법정) | 0.7 | (5) | 0.2 | (1) |
| 40~45세 미만 | 17.0 | (125) | 6.1 | (45) | 질병과 장애 | - | - | 0.1 | (1) |
| 45세 이상 | 3.2 | (24) | - | - | 비해당(부재) | 0.6 | (4) | 0.1 | (1) |
| 학력 | | | | | 출신국 | | | | |
| 고졸 미만 | 0.8 | (6) | 1.1 | (8) | 내국인 | 99.2 | (734) | 97.9 | (725) |
| 고등학교 졸업 | 22.1 | (164) | 26.5 | (196) | 외국인/이민자 | 0.2 | (2) | 2.0 | (15) |
| 전문대학 졸업 | 17.2 | (128) | 22.9 | (169) | 비해당(부재) | 0.6 | (4) | 0.1 | (1) |
| 4년제 대학 졸업 | 50.2 | (372) | 44.6 | (330) | 소득 | | | | |
| 대학원수료 이상 | 9.1 | (67) | 4.8 | (35) | 199만원 이하 | 12.3 | (91) | 7.5 | (56) |
| 비해당(부재) | 0.6 | (4) | 0.1 | (1) | 200~249만원 | 18.0 | (133) | 5.7 | (42) |
| 취업상태 | | | | | 250~299만원 | 23.9 | (177) | 3.5 | (26) |
| 취업 | 97.6 | (722) | 11.6 | (86) | 300~349만원 | 18.3 | (136) | 3.1 | (23) |
| 육아휴직 중 | 0.2 | (2) | 10.1 | (75) | 350~399만원 | 4.7 | (35) | 0.2 | (2) |
| 미취업 | 1.6 | (12) | 78.1 | (578) | 400~499만원 | 9.5 | (70) | 0.7 | (5) |
| 비해당(부재) | 0.6 | (4) | 0.1 | (1) | 500만원 이상 | 11.1 | (82) | - | - |
| 전체 | 100.0 | (740) | 100.0 | (740) | 미취업, 부재 | 2.2 | (16) | 79.3 | (587) |
| | | | | | 전체 | 100.0 | (740) | 100.0 | (740) |

주: 전체 사례수는 이혼, 부재 등으로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유아 부모 빈도 및 백분율 분포는 가중치 미부여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현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9.4%이고, 이중 영아 36.7%, 유아 9.4%임.
 - 0~5세 미취학 영유아 중 영아 63.3%가 어린이집, 유아 90.6%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함.
-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는 2011년 31.7%에서 2012년 25.9%, 2013년 23%임.
 - 연령별로는, 0세는 2011년 75.3%에서 2012년 64.8%로 10% 가까이 줄었고, 2013년 61.7% 정도임. 1세 이후 연령은 미이용 영유아가 40% 이상 감소함.

〈표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미이용 영유아 수: 2013년

단위: 명, %

| 구분 | 인구수 ¹⁾ (a) | 어린이집 ²⁾ (b) | 유치원 ²⁾ (c) | 계 (b+c) | 어린이집 (b/a) | 유치원 (c/a) | 기관 이용 (b+c/a) | 기관 미이용 |
|----------|--------------------------|---------------------------|--------------------------|------------|---------------|--------------|---------------------|-----------|
| 0세 | 421,465 | 148,273 | - | - | 35.2 | - | 35.2 | 64.8 |
| 1세 | 486,655 | 325,921 | - | - | 67.0 | - | 67.0 | 33.0 |
| 2세 | 474,098 | 400,781 | - | - | 84.5 | - | 84.5 | 15.5 |
| 0~2세 소계 | 1,382,218 | 874,975 | - | - | 63.3 | - | 63.3 | 36.7 |
| 3세 | 472,047 | 255,786 | 143,069 | 398,855 | 54.2 | 30.3 | 84.5 | 15.5 |
| 4세 | 447,055 | 184,513 | 233,926 | 418,439 | 41.3 | 52.3 | 93.6 | 6.4 |
| 5세 | 467,935 | 161,877 | 277,826 | 439,703 | 34.6 | 59.4 | 94.0 | 6.0 |
| 3~5세 소계 | 1,387,037 | 602,176 | 654,821 | 1,256,997 | 43.4 | 47.2 | 90.6 | 9.4 |
| 0~5세 전체 | 2,769,255 | 1,477,151 | 654,821 | 1,477,151 | 53.3 | 23.6 | 77.0 | 23.0 |
| 2012년 전체 | 2,816,103 | 1,475,331 | 612,794 | 2,088,125 | 52.4 | 21.8 | 74.1 | 25.9 |
| 2011년 전체 | 2,777,209 | 1,331,714 | 564,312 | 1,896,026 | 48.0 | 20.3 | 68.3 | 3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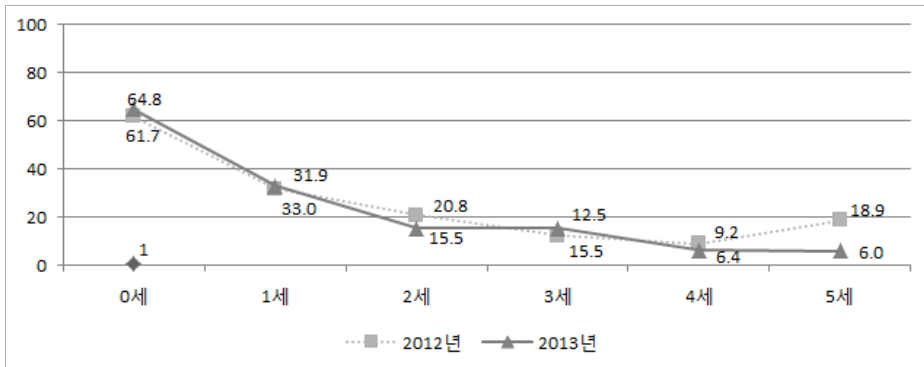
주: 1) 인구수는 2013년 12월 주민등록인구임.

2) 어린이집 자료는 2013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3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 제외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2012년 11월 기준).

2)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3) 양미선·서문화·이혜민(2013). 어린이집 이용자만족도 조사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



[그림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분포: 2012, 2013년

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 본 조사에 참여한 0~5세 미취학 영유아 3,630명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는 734명으로 20.2%에 해당함.
- <표 4>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냄.

<표 4>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 반일제 이상 학원 | 시간제 교육기관 | 개인 및 그룹지도 | 학습지 | 통신 교육 | 개별 보육 | 일시 보육 | (수) |
|-------|-----------|----------|-----------|------|-------|-------|-------|-------|
| 전체 | 6.5 | 20.0 | 1.2 | 9.7 | 0.3 | 8.6 | 0.1 | (734) |
| 아동연령 | | | | | | | | |
| 0세 | - | 12.9 | - | 1.8 | - | 9.2 | - | (480) |
| 1세 | 0.7 | 35.8 | 1.3 | 16.0 | - | 7.3 | - | (151) |
| 2세 | 8.7 | 30.4 | 4.3 | 30.4 | 2.2 | 13.3 | - | (46) |
| 3세 | 66.7 | 11.1 | - | 21.1 | - | - | - | (20) |
| 4세 | 88.9 | 31.6 | 21.1 | 52.6 | 5.6 | 5.3 | - | (20) |
| 5세 | 88.2 | 52.9 | 5.9 | 64.7 | - | 5.6 | 5.9 | (17) |
| 영유아구분 | | | | | | | | |
| 영아 | 0.7 | 19.0 | 0.7 | 7.0 | 0.1 | 9.2 | - | (677) |
| 유아 | 80.0 | 31.5 | 9.3 | 44.4 | 1.9 | 1.9 | 1.9 | (57) |
| 지역규모 | | | | | | | | |
| 대도시 | 12.0 | 25.4 | 1.7 | 11.5 | - | 10.9 | 0.3 | (385) |
| 중소도시 | 1.8 | 17.9 | 1.4 | 8.2 | 0.4 | 5.4 | - | (270) |
| 읍면지역 | 1.0 | 4.9 | - | 7.8 | 1.0 | 10.7 | - | (79) |

(표 4 계속)

| 구분 | 반일제 이상 학원 | 시간제 교육기관 | 개인 및 그룹지도 | 학습지 | 통신 교육 | 개별 보육 | 일시 보육 | (수) |
|-----------|-----------|----------|-----------|------|-------|-------|-------|-------|
| 모취업여부 | | | | | | | | |
| 취업 | 10.5 | 14.9 | 3.5 | 5.8 | - | 51.2 | - | (91) |
| 육아휴직 | 1.3 | 22.7 | - | 4.0 | - | 8.0 | - | (71) |
| 미취업 | 6.4 | 20.4 | 1.2 | 11.1 | 0.3 | 2.4 | 0.2 | (571) |
| 비해당(부재) | 100.0 | - | - | - | - | - | - | (1) |
| 가구소득 | | | | | | | | |
| 199만원이하 | 1.4 | 15.5 | 1.4 | 7.0 | - | - | - | (78) |
| 200~249만원 | 2.0 | 16.8 | - | 8.9 | - | - | - | (106) |
| 250~299만원 | 3.5 | 16.9 | 1.4 | 10.6 | - | 2.1 | - | (140) |
| 300~349만원 | 5.7 | 18.9 | 0.8 | 8.9 | 0.8 | 7.3 | - | (118) |
| 350~399만원 | 2.2 | 21.7 | - | 6.5 | - | 8.7 | - | (46) |
| 400~449만원 | 9.2 | 21.7 | 0.8 | 10.9 | - | 15.0 | - | (113) |
| 450~499만원 | 15.3 | 25.5 | 2.9 | 11.7 | 0.7 | 21.2 | 0.7 | (133) |

주: 중복 응답 결과임.

□ 반일제 이상 학원 등 7종의 보육·교육서비스 중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률이 2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지 9.7%, 개별교육 8.6%, 반일제 이상 학원 6.5%임. 나머지는 1% 내외 정도임.

- 아동 연령별로 보면, 반일제 이상 학원은 4, 5세가 90%에 근접하고, 시간제 교육기관은 5세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 학습지는 연령에 비례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
- 지역규모별로 보면,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교육기관, 학습지 등은 대도시 영유아가 타 지역보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이 10.5%, 개별 보육이 51.2%로 미취업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에 미취업모는 학습지나 시간제 교육학원 이용률이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450~499만원 이상 가구의 15.3%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음. 시간제 교육기관은 소득에 비례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개별보육의 경우,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이 15~20%대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나. 보육·교육 서비스별 이용과 비용

1) 반일제 이상 학원

가) 이용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중 6.5%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고 있음.

〈표 5〉 이용하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 구분 | 단위: %(명) | | | | | 계(수) |
|----|----------|------|-------|------|-------|-----------|
| | 영어학원 | 미술학원 | 놀이학원 | 체육학원 | 선교원 등 | |
| 전체 | 34.7 | 2.0 | 28.6 | 18.4 | 16.3 | 100.0(50) |
| 1세 | - | - | 100.0 | - | - | 100.0(1) |
| 2세 | - | - | 50.0 | 25.0 | 25.0 | 100.0(4) |
| 3세 | 25.0 | - | 16.7 | 33.3 | 25.0 | 100.0(12) |
| 4세 | 25.0 | 6.3 | 31.2 | 25.0 | 12.5 | 100.0(18) |
| 5세 | 62.5 | - | 25.0 | - | 12.5 | 100.0(15) |

- 기관유형을 보면, 영어학원이 34.7%로 많고, 다음으로 놀이학원 28.6%, 체육학원 18.4%이며, 이외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이 일부 있음.
- 아동 연령별로도 일관성이 없으나 2세는 놀이학원이 다수이고, 5세는 영어학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나) 이용 이유

-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의 재능소질 개발이 28.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집 주변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 초과가 24.5%를 차지하며 20.4%는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싶어서임.
- 반일제 기관의 경우 기관유형간 특성이 상이하여 이용 이유가 다를 수 있음. 영어학원과 미술·체육학원은 재능소질 개발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고, 놀이학원과 선교원은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함.

〈표 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자녀가 원해서 | 재능 소질 개발 | 초등 학교 준비 | 차별화 교육 | 어린이집·유치원 맘에 안들어서 |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초과 | 주변에 서 많이 보냄 | 기타 | 계(수) |
|---------|---------|----------|----------|--------|------------------|---------------|-------------|------|-----------|
| 전체 | - | 28.6 | 6.1 | 20.4 | 12.2 | 24.5 | 2.0 | 6.1 | 100.0(50) |
| 연령 | | | | | | | | | |
| 1세 | - | - | - | - | - | 100.0 | - | - | 100.0(1) |
| 2세 | - | 25.0 | - | 25.0 | - | 25.0 | 25.0 | - | 100.0(4) |
| 3세 | - | 16.7 | 8.3 | 16.7 | 8.3 | 41.7 | - | 8.3 | 100.0(12) |
| 4세 | - | 41.2 | - | 11.8 | 23.5 | 17.6 | - | 5.9 | 100.0(18) |
| 5세 | - | 26.7 | 13.3 | 33.3 | 6.7 | 13.3 | - | 6.7 | 100.0(15) |
| 기관 | | | | | | | | | |
| 영어학원 | - | 43.8 | 6.3 | 12.5 | 6.3 | 31.3 | - | - | 100.0(17) |
| 미술·체육학원 | - | 30.0 | - | 20.0 | 10.0 | 30.0 | - | 10.0 | 100.0(11) |
| 놀이학원 | - | 21.4 | 7.1 | 28.6 | 7.1 | 21.4 | 7.1 | 7.1 | 100.0(14) |
| 선교원 등 | - | - | 12.5 | 37.5 | 25.0 | 12.5 | - | 12.5 | 100.0(8) |

다) 비용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순수 교육비 이외에도 62.5%가 급간식비, 44.9%는 교재교구비, 35.4%는 현장학습비를 내고 있음. 이 외에도 29.2%는 재료비, 16.3%는 차량운행비를 부담함.

- 사례수가 적어 아동 연령 및 이용기관별로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표 7〉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항목별 비용 납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 교육비 | 피복비 | 교재교구비 | 재료비 | 급간식비 | 차량운행비 | 종일반비 | 행사비 | 현장학습비 | 기타 | (수) |
|---------|-------|-----|-------|------|-------|-------|------|------|-------|-----|------|
| 전체 | 100.0 | - | 44.9 | 29.2 | 62.5 | 16.3 | 4.1 | 10.4 | 35.4 | 2.1 | (50) |
| 연령 | | | | | | | | | | | |
| 1세 | 100.0 | - | - | - | - | - | - | - | - | - | (1) |
| 2세 | 100.0 | - | 100.0 | 50.0 | 100.0 | 25.0 | - | 50.0 | 50.0 | - | (4) |
| 3세 | 100.0 | - | 25.0 | 50.0 | 75.0 | 8.3 | - | - | 33.3 | - | (12) |
| 4세 | 100.0 | - | 41.2 | 18.8 | 56.3 | 29.4 | 11.8 | 12.5 | 43.8 | - | (18) |
| 5세 | 100.0 | - | 53.3 | 20.0 | 53.3 | 6.7 | - | 6.7 | 26.7 | 6.7 | (15) |
| 기관 | | | | | | | | | | | |
| 영어학원 | 100.0 | - | 52.9 | 23.5 | 64.7 | 11.8 | 5.9 | 5.9 | 23.5 | 6.3 | (17) |
| 미술·체육학원 | 100.0 | - | 30.0 | 30.0 | 80.0 | 9.1 | 10.0 | 9.1 | 70.0 | - | (11) |
| 놀이학원 | 100.0 | - | 50.0 | 50.0 | 57.1 | 35.7 | - | 7.1 | 14.3 | - | (14) |
| 선교원 등 | 100.0 | - | 37.5 | - | 57.1 | - | - | 25.0 | 50.0 | - | (8) |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은 월평균 599,600원이고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1%, 지출대비는 평균 18.4%임.

〈표 8〉 기타 반일제 이용 기관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 아동 1인당 평균 | | 소득 대비 | | 지출 대비 | | (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99.6 | 302.8 | 14.1 | 7.3 | 18.4 | 8.1 | (50) |
| 아동연령 | | | | | | | |
| 1세 | 250.0 | - | 4.6 | - | 7.1 | - | (1) |
| 2세 | 423.6 | 109.3 | 13.9 | 8.2 | 17.8 | 10.7 | (4) |
| 3세 | 432.0 | 175.9 | 9.7 | 2.6 | 13.8 | 4.4 | (12) |
| 4세 | 667.1 | 305.6 | 14.4 | 6.8 | 20.0 | 8.6 | (18) |
| 5세 | 736.4 | 338.9 | 18.0 | 8.6 | 21.4 | 7.8 | (15) |
| <i>F</i> | 3.0 | | 3.0 | | 3.4 [#] | | |
| 기관유형 | | | | | | | |
| 영어학원 | 816.0 | 270.9 | 17.1 | 8.7 | 22.4 | 7.5 | (17) |
| 미술·체육학원 | 478.4 | 115.2 | 10.9 | 3.7 | 15.7 | 8.3 | (11) |
| 놀이학원 | 656.5 | 256.4 | 16.0 | 6.8 | 20.3 | 6.4 | (14) |
| 선교원 등 | 196.2 | 70.3 | 8.3 | 3.8 | 9.9 | 4.3 | (8) |
| <i>F</i> | 15.1 ^{***} | | 4.1 | | 6.4 ^{**} |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아동연령별로는 5세 736,400원, 4세 667,100원, 3세 432,000원이고,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차이를 보여서 2세가 13.9%, 4, 5세가 14.4%, 18%로 높고, 나머지 연령은 10% 미만임.
- 기관유형별로는 영어학원 816,000원, 놀이학원 656,500원, 미술·체육학원 478,400원, 선교원 등 기타가 196,200원으로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 큼.
 - 소득대비 비율은 영어학원이 17.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놀이학원, 미술·체육학원, 선교원 등 순임.

라) 부담 정도 및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76.0%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하였고, 부담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0점임.
 - 기관유형별로는 비용이 높은 영어학원 이용 부모의 비용 부담이 가장 많고, 미술·체육학원 이용 부모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음.

〈표 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비용 부담 정도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부담정도 | | | | | | 만족도 | | | | | 계(수) |
|----------|-------|-------|------|-------|-------|--------|-----|------|--------|-------|--------|-----------|
| | 전혀 안됨 | 별로 안됨 | 적당 | 조금 부담 | 매우 부담 | 평균(5점) |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 평균(5점) | |
| 전체 | - | 4.0 | 20.0 | 46.0 | 30.0 | 4.0 | 2.0 | 6.1 | 51.0 | 40.8 | 4.3 | 100.0(50) |
| 영어학원 | - | - | 11.8 | 29.4 | 58.8 | 4.5 | 5.9 | 11.8 | 52.9 | 29.4 | 4.1 | 100.0(17) |
| 미술·체육학원 | - | 9.1 | 36.4 | 54.5 | - | 3.4 | - | - | 70.0 | 30.0 | 4.3 | 100.0(11) |
| 놀이학원 | - | - | 14.3 | 57.1 | 28.6 | 4.1 | - | - | 35.7 | 64.3 | 4.6 | 100.0(14) |
| 선교원 등 | - | 12.5 | 25.0 | 50.0 | 12.5 | 3.7 | - | 12.5 | 50.0 | 37.5 | 4.2 | 100.0(8) |
| <i>F</i> | | | | | | 5.4** | | | | | 1.5 | |

** $p < .0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91.8%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5점 척도로 보면 평균 4.3점임.

- 이용 기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어린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학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2) 시간제 학원

가) 이용

기관 미이용 아동 중 19.8%가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시간제 교육기관 평균 이용 기관수는 1.1개임. 이용 아동 중 88.3%는 1개 기관, 9%는 2기관, 2.8%는 3기관 이상을 다님.

〈표 10〉 시간제 교육기관 수 및 교과목별 이용 비율

단위: %(명), 개

| 구분 | 교육기관 수 | | | | | 교과목별 이용 비율 | | | | | | | | | | |
|----------|--------|------|--------|------------|-----|------------|------|------|------|------|------|----|-------|-------|-----|--------|
| | 1기관 | 2기관 | 3기관 이상 | 계(수) | 평균 | 한글 | 영어 | 수학 | 음악 | 미술 | 체육 | 과학 | 교구 활동 | 종합 보습 | 기타 | |
| 전체 | 88.3 | 9.0 | 2.8 | 100.0(145) | 1.1 | 0.7 | 2.0 | 2.7 | 19.9 | 17.4 | 47.6 | - | 13.7 | 14.3 | 6.1 | |
| 0세 | 96.7 | 3.3 | - | 100.0(61) | 1.0 | 1.6 | - | 1.6 | 25.8 | - | 44.4 | - | 8.1 | 17.7 | 9.7 | |
| 1세 | 87.0 | 9.3 | 3.7 | 100.0(54) | 1.2 | - | 1.9 | - | 13.0 | 17.0 | 59.3 | - | 24.5 | 11.1 | 3.7 | |
| 2세 | 92.9 | 7.1 | - | 100.0(13) | 1.1 | - | 14.3 | - | 7.1 | 61.5 | 23.1 | - | 7.1 | 23.1 | 7.1 | |
| 3세 | 100.0 | - | - | 100.0(3) | 1.0 | - | - | - | - | 50.0 | 33.3 | - | - | 33.3 | - | |
| 4세 | 83.3 | 16.7 | - | 100.0(6) | 1.2 | - | - | - | 20.0 | 40.0 | 33.3 | - | 16.7 | - | - | |
| 5세 | 25.0 | 50.0 | 25.0 | 100.0(8) | 2.0 | - | - | 33.3 | 44.4 | 62.5 | 50.0 | - | - | - | - | |
| <i>F</i> | | | | | | | | | | | | | | | | 9.5*** |

*** $p < .001$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 중 47.6%가 체육이고, 다음으로 음악과 미술이 19.9%, 17.4%, 교구 13.7%, 종합보습 14.3% 순임.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임.

나) 이용 이유

□ 시간제 교육기관의 이용 이유로, 35.9%가 재능소질 개발을 들었고, 30.3%는 교육프로그램, 10.3%는 남들이 다해서를 꼽음.

〈표 11〉 시간제 교육 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자녀가 원해서 | 재능소질 개발 | 선행 학습 | 교육 프로그램 | 남들이 다 해서 | 주변 적극 추천 | 자녀 놀바 줄 사람 없어서 | 기타 | 계(수) |
|----|---------|---------|-------|---------|----------|----------|----------------|------|------------|
| 전체 | 4.8 | 35.9 | 2.8 | 30.3 | 10.3 | 4.8 | 1.4 | 9.7 | 100.0(146) |
| 0세 | - | 30.2 | 1.6 | 34.9 | 9.5 | 7.9 | - | 15.9 | 100.0(63) |
| 1세 | 3.8 | 44.2 | - | 30.8 | 9.6 | 3.8 | - | 7.7 | 100.0(53) |
| 2세 | 7.7 | 30.8 | - | 30.8 | 15.4 | - | 15.4 | - | 100.0(13) |
| 3세 | - | 33.3 | - | 33.3 | 33.3 | - | - | - | 100.0(3) |
| 4세 | 50.0 | 16.7 | - | 16.7 | 16.7 | - | - | - | 100.0(6) |
| 5세 | 12.5 | 50.0 | 37.5 | - | - | - | - | - | 100.0(8) |

다) 비용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출 비용은 63,300원이고, 소득대비 비율은 1.8%, 지출대비는 2.2%를 나타냄.

- 아동 연령별로는 월평균 지출비용은 4, 5세가 13~17만원 선으로 높고, 가구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 또한 5세가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2〉 시간제 교육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 평균 | | 소득대비 비율 | | 지출대비 비율 | | (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63.3 | 62.1 | 1.8 | 1.4 | 2.2 | 1.6 | (147) |
| 0세 | 41.9 | 15.0 | 1.5 | 0.9 | 1.8 | 0.9 | (63) |
| 1세 | 55.5 | 35.0 | 1.7 | 1.1 | 2.2 | 1.7 | (54) |
| 2세 | 94.4 | 133.8 | 1.8 | 1.7 | 2.2 | 1.7 | (13) |
| 3세 | 35.1 | 28.1 | 1.9 | 2.1 | 1.9 | 2.0 | (3) |
| 4세 | 137.3 | 97.8 | 2.2 | 1.7 | 2.9 | 2.0 | (6) |
| 5세 | 175.3 | 56.2 | 4.1 | 2.3 | 5.1 | 2.0 | (8) |
| F | 14.1*** | | 7.5*** | | 7.8*** | | |

*** $p < .001$

라) 비용 부담정도 및 만족도

시간제 교육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음.

<표 13> 시간제 교육 교과목별 비용 부담정도 및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부담 정도 | | | | | | | | | | 만족도 | | | | | | | | | |
|-----|-------|------|-----|------|------|------|----|------|------|------|-----|-----|-----|------|------|------|-----|------|------|------|
| | 한글 | 영어 | 수학 | 음악 | 미술 | 체육 | 과학 | 교구활동 | 종합보습 | 기타 | 한글 | 영어 | 수학 | 음악 | 미술 | 체육 | 과학 | 교구활동 | 종합보습 | 기타 |
| 전체 | - | 3.1 | 3.5 | 3.1 | 3.2 | 2.9 | - | 3.5 | 3.1 | 3.2 | - | 4.0 | 4.3 | 3.9 | 3.8 | 4.2 | - | 4.1 | 3.9 | 3.9 |
| 0세 | - | - | 3.0 | 3.1 | - | 3.1 | - | 3.0 | 3.1 | - | - | - | 5.0 | 3.9 | 4.1 | - | 4.1 | 3.7 | 4.2 | |
| 1세 | - | 3.0 | - | 2.7 | 3.2 | 2.7 | - | 2.7 | 3.2 | - | - | 4.5 | - | 4.1 | 3.8 | 4.2 | - | 4.0 | 4.0 | 3.0 |
| 2세 | - | 3.2 | - | 4.0 | 2.9 | 3.0 | - | 4.0 | 2.9 | - | - | 3.6 | - | 4.0 | 3.8 | 4.0 | - | 4.0 | 4.3 | 4.0 |
| 3세 | - | - | - | - | 3.0 | 4.0 | - | 3.0 | - | - | - | - | - | - | 3.0 | 4.0 | - | - | 4.0 | - |
| 4세 | - | - | - | 2.0 | 3.8 | 2.6 | - | 2.0 | 3.8 | - | - | - | - | 4.0 | 4.7 | 4.6 | - | 5.0 | - | - |
| 5세 | - | - | 3.7 | 3.5 | 3.2 | 2.7 | - | 3.7 | 3.5 | 3.2 | - | - | 4.0 | 3.5 | 3.8 | 4.2 | - | - | - | - |
| (수) | - | (4) | (4) | (32) | (26) | (67) | - | (22) | (20) | (10) | - | (4) | (4) | (32) | (26) | (67) | - | (22) | (20) | (10) |
| F | - | 0.02 | 0.3 | 1.4 | 0.6 | 1.1 | - | 1.2 | 1.1 | 0.1 | - | 0.8 | - | 0.8 | 2.0 | 0.4 | - | 1.3 | 2.0 | 6.8* |

* $p < .05$

- 수학과 교구활동이 3.5점으로 가장 높고, 미술이 3.2점, 영어, 음악, 종합보습이 3.1점으로 보통 이상의 부담 정도를 나타냄.
- 한편, 이에 대한 만족도는 영어, 수학, 체육, 교구활동이 5점 만점에 4점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즉, 시간제 교육 만족도가 높은 만큼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나 부모 대부분 비용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개인·그룹 지도

가) 이용

-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중 1.2%로 소수임.
- 교구활동이 66.7%로 많고, 음악과 미술이 각각 22.2%, 체육 11.1% 정도임.

나) 이용 이유

-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로, 재능소질 개발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33.3%, 자녀가 원해서 22.2% 순임.

- 사례수가 적으나, 연령별로도 재능소질 개발이 가장 높고, 자녀가 원해서, 교육프로그램 순으로 높음.

다) 비용

- 월평균 비용은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280,000원으로 차이가 큼.

4) 학습지

가) 이용

- 학습지 이용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세가 33.6%로 가장 많고, 3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은 10% 내외 수준임.

〈표 14〉 학습지 이용 아동 연령 분포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전체 |
|------|--------|--------|--------|-------|--------|--------|---------|
| 이용자수 | 10 | 24 | 13 | 5 | 11 | 10 | 73 |
| (비율) | (13.1) | (33.6) | (19.8) | (5.2) | (13.5) | (14.8) | (100.0) |

- 본 조사에서는 교구와 학습지 병행 교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어린 연령의 참여 비율이 전년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학습지 과목별 이용률은 한글이 49.3%로 많고, 통합활동 36.1%, 교구 18.9%, 수학 16.7%,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임.
- 연령별로는 교구와 통합활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한글과 수학 등의 학습 위주의 학습지 이용은 연령에 비례하여 늘어남.

〈표 15〉 학습지 이용 아동 과목 분포

| 구분 | 한글 | 영어 | 수학 | 한자 | 교구 | 통합활동 | 기타 | (수) |
|----|-------|------|------|-----|------|------|------|------|
| 전체 | 49.3 | 4.2 | 16.7 | 1.4 | 18.9 | 36.1 | 4.1 | (73) |
| 0세 | 10.0 | - | 10.0 | - | 30.0 | 66.7 | - | (10) |
| 1세 | 20.0 | 8.3 | 4.2 | - | 24.0 | 45.8 | 12.0 | (24) |
| 2세 | 53.3 | - | - | - | 21.4 | 42.9 | - | (13) |
| 3세 | 100.0 | 25.0 | 25.0 | - | - | - | - | (5) |
| 4세 | 90.0 | - | 40.0 | - | 20.0 | 30.0 | - | (11) |
| 5세 | 90.9 | - | 50.0 | 9.1 | - | - | - | (10) |

나) 이용 이유

- 영유아 학습지 이용 이유로는 교육프로그램이 33.3%로 높고, 초등학교 선행 학습이 16.7%, 주변 부모 권유 12.5%, 자녀가 원해서 11.1% 정도임.

〈표 16〉 학습지 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 자녀가 원해서 | 비용 저렴 | 정부학습지 바우처 지원 | 초등학교 선행학습 | 교육 프로그램 | 남들이 다 해서 | 주변 부모 권유 | 기타 | 계(수) |
|----|---------|-------|--------------|-----------|---------|----------|----------|------|-----------|
| 전체 | 11.1 | 8.3 | 6.9 | 16.7 | 33.3 | 8.3 | 12.5 | 2.8 | 100.0(72) |
| 0세 | - | - | - | - | 55.6 | 11.1 | 33.3 | - | 100.0(10) |
| 1세 | 13.0 | 4.3 | - | 4.3 | 47.8 | 13.0 | 13.0 | 4.3 | 100.0(23) |
| 2세 | 14.3 | 14.3 | 7.1 | - | 42.9 | 7.1 | 14.3 | - | 100.0(13) |
| 3세 | - | - | 20.0 | 20.0 | 20.0 | 20.0 | 20.0 | - | 100.0(5) |
| 4세 | 9.1 | 18.2 | 27.3 | 45.5 | - | - | - | - | 100.0(11) |
| 5세 | 20.0 | 10.0 | - | 50.0 | 10.0 | - | - | 10.0 | 100.0(10) |

다) 비용

- 학습지 이용 시 총 비용은 월평균 57,100원임. 이 비용은 소득 및 지출대비 1.8%, 2.2% 정도임.

- 연령별로 아동 1인당 총 비용,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17〉 학습지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 아동 1인당 평균 | | 소득 대비 | | 지출 대비 | | (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7.1 | 47.4 | 1.8 | 2.0 | 2.2 | 1.9 | (72) |
| 0세 | 69.1 | 85.0 | 2.1 | 2.0 | 2.9 | 2.8 | (10) |
| 1세 | 44.2 | 29.1 | 1.6 | 1.2 | 2.0 | 1.5 | (23) |
| 2세 | 59.3 | 44.9 | 2.0 | 1.7 | 2.3 | 1.7 | (13) |
| 3세 | 62.2 | 37.6 | 3.7 | 5.6 | 3.5 | 4.2 | (5) |
| 4세 | 72.2 | 58.1 | 1.4 | 1.0 | 1.8 | 1.3 | (11) |
| 5세 | 54.4 | 25.2 | 1.3 | 0.8 | 1.6 | 0.9 | (10) |
| F | 0.7 | | 1.4 | | 1.0 | | |

- 학습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는 교구가 3.7점으로 가장 높고, 통합활동이 3.4점으로 높은 수준임. 이는 교구나 통합활동 교육이 주로 교구를 구입하고, 매월 학습지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18〉 학습지 과목별 부담정도 및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부담 정도 | | | | | | | 만족도 | | | | | | |
|-----|-------|-----|------|----|------|----------|----|------|-----|------|----|------|----------|----|
| | 한글 | 영어 | 수학 | 한자 | 교구 | 통합 활동 | 기타 | 한글 | 영어 | 수학 | 한자 | 교구 | 통합 활동 | 기타 |
| 전체 | 2.7 | 2.5 | 2.4 | - | 3.7 | 3.4 | - | 3.8 | 4.0 | 3.8 | - | 4.1 | 3.7 | - |
| 0세 | 4.0 | - | 4.0 | - | 3.2 | 3.8 | - | 3.0 | - | 3.0 | - | 3.5 | 3.2 | - |
| 1세 | 2.6 | 2.0 | 2.0 | - | 3.8 | 3.3 | - | 3.2 | 4.0 | 4.0 | - | 4.2 | 3.8 | - |
| 2세 | 3.2 | - | - | - | 3.4 | 3.2 | - | 4.0 | - | - | - | 4.3 | 4.0 | - |
| 3세 | 2.4 | 4.0 | 3.0 | - | - | - | - | 4.0 | 4.0 | 4.0 | - | - | - | - |
| 4세 | 2.3 | - | 1.7 | - | 4.0 | 3.7 | - | 3.8 | - | 3.5 | - | 4.0 | 3.7 | - |
| 5세 | 2.8 | - | 2.8 | - | - | - | - | 3.9 | - | 4.0 | - | - | - | - |
| (수) | (37) | (3) | (13) | - | (13) | (26) | - | (37) | (3) | (13) | - | (13) | (26) | - |
| F | 0.5 | - | 1.8 | - | 0.3 | 1.2 | - | 1.0 | - | 0.4 | - | 1.4 | 2.3 | - |

- 학습지 과목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7~4.1점으로 높은 편임. 앞서 살펴본 비용 부담정도가 높은 교구의 만족도가 4.1점으로 높음. 즉, 비용이 부담되지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5) 개별 보육

-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 중 8.6% 정도임. 이중 혈연인은 6.4%, 비혈연인은 2.2% 정도임.
- 아동 연령별로 보면, 0세의 개별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고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함.

〈표 19〉 개별보육 연령별 이용자 수

단위: 수(%)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계(수) |
|-----|------|------|------|----|-----|-----|-----------|
| 전체 | 69.2 | 16.9 | 10.8 | - | 1.5 | 1.5 | 100.0(63) |
| 혈연 | 63.3 | 22.4 | 10.2 | - | 2.0 | 2.0 | 100.0(47) |
| 비혈연 | 87.5 | - | 12.5 | - | - | - | 100.0(16) |

가) 서비스 제공자

- 개별보육서비스 제공자는 혈연관계 내에서는 외조부모가 61.2%, 친조부모 34.7%, 친인척 4.1%로 친외조부모에 대한 의존률이 높음.
-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소수이나, 이중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이용이 많음.

〈표 20〉 개별보육 제공자

단위: %(명)

| 구분 | 혈연 | | | | 비혈연 | | | | 계(수) |
|----|-------|-------|-----|-----------|-------|-------|-------|-------|-----------|
| | 친조부모 | 외조부모 | 친인척 | 계(수) |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 이웃보육모 | |
| 전체 | 34.7 | 61.2 | 4.1 | 100.0(47) | 33.3 | 26.7 | 20.0 | 20.0 | 100.0(16) |
| 0세 | 41.9 | 54.8 | 3.2 | 100.0(30) | 38.5 | 30.8 | 15.4 | 15.4 | 100.0(14) |
| 1세 | 9.1 | 81.8 | 9.1 | 100.0(10) | - | - | - | - | - |
| 2세 | 40.0 | 60.0 | - | 100.0(5) | - | - | 50.0 | 50.0 | 100.0(2) |
| 3세 | - | - | - | - | - | - | - | - | - |
| 4세 | 100.0 | - | - | 100.0(1) | - | - | - | - | - |
| 5세 | - | 100.0 | - | 100.0(1) | - | - | - | - | - |

나) 비용

- 개별보육 비용의 전체 평균은 아동 1인당 532,500원이고,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이 10.2%, 14%로 다른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하여 높음.

〈표 21〉 개별보육 비용 및 소득·지출대비 비율

단위: 천원(명)

| 구분 | 혈연 | | | | 비혈연 | | | | 전체 | | | |
|----|-------|--------|--------|------|--------|--------|--------|------|-------|--------|--------|------|
| | 평균 | 소득대비비율 | 지출대비비율 | (수) | 평균 | 소득대비비율 | 지출대비비율 | (수) | 평균 | 소득대비비율 | 지출대비비율 | (수) |
| 전체 | 429.0 | 9.0 | 12.3 | (47) | 859.9 | 14.2 | 19.3 | (16) | 532.5 | 10.2 | 14.0 | (63) |
| 0세 | 493.7 | 9.8 | 13.6 | (30) | 827.7 | 14.4 | 19.5 | (14) | 595.4 | 11.2 | 15.4 | (44) |
| 1세 | 343.2 | 8.3 | 10.8 | (10) | | | | | 343.2 | 8.3 | 10.8 | (10) |
| 2세 | 281.7 | 7.0 | 9.4 | (5) | 1110.5 | 13.3 | 17.8 | (2) | 507.1 | 8.7 | 11.7 | (7) |
| 3세 | | | | | | | | | | | | |
| 4세 | 150.0 | 1.9 | 5.0 | (1) | | | | | 150.0 | 1.9 | 5.0 | (1) |
| 5세 | 200.0 | 3.5 | 5.7 | (1) | | | | | 200.0 | 3.5 | 5.7 | (1) |
| F | 1.8 | 1.1 | 1.1 | | 0.5 | 0.04 | 0.7 | | 1.5 | 1.5 | 1.6 | |

- 양육자별로 보면, 혈연인은 평균 429,000원이고, 비혈연인은 859,900원으로 비혈연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40만원 이상 높음.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 또한 혈연인은 각각 9.0%, 12.3%인데 반해, 비혈연인은 14.2%, 19.3%로 5~7% 정도 차이를 보임.

다. 영유아 1인당 비용

- 영유아 1인당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분포를 조사한 결과,
- 전체 영유아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은 62.9%로 높음. 나머지 중 5만원 미만은 14.3%로 높고, 5만원 이상 구간은 5% 내외 수준을 나타냄. 특히, 60만원 이상이 6.7%로 높은 편임.
 - 영유아별로 보면, 비용 미지불 비율이 영아가 67.5%, 유아 5.5%로 큰 차이를 보임.
 - 영아는 5만원 미만이 15.1%로 높고, 유아는 40~50만원 미만이 16.4%, 60만원 이상이 45.5%로 절반 가까이 됨. 이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많기 때문임.

〈표 22〉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분포

단위: %(명)

| 연령 | 연령구분 | | 연령 | | | | | | 전체 |
|-----------|-------|-------|-------|-------|-------|-------|-------|-------|-------|
| | 영아 | 유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
| 미지불 | 67.5 | 5.5 | 77.8 | 44.4 | 32.6 | 16.7 | - | - | 62.9 |
| 49천원 이하 | 15.1 | 1.8 | 10.0 | 29.8 | 23.9 | 5.6 | - | - | 14.3 |
| 50~99천원 | 4.8 | 1.8 | 2.6 | 10.6 | 8.7 | 5.6 | - | - | 4.6 |
| 100~149천원 | 2.2 | 5.5 | 0.4 | 6.6 | 6.5 | 5.6 | - | 11.8 | 2.4 |
| 150~199천원 | 0.9 | 5.5 | 0.2 | 0.7 | 8.7 | - | 10.5 | 5.9 | 1.2 |
| 200~249천원 | 1.5 | 3.6 | 1.2 | 2.6 | - | 5.6 | - | 5.9 | 1.6 |
| 250~299천원 | 0.3 | 5.5 | - | 1.3 | - | 5.6 | 10.5 | - | 0.7 |
| 300~349천원 | 1.2 | 1.8 | 1.0 | 1.3 | 2.2 | - | 5.3 | - | 1.2 |
| 350~399천원 | 0.1 | 1.8 | - | - | 2.2 | 5.6 | - | - | 0.3 |
| 400~499천원 | 1.2 | 16.4 | 1.2 | - | 4.3 | 27.8 | 10.5 | 5.9 | 2.2 |
| 500~599천원 | 1.6 | 5.5 | 1.4 | 2.0 | 2.2 | 11.1 | - | 5.9 | 1.9 |
| 600천원 이상 | 3.6 | 45.5 | 4.1 | 0.7 | 8.7 | 11.1 | 63.2 | 64.7 | 6.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수) | (677) | (57) | (480) | (151) | (46) | (20) | (20) | (17) | (734) |

-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보육·교육 비용은 109,800원임. 가구소득대비 2.4%, 지출대비 3.1%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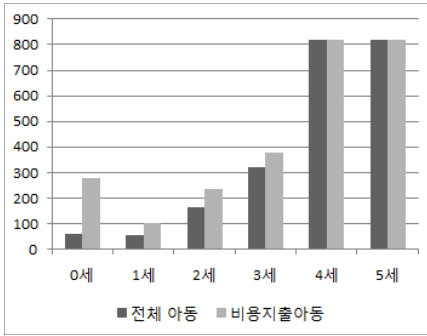
-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산출하면, 총 비용은 296,600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도 6.5%, 8.5%로 높아짐.
- 아동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특히 4세 이상은 80만원이 넘음.
- 모취업 여부별로도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비용 지출이 더 많고, 가구소득에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표 23〉 총 보육·교육 비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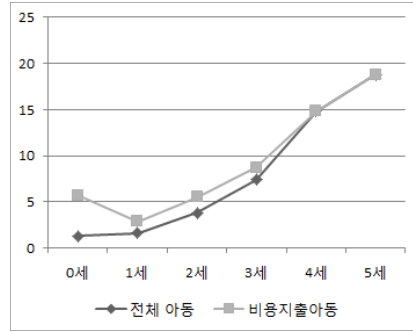
단위: 천원(명)

| 구분 | 전체 아동 | | | | 비용 지불 아동 | | | |
|-----------|---------|-----------|-----------|-------|----------|-----------|-----------|-------|
| | 평균 | 가구소득 대비비율 | 가구지출 대비비율 | (수) | 평균 | 가구소득 대비비율 | 가구지출 대비비율 | (수) |
| 전체 | 109.8 | 2.4 | 3.1 | (734) | 296.6 | 6.5 | 8.5 | (275) |
| 영유아구분 | | | | | | | | |
| 영아 | 67.2 | 1.5 | 2.0 | (677) | 207.2 | 4.6 | 6.2 | (221) |
| 유아 | 648.3 | 13.6 | 17.6 | (57) | 683.3 | 14.3 | 18.5 | (54) |
| <i>t</i> | -9.1*** | -9.8*** | -10.5*** | | -7.2*** | -7.6*** | -8.2*** | |
| 아동연령 | | | | | | | | |
| 0세 | 61.5 | 1.3 | 1.7 | (480) | 278.5 | 5.7 | 7.7 | (109) |
| 1세 | 56.9 | 1.6 | 2.1 | (151) | 102.9 | 2.9 | 3.8 | (81) |
| 2세 | 162.3 | 3.8 | 4.8 | (46) | 237.9 | 5.5 | 7.0 | (31) |
| 3세 | 322.0 | 7.4 | 10.1 | (20) | 379.0 | 8.7 | 11.9 | (17) |
| 4세 | 816.3 | 14.8 | 20.4 | (20) | 816.3 | 14.8 | 20.4 | (20) |
| 5세 | 817.9 | 18.8 | 22.6 | (17) | 817.9 | 18.8 | 22.6 | (17) |
| <i>F</i> | 84.7*** | 102.4*** | 97.2*** | | 25.4*** | 30.5*** | 29.1*** | |
| 모취업여부 | | | | | | | | |
| 취업 | 383.8 | 7.0 | 10.2 | (91) | 537.6 | 9.8 | 14.2 | (62) |
| 육아휴직중 | 47.9 | 0.9 | 1.3 | (71) | 139.3 | 2.6 | 3.8 | (25) |
| 미취업 | 76.7 | 1.9 | 2.3 | (571) | 238.9 | 5.9 | 7.2 | (187) |
| 비해당(부재) | 235.0 | 8.3 | 9.8 | (1) | 235.0 | 8.3 | 9.8 | (1) |
| <i>t</i> | 37.6*** | 28.3*** | 39.6*** | | 12.2*** | 8.0*** | 12.8*** | |
| 가구소득 | | | | | | | | |
| 199만원 이하 | 14.2 | 1.0 | 0.9 | (78) | 63.0 | 4.4 | 4.2 | (19) |
| 200~249만원 | 18.8 | 0.9 | 1.0 | (106) | 74.3 | 3.5 | 4.0 | (28) |
| 250~299만원 | 41.5 | 1.5 | 1.6 | (140) | 135.4 | 5.1 | 5.3 | (42) |
| 300~349만원 | 69.4 | 2.2 | 2.4 | (118) | 201.1 | 6.3 | 7.1 | (41) |
| 350~399만원 | 46.9 | 1.3 | 1.5 | (46) | 131.2 | 3.6 | 4.1 | (18) |
| 400~449만원 | 153.5 | 3.5 | 4.9 | (113) | 328.5 | 7.6 | 10.6 | (53) |
| 450~499만원 | 316.7 | 4.7 | 7.0 | (133) | 586.6 | 8.6 | 13.0 | (74) |
| <i>F</i> | 22.3*** | 8.6*** | 14.4*** | | 15.3*** | 3.2** | 7.6*** | |

** $p < .01$, *** $p < .001$



[그림 2] 총 보육·교육 비용



[그림 3] 가구소득대비 비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는 0, 1, 3세는 늘어나고, 나머지 연령은 줄어듦. 특히, 2세와 5세의 감소폭이 큼.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중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음.
 - 0세가 과반수 이상인 77.8%이고, 1세 44.4%, 2세 32.6%, 3세 16.7%를 차지함. 4, 5세는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유아가 없음.
 -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 14.3%는 5만원 미만을 지불하고, 5~10만원 미만은 4.6%, 10만원 이상은 3% 미만 수준임. 그러나 6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영유아가 6.7%로 많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총 보육·교육비용은 전체 아동 기준으로 1인당 월 109,800원, 지불아동은 29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영유아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 소득이 많을수록 총 보육·교육 비용 지출이 증가함.
-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대로 영아로 한정하고, 유아는 커리큘럼인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함.
 - 양육수당은 부분적으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있으나, 자칫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잠재요인을 가지고 있음.

- 아동의 전인적 발달 및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누리과정 도입 목적 실현 차원에서 유아가 적절한 시기에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수당 정책대상을 조정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함.
 - 영유아 대상의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놀이·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미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보육·교육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2세 중 1/3 정도와 3세 17% 정도가 가정 내 양육 외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안전행정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
-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이혜민(2013).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

